

박사학위논문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한운섭

2009년 12월



공란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지도교수 고 창 훈

한 윤 섭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2월

한윤섭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12월



공란

**A study on the Effect of ‘4.3 Peace-Education’
on Jeju Regional Development**

Youn-Sub Han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Hoon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0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공란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4.3 Peace-Education’ on Jeju Regional Development

Youn-Sub H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Hoon Ko)

This study is designed to answer the following curiosities: if ‘4.3 peace-education’ would be implemented, what will affect on Jeju regional development? Might any disruption be arisen? Will the education be helpful in the industries of either piece or tourism?

For this study, 5 variables were defined, including ‘4.3 peace-education’, ‘on Jeju regional development’, ‘the degree of interest in 4.3,’ ‘the degree of interest by NG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occupation’, ‘gender’, ‘region’, ‘age’, ‘education’, and ‘coursework for 4.3.’

Collected data from population, which consists of the 'governmental officials', 'undergraduate students', 'teacher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normal adults' and identifying the impact relations among variables and the differences of changes by a group, belonging to the population, which consists of 4 groups: in Jeju district, and did hypothesis test of changes between variables.

For the research, data-gathering had been conducted from June 25, 2009 to

July 10, 2009 and 709 copies were utilized. The result of a reliability analysis regarding collected data, indicating Cronbach's $\alpha = .961$, is found to be highly reliable. For a feasibility analysi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used. For a hypothesis test, F-test(ANOVA), T-test, and a cross-tabulation analysis(χ^2) were operated with SPSS. For a structural model, AMOS fitness analysis was done.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s are as the following:

(Hypothesi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respond to changes in '4.3 peace-education', 'Jeju Regional Development,' 'the degree of interest in 4.3,' 'the degree of interest by NGO' will play an adjusting role. \Rightarrow Partially adopted

'Hypothesis 1' was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able 1.

【Table 1】 Hypothesis 1 test

	factor	dependent Var.	results
H. 1-1	age	①4.3 peace-education ②Jeju Regional Development ③the degree of interest in 4.3 ④the degree of interest by NGO	Partially adopted
H. 1-2	gender		Rejected
H. 1-3	education		Partially adopted
H. 1-4	region		Partially adopted
H. 1-5	occupation		Partially adopted
H. 1-6	receive the 4.3 peace education		Partially adopted

(Hypothesis 2) '4.3 peace-education'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Jeju regional development' \Rightarrow Adopted

(Hypothesis 3) '4.3 peace-education'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the degree of interest in 4.3' \Rightarrow Adopted

(Hypothesis 4) '4.3 peace-education'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the degree of interest by NGO' \Rightarrow Rejected

(Hypothesis 5) 'The degree of interest in 4.3'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Jeju regional development' \Rightarrow Adopted

(Hypothesis 6) 'The degree of interest in 4.3'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the degree of interest by NGO’ ⇒ Adop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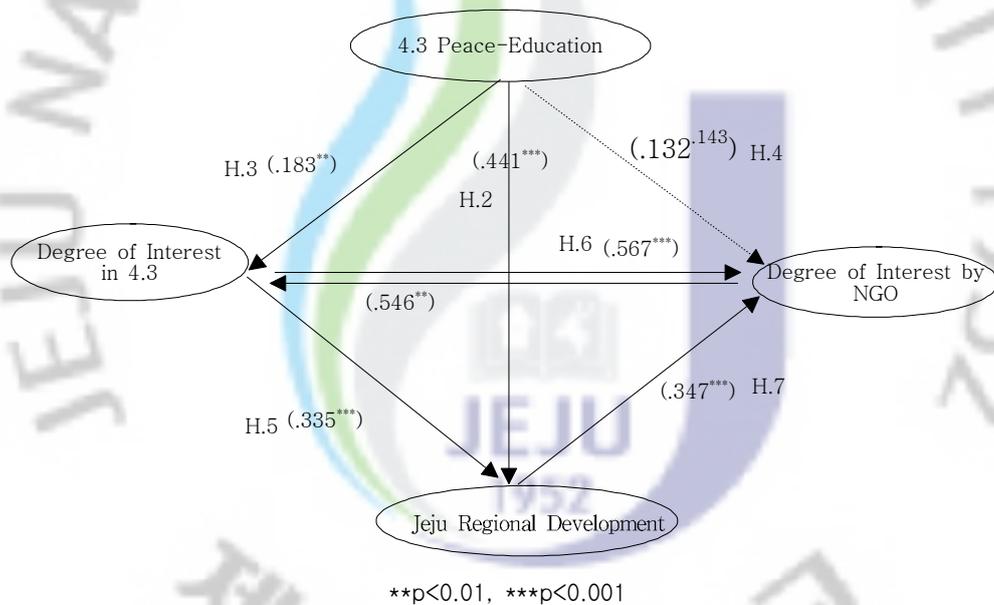
(Hypothesis 7) ‘Jeju regional development’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the degree of interest by NGO’ ⇒ Adopted

(Hypothesis 8) ‘The degree of desiring a coursework for 4.3’ will affect the difference of ‘forming consciousness of citizens in Jeju’ ⇒ Adopted

(Hypothesis 9) ‘The range of 4.3 education recipients’ will affect the difference of ‘forming consciousness of citizens in Jeju’ ⇒ Adopted

As the result of the optimized, structural model and modification index, it is as the following Figure 1 and Table 2.

【Figure 1】 Optimized, Structural Model



【Table 2】 Model modification index

	χ^2/df	P	RMSEA	CFI	RFI	AGFI	PNFI	Fit Test
standard value	2-3	more than .05	less than .08	more than .9	more than .9	more than .9	more than .5 (or .6)	
First Model	3.785	.000	.062	.862	.812	.752	.779	Unfit
Second Model	2.769	.000	.050	.950	.912	.904	.800	Unfit
Final Model	2.437	.000	.045	.955	.916	.906	.820	Fit

First, 'the 4.3 peace education' gives effect to 'Jeju Regional Development' as

the regression coefficient (.441 ***), to 'Degree of Interest in 4.3' (.183 **), but doesn't give effect to 'Degree of Interest by NGO' (.132 .143).

Second, 'Degree of Interest in 4.3' gives effect to 'Jeju Regional Development' as the regression coefficient (.335 ***), to 'Degree of Interest by NGO' (.567 .***), and getting from it (.546 .**).

Third, 'Jeju Regional Development' gives effect to 'Degree of Interest by NGO' (.347 .***).

Therefore, most of citizens in Jeju have strongly expressed the need of '4.3 peace-education' and have thought it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developing Jeju district, so that it could have them change their consciousness positively without arising any social disruption.

And '4.3 peace-education' will contribute strengthening Jeju as 'the peace island'. and It will be symbolized the value of human right, peace, reconciliation, and coexisting, and help Jeju enhance the image as a peace-city within the globe.

Just as "War is originated from needs deep within hearts of human beings. Thus, it is necessary to build peace networks. It is desirable to root in peace in human beings' heart", peace would start from the escape from self-centered way of thinking, and prevail without cease if peace is accepted.

Precisely, this study has not utilized the sample, collected from an entire Jeju population. Thus, more precise and various populations as targets are needed. And we should learn the method to live in harmony, to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 the '4.3 peace-education'. So, we should make Jeju Island into the area of the peace. (Thank You)

Key Word : JeJu 4.3, peace education, the peace island, regional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목 차

ABSTRACT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내용	8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4.3의 소재	11
제2절 ‘4.3진상규명’과 민주화의 관련성	30
제3절 ‘4.3 평화교육’	45
1. ‘평화교육’	45
1) ‘평화’의 개념	45
2) ‘평화교육’의 개념	58
2. ‘4.3평화교육’의 발현과 교육내용의 변화	60
1)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	62
2)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63

3) ‘4.3평화교육’의 향후 방향	72
3. ‘4.3평화교육’의 내용	78
1) 비폭력 능력의 향상	78
2) 생명의 존엄성	80
3) 적법절차의 중요성	82
4) 불의에 대한 저항	84
5) 다양성 존중	86
6) 이념적 틀을 깨트리기	87
7) 대안탐색과 협상력 쌓기	90
8) 주변도시 등과의 교류	92
9) 소수인권의 존중	95
제4절 제주지역개발	98
1. ‘지역’과 ‘개발’의 개념	98
2. ‘제주지역개발’의 개념	101
3. ‘지역개발’의 이념과 연구범위의 변화 추세	108
제5절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 관련성	112
1. 제주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자로서 역할 인식’ 제고	112
2. 이념의 탈피로 새로운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기여 가능	113
3. ‘제주4.3사건’이 ‘평화를 추구하는 지역’으로 근거 제공	114
4. 세계를 향한 평화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기여	115
제3장 연구방법론	118
제1절 연구모형	118
제2절 연구가설	119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21
1. '4.3평화교육'	121
2. '제주지역개발'	123
3.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	126
4. '인적특성'과 '의식특성'	127
제4절 조사 및 분석방법	129
제4장 자료수집 및 분석	131
제1절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분석	131
1. 자료수집	131
2. 기초통계분석	132
제2절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133
1. 신뢰성 검증	133
2. 타당성 검증	136
3. 요인별 기술통계분석	143
제3절 변량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146
1. 가설 1에 대한 변량분석(ANOVA)을 하는 이유	146
2. 가설 1의 검증(변량분석)	147
제4절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156
1.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이유	156
2. 상관관계 분석결과	157
제5절 평균차이에 의한 변수 간 가설검증	159

1. 연구가설에 대한 T-검증을 하는 이유	159
2. 가설 검증(가설 2~ 가설 9)	160
1) 가설 2의 검증	160
2) 가설 3의 검증	162
3) 가설 4의 검증	164
4) 가설 5의 검증	165
5) 가설 6의 검증	167
6) 가설 7의 검증	168
7) 가설 8의 검증	170
8) 가설 9의 검증	173
9) 가설 2~ 가설 9의 검증 결과(종합)	175
제6절 구조모형 적합도 추정을 통한 가설검증	177
1.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을 하는 이유	177
2. 확인적 요인분석	179
3. 적합된 구조모형의 추정	182
4. 가설검증	192
1) 가설 2의 검증	193
2) 가설 3의 검증	194
3) 가설 4의 검증	195
4) 가설 5의 검증	196
5) 가설 6의 검증	197
6) 가설 7의 검증	198
7) 가설 2~ 가설 7의 검증 결과(종합)	199
제7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201
1. 분석결과의 요약	201
1) 요인분석 결과	201
2) 변량분석(ANOVA)에 의한 F 검증	203

3) 차이분석에 의한 T-검증	204
4) ‘4.3평화교육’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모형 검증	206
2. 분석결과의 시사점	208
제5장 결 론	21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12
1. 개 관	212
2. 검 증	21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218
1. 시사점 및 향후 방향	218
2. 한계점	220
참 고 문 헌	222
부 록 : 설문조사서	241
감사의 글	246

《표목차》

【표 2-1】 기록별 인명피해 현황	19
【표 2-2】 피해신고 접수현황(4.3특별위원회)	20
【표 2-3】 희생자 현황(제주4.3위원회)	21
【표 2-4】 연도별 4.3진상규명 활동과 민주화 관련도	41
【표 2-5】 평화의 어원적 의미	46
【표 2-6】 ‘4.3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 구성표(1)	75
【표 2-7】 ‘4.3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 구성표(2)	77
【표 3-1】 내생변수의 측정문항	125
【표 3-2】 설문지 구성표	128
【표 3-3】 변수별 연구방법 및 내용표	130
【표 4-1】 제주도 지역의 모수와 분석자료 비교	131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132
【표 4-3】 신뢰도 분석 결과(1)	134
【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2)	135
【표 4-5】 ‘4.3평화교육’,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141
【표 4-6】 ‘제주지역개발’의 탐색적 요인분석	142
【표 4-7】 요인별 기술통계(1)	144
【표 4-8】 요인별 기술통계(2)	145
【표 4-9】 ‘성별’에 따른 차이(ANOVA)	148
【표 4-10】 ‘연령’에 따른 차이(ANOVA)	149
【표 4-11】 ‘학력’에 따른 차이(ANOVA)	150
【표 4-12】 ‘지역’에 따른 차이(ANOVA)	151
【표 4-13】 ‘직업’에 따른 차이(ANOVA)	152
【표 4-14】 ‘4.3교육 받음’에 따른 차이(ANOVA)	153
【표 4-15】 가설 1의 종합	154
【표 4-16】 변수의 특성과 측정척도에 따른 상관계수	156

【표 4-17】 상관계수의 해석기준	156
【표 4-18】 상관분석표	157
【표 4-19】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기술통계)	161
【표 4-20】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독립표본 T-검증)	162
【표 4-21】 ‘4.3평화교육’과 ‘4.3관심도’(기술통계)	163
【표 4-22】 ‘4.3평화교육’과 ‘4.3관심도’(독립표본 T-검증)	164
【표 4-23】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기술통계)	165
【표 4-24】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독립표본 T-검증)	165
【표 4-25】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기술통계)	166
【표 4-26】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독립표본 T-검증)	166
【표 4-27】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기술통계)	168
【표 4-28】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독립표본 T-검증)	168
【표 4-29】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의 상관관계	169
【표 4-30】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기술통계)	170
【표 4-31】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독립표본 T-검증)	170
【표 4-32】 ‘4.3교육희망’과 ‘제주도민의식형성’(x ² 검증)	171
【표 4-33】 ‘4.3교육’의 필요와 도민의식 형성 영향(x ² 검증)	173
【표 4-34】 ‘4.3평화교육’의 범위에 따른 빈도	174
【표 4-35】 ‘4.3교육범위’와 ‘도민의식형성’(x ² 검증)	175
【표 4-36】 가설 2 ~ 가설 9의 검증결과(종합)	176
【표 4-37】 주요적합도 지수	177
【표 4-38】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지수 및 기준값	179
【표 4-3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81
【표 4-40】 수정모형 비교분석표	182
【표 4-41】 최초 가설적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184
【표 4-42】 최초 가설모형의 지수표	185
【표 4-43】 잠재변수별 관측 문항 정리	186
【표 4-44】 최종적인 가설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190
【표 4-45】 수정모형 비교분석표	191
【표 4-46】 가설 2의 검증 결과(AMOS)	193
【표 4-47】 가설 2의 회귀분석결과	193
【표 4-48】 가설 3의 검증결과(AMOS)	194

【표 4-49】 가설 3의 회귀분석 결과	195
【표 4-50】 가설 4의 검증 결과(AMOS)	196
【표 4-51】 가설 5의 검증 결과(AMOS)	196
【표 4-52】 가설 5의 회귀분석 결과	197
【표 4-53】 가설 6의 검증 결과(AMOS)	198
【표 4-54】 가설 7의 검증 결과(AMOS)	198
【표 4-55】 가설 7의 회귀분석 결과	199
【표 4-56】 가설 2 ~ 가설 7의 검증 결과(종합)	200
【표 4-57】 변수분류근거, 변수정리 및 분석	202
【표 4-58】 가설검증 결과 종합정리	204
【표 5-1】 가설 1의 종합	21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3-1】 가설적 연구모형(수정)	118
【그림 3-2】 ‘4.3평화교육’ 변수의 측정 모형	123
【그림 3-3】 측정문항에 따른 변인과 내생변수의 관계도	124
【그림 4-1】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1)	180
【그림 4-2】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2)	181
【그림 4-3】 최초의 가설적 모형	183
【그림 4-4】 중간 수정모형	187
【그림 4-5】 최종적 적합모형(비표준화된 적재치)	188
【그림 4-6】 최종적 적합모형(표준화된 적재치)	189
【그림 4-7】 최적의 가설모형	206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20세기는 학살과 폭력의 세기이다(아렌트, 1999; 허상수, 2006 : 75-97 재인용). ‘제주4.3사건’도 근대국가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으로(허상수, 2006 : 75-97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 543-544)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이를 방지하고 묶어 뚫은 억울하고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 속에 묻히게 되고 또는 사람들이 과거 자료에 접하더라도 이념적 상황에 매이는 현상이 반복되어 좌, 우 대립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에 어렵다.

아직까지 ‘제주4.3사건’을 놓고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공산주의의 반란을 제압하였다는 시각 하에 ‘제주4.3사건’으로부터 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이념 대립적 시각을 탈피하고자 ‘제주4.3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평화와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금까지는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생²⁾, 교사,³⁾ 대학

1) 4.3발생 55주년인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은 제주4.3을 정부수립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발생 60주년이 지나고 있는 근래에도 일부에서는 4.3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하고, 지금의 ‘4.3유족회’를 ‘인민유격대 출신 사망자들의 유족모임’으로 폄하는 등 ‘화해와 상생’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4.3을 놓고 이념적 대립보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위한 평화교육 방안을 강구할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2) ①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전국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매년 3월-4월 중에 ‘4.3교육주간’을 선포하여 ‘4.3교육은 정의를 살리는 길이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 인권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일’로서 일부학교 학생들에게 조례와 종례 시에 계기교육을 하거나 공동수업을 펼치고 있으며, ‘4.3역사기행’ 또는 ‘4.3문예행사’를 벌이고 있다(제4회 제주 4·3 교육주간 선포’ 문안 참조).

②1990년부터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 4·3 역사기행을 실시해 오고

생,4)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5)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매년 4.3주간 등 한 때의 계기적 교육이거나 일부의 대학생, 일반인들의 선택에 의한 부분적 교육이어서 아직까지는 공교육으로서 정상적인 교육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또한 제주도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제주4.3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스스로 바르게 알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7)

이는 과거 이념 편향적 사고의 틀로서 바라봄에 따라 나타나는 ‘제주4.3사건’에 대

있다.

- ③2005년도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2,000 여 명의 교사가 ‘제주 43 관련 테마 기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5. 3. 25. 평화, 인권, 통일,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위한 ‘제4회 제주 43 교육주간 선포’ 문안 참조).
 - ④2004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향후 이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편의상 ‘제주도교육청’으로 표기하며, 이러한 형식으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민’ 등으로 표기함)에서 ‘4.3진상보고서’를 토대로 「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4.3지도자료’인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4.3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 2004년 3월 8일).
 - ⑤제주도교육청에서는 매년 4월에는 청소년 4.3유적지 역사기행을 장려하고, 4.3청소년 평화축제, 전국청소년 문예공모 활동을 통하여 ‘4.3폭력’을 관조하면서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제주도교육청, 2009년 4월중 공개정보목록 참조).
 - ⑥2005년도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43교육자료집 2권(중고등학생용, 학습만화형태)과 교육피해조사보고서(초등학생용, 교과서 형태)를 개발하여 학급단위로 보급하였다.
- 3) ①박찬식 ‘4.3연구소장’은 2008년도부터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알기위해 제주지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4.3역사문화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00(제주00중학교 교사) 선생님은 4.3을 평화교육으로 나아가서 내면화 교육으로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KBS뉴스, 2009년 1월 12일 19 : 30)
 - ②제주도교육청은 2008년도 선생님들을 위한 4.3이해자료집인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jeu43.jeu.go.kr).
 - ③2009년도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에서는 제주의 문화와 유적은 물론 ‘제주4.3사건’ 등 뼈아픈 역사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사 교육과 배움의 길잡이가 될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를 발간하여 전국 역사모임과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전교조 제주지부를 통해 전국에 보급했다. 이 모임은 2003년에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연수를 제주에 유치해 전국에서 참여한 200여명의 교사들에게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9년 2월 3일)
- 4) 제주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전공선택으로 ‘4.3과 세계평화론’(강의, 고창훈 교수)이 개설되어 있으며, 제주대학교 e-러닝지원센터의 사이버강좌로 ‘제주4.3의 이해’(강의, 박찬식 제주4.3연구소장)가 개설되어 있다.
 - 5) ①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00)가 마련한 ‘2009년도 4.3 유적지 순례’는 제주시 권역,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권역별로 초·중등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120여명이 4.3 유적지 순례에 동행했는데 2008년도 보다 참여자가 20-30% 늘어나 4.3역사교육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제주지부-2009년도 4.3 유적지 순례’,(CNB뉴스, 2009-04-06 09:50 ; 제민일보, 2009년 04월 05일)
 - ② 1996년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4주간(매주 40명 내외) 역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제주4.3연구소, 2009 : 23)
- 6) 이러한 상황은 4.3의 손자세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고등학생들에게조차 학교에서의 4.3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한윤섭·고창훈, 2008 : 166)
 - 7) 연구자가 2009. 2. 16-2009. 3. 13사이 제주도내 공무원 356명에 대하여 4.3을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 긍정이상의 응답자는 118명(33.10%)이고, 보통 181명(50.8%), 부정의 응답자는 53명(14.9%), 결측 4명(1.1%)로 제주지역공무원으로 ‘4.3에 대한 앎’의 정도에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내비치는 사람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잘못 주입된 좌익적 색채 때문에 ‘제주4.3사건’을 기피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에 더 근원적인 이유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999년 12월 16일 제정되고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법으로, 향후 논문에서 ‘제주4.3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기 전, 공산폭동 또는 친북적인 민중폭동을 응당하게 진압한 ‘제주4.3사건’으로 기억시켜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4.3사건’에 대하여 명예회복 요구나 대량학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금기의 영역이었다. 이는 ‘제주4.3사건’을 자랑스럽지 못한 사건으로서 치부하여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국가이익이라는 정치적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반추하며 향후 보다 나은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귀중한 역사적 자원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 6.25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한 비중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4.3사건’과 같은 폭력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그 사건을 거울로 삼아 궁극한 점들을 면면히 뜯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대립적 시각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생명의 존귀함, 평화와 인권의 존중, 하나의 세상 속에 다양함이 어울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⁸⁾

이렇게 ‘제주4.3사건’을 반성하듯이 교육을 하면 기존의 이념 대립적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점차로 이념의 틀 밖으로 의식이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만큼 대립적 시각은 상대적으로 좁아져 사회통합과 제주지역의 발전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평화교육은 인권과 생태를 포함하는 교육으로 지난 세기 폭력의 반성에서 출발하여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도 지난 세기 폭력인 ‘제주4.3사건’에서 시대변화에 알맞은 평화교육의 소재를 찾아내고 교육을 한다면 불운했던 ‘제주4.3사건’은 금세기에 가치 있는 역사적 자산으로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 이는 ‘4.3평화교육’은 비폭력·평화·교육·문화·관광·환경·여성·예술 등 제주지역에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단초로 기능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인류사의 진보과정에 빠아픈 ‘제주4.3사건’은 공동체적 사회건설에

8) 21세기는 각 개인이나, 조직(단체), 국가마다 우발적으로 파괴력이 높은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소속과 다른 조직(단체), 지역, 민족, 국가, 이념, 사상, 종교 등과의 무한한 교류와 공존의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요한 기술들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과 인류사 진보를 이룩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연구의 경계(境界)를 무한히 열어 나갈 수 있을 것 인데, 이념 편향적으로 닫혀있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무고한 ‘제주4.3사건’에서 희생자들을⁹⁾ 폭도라 매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를 지면에 떨어지게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이정환, 2003 : 39-49), 폭력에는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만한 매력 즉 동인(개인 또는 집단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그러면서도 그 폭력행사가 표출된 것 이면에 당시 사회문화가 비폭력을 위한 평화 능력¹¹⁾이 충분히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평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제주4.3사건’의 대량학살에서 평화교육을 위한 훌륭한 소재들을 발굴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4.3사건’을 국가건설과정에 나타난 국가폭력으로 인정을 하여, 국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고(제주4.3위원회, 2003 : 543-544),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적인 사업으로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제주4.3사건’이

9) 500여명의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무수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들이 폭도였을까? 무고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폭도에 근접하지 않을까?

10) 자기 이기적 생각을 탈피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된다. 비폭력능력이 충분하다면 자기 이기적 생각을 억누르고 극복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화가 또는 폭력행사를 주도한 자의 비폭력능력은 이기적 생각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1) 비폭력 능력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향상시켜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 소재를 찾아 평화 교육을 실시할 가치가 있는데, 교육자, 종교인 등 사회적 리더들이 경험적으로 평화교육을 할 수 도 있지만, 이 연구물과 같이 학문적 연구결과를 산출함으로써 교육자, 종교인 등 사회적 리더들이 경험적 활동을 하는데 조그마하지만 살아있는 이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어떻게 기초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은 제주사람의 보다 나은 삶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 자원으로 구성해 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명립(1988 : 455)은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정치학, 민속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문학, 인류학, 여성학 등 각각의 측면에서 따지고 물어야 할 것들이 숏한 영역이라고 하였듯이,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에 역사학적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행정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폭력적 사실을 놓고 그 속에서 평화적인 개념을 추출하여 지역개발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4.3사건’을 놓고 과거 시대의 비판과 대립,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오늘의 시각에서 과거를 관조하는 작업을 하고, 그 관조하는 작업에서 사람들이 평화지향성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화의 지향은 개인(특정 그룹)적 집착에서 벗어남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고, 평화의 지향은 나와 너가 적이 되어 투쟁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서로 간에 다름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데서 의식이 더 확장되어 평화의 질과 영역은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¹²⁾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확장하면 할수록 사회통합과 사회발전, 평화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치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식확장을 위해서는 제주도민과 타시도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과거의 ‘제주4.3사건’을 반추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교육되어 져야 할 것이다(한윤섭·고창훈, 2008 : 167).¹³⁾

12) 다름이 있는 개인 간, 집단 간에 우선적으로 의식이 확장되어야 평화가 생성될 수 있다는 종교인들의 경험적 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비폭력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곳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의 생활수준을 종교인의 생활(이타적 생각 확충, 이기심과 집착의 축소) 수준으로 사회적 문화수준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와 비슷한 사례로 뉴제주운동인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진다.’는 관념도 일반인의 정신문화 수준을 한 단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신운동은 다양한 제주지역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한층 깨어있는(mindfulness) 제주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불교인의 ‘무아(無我) 즉 극락(極樂)’, ‘空有의 思想’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고, 기독교인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채울 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속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마음상태’ 와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결코 이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과거의 삶에 있어서,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또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부유하건 가난하건, 지위가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실질적인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은 제주사람(11.8%) 보다는 타시도 사람(52.7%), 외국사람(35.4%) 순으로 ‘제주4.3 교육’이 필요하다 하여 외부를 향한 교육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윤섭·고창훈, 2008 : 167)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교육방법은 비폭력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평화개념을 도입하고, ‘제주4.3사건’에서 비평화적인 소재를 찾아 평화교육의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을 한다면, ‘제주지역개발’ 등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제주지역의 공무원, 교사,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4.3평화교육’의 소재를 탐색하여 외생변수로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지역개발’을 내생변수로 하여, 외생변수인 ‘4.3평화교육’이 내생변수인 ‘제주지역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그 과정에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가 어떠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틀로써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의 진행결과에 따라 모형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적합 모형’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이는 제주사람들이 인식하는 변수(4.3평화교육소재,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간의 영향관계 또는 구조모형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사건’, ‘평화교육’,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부보고서, 단행본, 연구논문, 신문 등 매체자료, 학술행사, 그리고 사회행사의 발표자료 등 2차 자료를 참조로 하여 각 변수들의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등 기본 변수를 정의하고, 변수 사이에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의 틀’로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셋째, ‘가설적 연구모형’과 ‘실제적 관측자료’ 간의 적합도 판정을 통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교사’, 그리고 ‘대학생’,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과 관련한 모수의 모형을 추론하기 위해서 “가설적 진술”을 제시한다.

넷째,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수정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적합모형을 구축한 후 적합도 판정과 가설검증을 통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다섯째, 모형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측정변수들 간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4.3평화교육’을 한다면 ‘제주지역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제주도내 거주하는 제주도공무원, 교사,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검토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검토로는 현재의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제주4.3사건’의 교육 실태와 관련자료, ‘지역개발’에 관한 단행본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의 관련성, 그리고 ‘4.3진상규명’과 민주화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으로는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 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인적특성요인’에 대한 변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4.3교육’ 실태 및 문헌고찰을 하고, 사전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2009년 1-4월 중에 제주도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 검토를 한 후에 ‘4.3평화교육’의 하위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4.3전문가와 학계의 관련 교수님들에게 검토를 거치어 내용타당성을 높이고, 2009년 6월중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사전조사로 2009년 6월 15일-20일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사전조사에서 미비한 점을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 2009. 7월중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표집 인원은 700명(일반인250명, 교사150명, 공무원150명, 대학생150명)으로 계획하고, 비확률표본추출법인 임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송부와 연구자에 의하여 직접 주민들을 방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우선, 인적특성별로 응답자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여, 제주도 지역의 모수(전체인구)와 분석할 표집자료에 분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SPSS에 의하여 Cronbach's Alpha 값으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또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변수 또는 하위변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명목-등간 형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Levene 검증을 통한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후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등간(서열)형 자료수준은 Levene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고, 명목형 자료에 대하여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에 다양한 구조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에 의하여 여러 차례의 모형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서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주4.3의 개요'와 '4.3진상규명과 민주화'의 관련성을 정리 하였다. 그리고 '4.3평화교육'에는 '평화'의 개념을 기초로 '평화교육'의 의미를 정리하고, '4.3평화교육'의 발현과 교육 내용의 변화로서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과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그리고 '4.3평화교육'의 향후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기본 변수인 '4.3평화교육'에 대한 9가지 주제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또 하나의 변수 측인 '제주지역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사 및 분석방법을 설계하였다. 주로 제2장의 2차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수준을 설계하고,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설문지 개발 사항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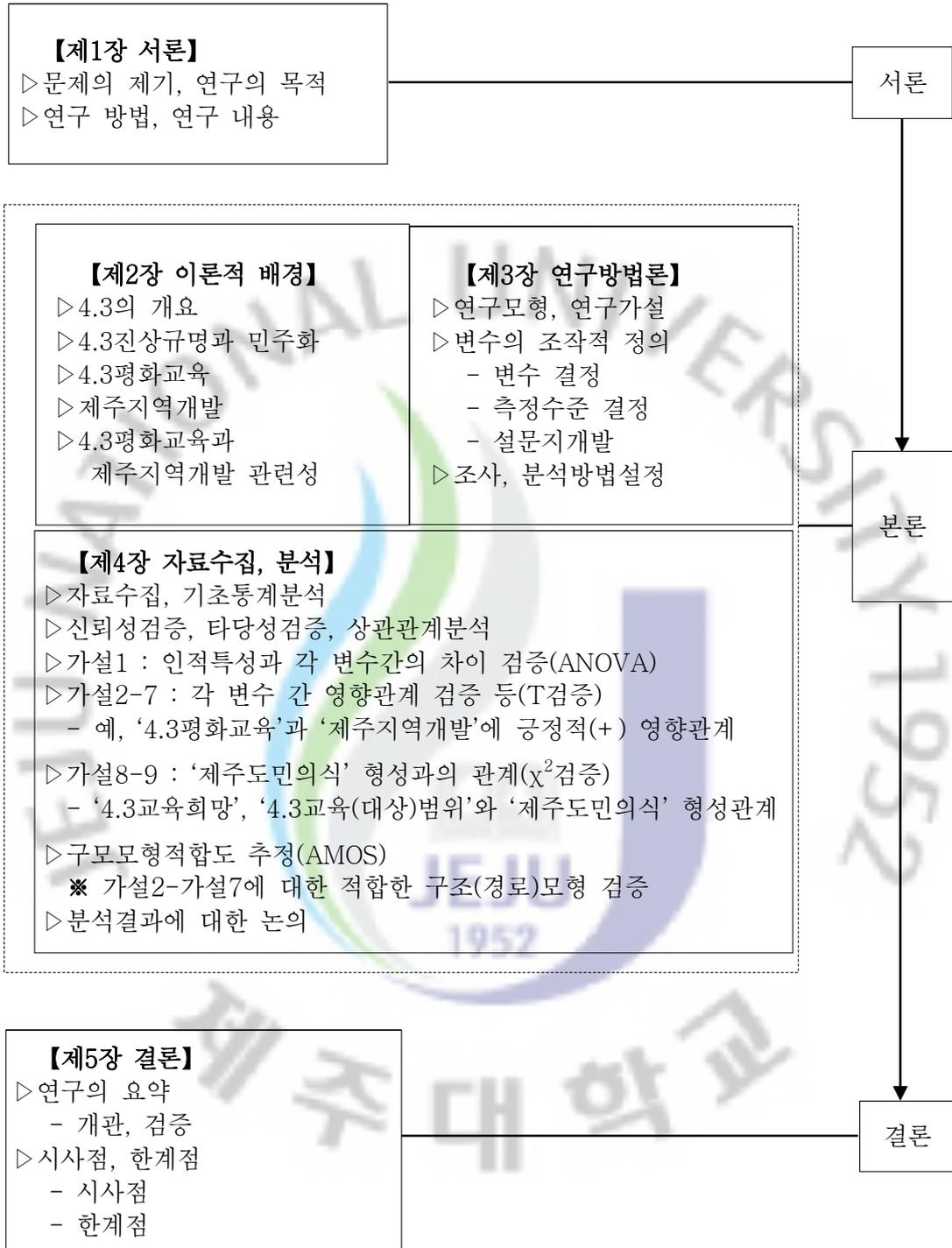
제4장에서는 1차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자료수집 및 분석방

법을 개관하고, 수집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4.3평화교육’의 소재와 ‘제주지역개발’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내재하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4.3의 개요

미 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그치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제주 4.3위원회, 2003 : 534).

여기서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1월 18일 변정일 의원 외 112인으로 발의된 법안과 1999년 12월 2일에 추미애 의원 외 102인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두 개의 법안이 입법취지를 같이하고 있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통일안으로 제출되어 1999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박찬식, 2008 : 501-503).

‘제주4.3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나타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법에 근거하여 조사하여 2003년도 발표된 ‘제주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이 ‘제주4.3사건’의 시발점은 1948년 4월 3일이 무장봉기가 아니라 그 이전인 1947년 3월 1일로 기준하고 있다. 이는 ‘제주4.3사건’의 무장 봉기는 이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즉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군정과 군정경찰이 우익강화책

에 따라 제주도민에 혹독한 탄압이 누적되면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제주도민들이 군정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손상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가치판단이 ‘제주4.3사건’을 발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후 제주도인민위원회의 성격

그랜트 미드(E. Grant Meade, 1951 : 185 ; 안종철, 1993 : 241-242 재인용)에 의하면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이 섬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당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정부행세를 한 유일한 조직체였다. 또한 존 메릴(John Merrill, 1980: 151-152)도 제주도인민위원회는 미군 점령 첫 해에는 이 섬에 상주하던 미군정 중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한다.¹⁴⁾ 미군정청 여론국에서도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수적으로 대단히 강했으며 온건한 정책을 추구하고, 이들이 추진한 정책들은 무척 매력적 이어서 오히려 우파에서는 인민위원회 세력이 더욱 강대해질 것을 두려워했다(Raw Report, 1946. 12. 9 ; 브루스 커밍스, 1986 : 432 재인용) 고 할 정도로 제주섬의 질서를 잘 유지해 주었던 집단이었다.

과연 어느 정도 질서가 있었으며, 당시 주민들은 그 조직을 얼마나 수용했을까? 그 일례를 보자면, 1947년 3월 14일자 신문에 조그마한 면지역인 대정면민들이 인민위원회에 기탁한 성금만도 3만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대정인민위원회에서 그 지역 모금운동을 주도하고, 인민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그 지역에서 질서를 잘 관장하던 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모금운동에는 우파계열 유지들도 참여했으며, 강인수 감찰청장과 일부 응원경찰도 성금을 기탁했을 정도로(제주신보, 1947년 6월 22일). 인민위원회는 군정과도 마찰이 없었으며, 우익들도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다만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미군정이 우익강화책을 펴면서 한민당 출신을 군정통치

14) 존 메릴(John Merrill)의 *The Chejudo Rebellion*은 1975년 하버드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1988년도 온누리에서 발간한 노민영 엮음의 “잠들지 않는 남도” pp.17-75에 수록되어 있다.

의 파트너로 삼으면서 인민위원회를 친소지향적인 기회주의적인 정치단체로 왜곡하고 (강성현, 2002 : 25)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2. 1947년 3월 1일 기점설

1947년 3월 1일은 제주현대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흐름의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군정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빚어진 이 날의 사건은 주요한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용이 없었던 제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 1947년 3월 10일 제주도청의 파업을 시발로 제주도는 ‘조선에서 처음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조선통신사, 1947 : 318 ; 양정심, 1988 : 80 재인용)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군정당국은 이에 맞서 응원경찰과 서청 등 우파 청년단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 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제주도 좌파세력이 전면 대립국면으로 돌입했다. 결국 3·1절 발포사건은 ‘4·3으로 가는 도화선’, 곧 기점(起點)이 되고 말았다(제주4.3위원회, 2003 : 102). 만일 이 시점에서 대안 탐색과 협상력을 발휘하고, 미군정이 보다 유화정책을 폈으면 대량학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⁵⁾

3. ‘제주4.3사건’ 무장 봉기의 발발 원인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¹⁶⁾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

15) 만일 미군정이 유화정책을 펴고, 해상경계와 질서만 잡고 있으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제주섬의 주민들은 남한의 단독 정부의 속으로 자동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응원경찰과 서청은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폭력과 모리행위를 다반사로 저질렀고, 이는 도민들로부터의 반감을 일으켰다고 본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흡수될 수 있는 지역을 미군정이 싸움걸기를 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국가건설을 위해 싸움을 건 후 폭력으로 수습한 수순은 20세기 국가건설에 있어 폭력적 방식에 의한 해계모니를 쟁취하는 모습과 같다.(연구자의 생각)

16) ‘오름’은 작은 산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이다. 즉 한라산의 측면에 솟아있는 화산(側火山)으로 360 여개의 산(오름)이 있으며, 제주사람들은 ‘오름’을 ‘악’ 또는 ‘봉’이라고도 부른다.

다. 이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된 유혈사태의 시발이 되었다.¹⁷⁾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통일독립, 반미구국투쟁을 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이같은 무장대의 슬로건은 1963년 일본에서 간행된 김봉현·김민주 공저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¹⁸⁾에 소개되어 있다.

이 같은 슬로건은 경찰과 서청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는 데서 몇 걸음 더 나아가 단선·단정 반대와 반미투쟁이라는 정치적인 색채를 띤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지향점은 당시 5·10선거를 통해 38선 이남 지역 내에서 반공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미군정과 국내 단선 지지파들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4.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설

4·3무장봉기의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¹⁹⁾ 미군 정보보고서는 3·10 총파업에 대해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정은 남로당의 대중선동을 상쇄할 치유책으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데, 오로지 좌익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경무부장 조병옥은 경찰의 발포로 빚어지고 있는 3·1절 기념일 사태에 대해 경찰총수로서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표현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3·1사건을 하나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주신보, 1947년 3월 16일). 그러면서 그는 다른 지방의 응원경찰을 대거 투입, 물리적 억압으로 제주의 치안을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청 안의 사무실에 도청 직원들을 불러 놓고 파업 중지를 촉구한

17) '제주4·3사건'에서 무장봉기의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봉,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18) 공저자 김봉현은 오현중 역사교사 출신으로 1947년 제주 민전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다가 '4·3'발발 직전에 일본으로 떠났으며, 김민주는 1948년 조천중학원 학생으로서 입산해 무장대에 가담했던 경력이 있다.

19) 이에 대한 자료는 정민혜, (1985). 남로당의 적화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석사논문, p. 49. ; 제주4·3위원회, (2003).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p. 536. ; 서중석(2006). 조봉암과 1950년대(하), 한국학연구총서 (16). 역사비평사. p. 733. 747. ; 제주일보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2권, 402-404. 409-413.

뒤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면서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썩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놀라운 내용의 연설을 했다(제주4.3위원회, 2003 : 121-122). 또한 그는 1947년 3월 15일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시국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설을 하였다.

경무부 최경진 차장도 1947년 3월 12일 기자들에게 제주도 총파업 소식을 전한 뒤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를 가지고 있다”면서(한성일보, 1947년 3월 13일) 응원경찰 파견 계획을 밝혔다. 경무부는 경찰의 고문 등 횡포에 대한 반성이 없이 이러한 억압적 선입견을 펴므로써 제주도 주민들의 민심 동요를 남로당 중앙당이 조정하는 것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는 무장투쟁의 승산 여부를 고려하여 군경 및 서청의 횡포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며 비폭력적 항의로 나아가야 했을 텐데²⁰⁾, 비무장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한 것은 단정, 단선을 위해 투쟁하고 통일적 정부를 갈망하는 대다수 민중의 의도에 비추어 본다면 비난이 되고 있다.

5.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의 투입과 도민과의 갈등

‘4·3’ 발발 이전에 제주에 상주한 서청 단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좌파 쪽의 자료는 제주읍 300명을 포함해 모두 760명이 상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봉현·김민주, 1963 : 53). 서청 단원의 제주 파견은 ‘4·3’ 발발 이후 더

20)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하고, 갈나·죽창사제수류탄과 폭발물·곡괭이삽 등 밖에 없는 무장대의 빈약한 무장력과, 도민들의 생명을 존중하였다면 비폭력적 항쟁으로 대안과 협상력을 높여야 했다. 여기서 지정학적 특성은 제주는 망망대해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으로 퇴로가 없으며, 땅 속은 돌바닥으로서 손쉽게 땅굴도 팔 수 없으며, 한라산으로 올라갈수록 울창한 숲이 아니라 민둥산이고, 겨울철 눈이 쌓여서 장기간 숨어서 생활하는 등 장기적인 투쟁으로 돌입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는 대다수 주민들의 장렬한 전사 외에는 더 바랄 길이 없는 데, ‘제주4.3사건’ 당시에는 주야를 번갈아 가면서 무장대와 토벌대가 각 각 자신의 유리한 조건하에서 일방적 공격은 있었으나, 장렬한 전투도 없었고 장렬한 죽음도 없었다.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이든 불문하고 무자비한 대량학살과 비열한 살인마적 추행만 있었을 뿐 장엄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인간(또는 국가)의 탐욕은 바로 같은 민족끼리 잔혹한 학살 등 비참함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제주지역을 비무장 생명존중의 지역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최상임을 경험적으로 증명시켜 준 셈이다. 이러한 방안만이 간단히 강 목사의 방법처럼 평화다운 평화가 흐를 수 있고, 선부른 무장과 단기적인 투쟁보다 참 평화의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어, 모범적으로 평화와 균형을 찾아 가는 ‘평화의 섬’ 지역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욱 늘어났다. 당시 서청 단장을 지냈던 문봉제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요청으로 4·3사건이 나자마자 서청 단원 500명을 경찰전투대 요원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연구소, 1989년 4월호 : 127). 이경남의 말에 의하면 서청 단원들에게 ‘제주도는 악몽의 섬’이었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서청은 악몽의 그림자’였다고 표현한 글이 있다(경향신문, 1987년 1월 28일).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이보다 더 험악했다(제주4.3위원회, 2003 : 144). 사실상 그들의 과도한 행동은 민중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는 북한 공산당 집단에 쫓겨 급히 도망쳐 나온 빈털터리가 많았다. 이들에게는 급여도 없어서 처음에는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판매하다가 우익의 강화책에 힘입어 나중에는 밭보이는 주민들을 향하여 빨갱이로 몰아세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갈취하기도 한다.²¹⁾

미군정은 군정 초기에 치안 확보문제를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갔다. 따라서 군정경찰은 해방 이후 최대의 물리적 강제력을 갖는 기구로서, 전투경찰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무장에서도 경비대에 비해 앞섰으며, 경찰인력 또한 계속 증원되었다.

일제시대 101명이던 제주도 경찰력은 제주도제 실시 이후인 1947년 2월에는 33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97, February 27, 1947). 그 해 3·1절 시위에 대비해서 다시 본토에서 응원경찰 100명을 불러 들였다가 발포사건이 유발되었다. 이에 제주출신 일부 경찰관들이 발포사건의 항의로 사임하자 대대적인 개편 증원작업을 진행하였다. 1947년 4월에는 500여 명으로 늘리면서, 육지출신 경찰관 245명을 제주경찰로 흡수하였다(제주신보, 1947년 4월 28일).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난 직후에는 응원경찰까지 합쳐 한때 경찰력이 2,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²²⁾ 이들은 제주 실정을 모른 채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응원경찰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미군정의 제주경찰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일제 경찰 경력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타도 출신 경찰관의 비

21) 미군 정보보고서는 서청이 “반민주적”이라고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해 정력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빨갱이 사냥’에 매달렸다고 지적할 정도였다(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90, June 3, 1947) ; 또한 서청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선우기성이 그의 저서에서 ‘서청! 하면 울던 아기도 울음을 그친다.’는 유행어가 나돌았다고 회고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그 위세가 등등했다(선우기성, 1973 : 713).

22) 1948년 7월경 경찰 병력은 약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 제주경찰 500명이고, 응원경찰은 1,500명 이었다(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30일).

중이 높았는데 특히 철도경찰과 이복출신이 많았다. 셋째는 응원경찰의 지원을 자주 받았는데 1948년 7월의 경우 제주에서 활동한 경찰력의 75%가 응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었다(양봉철, 2002 : 5-6).

6. 4월말 평화협정의 성격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봉기가 일어난 후 장기적인 대립양상이 보이자 도내 일부에서는 사건의 수습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48년 4월 17일 오현중학교에서 시국 좌담회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시국수습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당시 유해진도지사)을 중심으로 하여 32명으로 구성하고 협상대표를 선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김익렬 연대장은 5번째의 협상대표자였다.²³⁾

4. 28 평화협정은²⁴⁾ 하지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자 24군단장)이 개입하였으며, 경비대를 동원해 서둘러 사태를 진압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평화협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즉 하지 장군은 딴 군정장관이 제안한 ‘평화협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는 무장대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고, 무력진압을 벌이기에 앞서 항복을 받아내자는 ‘귀순공작’이었다. 김익렬 연대장도 그의 회고록에서 ‘평화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귀순공작’이었다. 그런데 하지 장군의 강조점은 단순히 ‘사태 진압’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기 종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제주 4.3위원회, 2003 : 195), 이는 무력에 의한 강력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된다.

7. 무장대의 규모와 무장정도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이다. 즉 남로당 제주도당은 당 조직을 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 군사부를 신설했다. 군사부 밑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군

23) 1번-3번째의 협상대표자는 급병과 출장 등으로 협상에 불참하고, 4번째 대표자는 협상장에 갔었으나, 상대 대표가 나오지 않아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5번째의 협상대표로 김익렬 연대장이 협상을 하게 된다(김용철, 2009 : 10-13).

24) 평화협정일은 1948년 4월 28일과 1948년 4월 30일의 엇갈리는 2개의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4.3진상보고서’에 따라 1948년 4월 28일로 인용하였다. 참조할 자료(김용철, 2009 : 24-32).

사위원장은 군책과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했다. 무장투쟁의 실권이 주어진 이 자리는 김달삼이 맡았다. 무장대 조직으로는 유격대(툽부대)와 자위대, 도군사위원회 직속의 특경대 등 3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3월 28일 점검 결과 제주도내 13개 읍면 중 제주·조천·애월·한림·대정·중문·남원·표선 등 8개 읍면에서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모두 320명이 편성됐다(문창송, 1995 : 11. 16-17). 무장대는 소대 10명, 중대 20명, 대대 40명 등의 소단위 인원으로 부대 체계를 갖췄다.

확보된 무기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문창송, 1995 : 19). 일부 자료에는 일본군의 무기들을 확보, 대단한 무장을 했고 심지어 기관총, 대포로 중무장했다고 표현한 글들이 있으나 실제 확보된 총은 30정에 불과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수류탄과 휘발유탄을 구입 못해서 이것이 4·3 투쟁에 실패의 결정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문창송, 1995 : 30).

또한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서도 무장 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1948년 4월 3일에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존 메릴(John Merrill, 1980 : 166-167)은 그의 논문에서 주력 500명 가운데 반수는 총으로 무장했고, 나머지는 칼·낫·죽창·사제수류탄과 폭발물·곡괭이·삽 등으로 무장했다고 말한다(John Merrill, 1980 : 166-167).

8.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주4.3위원회’에서 밝힌 ‘제주4.3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4.3위원회, 2003 : 536-537).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4·3사건의 희생자(사망·실종자)와 이재민 숫자에 대해서 신문·국무회의록·미대사관문

서 등 각종 국내외 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의 【표 2-1】 기록별 인명피해 현황과 같다.

【표 2-1】 기록별 인명피해 현황

숫자 희생자	자 이재민	언급 시기	언급 주체	전 거	비 고
20,000		49.3	연합신문	「연합신문」 49.3.4	
	64,378	49.3	도민대표 6명	「동아일보」 49.3.12	
15,000		49.3	주한미육군 사령부	「주한미육군사령부보고」 49.4.1	
17,000		49.4.2	LA한인들	LA한인들이 트루먼대통령에게 보낸 제안서, 49.4.2	
15,000		49.4.10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49.4.10	
15,000		49.5	미군사고문단	「미대사관문서」 49.5.18	
	7만여	49.5.17	장기영	「국무회의록」 49.5.17	
40,000		49.6	김영진 특과원	「경향신문」 49.6.28	
30,000		49.6	제주도 당국	「조선중앙일보」 49.6.28	인구 282,942(46년) 250,400(49년)
29,702	97,703	49.9	서울신문	「서울신문」 49.9.1	내무차관 일행 과 동행 취재
30,000	8만	49.9	서재권	「신천지」 49.9월호	
30,000		50.2.10	김중희 도지사	「국무총리실서류」 50.2.10	
27,719	78,534	50.4	김용하 도지사	「미대사관문서」 50.5.23	
60,000		52.9.27	라이언 신부	「라이언의 서한」 52.9.27	
27,719		53.	제주도청	「제주도세일람」	
65,000		60.5.30	고담룡 국회의원	「제주신보」 60.5.31	
50,000 ~ 60,000		60.7	고창무	「조선일보」 60.7.17	
40,000 ~ 50,000		61.1.26	김성숙 국회의원	「조선일보」 61.1.26	

※ 제주4.3진상보고서 p. 364참조

제4대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1993. 3. 20)되어 ‘4·3피해신고실’을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개설하여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 시기에 접수된 인원은 총 12,243명이다. 이들을 지역별·성별·연령별·가해자별로 보면 다음 【표 2-2】 피해신고 접수현황과 같다.

【표 2-2】 피해신고 접수현황(4.3특별위원회)

(단위 : 명)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 외			
합 계	3,384	1,197	4,523	3,133	6			
비율(%)	27.6	9.8	36.9	25.6	0.05			
성별	남		여		기 타		비 고	
합 계	9,637		2,574		32			
비율(%)	78.7		21.0		0.26			
연령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기타 (불명)
합 계	676	2,119	4,257	1,851	1,159	817	706	658
비율(%)	5.5	17.3	34.7	15.1	9.5	6.7	5.8	5.4
가해자별	토벌대		무장대		기 타 (아사, 병사, 자살등)		분류 불능	
합 계	10,277		1,353		209		404	
비율(%)	83.9		11.1		1.7		3.3	

※ 제주4.3진상보고서 p. 368-369 참조

‘제주4·3위원회’는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국내외 지역에 제주4·3사건 희생자²⁵⁾ 신고처를 설치하고 접수한 결과, 현재 최종 국내외지역 신고자는 14,02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지역별·성별·연령별·가해자별로 보면 다음 【표 2-3】 희생자현황과 같다. 이 위원회에 신고 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3%(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 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 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 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25)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주4·3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자를 말한다(제주4·3위원회, 2003 : 369).

【표 2-3】 희생자 현황(제주4.3위원회)

(단위 : 명)

접수지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도			
합 계	4,606	1,322	4,714	3,299	87			
비율(%)	32.8	9.4	33.6	23.5	0.6			
성별	남		여		기 타		비 고	
합 계	11,043		2,985					
비율(%)	78.7		21.3					
연령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기타 (불명)
합 계	814	3,026	4,956	2,108	1,365	899	860	
비율(%)	5.8	21.6	35.3	15	9.8	6.4	6.1	
가해자별	토벌대		무장대		기 타 (아사, 병사, 자살등)		분류 불능	
합 계	10,955		1,764		43		1,266	
비율(%)	78.1		12.6		0.3		9.0	

※ 제주4.3진상보고서 p. 370-371 참조

9. ‘제주4.3사건’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1948년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효하였기에 애당초 법적 근거가 없는 계엄령이었고,²⁶⁾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의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계엄령 시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²⁷⁾

그러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일제시대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 해도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이 지적되고 있다.²⁸⁾

26) 여순지구 계엄령은 1948년 10월 25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 의해 선포하였는데 국회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1월 2일 국회에서 김병희 의원의 추궁에 대한 이인법무장관의 답변은 “이 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마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계엄법이라는 것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함으로서 법무장관 스스로 계엄법의 부재를 인정했다(국회속기록, 1948년 11월 2일). 이어서 선포한 제주지역 계엄령도 계엄법 제정(제정일 : 1949년 11월 24일) 이전의 위헌적인 선포였음을 알 수 있다.

27) 로버츠 고문단장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한국군 지휘관들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자 1948년 12월 1일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계엄령에 관한 문서를 보내 계엄령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martial law)에 관한 문서를 동봉한다. 이 문서가 귀하의 모든 지휘관들에 발표되어서 그들이 계엄령이 무엇인지, 언제 발표될 수 있는지, 누가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향이 무엇인지 숙지하도록 할 수 있다. “Martial Law, December 1,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즉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계엄령은 주민 희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희생이 비교적 젊은 남자로 한정된 반면,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1월 중순경부터 벌어진 강경진압작전 때에는 서너살 난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총살을 당했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재판절차도 없이 수많은 인명이 즉결 처형된 근거로 인식돼 왔다(제주4.3위원회, 2003 : 144).

이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도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조차도 ‘계엄령’이란 용어만은 빠뜨리지 않고 증언했다. 남편이, 혹은 아들과 손자가 군경토벌대에 무고하게 희생당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말미에는 꼭 “그 때는 계엄령 시절이라서…” 또는 “계엄령 때문에…”라며 ‘시국 탓’을 했다. 이들에게 계엄령이란 개념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가족이 죽은 ‘이유’였다. 심지어 촌로들은 계엄령을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무소불위의 제도’로 생각하고 있었다(제주4.3위원회, 2003 : 144).

그러나 과연 계엄령은 언제 선포된 것이며, 계엄령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강경한 진압작전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계엄령은 합법적인 것인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 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당시 군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하여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계엄령 정도로 인식하였다.²⁹⁾

10.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의 불법성 여부

군법제도는 군기의 확립을 통한 군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함에 있고, 그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나 불편부당성과 같은 정의의 구현이 군기

28) ①당시 계엄령은 법적 근거도 없는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인 송요찬조차도 계엄령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중략) 계엄령이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송요찬도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중략) 그런데 중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인다는 것은 계엄령이라고 해도 안되지요. 일제 때 만주에선 그런 게 있던 했습니다. 특정지역을 설정해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지요(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 290 ; 당시 김호겸 서귀포경찰서장 증언). ②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는 대통령령 제31호로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은 선포되어 있으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서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었다. 미군은 이런 사실이 마음에 걸려 ‘제주4.3사건’이 끝나갈 무렵에야 계엄령은 선포된 바 없고 비상사태가 계엄령으로 와전되었다고 정정보고 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 273-274).

29)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제주4.3위원회, 2003 : 538).

의 확립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여 군기유지와 사법적 정의구현은 군사재판 제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Kent S. Bernard. 1971. ; John S. Cooke, 2000 ; 고석, 2006 : 56 재인용). 그러나 ‘4.3군법회의’는 다음에서 보듯이 군기유지도, 사법적 정의구현도 아닐 수가 있으며, 이는 오로지 불법적인 인권유린일 수가 있다.

‘제주4.3’으로 인해 증가된 인원을 재판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온 판검사 일행 12명은 1948년 5월 31일부터 1948년 6월 11일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 37명에 관련된 42건을 판결하였다. 이들이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 ①포고령 제2호 위반 32건(최고 징역 3년, 최하 6월) ②살인 2건(무기징역, 징역 10년), ③살인미수 2건(무기징역), ④살인방조 1건(징역 3년), ⑤방화 1건(무기징역), ⑥살인예비 1건(집행유예 2년), ⑦방화예비 1건(집행유예 2년), ⑧왕래방해 2건(징역 2년)으로 종합적으로 징역 1년 이상 42건에 사건 피고자 수 37명이다(대동신문, 1948년 6월 17일). 이때 재판 때문에 제주에 온 한 변호사는 “폭도 측의 소요책임자는 하나도 구속되지 않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된 자는 19세 내지 25세 정도의 청년들이다.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자들이다”라고 하였다(서울신문, 1948년 6월 12일).

이에 비해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는 871명을 일률적으로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판결 현황을 보면 총 871명 가운데 ①사형 39명(4.4%), ②무기징역 67명(7.7%), ③징역 20년 97명(11.1%), ④징역 15년 262명(30.0%), ⑤징역 5년 222명(25.5%), ⑥징역 3년 4명(0.5%), ⑦징역 1년 180명(20.7%) 등이다. 이 군법회의에 회부된 민간인들 대다수는 ‘명석말이식 수색작전’에 따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경비대에 체포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었다(NARA RG 338. Box 1.). 이외에도 과거 1947년 3·1사건 관련 시위·파업 가담경력 있는 공무원·법조인·언론인·교육자와 서북청년회의 반감을 샀던 인사, 적산 관리를 맡고 있던 재산관리처 직원, 제주신보사 공무원에 근무하던 언론인, 제주지방법원 서기장과 법원 직원 등도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제주4.3위원회, 2003 : 450).

그 다음 해, ‘1949년 6월 군법회의’에서는 일률적으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급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다. 판결현황을 보면 총 1,659명 가운데 ①사형 345명(20.8%), ②무기징역 238명(14.3%), ③징역 15년 308명(18.6%), ④징역 7년 706명(42.6%), ⑤징역 5년 13명, ⑥징역 3년 25명, ⑦징역 1년 22명, ⑧미확인 2명 등이다. 이 당시 한라산에는 무장대뿐만 아니라 2만여 명에 달

하는 중산 간 지역 거주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이들은 선무 공작에 따라 산에서 내려온 중산 간 주민들이었다. 경찰은 수용소에 감금된 민간인들에 대해 갖은 고문을 실시하여 무장대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자백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여 군에 넘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형무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걸 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을 지적하고 있다(제주4.3위원회, 2003 : 456-457).

‘4·3사건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4.3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군법회의 재판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기소장, 증인진술서, 예심조사보고서, 공판조서, 재판조서(판결문) 등 소송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무소 재소자들의 ‘수용자신분장(재소자카드)’에 판결문이 없어 판결문 등본을 보관하지 않았음이라든지(제주4.3위원회, 2003 : 464). 1948-1949년 목포교도소 출소좌익수명단의 ‘범죄개요’란에 일반수형자와는 달리 구체적 범죄기록을 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한다든지(제주4.3위원회, 2003 : 465).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 총 2,530명이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384명, 305명으로 단일사건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정부 등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신문에도 전혀 보도된 바가 없었다는 점은 재판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 재판으로 일관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제주4.3위원회, 2003 : 466). 생존자들의 증언도 재판이 없었거나 나중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하는 등 형식적 재판임을 증언하고 있다(서귀포시 하효동 고만형외 16명 증언 ; 제주4.3위원회, 2003 : 462-463 재인용). ‘1948년 군법회의’ 당시 제9연대 부연대장(서00)과 군수참모(김00), 그리고 ‘1949년 군법회의’ 당시 제2연대 1대대장(전00)을 지냈던 사람도 모두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제주4.3위원회, 2003 : 462-463참조). 당시 직접 취조한 경찰 1명과 형무소로 호송을 담당할 경찰 2명도 재판 없이 한꺼번에 형무소로 보내고, 형무소에서 군법회의 대상자들을 정렬시킨 후 형무소장 또는 군인이 죄명과 형량을 통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했다(제주4.3위원회, 2003 : 462-463). 이와 같이 재판의 흔적인 기록도 없고, 관련자들의 증언들은 하나 같이 군법회의 부재나 재판의 주요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³⁰⁾

30) 과거 4.3을 거치면서 제주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군법회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부분을 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11. 집단학살과 인권유린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제주4.3위원회, 2003 : 539).

그러나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벌어진 제주도에 대한 강경진압작전 때 대부분의 중산 간 마을이 불에 타 사라지는 등 제주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특히 11월 중순 이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되는데 반해 강경진압작전 때에는 토벌대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총살함으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 대부분이 이 때 희생이 되었다.³¹⁾

제주도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은 제주도민의 생명은 하찮은 존재였다. 그의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라고 지시함으로써(국무회의록, 1949. 1. 21), 아이러니 하게 법의 존엄을 중시해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인들을 재판도 없이 무참하게 살상하기에 이른다(제주4.3위원회, 2003 : 539). 이러한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중대한 인권유린은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 온 요인이 될 수 있다.

12. 미군의 개입문제

31)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통계를 보면, 15세 이하 전체 어린이 희생자 중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의 희생자가 76.5%를 차지한다. 또한 61세 이상 희생자 중에서는 이 기간에 76.6%가 희생이 되었다(제주4.3위원회, 2003: 293)

제주4.3위원회는 초토화의 책임은 당시 정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이며, 미군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제주4.3진상보고서, 2003 : 241).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깊숙이 관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제주4.3진상보고서, 2003 : 251-252). 그 이유는 ‘제주4.3사건’의 발발은 미군정의 우익강화 정책과 남한 단독 정부수립책에 따라 이전까지 함께 잘 내왔던 인민위원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였고,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제주도민들을 탄압하는데 힘을 실어줌으로써 ‘제주4.3사건’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었다.³²⁾

또한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미군정은 제주도에 5·10선거가 무산되자 1948년 5월 20일경³³⁾ 미 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다.

브라운 대령은 ‘4·28평화협상’ 직전 제주를 방문해 예하 부대인 제주도 주둔 제59군정중대의 맨스필드 중령과 토벌작전을 점검한 바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1948년 6월 23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앞뒤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라는 딘 군정장관의 특명을 받고 온다.³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었다.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948년 9월 29일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32) 특히 서북청년회는 4·3사건 발발 전부터 도민들과 갈등을 빚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까지 지목 받아 왔는데, 이승만과 미군은 강경작전을 앞두고 서북청년회를 아예 군경에 편입시켰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량 주민희생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 서북청년회 위주로 경찰이 재편됐고, 군대에는 ‘서청중대’가 따로 편성됐다. 서청의 제주 입도는 1947년 3·1사건 직후로 전북출신 유해진 지사가 부임하면서 호위병 형식으로 서청단원을 활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①’ : 434-437” 4·3 발발 직전까지 들어온 서청은 대략 5백-7백명 선으로 추산된다. 이때까지는 일정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강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서청에 의한 백색테러도 종종 발생, 민심을 자극시켰다. 이는 4·3 발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제주4.3위원회, 1993 : 266).

33) 브라운 대령이 언제 제주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상관인 6사단장이 브라운을 떠나보내며 쓴 1948년 5월 19일자 편지(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와 “나는 약 10일 전에 부임하였다”는 발언이 보도된 『현대일보』 1948년 6월 3일자 기사, 그리고 브라운이 첫 활동보고서 기간이 5월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점(Hq. USAMGIK, Major General William Dean to Major Edgar Noel, July 17, 1948) 등을 통해 볼 때, 브라운은 1948년 5월 20일경에 제주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

34)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서신을 보내 “한국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 고문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작전통제권의 주체와 그 영향력에 대해 분명히 했다.³⁵⁾

또한 로버츠 고문단장은 제주도작전에 관한 모든 상황을 제주도에 파견한 고문관 버제스 대위를 통해 보고 받아 이를 다시 매주 정기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 했으며, 이범석 총리나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군 작전에 관해 일일이 관여했다(제주4.3 진상보고서, 2003 : 252).

특히 로버츠 고문단장은 CIA, 송요찬 9연대장, 서북청년회를 주목했고 이들을 강경 진압작전의 핵심으로 활용했다. 로버츠 고문단장은 1948년 11월 8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CIA는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Weekly Activities of PMAG, 1948. 11. 8). 로버츠 고문단장은 1948년 11월 15일자 보고서에서도 “CIA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면서 “한국군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Weekly Activities of PMAG, 1948. 11. 15).

이외에도 미군정의 로버츠 고문단장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한국군 지휘관들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자, 1948년 12월 1일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계엄령에 관한 문서를 보내 계엄령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Martial Law, 1948. 12. 1).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동족상잔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력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에 반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도를 시찰하고 온 중앙 인사들의 발언은 토벌당국을 더욱 난처하게 했다.³⁶⁾

또한 미군은 진압작전을 벌일 때마다 괴선박 출현설을 퍼트렸는데,³⁷⁾ 나중에 무장

35) “Letter from Roberts to Lee Bum Suk,” September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36) ①박근영(朴根榮) 검찰관은 “원인은 경찰관의 제주도민에 대한 그릇된 행동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 ; ②이인(李仁) 검찰총장은 “악질관리 행동이 큰 원인”(대동신문, 1948년 6월 16일)이라 하면서, “100명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자를 보내어 민심수습을 하는 것이 낫다”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 라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37) 괴선박 출현설의 한 예를 보면 제주도에 대한 무력진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을 때, ‘인민공화국 깃발이 매달린 괴잠수함’이 출현했다는 미군의 정보출처 보도로 중앙언론에 충격을 가하여 무력진압 반대여론을 무마시킨다. 가령 “1948년 10월 8일 오후 5시 10분, 미군 커리어 비행기 조종사는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48분 지점에서 잠수함 1대를 발견했다. 붉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을 단 그 잠수함

대가 거의 괴멸될 즈음에 가서 괴선박 출현설 소문은 증거가 없다고 정정 보도를 한다.³⁸⁾ 이러한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린 것은 당시에는 강경진압작전의 중요한 빌미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강경작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작의 의혹이 있다. 1948년 10월 8일 괴선박 출현설이 나온 직후인 1948년 10월 11일에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된 것도 이런 의혹을 더해준다.

13. 후유증 - 연좌제와 레드콤플렉스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³⁹⁾ 연좌제의 적용 대상은 4·3사건을 비롯한 민간 인학살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 월북자나 부역자 가족, 국가보안법 등 간첩 혐의 연루자의 가족 등이다. 이들은 아무 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가족이 군경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철폐하였으나, 일제시대에 들어서 ‘요시찰명부’를 통하여 감시를 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남북의 체제 대립상황 속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특이자’를 걸러내는 사회적 관행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 등에 취직할 경우, 사관학교 등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경우, 교사자격증을 신청할 경우 등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가족의 신원특이 여부를 확인하여 신원특이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었다.

이후 1980년 들어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2조 제3항)으로 이의 적용을 금지를 하였고, 제6공화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도 연좌제 적용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1980년 8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연좌제

은 10-12노트 속도로 동진하고 있었다. 정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배가 미국이나 영국 것은 아니다.”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85, October 8, 1948).

38) 일부에서는 게릴라들이 본토로부터 또는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국 해군정의 지속적인 순찰과 공중정찰 및 해안마을에 대한 경찰의 빈틈없는 방어진은 외부 지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39) 연좌제(連坐制)는 근대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단지 가족원이나 근친 중의 누군가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당사자와 함께 그 부모·처자형제 등 친족에게도 처벌하는 경우를 말함(김영법, 1990 : 324).

를 폐지할 것을 발표하고(조선일보, 1980년 8월 2일), 1981년 3월 24일 내무부는 연좌제 폐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연좌제의 적용은 사라지게 되었다(제주4.3위원회, 2003 : 496-498).

그러나 아직도 연좌제에 의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있어, ‘제주4.3사건’에 대한 언급 시 레드콤플렉스로 주춤하거나 좌익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좌제나 레드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념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습성을 길러야 하며, 각 공사단체에서 신원조회시 본인 이외의 잔여 가족에 대한 조회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제2절 '4.3진상규명'과 민주화의 관련성

'4.3진상규명'에 관한 연도별 활동상황은 【표 2-4】와 같다. 이 표의 내용은 김종민의 '4.3 이후 50년(1988)', 강창일의 '4.3진상규명운동과 한국민주주의(1998)', 양정심의 '제주4.3항쟁연구(2005)', 박찬식의 '4.3과 제주역사(2008)'를 참조하여 연도별 '4.3진상규명'에 긍정적(+)인 활동수와 이에 대응하는 통제적(-)인 활동수를 비교하여, 다수 제주도민의 의견으로써 진상규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민주화 방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표에서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60년 들어서 4.19 민주화 열기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11회의 긍정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억압을 받고, 오히려 유족들이 세운 위령비를 파괴하는 통제적(-)활동이 3회로 증가하게 된다. 계속되는 '군사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78년, 1980년 들어 오면서 논문과 문학작품에 의한 발표가 있었다.

1987년 말 대선에 들어오면서 3회의 긍정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하였다. 그 이듬해 1988년에는 민주화 흐름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하면서, 긍정적(+)인 활동횟수가 1988년도 15회, 1989년도 12회로 다양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긍정적(+)인 진상규명을 바라는 활동 수는 2회로 줄어들고, 통제적(-) 활동은 6회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4.3진상규명'을 바라는 꾸준한 활동으로 긍정적(+) 활동은 1991년도 4회, 1992년도 5회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긍정적(+)인 진상규명활동은 다시 활발하게 되어 1993년도 9회, 1994년도 8회로 늘어나게 되나 이에 대한 반발작용도 만만치 않아 통제적(-) 활동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로 1995년도에 긍정적(+)활동은 4회로 주춤했다가 1996년도에 들어서 총선의 열기를 타게 된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측면의 긍정적(+) 활동은 1996년도에는 12회, 1997년도에는 11회로 증가하나 이에 대한 억압적(-) 활동도 5회로 늘어나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왔다.

1998년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공약했던 ‘국민정부’가 탄생하면서 긍정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은 배가되어 22회로 증가하였다. 1999년도에 긍정적(+)인 활동이 12회로 줄어든 편이었으나 그 이듬해 2000년 제16대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에서는 ‘4.3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당의 ‘4.3특별법’을 제출함에 따라 제15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에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어서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입장이 되었다. ‘제주4.3특별법’은 그 이듬해인 2000. 1. 12 공포함으로써 정당하게 법적인 ‘4.3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4.3사건’에 대한 논의 주체들을 보면 활발한 ‘4.3진상규명’과 ‘발언’은 민주화와 정(+)의 관련성을 높게 갖고 있다.

‘제주4.3사건’ 당시에 미군정·경찰·육지출신관료·그리고 서청에 대한 인식은 불만의 정도를 넘어설 정도였으며, 이 때 제주도민들은 빨갱이 사냥의 표적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자 검색이라는 명목 하에 경찰과 서청으로부터 중요한 테러 대상이었다(양정심, 1988 : 82-87). 그들의 만행은 황산익의 표현을 빌면 민족사와 인류사에 대한 최대의 반역이며, 인간사와 생명에 대한 더할 바 없는 모독이고 만행으로서 해석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황산익, 1988 : 304-337), 이 당시에 항변은 빨갱이로 몰려서 죽음을 의미하기에, 피해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새로운 세상에서 그 동안의 피해를 말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온 도민들은 ‘4.3진상규명’을 향간의 화두로 달고 나닐 정도였다.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 함양 등에서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에서도 ‘4.3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제주대학생의 ‘진상규명동지회’가 결성되고, 제주신보에 진상규명 호소문 게재를 하면서 최초의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양정심, 2005 : 174). 이어서 모슬포 유가족들이 1949년 ‘특공대 참살사건’과 1950년 ‘예비검속 사건’ 등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제주출신 김두진 국회의원 ‘제주4.3’도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발의를 하면서 제주도를 국회조사지역에 포함하게 된다(박찬식, 2008 : 467-468). 또한 제주신보 신두방 등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고발이 있었으며(양정심, 2005 : 176), 국회조사단이 방문하자 도의회에서 한결같이 유족과 진상규명 동지회 등은 ‘4.3사건’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희생

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는 등 다양한 진상규명활동을 하면서도(양정심, 2005 : 175), 역으로는 공산주의를 경계하게 된다(박찬식, 2008 : 467-469).

1961년 5. 16으로 들어서자 바로 다음날인 1961년 5월 17일부터 ‘4.3진상규명’ 운동을 했던 제주대학생 이문교·박경구와 진상조사에 앞장섰던 제주신보사 신두방을 연행하기 시작하더니(박찬식, 2008 : 469), 여지없이 독재정권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바로 전년도에 건립된 ‘백조일손 위령비’는 1961년 6월 15일 경찰의 지휘아래 땅에 파묻혀지게 되었다(이도영, 2000 : 76-78). 이후로 20년 동안 ‘제주4.3사건’에 대한 일체의 논의는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긴세월 금기시됐던 ‘4.3’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는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발표였다. 이 소설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참혹상을 이야기하자 바로 판금조치를 받고 군과 경찰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였다(김종민, 1988 : 407).

그러다 ‘4.3진상규명’ 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80년대 민주화 요구(양정심, 2005 : 179)와 맞물린다. 1986년에 ‘녹두서평’에 이산하의 시 ‘한라산’이 발표되면서 ‘제주 4.3사건’은 제주도 이외의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도 미군정 자료와 증언채록 등을 참조로 ‘제주4.3’을 현대사 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양정심, 2005 : 179).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학생들 사이에는 미국학자 존 메릴(John Merrill, 1975)의 ‘제주도반란’(하버드대 석사논문),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등을 은밀히 복사해서 읽기 시작(김종민, 1988 : 407-408)함으로써 민주화의 싹을 틔우는 씨앗의 역할을 하였다.⁴⁰⁾

그 후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은 ‘제주4.3사건’을 세상 밖으로 내어 놓기 알맞은 환경이 되어, 마침내 1987년 말 실시한 대선 기간 중 김대중 후보는 ‘4.3진상규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양정심, 2005 : 182-183). 이에 비록 낙선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제주에서의 선거공약에서 ‘4.3진상규명’ 운동은 늘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여소야대의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자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1988년 3월 28일부터 1988년 4월 8일까지 ‘제주4.3사건’의 추모기간으로 정해 ‘4.3위령제 및 진상

40) 이처럼 ‘제주4.3사건’에 대한 관련 논문, 보고서, 신문 등을 읽는 것은 올바른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삶에서 중요하고 기초적인 가치가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해주고, 조직이나 공동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민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질서 또는 사회질서임을 깨닫게 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규명 축구대회'를 가졌고, 서울에서는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주최로 '4.3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김종민, 1988 : 408-409). 또 일본에서는 탐라연구회 주최 '추모강연회'가 열리고, '제주4.3사건'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김석범의 소설 한산도와 까마귀의 죽음이 번역되었다. 제주출신 강보성 의원이 '4.3진상규명축구'와 황명수의원이 '4.3의 역사적 재조명' 축구를 하게 되고, 오성찬의 '4.3증언채록집'인 '한라의 통곡소리'를 출판하는 등 '4.3진상규명'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김종민, 1988 : 409-410). 1988년도 '4.3연구'의 기초를 조성해준 자료는 역사비평사의 '제주4.3연구'로서 이는 김인덕(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양정심(4.3항쟁배경), 서중석(4.3의 역사적 의미), 김순태(4.3계엄의 불법성), 정해구(미군정 정책), 임대식(우익청년단), 김성례(4.3의 담론), 김재용(폭력과 권력), 황상익(의학사로 본 4.3), 김종민(4.3진상규명), 박명림(4.3과 한국현대사) 등의 분석자료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1989년에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 양조훈의 기획물인 '4.3의 증언' 신문연재를 시작으로, 현기영을 소장으로 하는 '제주4.3연구소'의 발족, 강보성 의원이 '제주도문제연구소' 설립으로 '4.3진상조사'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4.3사건' 당시에 제주경비대장을 했던 김익렬 장군의 유고집인 '4.3의 진실'이라는 실록을 연재함으로써 당시 미군정 개입의 단서를 제공하였다(김종민, 1988 : 410). 또한 1989년도 국정감사 시 강보성 의원과 최기선 의원이 '4.3진상규명축구'를 국회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이 되면서 '4.3진상규명'에 대한 통제적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안응모 내무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이미 법률적으로 끝난 사건이라 하면서 제주도 정사 편찬계획을 백지화하는 발표를 하였다(김종민, 1988 : 411). 제주신문은 연재를 하던 '4.3의 증언'을 중단하게 되었고, 같은 해 '4.3 42주년 추모식'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추모행사를 방해 받는가 하면, 추모행사를 강행한 사람에 대해 대량 구속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그 해에는 '제주민중항쟁'의 출판자 김명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단속을 하였다(김종민, 1988 : 41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제주신문 해직기자 중심으로 제민일보를 창간하여 '4.3은 말한다.' 라는 신문연재를 시작함으로써(김종민, 1988 : 411) 꺼져가는 '4.3활동'에 대한 이음새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제주4.3연구소'의 꾸준

한 증언채록과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의 신문연재는 4.3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피해상황 등 전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여(양정심, 2005 : 182), ‘학문연구’와 ‘4.3의 진상’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1992년은 제44주기 사월제 행사와 세미나가 제주도 차원을 벗어나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되는 등 ‘제주4.3희생자추모집회’가 전국화 된 해였다(양정심, 2005 : 182). 1992년 1월에는 인기리 방영되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4.3을 다뤄 공산 폭동이라는 시각을 탄압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봉기였다는 관점을 재조명해주었고 일반 국민에게 ‘4.3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김종민, 1988 : 412-413).

‘사월제공준위’는 1992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4.3영령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집체극, 추모제, 슬라이드상영, 유적지순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양정심, 2005 : 182), 4.3 당시 부녀자와 어린이가 무차별 학살된 다량쉬굴 유해가 발굴되어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1992년 말 대선 유세에서는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되어(김종민, 1988 : 413), 제주도의 민의를 반영할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4.3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민주화의 방향과 일치되어 1993년 3월 20일에 제주도의회에서 ‘4.3특위’를 출범하게 되었고(양정심, 2005 : 183), 이로서 공공기관에서 공론화의 길을 열게 되어 향후 ‘4.3진상규명’과 ‘제주4.3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제주도지’에서도 ‘제주4.3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재조명을 하였고, 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북촌리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주4.3사건’에서 412명의 희생자 중 409명이 토벌대에게 학살됨을 밝히어 세간에 충격을 주었으며(김종민, 1988 : 414), 이는 ‘순이삼촌’의 사실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⁴¹⁾ 1993년 ‘제주도4.3특위’는 제주지역 총학생협의회 및 도민 17,000여 명이 서명한 ‘국회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국

41) ① 순이삼촌은 제주도 조천읍 북촌리 학살사건을 배경으로, 한 여인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생을 그리고 있다. 즉 1948년 당시 무차별한 토벌작전으로 하루에도 수 백 명의 인명이 살상되고, 온 마을이 소개작전에 따라 초토화되는 시절을 겪으면서도 순이삼촌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집단학살에서 유독 그녀만이 시체더미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녀가 갖는 비극의 실마리인 것이다. 그 날 이후로 그녀는 환청 속에서 ‘옴팡진(옴뚱 파여진) 자기 밭’을 맴돌았고 기어이 폐죽음의 장소였던 그 곳에서 모로 누워 자살하고 만다.(이계영, 1992 : 21. 37-38)

② 지금은 북촌리에는 '너른송이 4.3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에는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 소설 초판본, 일어판, 영어판 소설이 있고, 북촌리 집단학살 진상조사에 앞장섰던 고흥순식 선생의 친필원고, 북촌리 자체 '4.3희생자 조사서' 등도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강요배 화백의 '제주4.3사건'의 그림과 박재동 화백의 4.3만화, 집단학살 현장에서 나온 탄피 사진과 현장사진 등 북촌리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전시물이 소개되고 있다. 기념관외에도 443명의 희생자 명단을 새긴 위령비와 순이삼촌 문학비, 방사탑, 산책로 등을 갖추어 있다.

회에 제출했다(양정심, 2005 : 183).

이어서 1994년은 제주도의회에서 ‘4.3기초조사의 해’로 지정하면서 ‘4.3피해신고실’을 개설하였다. 조계종 제주교구 관음사에서는 ‘4.3망혼 위령 천도제’를 실시하고, ‘위령법회’를 한 달간 실시하였다. 제민일보4.3취재반은 ‘4.3은 말한다.’를 1,2권을 출간을 시작으로 1998년까지 ‘4.3은 말한다’ 5권까지 출판하기에 이르러 ‘제주4.3진상’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변정일 국회의원은 75명의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4.3관련 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같이 주최한 첫 ‘4.3합동위령제’를 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 화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제주지역의 일부 일간지에 ‘제주4.3사건’에 대하여 ‘공산폭동론’의 기고를 하는 등 ‘4.3진상규명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계속한 해이기도 했다(김종민, 1988 : 414).

1995년에는 ‘제주도의회 4.3특위’에서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주 4.3연구소’에서는 좌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말 못했던 진상을 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서는 고두심 등이 참여한 연극 ‘느영나영 풀멍 살게’를 공연하여⁴²⁾ ‘제주4.3사건’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김종민, 1988 : 416).

1996년에는 제14대 총선이 있는 해로 제주도민들의 진상규명 촉구열의에 따라 신구범제주도지사는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4.11총선 때에는 제주지역 선거구의 모든 후보들이 ‘제주4.3사건’의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원은 ‘제주4.3알리기와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토순례단’을 구성하여 11일간 전국을 순회하였다(김종민, 1988 : 418). ‘제주도의회 4.3특위’는 ‘국회 4.3특위구성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제15대 국회에서는 1996년 12월 17일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 넘는 154명의 찬성으로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다(김종민, 1988 : 419).

1997년 4월 1일 ‘제주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⁴³⁾ 김찬국 상지대

42) 극단로템이 만든 ‘느영나영 풀멍 살게’(하상길 작·연출)는 1995년 8월과 9월 중 서울에 이어서 제주에서도 공연되었다. 주제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의 애월읍 원동마을의 소개사건과 주민학살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 3대에 걸쳐 아픔과 한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양가의 후손들의 결합으로 ‘느영나영 풀멍살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아픔과 한을 풀면서 살자는 의미)’ 라는 하나의 화해와 상생책을 제시한 공연극이다.

총장, 김종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만길 고려대 교수, 정윤희 홍익대법경대학장 등이 참여 조직한 ‘4.3해법찾기’위한 국민연대로, 정부의 양민학살 사실인정과 자료공개, 국회4.3특위의 구성, ‘제주4.3특별법’ 제정과 명예회복 조치 등을 촉구해 반향을 일으켰다(김종민, 1988 : 419). 제민일보는 대량학살극을 초래한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해 진상규명운동을 북돋우었고, 이에 시민단체들로부터 ‘4.3진상규명과 제주4.3특별법’ 제정을 더욱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천정배(국민회의) 의원이 ‘불법계엄령’을 추궁하며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김종민, 1988 : 419). 제주도의회에서는 ‘4.3패해조사보고서-수정보완관’을 출판하여 1997년 3월 11일 국회의장실과 여야총무실을 방문하여 ‘4.3패해조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국회4.3특위구성안’의 실현을 촉구하였다(김종민, 1988 : 420).

또한 재일동포소설가 김석범이 ‘제주4.3사건’을 다룬 소설 ‘화산도’ 전 7권을 발간하여 국제적 관심을 높이었고, 1993년 작품인 ‘다량위의 슬픈노래’와 1996년 작품인 ‘잡들지 않은 함성, 4.3항쟁’이 대학가에 유포되어 ‘제주4.3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조성봉 대표의 하늬영상은 4.3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제작하여 인권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 올리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내었다. 이에 맞대응해 일부 단체에서는 그 동안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해 온 글과 세미나 원고 등을 모아 ‘제주4.3사건자료집’을 펴내 ‘공산폭동론’을 지켜나갔다(김종민, 1988 : 420-421).

1998년에는 ‘제주4.3사건’ 관련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4.3 50주년 학술, 문화사업회’ 주최로 학술심포지엄,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 문학의 밤, 미술전, 해원상생굿, 방사 탐쌍기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김종민, 1988 : 421).

1998년 서울에서는 ‘4.3범국민위’에서 주관하여 ‘4.3역사기행’과 ‘4.3명예회복의해’ 선포식을 열고, ‘4.3기념주간’을 설정해 학술심포지엄, 명예회복촉구대회, 그림전, 진혼굿, ‘4.3문화학교’ 개설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특히 1998년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주4.3 제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은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인류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김종민, 1988 : 422).

1998년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에 각각 구성된 ‘기념사업실행위원회’ 주최로 강연회, 추도콘서트,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을 열었고, 블르스커밍스 초청 ‘제주4.3사건

43) 이하 ‘4.3범국민위원회’라 표기함

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강연회와 제민일보4.3취재반의 '4.3은말한다'의 일본어 판인 '제주도4.3사건' 제4권의 출판기념회도 열어 관심을 고조시켰다(김종민, 1988 : 422).

1998년 4월 3일 '제주4.3사건 제50주년 범도민 위령제'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여야의 각 당 대표들도 참석해 추도사를 발표하였는데, 모두가 한목소리로 '4.3진상규명'을 다짐(김종민, 1988 : 422)함으로써 민주화 정국을 실감하게 하였다.

종교계에서도 '4.3위령'을 하였는데,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대표 임문철 신부)은 신제주 성당에서 '4.3위령 및 화해를 위한 미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제주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스님)에서 '4.3위령 천도제'를, 모슬포교회에서 서남지구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김한병 목사) 주최로 '4.3 50주년 기념 강연 및 기도회'를, 원불교 제주교구(교구장 서위진)에서는 '4.3특별천도제'를, 민족선교연구소(이사장 한도전 목사)에서는 경기, 충청지역 목회자 및 신도들을 대상으로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김종민, 1988 : 422).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회의는 '제주도4.3사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배)'를 구성하여서 '4.3공청회'를 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대표 강만길)은 제주에서 '제주4.3사건'을 조명하는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김종민, 1988 : 423).

1999년 3월 8일에 4.3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주에서 범도민적 실천운동을 주도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를⁴⁴⁾ 결성 출범하였다(양정심, 2005 : 184). 1999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위령공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약속하였다(강창일, 1998: 124). 제15대 국회 폐회와 제16대 총선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도민연대'를 축으로 제주도 내외 24개 시민단체와 유족관련 단체가 결집된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하고(강창일, 1998: 125), 긍정적(+)활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4.3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제주도민 2천인 서명운동과 전국184개 시민단체 694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촉구 선언, '4.3범국민위'의 국회

44) 앞으로 이 논문에서 '제주4.3도민연대'로 표기함

의원회관에서 ‘4.3특별법 공청회’ 개최가 있었다(4.3범국민위, 2001 : 10). 1999년 10월 들어서자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안)’ 발표하고⁴⁵⁾, 제주도에서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1999년 11월 18일 한나라당 변정일의 112인 공동발의로 ‘제주4.3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 김진배 의원이 ‘4.3진상규명 특위 구성안’ 발의와 추미애 의원의 102인 발의로 ‘제주4.3특별법(안)’ 제출 등으로 이어지면서(강창일, 1998: 125-127) ‘역사바로세우기’와 ‘인권신장’을 위한 당시 정부의 의지와 사회분위기가 맞물리면서 1999년 12월 16일 개혁입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변정일 등 113인이 발의한 법안제출 이유는 다음과 같다(4.3진상보고서, 2003 : 40).

(전략)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됨에 따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 추미애 의원 등 103이 발의한 법안 제출 이유는 다음과 같다(4.3진상보고서, 2003 : 41).

제주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제주4.3특별법’의 목적(제1조)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이 법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이 아니라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위한 인권법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 법률에 귀속되어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도와 ‘국민화합’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활성화’는 또한 ‘4.3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학계, 종교계, 예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식

45) 이하 변정일 의원 등이 발의한 4.3관련 법안과 추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4.3관련 법안을 ‘제주4.3특별법안’이라 표기함

을 고양하게 하여 정부차원에서 ‘4.3진상규명’을 하게 하였다. 박명립(1988 : 426-427)도 민주화가 없었다면 이러한(4.3복원) 진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야말로 사고와 역사이해의 자유를 제공하는 기본토대라고 하였다. 또한 ‘제주4.3사건’이 한국현대사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민주주의 발전은 역사복원의 중요한 선결요건이 되는 것이라면서 1980년 광주(항쟁) 직후부터 분단 전후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였음에 비해, ‘제주4.3사건’만은 1987년 민주적 개방 이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이 지닌 무게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는 ‘제주4.3의 진상’을 바르게 조명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는 그 간의 각 정권들의 ‘민주주의 수용’ 정도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잣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시도, 그 자체에 제동을 거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4.3진상규명과 민주성’이라는 측정자로 자동적으로 측정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4.3진상규명’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장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또한 평화와 인권, 민주를 향하여 노력하였음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⁶⁾

‘4.3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정(+)의 상관관계에서 본다면, 1999년의 ‘제주4.3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2000년의 공포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다는 입법취지는 사회현상을 바로 직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차원에서 ‘제주4.3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와 인권보장, 국민화합을 바라는 정부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결과 대통령이 국가폭력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담화한 점은 바로 그 시대의 민주성, 인권보장, 국민화합을 바라는 국정운영자의 진심을 가슴 열어 자연스

46) ①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발전’ 중 하위변인으로서 ‘정치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제4장 【표 4-18】에서 .432 **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p<.01).

②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국민들은 ‘4.3진상’을 알리는 것을 ‘좌익이념’을 확산하거나, 잠잠한 사회를 들볶아놓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실증연구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 ‘4.3의 진상’을 교육받은 학생일수록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한운섭·고창훈, 2008),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공무원, 교사나 도민들도 ‘평화적 의식’인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이 논문의 가설8에서 검증).

③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적지 않은 정치인, 학자, 외국의 학자들도 그들의 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통된 추세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세기 ‘폭력적 사건’은 진상이 규명되고 바르게 기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와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바른 인식 체계를 과거의 잘못된 시각에 비추어 틀리다고 배척하는 대신, 이를 습득하여 평화적인 공동체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1999년 각 당의 4.3특별법안 발의 문과 이 논문의 참고문헌 등 참조)

립게 나태내준 일레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그 동안 정치권의 구호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진정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향하고자 하였던 국민에 대한 충정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4.3진상보고서’는 정치적 변환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역사 기록물로서 의미가 있다.

박찬식(2008 : 546)에 의하면 ‘제주4.3사건’은 이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박명림(1988 : 452-460)에 의하면 진실규명은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세에 바른 역사적 교육은 필요하고, 국가와 우리 자신의 만행과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과 화해, 휴머니즘적 평화통일을 위해 ‘제주4.3사건’에 대해 한국민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창훈(2007. 3. 9)에 의하면 제주지역에 대하여 ‘평화의 섬’ 이론화와 이를 기초로 문화관광, 평화산업, 환경관리가 어우러져 비록 작은섬이나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화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4.3진상규명’은 이러한 바탕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표2-4】 연도별 4.3진상규명 활동과 민주화 관련도

연도별	활동내용	민주화관련성	
		정(+)	부(-)
1960년	1) 제주대학생(7명으로 4.3진상규명 동지회 결성) 2) 진상규명동지회(제주신보에 진상규명 호소문 게재) 3) 제주신보(4.3 및 유지사 사건 어떻게, 기자회견담회 보도) 4) 대정면 주민들(모슬포에서 진상조사 촉구 쫓겨대회) 5)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위(제주지역포함 조사결정) 6) 제주신보, 제주도의회, 진상규명동지회(4.3희생상황 조사 접수) 7) 유족대표들(4.3의 불법성과 잔인성 폭로, 억울한 죽음을 호소) 8) 제주신보 신두방(영어를 포함한 양민학살사건 제주검찰청으로 고발) 9) 서귀포주민 강희철(부친이 학살된 사건을 제주검찰청으로 고발) 10) 재경제주학우회(국회 앞에서 4.3진상규명촉구 시위) 11) 서울, 제주도 대학생(‘제주도민학살사건 진상규명대책위’ 조직)	11	0
1961년	1) 김성숙의원 ‘제주도양민학살보고서’ 제출 및 위령탑 건립 등을 제안 2) 1961. 5. 16구테타 ① ‘진상규명동지회원’들을 검거* ② ‘4.3진상을 보도한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 구속* 3) 경찰(유족들이 세운 위령비 파괴)*	1	3
1978년	※ 17년간 침묵 하다 1) 현기영(‘창작과 비평’에 순이삼촌 발표)	1	0
1979년 -86년	※ 순이삼촌 이후 4.3이야기 못함 1) 현기영(1979년 합동수사본부 연행)* 2) 1984년 ‘제주백년’에 4.3언급, ‘공산폭동론’ 입장이면서 양민학살 소개* 3) 1980년 광주항쟁 후 대학생들에게 은밀히 전파된 책 ① 존메릴 논문(제주도 반란) ② 김봉현, 김민주(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4) 1986년 이산하(‘한라산’ 발표-즉각 판금과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2	3
1987년	※ 1987년 6월 민주항쟁-대통령직선제에 4.3이슈화 1) 1987년 말 대선-김대중후보(4.3진상규명 공약) 2) 제주대학교 총학생회(4.3대사보 대학구내 부착) 3) 정윤희 등(서울에서 ‘제주사회문제협의회’ 결성)	3	0
1988년	1) 제주대학교 학생들 ① 4.3추모기간 설정 ② 4.3위령제 및 진상규명촉구대회 개최 2) 제주사회문제협의회(서울에서 ‘4.3학술심포지엄’ 개최) 3) 탐라연구회(일본에서 추모강연회) 4) 각종 자료모음집과 증언채록집이 출판 5) 김석범(‘화산도’, ‘까마귀의 죽음’ 번역출판) 6) 표선면 토산리 주민들(‘토산리 실상기’-주민자체 진상조사) 7) 조수리 주민들(‘조수리 유전서’-주민자체 진상조사) 8) 가시리 주민들(마을지 ‘가스름’-사망자 374명을 자체조사 밝힘) 9) 문공부(‘제주민중항쟁’을 고발)* 10) 재경학우회(4.3강연회) 11) 강보성 의원(제주도국정감사시 4.3진상규명 촉구) 12) 국방위 황명수 의원(제주도국정감사시 4.3재조명 촉구) 13) 존메릴과 김석범(제주방문, 미군정역할에 대한 논쟁) 14) 오성찬(4.3증언채록집, ‘한라의 통곡소리’ 출판) 15) 역사비평사(제주4.3연구 출판)	15	1

※ 김종민(1988). 4.3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PP.338-424,
강창일(1998). 제주4.3진상규명운동과 한국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 pp. 105-138.
양정심(2005), “제주4.3항쟁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pp.174-200.
박찬식(2008). 진상규명운동의 역사,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pp. 465-538참조 재구성.
※ 민주화 관련성의 숫자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횟수와 이를 부정해서(-) 억압 등을 한 횟수를 말함

연도별	활동내용	민주화관련성	
		정(+)	부(-)
1989년	1) 제주신문4.3특별취재반('4.3의 증언' 연재 시작) 2) 현기영외('제주4.3연구소' 발족) 3) 강보성 의원('제주도문제연구소' 설립, 4.3진상규명 자료조사 시작) 4) 4.3연구소(증언채록, 자료집출판, 유적지순례 등 역사의 대중화) 5) 제주신문(김익렬 장군의 '4.3의 진실' 연재) 6) 제주운동단체('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 결성, 공개적인 '추모제' 개최) 7) 반공유족회('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로 개편, 처음 관변화)* 8) 유족들 모임('4.3위령제' 개최)* 9) 제주, 서울, 일본의 각 4.3추모모임들(마당극, 문학제, 강연회 등 행사) 10) 놀이패 마당극(한라산 조직) 11) 강보성, 최기선 국회의원(국정감사시 4.3진상규명 촉구) 12) 국정감사장(4.3증인 채택, 증언 들음) 13) 이군보 제주도지사(4.3조명,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재정립 답변) 14) 김명식('유채꽃 한아름 안아들고' 시집 출판)	12	2
1990년	1) 3당합당(4.3진상규명 원점화, 정부의 태도 변화)* 2) 안응모 내무부장관(4.3은 법률적으로 끝난 사안, 정부주도 재조명 회피)* 3) 제주신문(참언론운동 기자들 집단해고, '4.3의 증언' 연재중단)* 4) KBS(4.3특집 방영계획의 갑작스런 취소, 'KBS사태' 일어남)* 5) 경찰(4.3 추모식 원천봉쇄, 대량구속 사태 발생)* 6) 김명식('제주민중항쟁'을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7) 제주신문 해고 기자 중심('제민일보'창간, '4.3은 말한다.' 연재시작) 8) 애월읍 소길리 원동마을 희생자 유족('무흔굿' 실시)	2	6
1991년	1) 제주4.3연구소('제주신보, 1947.1.1-1948.4.20 분량' 발굴 공개) 2) 제민일보(80%가 진압군에 의해 희생, 미군 비밀문서를 보도) 3) 제민일보(국사교과서 왜곡실태, 집필자와 인터뷰하여 폭로) 4) 경찰(4.3추모 시민과 학생 등 400여명 연행)* 5)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전국대학('4.3시위'로 4.3을 이슈화) 6) 제주시민회관(놀이패 '한라산' 공연무산, 시민회관 대관 기피)* 7) 제주도경찰국('제주경찰사'발간, 9,345명으로 4.3희생자 축소)*	4	3
1992년	1) MBC '여명의 눈동자'(4.3, 공산폭동에서 민중봉기로 조명) 2) 다량취굴(토벌대에 희생된 부녀자, 어린이 포함 유해 11구 발견) 3) 화가 강요배('4.3역사 그림전', 4.3진상규명 논의 활성화) 4) 제주도내 단체들(미국과 한국정부에 메시지를 보내 진상규명 촉구) 5) 4.3추모제(경찰은 추모대열 가두진출 억제)* 6) 김대중 후보(14대 대선에서 4.3특별법 제정 공약)	5	1
1993년	1) 제주도의회(4.3특위 출범) ※ 아래 2개의 사건은 '4.3진상규명 운동'을 고무 ①외신보도('대만2.28사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보도-4.3진상규명운동 고무) ②만자당('거창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 2) 이영권 의원('반민족 반민주행위 진상규명조사특위' 구성 촉구) 3) 김종하 의원(4.3등 과거 불행한 역사 재평가 촉구) 4) 제주도('제주도지' 개정출판, 4.3 재조명) 5) 제주총학생회와 제주도의회(4.3특별법 제정, 특위구성 청원서 국회 등 제출) 6) 민자당('거창사건특별법'안 제출, 정치역량차이 실감) 7) 북촌리 주민들(409명이 토벌대에 의해 학살, 자체조사 발표) 8) 한국기자협회(제민일보 4.3취재반에 제25회 한국기자상 수여) 9) 김동만('다량취의 슬픈노래' 4.3 영상물 제작, 연출 : 민예충)	9	0

연도별	활동내용	민주화관련성	
		정(+)	부(-)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정일 의원(4.3사건특위구성안 제출) 2) 제주도의회(‘기초조사의 해’로 정하고 4.3피해조사 활동) 3) 제주도의회(‘4.3피해신고실’ 개설-피해 신고접수 시작) 4) 불교 조계종 제주교구(‘4.3망혼 위령 천도대제’ 개최) 5) 제민일보(‘4.3은 말한다’ 2권 출판) 6) 사월제공준위와 4.3유족회(‘합동위령제’ 개최) 7) 민예총(첫 ‘4.3예술제’ 개최, 문학, 미술, 연극 등 다양한 행사) 8) 반공단체 일부 인사들(제주지역 일간지에 ‘4.3공산폭동론’ 기고)* 9) 경찰(1994. 4. 14새벽에 정체불명의 김일성찬양 문서발견 했다고 보도)* 10) 보수학자와 보수언론(4.3항쟁 교과서 개편 시안, 반발)* 11) 우익단체 모임(‘4.3공산폭동론’ 강조)* 12) 이영덕 국무총리(‘4.3진상규명작업은 공인된 단체에서 추진, 정부지원 표명) 	8	4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도의회 4.3특위(피해조사서 발간, 국회특위 구성 촉구) 2) 제5대 제주도의회(4.3특위 재구성, ‘4.3피해신고실’ 다시 설치) 3) 제주4.3연구소(할머니, 할아버지 참여, ‘좌담회’ 개최) 4) 극단로템(‘느영 나영 풀명 살게’ 연극 공연, 하상길 연출, 고두심 주연) 5) 사월제공준위와 유족회(‘합동위령제’ 2번째 개최, 개최 과정 난항)* 6) 반공단체인사들(제주일보와 한라일보에 ‘공산폭동론’ 투고형식 게재)* 	4	2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도의회(국회방문, 청원추구 건의문 전달) 2) 청원심사소위와 운영위(특위 구성을 차기국회로 떠넘김) 3) 신구범 제주도지사(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 4) 4.11 총선후보(모든 후보들은 4.3문제해결 공약, 선거의 최대 쟁점화) 5) 제주도 박희수의원(4.3알리기 및 특별법제정 촉구 국토순례) 6) 유족회와 공준위(합동위령제 개최 합의, 특별법 제정 촉구) 7) 제민일보(4.3에서 화살주도한 군정보과장, 아편중독자임을 보도) 8) 만화가 박재동(‘4.3 애니메이션’인 ‘오돌또기’ 작품 설명회 개최) 9) 제주도의회 4.3특위(‘국회4.3특위구성’ 청원서 제출) 10) 국회(‘4.3특위구성안’ 발의) 11) 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4.3특별법’ 제정추구 토론회 개최) 12) 1996년 ‘잠들지 않은 함성, 4.3항쟁’ 4.3영상물 제작 	12	0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4.3범국민위(국민연대로 ‘국회4.3특위’ 구성 및 ‘4.3특별법’ 제정추구) 2) 4.3범국민위(‘4.3역사신문’, 소식지 ‘4.3반세기’ 발간) 3) 제민일보(4.3계엄령, 불법임을 보도) 4) 4.3범국민위(전국 12개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추구) 5) 천정배의원(불법계엄령 추궁, 4.3특별법 제정 촉구) 6) 제주도의회 4.3특위(동아시아 인권위 주최 국제심포지엄에 돌연 불참)* 7) 제주도의회 4.3특위(‘4.3피해조사보고서, 수정보완판’ 출판) 8) 제주도의회(국회의장 등에 ‘조사보고서’ 전달 및 4.3특위 구성 촉구) 9) 소설가 김석범(4.3소제 ‘화산도’ 전7권을 집필 완료) 10) 대학가(‘다량수의 슬픈노래’, ‘잠들지 않은 함성, 4.3항쟁’ 유포로 4.3알림) 11) 경찰(‘잠들지 않은 함성, 4.3항쟁’ 제작자 김동만, 국가보안법 위반 연행)* 12) 조성봉 하늬영상대표(‘레드헌트’제작, 인권영화제‘9월’, 부산영화제‘10월상영) 13) 경찰(인권영화제 때 영화상영 이유로 서준식을 연행 구속)* 14) 자유수호협의회(‘4.3사건자료집’을 퍼내 ‘공산폭동론’ 주장)* 15) 경찰(자유민주호국동지회 명의 유인물 수사, 신구범지사와 김영훈 지사 비난)* 16) 국회(‘제주4.3문제’ 여야4당 정책토론회 실시) 	11	5

연도별	활동내용	민주화관련성	
		정(+)	부(-)
1998년	1) 4.3학술, 문화사업회(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2) 4.3범국민위(‘4.3기념주간’ 설정 다양한 행사) 3) 서울명동카톨릭회관(‘제주4.3명예회복의해’ 선포) 4) 4.3범국민위(다양한 학문적 접근, 50주년기념학술심포지엄 개최) 5) 4.3범국민위(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4.3관련 자료 게재, 역사 대중화 시도) 6) 도쿄와 오사카의 기념사업실행위(강연회, 학술토론회 등 50주년 기념행사) 7) 도쿄에서는 미국학자 브르스커밍스 초청(‘4.3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명 강연회) 8) 제민일보4.3취재반(일본어판 ‘제주도4.3사건’ 제4권 출판) 9) 서울, 일본의 제주도민 930여명(진상규명 등 촉구 성명) 10) 한국자유총연맹 등(‘제주4.3폭동’, 단호한 대처 주장)* 11) 정부 및 각 당대표(‘범도민위령제’ 참여 추도사 발표, ‘4.3진상규명’ 다짐) 12)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4.3위령 및 화해’ 미사) 13) 제주교구 관음사(‘4.3위령 천도제’ 실시) 14) 서남지구 기독교교회협의회(모슬포에서 ‘4.3 강연 및 기도회’ 실시) 15) 원불교제주교구(‘특별 천도제’ 실시) 16) 민족선교연구소(‘학술세미나’, ‘4.3진상규명과 상처치유’ 다짐) 17) 강요백 화가(‘4.3역사화전’ 개최, ‘4.3진상규명100만인 서명’운동) 18) 천주교부산 정의평화위, 4.3범국민위(‘4.3토론회’, ‘4.3규명부산준비위’ 결성) 19) 국민회의(‘4.3진상조사특위’ 구성, 위원장 김진배, 간사 추미애) 20) 국민회의(제주에서 첫 ‘4.3공청회’ 실시) 21) 제주4.3연구소(동아시아 평화와인권 국제학술대회, 라모스 호르타 기조강연) 22) 민족선교연구소와 제주기독교감리회(‘학술세미나’, 교회의 ‘4.3외면’ 회개 등) 23) 국민회의 4.3특위(국회도서관에서 ‘제2차 4.3공청회’, ‘4.3해법’ 논의)	22	1
1999년	1)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결성 2) 4.3유족회, 서울범국민위(4.3문제해결을 바라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3) 김대중대통령(제주도방문시 위령공원조성 특별교부세 지원) 4) 4.3연구소, 도민연대 등 24개 단체(‘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조직) 5) 연대회의(4.3특별법 제정여원의 제주도민 2천인 서명안료 발표) 6) 연대회의(전국 184개 시민단체 694명 활동가의 ‘4.3특별법제정촉구’ 선언) 7) 4.3범국민위(국회의원회관에서 ‘4.3특별법 공청회’ 개최) 8) 변정일 의원(‘4.3특별법안’ 발표 및 ‘간담회’ 개최) 9) 한나라당(변정일의 112인 발의로 ‘4.3특별법안’ 제출) 10) 국민회의(김진배외 101인 발의 ‘4.3특위 구성안’ 제출) 11) 국민회의(추미애외 102인 발의 ‘4.3특별법안’ 제출) 12) 개혁입법으로 ‘제주4.3특별법’ 1999.12.16.제정, 2000.1.12공포.	12	0

제3절 '4.3평화교육'

우리는 평화라는 목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이라는 수단과 그 교육 내용으로써 타당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와 평화교육의 형식 틀 속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평화교육에 관한 지식들은 우리 사회의 개인들의 가치관들과 관련이 되어 진다.(Magne Haavelsrud, 1996 : 39-40) 이러한 입장에서 과거의 '제주4.3사건'을 바라보면서 평화란 무엇인지, '평화'와 '평화교육'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평화교육을 위해 '제주4.3사건'에서 어떠한 개념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1. '평화'와 '평화교육'의 개념, 2. '4.3평화교육'의 발현과 교육내용의 변화 추세, 3. '4.3평화교육의 내용'으로서 9가지 소재를 제시하였다.

1. 평화교육

1) 평화의 개념

여기서 평화의 개념으로 ①평화의 어원적 의미, ②평화의 정의, ③평화의 계보로서 구적 평화관과 동양적 평화관, 그리고 ④종교관에서의 평화로 기독교와 불교의 관점을 정리하면서 평화의 개념을 서술할 것이다.

① 평화의 어원적 의미

'평화'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평화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따라 평화를 보는 시각과 적용범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가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평화의 개념은 나라별로 다양한 어원적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J. Macquarrie, 1973 ; 조만, 1980 : 27-33 재인용).

그리스어의 '에이레네(Eirene)'는 기본적으로 '휴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에이레네'

는 원래 사람간의 관계나 태도를 함축하지 않고, 지속되는 전쟁 중에 잠시적인 휴전상태를 의미하며 ‘공개적 적대의 부재’로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라틴어의 평화는 ‘팍스(Pax)’인데, ‘팍스’는 ‘에이레네(Eirene)’와는 달리 전쟁에 대한 반대 개념을 담고 있다. 즉 전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정치적 구조와 이념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군사적으로 볼 때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적 평정이란 의미가 평화이다(박종화, 1992 : 14-15 ; 고병헌, 1994 : 8-11). 이 말은 갈등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다소 ‘깨지기 쉬운’ 합의를 의미하며 영어단어에 peace의 어원도 바로 Pax라고 본다.

히브리어의 ‘샬롬(Shalom)’은 ‘완전’이나 ‘전체’ 혹은 적극적 의미의 ‘복지상태’를 의미한다. 샬롬을 평화의 의미로 사용할 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완전함·통일·전체성·충만함 등이 깃든 인간사회 혹은 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샬롬은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전체’나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모두가 각각의 최적의, 최상의 존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표 2-5】 평화의 어원적 의미

나라별	언어	중심적 의미	평화개념
그 리 스	에이레네(Eirene)	전쟁간의 휴전상태	번영, 질서
로 마	팍스(Pax)	투쟁결과 체결된 지배적 평화	정복에 의해 실현된 질서
이스라엘	샬롬(Shalom)	완전성, 전체성	신에 의한 정의 실현
러 시 아	미르(Mir)	평화와 세상을 위한 의무	평화로운 세상
인 도	산티(Santi)	영혼의 만족	비살생, 비폭력
중 국	핑(Ping)	조정, 조화, 저울질	일치속의 단결, 세력균형

※ Jone Macquarrie, (1973). 조만(역) 「평화의 개념」. 기독교서회, 27-33 1980에서 재인용

러시아어 ‘미르(Mir)’는 ‘평화’와 ‘세계’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으며 ‘전체성’의 완숙 상태로서 진정한 세계성을 가지는 상태로서 평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산스크리트-인도어 ‘산티(Santi)’는 내적 자아의 평화, 개인적 평화로 정신적 만족, 인간 내면세계의 심오한 통합을 의미한다(J. Macquarrie, 1973: 14-15 ; 고병헌, 1994 : 8-11 재인용).

중국어 ‘허핑(和平)’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개인과 사회, 자연의 모든 사물, 사건들이 평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이강수, 1991: 131-157). 우리의 ‘평화’라는 말은 바로 중국어의 ‘허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병현, 1994 : 8-11).

여기서 전쟁과 무력에 의하여 얻어내는 평화로서 ‘팍스’, 휴전이나 쌍방협정에 의하여 현상유지를 나타내는 평화로서 ‘에이레네’는 평화를 허상으로 하고, 폭력을 실상으로 삼는 폭력 지향적 평화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샬롬(Shalom)’은 인간 대 인간 혹은 국가 간의 ‘의로운(righteousness)’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원의 개념으로 폭력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도 부정하는 정의구현으로서 평화개념이다. 동양적 평화 개념인 ‘핑(Ping)’과 ‘산티(Santi)’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개인과 사회, 자연의 모든 사물, 사건들이 평형과 조화를 이루며, 정신적 만족과 인간 내면세계의 심오한 통합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평화개념과 차이가 있다.

평화에 대한 사상적 측면에서 고병현(1994 : 18-19)은 평화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 간에 인류의 이상이었고,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바로 이 ‘평화’라는 개념에 관심을 보여 왔기에 평화에 대한 사상적 고찰은 실로 방대한 작업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평화사상의 큰 흐름으로 20세기 초까지(특히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서구 사상은 주로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혜숙(1995 : 6)도 평화에 관한 문제의식은 처음에는 비평화의 상태와 평화의 상태 중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가 하는 윤리적 호소의 차원에서 시작 되었으나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화사상과 철학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가치 변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1950년대 초기까지 평화연구는 폭행, 고문, 테러, 혹은 전쟁과 같은 경우처럼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해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력에 중점을 두었고 평화도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와 같이 소극적 개념으로 정의되었다고 한다.

② 평화의 정의

학자들의 정의하는 평화이론을 보면 1950-1960년대의 평화이론은 전통적 평화이론으로 이 당시의 ‘평화’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윌리엄(William J. Kreidler, 1990 ; 한혜숙, 1995 : 6 재인용)은 평화를 전쟁, 갈등, 싸움, 혼돈이 없는 조용함, 잔잔함, 평온함이라고 소극적 개념으로써 정의하였으며, 이 당시의 평화는 국가 간에 그리고 집단 간에 조직화된 폭력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평화교육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여 인간과 모든 생명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비판적 평화이론이다(오인택, 1987 : 94-95). 이러한 비판적 평화이론이 나오면서 '평화' 개념에 행복·복지·번영이 보장되고 구조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넓은 의미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볼딩(K. E. Boulding)도 '평화'란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관경, 1995 : 197).

윅스(Hicks, 1987 ; 한혜숙, 1995 : 6 재인용) 도 '무엇이 부재한' 식의 소극적 정의 대신에 평화로운 상태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내재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의 비판적 평화교육자 갈통(Johan Galtung)도 평화란 모든 폭력적·직접적·물리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구조적 폭력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로 정의한다.

갈통의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평화에 대한 이해의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평화를 “~한 상태”로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평화에 대한 직접적 이해방식으로 필히 특정한 가치의 실현을 근본 목적으로 하게 된다. 각 종교가 주장하는 평화교육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평화를 “이러저러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교육은 그 평화의 실현을 위해 기능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유보하고, “~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혹은 근본 문제의 확인과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간접적 이해방식이다(김정환·고병현, 1993 : 114).

그는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사회집단의 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조화적이며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한 인간다운 사회의 실현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이 평화연구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ohan Galtung, 1980 : 244-262 ; 송경호, 1991, 107-128 재인용).

김완수(1995 : 17-19)는 '평화'는 전쟁의 종식으로서, 영웅들에 의한 전쟁의 승리로부터 오는 '평화'이며, 신화에서 나오는 '평화'의 신으로서 '평화'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전쟁의 신을 시중드는 '평화'의 신이 주는 '평화'이다. 그리고 '평화'를 조화로 보는 것

은 피타고라스의 평화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피타고라스의 평화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화를 주축으로 존재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평화'의 문제는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플라톤은 전쟁이란 인간의 결핍적인 존재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국가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한다(플라톤, 국가론 제2권 369C. ; 김완수, 1995 : 17재인용). 이 결핍의 내용은 물질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존재에 있어서의 결핍, 인식에 있어서의 결핍, 논리에 있어서의 결핍, 선에 있어서의 결핍,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결핍, 정의에 있어서의 결핍이 그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문제는 전쟁, 결핍, 정의의 개념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김완수, 1995 : 17).

김학성(2000 : 8)은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간주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전쟁이 주로 국가단위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대부분 국가 간 관계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제국주의, 탈식민지화, 산업화, 인권, 평등,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 등을 의미하는 유럽적 현대성이 세계적인 확산 등과 더불어 '평화'의 개념도 확장되었다.

송경호(1991 : 107-128)도 인류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즉 도덕적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이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해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③ 평화의 계보

평화의 계보에는 다양한 평화관과 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서구적 평화관과 동양적 평화관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 다음 서양적 평화관으로 '비평화 상태'와 '평화적 상태'로 나누어 계보를 정리하고, 동양적 평화관으로 중국의 '노장사상'과 한국의 '동학사상', 그리고 '씨을'이라는 평화사상으로 정리하였다.

서구적 평화사상에는 비평화의 상태와 평화의 상태 중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가를 보는 평화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비평화의 상태를 근본으로 보는 인물에 홉스(Thomas Hobbes),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마르크스(Karl Marx), 포로이드(Sigmund Freud), 니체(Friedrich W. Nietzsche) 등이 있다. 후자, 즉 평화적 상태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가로는 루소(Jean J. Rousseau), 칸트(Immanuel Kant) 등이 있다(고병헌, 1994 : 19). 그리고 최근에는

폭력에 근거한 분류로 갈등의 평화가 있다.

홉스(Hobbes)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하여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의 상태로 본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게 된다(T. Hobbes, 183-188).

전쟁학 체계자로서 선구자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에 의하면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고, 전쟁의 목적은 국가의사의 실현에 있어서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데 있다. 전쟁의 주요한 수단은 폭력에 의한 전투이고, 전쟁의 목표는 적을 굴복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하며, 전쟁은 국익추구를 위한 국가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한다. 전쟁의 목적은 자기의사를 실현하여 국가이익과 권리에 속한 분야로 일부영토, 이권, 배상, 힘의 균형 등이 전쟁의 원인 이었다고 한다(황병무, 2006 : 17:21).

맑스(Karl Marx)는 이성보다는 계급투쟁을 통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이외에도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비이성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하고, 니체(W. Nietzsche)는 온순하고 겸손이라는 기독교적 덕목이 투쟁을 통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비평화의 상태가 더 근본적이라고 한다(J. Macquarrie, 1973: 23-24 ; 고병현, 1994 : 19-20 재인용).

이에 반하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전쟁은 가중되어 가는 악이며, 유럽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소라고 보았다. 루소는 또한 우리의 이성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지닌 전쟁이라는 제도를 근절시키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의 근절은 유럽국가들 간의 강한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국가가 전쟁의 본질과 그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쟁의 본질과 참화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W. Gallie, 1979 : 19 ; 고병현, 1994 : 20 재인용)

루소의 생각에 동의한 칸트(Immanuel, Kant)는 국가 간에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합법적 국제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았다. 최상용(1992: 295-313)은 칸트의 평화사상은 ‘세계정부론을 제기했던 단테’, ‘군주성직자 지식인 등 지도자들의 로고스에 평화를 호소했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군주의 이성에 의한 유럽의 영구평화를 주장했던 생-피에르

(Saint-Pierre)⁴⁷⁾, 그리고 ‘루소(Jean Jacques Rousseau)’로 이어지는 근대 평화론의 사상적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다.

박채욱(2004: 203-226)은 인간은 불완전하면서도 여전히 자율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존재이기에, ‘지구의 주민이라는 의식’은 우리들에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면서 칸트가 주장하는 ‘영구평화’는 결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류의 의무이자 과제라고 하였다.

김용정(1974: 29-47)은 칸트는 불충분한 개인의 힘을 공동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보다 높은 도덕적 존재자의 이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최고선을 실천할 윤리적 단체, 즉 지상에 있어서 신의 나라 건설은 법률적 공민적 사회인 정치체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시민법의 정체는 공화적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모든 국가들의 자유로운 유지와 보증을 위해 국제적 연맹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공민법은 사람들과 모든 국가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보편적인 인류국가의 공민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통의 폭력에 근거한 ‘평화’를 보겠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기 때문에 갈통은 ‘폭력’에 근거한 ‘평화’를 분류하였다.

요한갈통(Johan Galtung, 1996 : 2 ; 윤상호, 2005 : 6 재인용)은 인간의 자기 현실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을 특정한 인간 또는 집단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직접적 폭력’ 또는 ‘인위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반면에 사회구조 차체에서 사람들 사이,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 간, 사람들의 집단인 동맹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인간 내면의 성격구조로부터 생기는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의도되지 않은 폭력을 ‘간접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구조적 폭력’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즉, 구조적 폭력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권의 불평등함 또는 사회적 부정(social injustice)을 의미하며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억압과 착취라고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탈냉전을 맞아 국제정치상황이 변화하면서 갈통은 ‘문화적 폭력(Culture Violence)이론’을 새로이 추가하게 되었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47) 생-피에르(St. Pierre, 1658-1743) : 1713년에 ‘영구평화론’의 초안 작성. 이를 이어받아 1761년 J. J. Rousseau는 생-피에르 선생의 ‘영구평화론’의 개요에서 생-피에르의 연방구성 안이 유럽 군주들의 실제의 사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유토피아적이라 판단하였음(C. Covell, 1998 : 125 ; 박채욱, 2004 : 203-226 재인용).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며 개개인의 심층에서 작용한다. 더불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삼각구도를 밝히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평화와 폭력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갈통은 1996년 그의 저서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평화’에 대한 두 가지 양립된 정의를 설명했다. 그가 내린 ‘평화’에 관한 첫 번째 정의는 ‘평화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폭력의 감소’이며, 두 번째 정의는 ‘평화란 비폭력적이고 창조적 갈등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평화’에 관한 정의는 폭력 지향적인 것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정의는 갈등 지향적인 것으로 ‘평화’는 비폭력적이며, 창의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정황이다.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번째 정의가 ‘평화’에 대해 좀 더 역동적이라 밝히고 있다(Johan Galtung, 1996 : 9 ; 윤상호, 2005 : 6). 다시 말해 평화작업(peace work)이란 평화적 수단으로 폭력을 감소시키는 행동이고, 평화연구(peace studies)란 평화적 작업의 조건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다(윤상호, 2005 : 6).

이러한 평화의 개념은 서구적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동양적 개념인 평화사상은 비폭력적인 환경과의 조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적 관점으로는 중국의 노장사상, 한국의 인내천 동학사상, 그리고 ‘씨올’이라는 평화사상으로 살피고, 동양적 관점 중 불교사상은 다음 종교적 평화관에서 별도로 확인하였다.

우선 중국의 노장(老莊)사상을 보겠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노장(老莊)의 관점은 주로 장자(莊子)로부터 기초한다. 즉 천지와 나는 함께 태어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라는 인식은 천인(天人)관계에 대한 장자의 기본관점이다(노승만, 2000 : 77-78). 장자는 총체적으로 하늘, 땅, 만물과 인간의 상호의존적인 통일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사이 관계는 모순과 대립도 인식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근거가 되어 생겨나는 의존적인 사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는 道의 핵심인 것이다(노승만, 2000 : 77-78).

장자(莊子)는 자연을 인간의 의식이 형성되기 전의 상태, 의식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 세계, 즉 도(道)의 세계를 표현한다(노승만, 2000 : 12). 그러나 의식이 성립되면서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대상 범주를 설정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분별력·지각력·사고력으로 사물을 구별하게 되어, 자연의 전체적인 조화로운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조하고 변형하듯 언어를 통한 모든 사물들을 자신의 ‘의미차원’의 세계로 소유하므로 인해 그 세계에 갇혀 살기 쉽다. 그러나 자연의 도(道)는 우리에게 ‘의미차원’을 벗어나 ‘존재차원’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인간의 무지(無知)와 고통은 ‘의미차원’의 허상세계 속에 갇혀서 분별하기 때문에 ‘존재차원’의 실상인 본성(本性)을 직관해 볼 수 없다(노승만, 2000 : 12).

‘회남자’⁴⁸⁾ 구절에서는 무위의 자연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는 바대로 허용해주라. 그러면 그 본성은 충족될 것이다.⁴⁹⁾ 이는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다양한 욕구와 사고를 수용하지 못하는⁵⁰⁾ 한계에 부딪히는데(이강수, 2005 : 458-462), 이에 대하여 서구적인 방식대로 해결한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의지적인 행위 즉 패권에 의한 평화(Pax)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비평화와 폭력을 계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현대적 해결책으로 노장사상을 우리의 의식원리로 원용한다면 천(天)을 인간과 동질적 가치로 보고 천(天)의 이상적 경지를 오히려 인간 내면에서 구현하고(송환용, 1991 : 82-100), 현실의 인간 사회에서 수양을 통해(노승만, 2000 : 22-23), 자연화합에 반하는 의도적인 폭력을 멀리함으로써 평화를 조장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지난 세기에 적용하여 평화를 추구한 사례는 간디의 비폭력 정신이 있으며, 이 정신은 미국의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평화의 상호의존적 확산의 일례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킹 목사는 그의 사회개혁운동에서 비폭력의 원칙을 고수했으며(J. Washington, 58), 실제로 몽고메리 싸움에서 비폭력의 철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M. King, 1958 : 101).

한국의 평화사상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타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곧 한울이라 하여 모두가 자기처럼 중요하게 존경하도록 하는 사상이다. 임중재(2002: 69-70)에 의하면 동학사상은 우리민족에게 근대적 인간관하고도 잘 어울리고,

48) 전한(前漢)의 회남용 유안이 저술한 책으로 제자백가(諸子百家)와 당대의 지식을 총망라한 고대 중국의 대표적 고전.

49) 노자 도덕경(道德經) 64장

50) 이에 대한 예는 인간의 삶으로서 실존이 더 중요한데, 이념과 사상 등 관념적 대립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관계로 상호 융통화합하지 못하여 지난 세기에 인명을 대량학살 하는 등 폐해를 일으키는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구심력과 사회적 응집력이 있어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잠시 유보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고유의 심성으로 동학사상 중에 동귀일체(同歸一體)개념⁵¹⁾이 있다하며, 이러한 개념은 우리민족의 인식체계와 같아서 공동체 발전전략을 세우는데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였다.

하느님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존재로(이희주, 1982: 33), 내세보다 현세에서 인간을 하늘과 같이 지극히 여기는 천인합일사상(이희주, 1982 : 37-38)이 있어 사람을 평등하게 존중할 수 있으며, 사회의 어지러운 혼란상과 불안도 인간의 내면의 가치인 성(誠)경(敬)신(信)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어려운 시기의 평화 추구 사상으로도 적합하다(이희주, 1982 : 36).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노장사상, 예수의 평화사상, 간디의 사상, 퀘이커교,⁵²⁾ 특히 한국의 역사 자체 등의 사상적 영향을 받지만(안병무, 1992: 365-366), 결국 ‘씨울’이라는 사상에 종착하게 된다. ‘씨울’은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이 그저 땅을 딛고 서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라는 것을 의식도 못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는 사람들”(함석헌, 124)이며, ‘씨울’은 본질적 평화요, ‘씨울’의 바탕이 평화요, 평화의 열매가 ‘씨울’이며, ‘씨울’의 목적은 평화라는 세계 외에 있을 수 없다(함석헌, 282).

이러한 ‘씨울’사상에 바탕을 둔 함석헌의 평화의 길은 다음 네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안병무, 1992: 374-377).

첫째, 평화의식은 전체의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자각이 평화의 근원이다.

둘째, 평화운동은 바로 정신운동임을 전제하면서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앞서야 한다.

셋째, 한국민족의 특성에 대한 재인식이 평화, 한국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운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51) 서로 다른 마음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한울님의 뿌리로 돌아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사상으로 우리민족의 평화를 위한 구심점을 찾아 낼 수 있는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52) 퀘이커교(Quakers) ; 17세기 중엽에 조지폭스(George Fox, 1624-1691)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교 집단(장영호, 1999 : 2), 형식적 기도나 설교를 하지 않고(장영호, 1999 : 8),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 빛의 아들(Children of Light), 친우회(Society of Friends)라고 하며(장영호, 1999: 10), 구원은 문자에 있지 않고 체험에 의한 깨달음에 있는데(장영호, 1999 : 73), 내면에 있는 속 빛이야말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이며, 화해와 일치의 근원이며, 서로 충돌하는 여러 힘을 하나로 통일하는 근원으로(장영호, 1999 : 74), 이것은 양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스코틀랜드 목사들의 원칙’의 기록처럼 퀘이커교를 비난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다(염남윤, 2003 : 42-43).

넷째,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특히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포스던 모던 시대에서의 ‘공동선’, ‘물질만능시대에서의 정신’, 왜곡된 국제화시대에서의 ‘민족 재발견’,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서 ‘씨을’의 강조는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

④ 종교적 평화(기독교와 불교)

다양한 종교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종교적 평화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양대 종교로 기독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평화관을 확인하겠다.

종교적 평화로 기독교와 불교적 평화는 많은 공유점을 밝히면서 상호 인정과 자기 낮춤을 토대로 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롬은 기독교적 의미의 평화인데, 이에 대한 성서의 이사야서 11장 6절 과 9절을 보면 “(6절)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평화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살롬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논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박보영, 2005 : 95-96). 즉 살롬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 신앙 하에서 절대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약신앙의 핵심인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추앙하는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로 가정한 평화이고, 여호와를 신앙하지 않는 상태인 악에 대한 응징도 포함하고 있다.

강경호(2007: 453-457)에 의하면 신약에서 평화는 전쟁이나 투쟁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탈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바른 관계의 회복된 상태를 평화로 보고 있다. 회개하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상태이며(엡4:18, 골1:21),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다(롬5:10, 골1:21).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그릇된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되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고후 5:19, 골 1:22),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롬5:1). 그리하여 그는(의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셨다(골1:20). 또한 신약성서의 평화라는 말은 ‘마음의 평화’ 또는

평온을 의미하기도 한다(롬 8:6, 15:13, 갈5:22, 빌4:7, 골3:15, 요14:27).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인 ‘에이레네’⁵³⁾ ‘평화, 일치, 화평, 안전, 평강, 번영, 평안 및 조화’ 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이다. 이것은 성령의 본질로부터 오는 구원의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며 무한히 샘솟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십자가의 평화이다(엡2:13-22).

기독교의 평화에 비하면, 불교의 평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화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는 성서와는 달리, 불교에서는 평화와 일의적(一義的)으로 짝지을 수 있는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병현, 2006 : 59-60). 따라서 불교의 평화관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불교의 평화 관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개념으로서 법정은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 ‘자비’를 들고 있다. 즉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인간의 심성에서 유출되는 자비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법정, 1999 : 156). 자(慈.)는 중생을 사랑하여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悲)에는 중생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비(慈悲)’는 인간 심성의 승화이며, 평화의 적(敵)은 어리석고 웅졸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지혜롭고 너그러운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자비의 마음을 길러 항상 아힘사(Ahimsa)를⁵⁴⁾ 즐길 수 있는 상태가 평화인 것이다(법정, 1999 : 159).

불교의 세계평화에 대한 접근은 개인부터 시작한다. ‘비폭력’의 원칙에 헌신적인 개인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더불어 변혁될 것이라는 관점에 있는 것이다(Gordon & Grob, 1987 :124 ; 고병현, 2006 : 63 재인용). 이처럼 불교에서 평화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데, 그 자신의 탐진치(貪瞋癡)⁵⁵⁾ 마음 작용의 비움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불교의 평화관은

53) 히브리어의 ‘에이레네’는 성령을 바탕으로 한 화평이지만 그리스어의 ‘에이레네’는 휴전이나 쌍방협정에 의하여 현상유지를 나타내는 ‘평화’로서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54) 不殺生, 非暴力을 의미 ; 산스크리트어로 ahimsā, 인도의 종교와 도덕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불살생(不殺生)’의 뜻으로 쓰이며, 힌두교에서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간디가 독립 운동을 벌일 때는 ‘비폭력’의 뜻으로 사용함.

55) 貪(탐욕), 瞋(성냄), 癡(어리석음)의 마음작용을 버림으로써 텅 비어 있는 마음의 마음 상태에 도달하고, 이를 통하여 본성(자성)이 스스로 있음을 깨닫고, 이로서 모두가 하나(상대방이 나와 별개로 구분되는 적(敵)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하나라는 인식)임을 확인 하면, 스스로 자발성 있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세상)가 평화스럽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원리로

‘자기내면의 변화’로 부터 시작해서 ‘세계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불교에서의 지극한 자비에는 멀고 가까움이나 원수와 동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로 가득 채우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법정, 1999 : 159)”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에서의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과 상통하며,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화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종교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의 종교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고병헌(2006 : 64-65)은 각각의 종교가 자기의 ‘평화’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평화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로 포장된 정치 이념과 편견이며, 이 때 ‘평화’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감추는 포장지로 이용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 연구에 있어서 평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평화에 대한 정의는 좁은 의미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 비전쟁의 관점을 훨씬 벗어나서, 자기의⁵⁷⁾ 이기심을 벗어나고 주변 환경(인간, 자연, 우주 환경)을 보호하는 상태를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중국의 허핑처럼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이강수(1991: 131-157)가 정의하는 것처럼 개인과 사회, 자연의 모든 사물, 사건들이 평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종교적 평화 관처럼 지혜와 자비, 사랑으로 사람과 자연이 상호 보호(相生) 할 수 있으며, 갈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공통 속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기심의 극복을 위해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것을 사회적 덕목으로 제시할 수 있음으로 오랜 숙제였던 종교간 화목도 조성해 낼 수 있다. 결국 자기 비움은 남보다는 자기의 마음 속 변화(내면의 변화)를 기점(起點)으로 해야 함으로, 그 현실적 실천에 있어서 다른 사람(다른 조직,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쉬울 수 있다.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56) 불교에서 평화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 지혜와 자비, 깨달음 등은 각 자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됨(법정, 1992).

57) 타자(他者)에 대한 자기, 다른 조직에 대한 자기 조직, 자연에 대비해서 인간을 말함.

2) 평화교육의 개념

‘평화교육’은 제2차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태동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전통적인 평화교육과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평화교육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UNESCO)의 ‘국제이해교육’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평화교육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여 인간과 모든 생명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비판적 평화이론이다(오인탁, 1987 : 95).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류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유엔(UN)의 결정은 인류의 소망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병헌(1994: 24)은 평화교육이란 평화의 개념에 근거하여, 평화의 실현을 지향하는 성격을 갖는데, 평화에 대한 보편적 정의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면, 평화교육의 내용은 일단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의 과목으로서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특정지역에서 평화교육이 적대시되고, 실천되지 못하는 근본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파울로 피에로(Paulo Freire, 1972: 58)는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은 의식화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비판을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또는 강력한 현실적 요인에 대해서 행위를 갖도록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보듯이 평화교육은 앞장에서 살펴본 평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로서 평화교육의 의미와 내용적 범위 등 지식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환(1995: 190)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려는 교육이며(목적), 평화를 파괴하는 공격성, 폭력성, 갈등성, 편견성 등을 극복하게 돕는 개인, 사회, 자연, 우주적 차원에 걸치는 교육과정(내용), 정서순환, 역사의식 배양, 사회개혁에의 참여의식 고양, 고난에의 동참 등을 통하여(방법), 모든 시민과 교사가 모든 교과, 모든 교육의 마당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일련의 통합적 교육으로서(체제), 인류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의 과제(당위성)’ 라고 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비판적 평화이론을 교육함으로서 적극적 평화를 장려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의미의 평화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교육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전쟁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에 여기에 평화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전쟁의 부재상태를 달성할 것인가에 교육 내용이 맞추어져야 하지 단지 전쟁의 발발원인과 관련해서 “전쟁은 불가피하였다거나 필연적이었다.” 라는 접근 방법은 전쟁을 회피하려는 평화적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전쟁은 전쟁의 발발로 연결되는 원인이 있으며, 인간이 지혜롭게 대처하였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접근이 평화교육의 첫걸음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발발원인은 평화적 해결 모색과 평화를 위한 노력의 실패를 한 축으로 보며, 또 다른 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흐름이 형성되었음이 이유가 된다.

이훈상(2003 : 200)도 지금까지의 역사 교육의 장에서는 전쟁의 기원과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중심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특정 진실만을 내세우는 접근 방식인 전쟁책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갈등의 반복을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인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토마스 쿤(Anette Kuhn, 1971 : 24-26 ; 정현백, 2001 : 107 재인용) 도 많은 역사책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서술에서 전쟁의 모험적인 장면들을 제시하고 복종·동지애·의무감·책임감 등을 남성적인 덕목으로 치켜 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영웅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면 평화교육이라기보다 전쟁교육이 될 위험성이 있다.

김육훈(2003 : 59-60)도 전쟁에 대한 기술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학살과 엄청난 인간성 파괴의 현장을 비중 있게 소개해야 한다면서, 전황중심의 교과서 기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의 하나로 여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전쟁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쟁의 경험을 승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가주의적 입장은 승자에게는 승리의 지속을 위해, 패자에게는 보복을 위해 각각 군사력 확대와 전쟁 준비를 정당화 시킬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로트(Karl Friedrich Roth; Host-Wilhelm Jung, 1986 : 110-114 ; 정현백, 2001 : 101 재인용)는 평화교육에서 개개인이 지닌 ‘정신(Geis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지식에 못지않게 정신, 감성적으로 매개된 합리성·의식·사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정의의 보다 폭넓은 확산을 위해서 ‘관용’이

실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기초민주주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활용되어 국제법이 지켜져야 하고, 교사나 부모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종교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역사수업에서 전쟁영웅의 발굴대신에 수업의 중심에 새로운 교육적인 이상형으로서 평화의 영웅을 부각시키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2. '4.3평화교육'의 발현과 교육내용의 변화

민주화 이전에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이야기 할 수 없었던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도 지배정권의 교육이념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교육이념은 반공으로서 '제주4.3사건'은 제주지역에서 공산폭도들의 반란을 우리 군경이 진압한 사건이었다. 그러다가 87년 6월 광주민중항쟁운동으로 민주화의 새장을 열게 되면서 '제주4.3연구소' 등이 설립되고,⁵⁸⁾ '4.3진상규명' 운동을 문학자, 4.3관련전문가, 대학생, 언론 등 사회적 의식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리들을 분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40여 년 간 은닉·왜곡·날조되었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나타났다(강창일, 1998 : 105-138).

이는 그 동안 발설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억눌렸던 한을 터트림으로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을 왜곡되게 받고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온 도민들로 부터 '제주4.3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4.3진상규명'은 하나의 강렬한 정치적 수요로 형성되었다.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20세기의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24개 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집된 연대회의, 전국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84단체 694명이 '4.3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도민들의 정서

58) 제주4.3연구소는 종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상규명하여 왔던 사람들인 정윤희, 김만식, 현기영, 문무병, 고희범, 강창일, 고창훈, 김창후, 양한권, 홍만기, 양성자 등이 주축이 되어 문을 열게 된다(강창일, 1998 : 105-138).

를 반영하여 제주도의회에 '4.3특위'가 설립되고,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수차례의 강력한 제청을 거치면서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었다(제주4.3위원회, 2003 : 35-39).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자료발굴과 보존, 교육과 연구가 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그 결과 '제주4.3사건'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지도하에 그 배후 실력자인 친일 군경들이 도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자행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교육되어졌다.

또한 이는 제주지역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대만, 오키나와 경우도 제주와 같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제주4.3사건'은 한반도 분단의 형성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동서냉전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 하에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⁵⁹⁾ 당시 대량학살을 가능하게 한 이념으로 제주도민들의 90% 이상을 빨갱이라 하였으며, 제주는 빨갱이의 섬으로 온 도민들을 죽이더라도 정당하다는 인식을 서북청년들이 포함된 군경에게 주입함으로써 그 들에게 죄의식도 없이 대량학살을 실행하게 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은 인권과 평화, 화해와 상생이라는 개념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으며,⁶⁰⁾ 이러한 개념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념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평소부터 비폭력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념의 초월, 생명의 존엄, 법치주의, 저항권, 다양성존중, 대안탐색과 협상력 증진, 주변도시와 교류, 소수인권의 보호 가치 등을 교육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것은 '4.3평화교육'을 위한 내용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59)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개재된 사건이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키나와와 대만의 경우도 제주와 함께 동아시아의 중앙에 자리하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공통성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제주4.3사건을 전국화, 민족화, 세계화, 인류화'로 치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강창일, 1998 : 122-124).

60) '제주4.3특별법'은 제1조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3.10.31 대통령 발표문에서도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듯이 바로 이점에 우리는 '4.3평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제주4.3특별법’ 제정이전과 이후의 4.3교육내용의 변화 추세를 보고, 이러한 대세적 흐름에 맞추어 각 자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 방안으로 ‘4.3평화교육’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절대화 된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학살의 부당성을 말할 수 없다. 오로지 국가 권력만이 학살을 거론할 수 있었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제주4.3사건’만 아니라 동 시대에 발생했던 국가 폭력의 사실을 최소화하고 은폐시키기 위해 지배 권력이 고안한 최적의 정치 수단이었다고 한다(고성만, 2005 : 13).

‘제주4.3사건’은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한 무장폭동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든 오욕의 역사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역사이고 과거 이승만 정부 하에서 발생한 일을 역사교육 차원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술해야 하는데, 역사교육의 기본서인 교과서에서 조차 억압하고 금기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현진호, 2007 : 11).

1967년 발간된 한국전쟁사에서는 ‘제주4.3사건’을 ‘제주도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주도 출신 공산주의 신봉자들에 의하여 순박하였던 도민들을 기만하고 적빈(赤貧)한 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실천 방안으로 도민 전체를 조작과 훈련으로서 남한의 민주적 발전 토대를 전복하려는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하여 기도된 것’이라고 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451).

즉 ‘제주4.3사건’을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군경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박찬식, 2007 : 186). 이러한 역사적 인식은 2차 교육 과정 기에 반공을 국시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시기에도 마찬가지 인식이었다.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시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고 국난 극복의 정신자세를 강조하면서 정치권력의 강화와 체제유지 수단의 역할을 하였다. 중, 고등학교 공히 ‘국적 있는 교육’에 터한 주체성 확립이 ‘민족중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사’ 교육의 목표로 내세워졌다(정선영외, 2002 : 289).

이시기에 1974년과 1979년 국사 교과서 개편이 있었는데, 6.25사변의 민족시련이라는 소단원에서 ‘제주4.3사건’이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 내용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6.25전쟁 직전까지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 폭동과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현진호, 2007 : 11). 이때의 시각은 ‘제주4.3사건’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주하여 남한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폭동으로 반공과 반북의 시각에서 인식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1982년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도 보면, “북한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 사건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아래 제주도에 공산 무장 폭도가 혁명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 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김중민, 1999: 351 ; 박찬식, 2008 : 334). 당시 정부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제주사람들은 흑시나 빨갱이로 몰릴까봐 누구하나 학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반공국가의 시선으로는 ‘제주4.3사건’ 당시의 제주도민들은 상당수가 ‘빨갱이’ 또는 ‘폭도’로 진락시키는 것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나간채 외, 2004 : 27).

박찬식(2007: 186)에 의하면 군사정권하에서 ‘제주4.3사건’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공론화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억압되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에도 ‘제주4.3사건’을 거론하고 발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2)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 대두되었다. 1987년 4월 3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4.3발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위령제를 학내에서 개최하였다(제대신문, 1987년 4월 13일자). 그리고 당일 총학생회, 여학생회, 씨클연합회, 인문대학생회, 사회과학대학생회 공동명의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하였다. 당시 작성된 대자보에는 ‘제주4.3사건’의 성격을 민중항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시 폭동만 허용되던 공적 인식에 정면으

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박찬식, 2007 : 187-188).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근현대사 서술은 젊은 교사나 진보적 역사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지배층 중심의 역사 서술 관점과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⁶¹⁾ 이러한 논쟁은 1987년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역사는 정치적 예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민주화 열기가 돌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발붙이기 어려운 주제인 ‘제주4.3사건’을 갖고 접근하였던 1989년도부터 활동한 단체가 현기영 소장을 주축으로 한 ‘제주4.3연구소’이다.⁶²⁾ ‘제주4.3연구소’는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유족회의 결성, ‘제주4.3특별법’ 제정과 ‘제주4.3진상보고서’ 확정의 이론적 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는 증언채록집, 4.3유적지 발굴과 4.3홍보, 4.3연구서 발간, 4.3 역사기행, 미군정보고서, 미군정연구, 제주신보 발굴, 4.3유인물 찾기, 4.3유물 발굴·보관 등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30여 권의 단행본과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제주4.3연구소, 2009 : 15-18), 이는 각 대학에서의 ‘제주4.3사건’ 석박사의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학생들의 교육 자료를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4.3연구소’의 교육활동으로는 ‘4.3역사기행’(횡수 700회)을 통해 국내외 3만여 명에게 ‘제주4.3사건’의 힘들었던 역사를 현장에서 소개하고, 1996년도부터 매년 1회씩 역사교실을 운영하여 왔다. 2008년도부터는 ‘4.3역사문화해설사’ 양성과 ‘4.3역사문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1990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등을 일으켰다.

61)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이 지나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권의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하 무장독립전쟁이 축소되었으며, 사회주의계의 민족운동이 누락되고,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대중운동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맹목적인 반공이데올로기 만을 앞세운 나머지, 통일보다는 분단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김한중 외, 2005 : 24 ; 현진호, 2007 : 13 재인용).

62) 1989년 5월 억눌리고 억압받았던 4.3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작게 출발했지만, 이내 경찰 등 공안기관의 감시 속에서도 ‘제주4.3사건’ 경험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수기로 작성했고, 녹음기 하나 들고 버스를 타고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녔다. 사업비를 받거나 월급을 받아서 한 일도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4.3진상규명’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발품을 판 연구소 연구원들의 노력은 그동안 수많은 구술 증언집과 자료집 등으로 발간되어 나왔다(제주4.3연구소, 2009 : 15-18).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 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하여 ‘제주4.3사건’은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서술되었다(박찬식, 2008 : 339). 이 전 교과서에 비해 다른 점은 북한의 사주 부분이 삭제된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4.3을 집필한 연구자는 ‘현대사 관련 책자 몇 권을 참조해서 썼으며, 현대사 부분에 대해선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다른 분들의 글을 참조하는 정도였다고 실토하였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 : 347-353 ; 박찬식, 2007 : 189).

1996년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라고 서술되었다(박찬식, 2008 : 339). 제6차 개정 시에 제주4.3에 대하여 처음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되었다는 ‘양민희생’ 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의 전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본질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라는 냉전, 반공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었다(현진호, 2007 : 14).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제주4.3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하여 2000년 3월 27일에는 제주도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가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4.3희생자 결정, 미신고한 4.3희생자 실태 표본조사, 4.3평화공원 조성, 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추진 등 4.3관련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제주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정부의 공식적인 ‘제주4.3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로서 ‘제주4.3진상보고서’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당시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함으로서 ‘제주4.3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박찬식, 2007 : 191).

‘제주4.3특별법’ 제정과 ‘제주4.3진상보고서’ 확정,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사과 성명은 2002년도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정부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다” 고 하여 ‘제주4.3’에 대하여 폭동이라는 기술은 사라졌다. 그 후 각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군과 경찰이 진압하면서 무고한 주민(양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도화된 4.3으로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사건으로서 인식은 공인되기 시작하였다(박찬식, 2007 : 192-194 ; 박찬식, 2008 : 341-343).

그러나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의 10.19사건’을 6.25전쟁의 하위 항목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어(교육부, 1998 : 176), 당시에 좌우 이념의 대립 갈등과 사회혼란상에 편승하여 학살은 ‘전쟁의 혼란상황’ 속에서 과잉 진압된 어쩔 수 없는 논리로 희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초토화 작전 등으로 벌인 대량학살은 6.25전쟁 이전에 이미 저지른 상태여서 6.25전쟁 속으로 배치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가칭 ‘단정수립반대운동(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 단락과 ‘6.25 전쟁’ 단락 순으로, 서로 독립된 단락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제주4.3특별법’ 제정은 ‘4.3진상규명’을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조사결과 ‘제주4.3사건’은 비극적인 학살사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의식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전교조제주지부를 중심으로 1990년도부터 ‘4.3역사기행’ 등을 실시하다가 2002년도부터 ‘4.3교육주간’을 선포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한 계기교육으로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제주지부에서 전국교사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3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4.3교육’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4.3유적지 탐방활동 등 다양한 교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2년 4월 1일 전교조제주지부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4.3수업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4.3 수업예시)

공동 수업 안을 가지고 수업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4.3교육주간에 학생들에게 4.3 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 ① 가족사알아보기
 - ② 우리집 제사 중 4·3 때 돌아가신 분 알아보기
 - ③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4·3때의 생활이야기 듣기
 - ④ 4·3관련 신문 스크랩하기
 - ⑤ 방송의 4·3관련보도나 특집 시청하기
 - ⑥ 4·3관련인터넷 사이트 찾아가기
 - ⑦ 4·3관련 시, 소설 읽기
 - ⑧ 4·3각종 행사 참여하기
 - ⑨ 우리 마을 우리학교 주변 4·3유적지나 학살 터 알아보기
 - ⑩ 현장학습으로 4·3유적지 순례하기
 - ⑪ 기타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전교조제주지부’ 홈페이지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배너방의 4·3개요와 문답으로 알아보고 4·3 등을 요약하기
- 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각 교과에 맞게 교사들이 소화하여 수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4.3역사기행’을 하거나, 2001년도부터 전국 ‘4.3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2005년 1월 제주대회)에서도 전국의 2,000여 교사가 ‘제주4.3사건’의 관련 테마기행에 참여하였으며(미디어제주, 2005년 3월 25일),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제주4.3진상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에 ‘아픔을 딛고 일어난 제주’를 발간, 2005년도에 ‘4.3교육자료집’과 ‘교육피해조사보고서’라는 책자형 지도서를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04년 3월 발간한 ‘아픔을 딛고 선 제주’란 제목의 4.3교육자료집은 2003년도 발간된 ‘제주4.3진상보고서’를 중심으로 당시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명이 2년여 동안 자료수집과 세미나, 자체연수 등을 거친 끝에 ‘제주4.3사건’에 대한 전개과정과 피해 상황을 야심차게 담아내어 일선 교사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2006. 4. 26 제주뉴스). 이 교육자료는 공교육 기관에서 56년 동안 금기시 했던 ‘4.3교육’을 교육행정의 중심인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4.3사건’의 교육자료집을 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한라일보, 2004.3.9, ‘4.3교육 환영’ ; 제민일보, 2004.3.8. ‘4.3교육실시 의미 있는 일’ ; 제민일보, 2004.3.7. ‘일선학교 4·3교육 환영, 제주4·3도민연대’).

‘아픔을 딛고 선 제주’의 교육자료는 2005년 개정증보한 데 이어서 2008년 3월에

는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 하다’의 ‘제주4.3사건 이해자료집’을 펴내어 제주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 되게 가르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펴낸 것으로 2008년 12월에 발간된 ‘4.3교육자료집’으로써 ‘만화로 보는,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딱딱하고 지루한 역사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학습 만화형태로 만들어졌으며, 4.3사건의 배경과 기점, 4.3사건의 전개과정, 피해상황,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위한 4.3유적지를 소개하고 연표로 본 제주4.3사건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2008년 12월에 발간된 또 다른 ‘4.3교육자료집’으로써 초등학생을 위한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 설명하고 많은 사진자료를 함께 실은 교과서 형태로 만들어졌다(제주교육청 소식, 2009.3.24 ; 2009.3.10 ; 제주의소리, 2009.3.10).⁶³⁾

2008년 12월에 ‘제주4·3’ 당시에 교육계의 인적·물적인 피해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도 발간되어 학교로 배부되었다. 이는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보고서’로 2001년과 2008년의 2차례 조사를 실시한 후 만들어졌다(제주의 소리, 2009.3.10). 이 보고서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에게 당시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려 진실을 이해시키고, 비록 슬픈 역사지만 이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군경과 반공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민간인 희생부분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많고,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동창회지, 마을지 중에도 오류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4.3오류백서’ 발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4.3바로알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국 학교 현장에 보급할 ‘4.3교육인정 교재’ 개발이 필요함과 ‘평화의 섬’ 선언문 취지에 입각해서 제주전통적 공동체 회복차원의 ‘4.3교육사업’이 요구됨을 제언하고 있다.

공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 이외에도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주는 단체로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1997년에 결성되어 1998년도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제주 역사를 공부하였고, ‘제주4.3사건’을 첫 주제로 1년 간 공부한 결과 2000년에 ‘4.3학습자료 CD’를 제작하였다. 이 CD를 전국 8000여 명의 역사교사들 가운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 2000명에게 나눠주는 성과를 올렸다. 내용은 ‘인물로 보는 4.3’, ‘통계로 보는 4.3’, ‘연표로 보는 4.3’, ‘문답으로

63)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제주교육소식→교육청소식 참조.

보는 4.3' 등의 내용을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정리한 이 CD는 이후 전국 교사들의 '4.3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2003.8.22, 제주뉴스, 제주사랑역사교실모임).

제주도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교육방법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인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체험)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조금 지원 방식이 있다. 그 내용은 '청소년 4.3유적지 역사기행'의 장려, 민예총의 '4.3청소년 평화축제', '전국청소년 문예공모' 활동을 통하여 '4.3폭력'을 관조하면서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2006년 3월에 '제주4.3연구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역사다시읽기' 기획물로 엮어낸 첫 '제주4.3사건'의 교재로서 허영선 지음의 '제주4.3'이 있다. 이 책은 전국 학교·기관 및 도서관에 배부되면서 4·3의 전국화와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4.3연구소'는 이 책을 제주도교육청으로 1,000부를 기증하여 제주도 전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주4.3연구소는 이 책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역사적 관점을 담는데 주력했다고 하며 4·3이 제주사람에게 남긴 상처와 교훈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4·3의 비극을 겪은 제주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지향'에 두고 서술했다고 밝혔다(제주뉴스, 2006. 4. 26).

이외에도 특정한 단체를 통하지 않고 '제주4.3사건'에 새로운 관조의 영향을 주는 개인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현직 역사교사로서 전문역사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그의 영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역사이야기 책인 '제주역사기행(한겨레신문사 발행)'과 '제주4.3을 묻습니다(신서원 발행)'를 발간하여 '제주4.3사건'과 '제주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고 있다.

이처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른 '제주역사와 4.3'을 알리고자 전교조 제주지부 주관으로 교사 자율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다가 '제주4.3특별법' 제정과 '4.3진상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공교육을 주관하는 제주도교육청에서도 '4.3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웅변, 문예, 현장답사 등 '제주4.3사건'에 대한 체험적 교육을 활성화 해나가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도민의 한결 같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추구와, '제주4.3연구소', '도민연대', '제주도의회', '지방언론' 등에서 끊임없이 21세기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제주의 평화를 보장하고, 주변도시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제주4.3사건의 재조명'이 필요함을 적시해주었고,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어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주

관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4.3교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역사회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러한 것은 ‘제주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연스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이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는 전쟁 등 폭력이 일어난 이후가 아닌 평소의 일상에서부터 심어줄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4.3교육주간’ 등을 활용한 특별한 활동으로 공인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 교재가 있거나 공식적인 교과시간이 배정된 공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학교 과목으로 운영되는 곳은 제주대학교의 교과과정이다.

제주대학교에서 공인된 과목으로는 대학원 과정으로 행정학과에 고창훈 교수의 ‘제주4.3과 세계평화론’이 있으며, 학부과정으로 e-러닝강좌에 박찬식 4.3연구소장과 유철인 인문대학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제주4.3의 이해’가 있다.

고창훈 교수의 ‘제주4.3과 세계평화론’ 강좌는 2005년부터 1년에 한 학기씩 개설되어 시행되었다. 그 내용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4.3사건’은 지역의 소수자들(제주도민)이 권리로써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주장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한 운동으로써 저항을 했던 항쟁으로 과거사적 의미가 있다.

② 그 결과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양민이 대량으로 희생을 당하였고 연좌제 등으로 침묵을 강요당했던 수난으로서의 현재적 의미가 있다.

③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진상규명 운동을 통해 사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소수자의 인권운동으로써 의미가 있다.

④ 그리고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제주지역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평화의 섬’ 이론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고창훈, 2007 : 3-59).

이러한 강의는 소수자권리운동으로써 ‘제주4.3사건’에서 세계평화로서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현상학적 탐구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주4.3사건’을 극복하는 ‘평화의 섬 이론’을 부분별로 적용시켜 2001년 4월 ‘제주4.3사건’에서 인권과 평화근거를 찾는 노력으로 제1회 ‘Peace Island Forum’을 창설하여 2009년 8월 제9회 대회까지 지속적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3년 4월에는 하버드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와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로써 ‘제주4.3사건’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루어 내고 있다.

2007년에는 ‘평화섬 이론’을 교육분야에 적용시켜 ‘Peace Island School’을 개설하였고, 이를 계속하여 2010년에는 제4차 스쿨을 열어 국제평화대학원으로서의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을 극복하고 평화교육의 세계화를 제시하여 나가고 있다. 4.3극복의 ‘평화섬 이론’으로 제시된 ‘평화섬문화올림픽(Peace Island Culture Olympics)’ 역시 ‘섬 문화’의 평화적 연대를 목표로 하는 국제축제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세계섬학회, 2009).

박찬식 ‘제주4.3연구소장’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유철인 교수가 공동운영하는 ‘제주 4.3의 이해’는 e-러닝에서 강의하는 교양 강좌로서 강의진행은 강의, 질의, 토론을 하거나, 관련 동영상 및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해 하고 있다.

강의용 주교재로는 박찬식의 ‘4·3 길잡이’와 ‘4.3과 제주역사’, 제주4.3위원회의 ‘제주4·3진상보고서’가 있으며, 참조교재로는 ‘제주4.3위원회’의 ‘제주4·3사건자료집’, ‘제민일보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제주4·3연구소’의 ‘제주4·3유적’, ‘4·3범국민위’의 ‘제주4·3연구’, 양정심의 ‘제주4·3항쟁’ 등이 있다.

교수계획 및 학습목표로는 4·3사건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지역대중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4·3사건의 배경·전개과정 및 결과·역사적 의의 등을 정리할 줄 알게 하고, 4·3사건의 피해실태와 4·3사건의 진상규명 과정, 그리고 역사적 기억 방식 등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현대사와 4·3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게 하며,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료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사료 비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4.3의 이해’를 통하여 기대되는 학습 성과로 4·3의 진실에 대한 개설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현대사 속에서 4·3이 차지하는 위상 확인하고, 4·3의 기념과 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와 4·3을 통한 제주역사의 특성과 구술사·문화사·사회사의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박찬식, 2009, 강의계획서).

그러나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4.3평화공원’을 보고 좌익의 이념 교육장쯤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진정하게 평화를 원하고, 인간 생명의 존귀함이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각 개인의 마음속으로 깊게 공감할 수 있다면, 이는 통일을 위한 따뜻하고 튼튼한 공감적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사람 이외에도 타시도 사람, 또는 외국인을 향해서 ‘4.3평화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과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4.3평화교육’은 다음 항목에서 보듯이 이념을 초월해서, 비폭력, 생명, 적법절차, 다양성과 소수인권, 대안탐색, 주변도시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교육 방안이 ‘제주4.3사건’과 연계하여 교육되어 져야 할 것이다.

3) ‘4.3평화교육’의 향후 방안

박종대(1995 : 11)는 지나온 역사를 반추해 볼 때 갈등은 더 큰 고평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대립은 더 큰 화해를 위한 것이었고 투쟁은 더 큰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이 ‘제주4.3사건’은 더 큰 평화심을 만들어 내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유하면,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4.3진상규명’은 아직까지 흠 속에 묻혀 있던 ‘평화의 씨앗’인 ‘제주4.3사건’을 발아토록 해주는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4.3진상규명’을 가능케 해준 것은 ‘제주4.3특별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4.3진상규명’을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고, ‘제주4.3사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진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그 동안 공산폭동에 대한 진압으로만 알았던 ‘제주4.3사건’의 실체가 국가형성기의 인권탄압이었으며,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⁶⁴⁾

64) ① ‘제주4.3특별법’ 제정기념 제주도민 한마당(1999년 12월 27일)을 여는 자리에서 임문철씨(4.3연대회의 공동대표·서문성당 신부)는 “이제 4·3의 갈등은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며 “제주도를 생명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평화의 섬으로 바꾸어가자”고 말했다.

② ‘제주4.3특별법’을 서명(2000년. 1월. 11일)하면서 당시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이 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③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를 발표(2003년 10월 31일)하면서 당시의 대통령은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되도록 전국민과 함께 돕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자고 했다.

④ 이제 폭력은 탐욕(이념, 종교, 사상 등의 독점)에서 나오고, 평화는 다양한 생각(이념, 종교, 사상 등의 평화스런 어울림)과 인종, 생태환경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생명과 생태 그 자체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각 개인의 마음,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제주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을 찾는 인사들의 방명록을 들여다보면 ‘화해와 상생, 세계를 향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2003년 10월 31일 제주평화포럼에서 당시의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역설 했듯이(제주투데이, 2003년 10월 31일), 우리의 인류역사는 ‘폐쇄’, ‘대립’, ‘갈등’, ‘억압’, 그리고 ‘폭력’에서 ‘개방’, ‘공존’, ‘화합’, ‘평화’, 그리고 ‘인권존중의 사회’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전 시대 보다는 보다 더 열려 있는 사회로 가치변화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도 매년 3-4월중에 ‘4.3교육주간’을 설정하여 초·중·고등학생, 유치원과 초·중·고교선생님을 대상으로 ‘4.3의 올바른 이해’와 ‘평화·인권·통일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⁶⁵⁾, 이는 평화의식 확산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

행정적으로는 ‘제주4.3사건’의 아픈 역사를 ‘화합과 상생’을 통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제주4.3평화재단’을 2008년 11월 10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제주4.3평화재단’은 앞으로 ‘제주4.3사건’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 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4.3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는 ‘제주4.3평화공원’관리, ‘4.3평화기념’의 운영,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3관련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육 사업 등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현장을 보면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은 ‘너’부터가 아닌 바로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폭력’이나 ‘전쟁’의 시점이 아닌 바로 ‘평시’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교육되어 지고,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평화를 위해서 평소 전쟁을 대비하여 군비 비축과 정치력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늘리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화교육으로 폭력이나 전쟁이 방지되면 그 만큼(전쟁을 대비하거나 전쟁에서 이기려고 투입했던 정치력, 행정력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양)의 희생이나 소모가 덜어지고 평화교육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의 안녕은⁶⁶⁾ 가치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⁶⁷⁾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 모두가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4.3의 해법이라 할 수 있다.

6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59주년 4.3교육주간 계획서 참조

'평화'를 늘리는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현행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내용에 비추어 평화교육의 공통적 요소 9가지를 다음 【표 2-6】 '4.3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 구성표(1)과 【표 2-7】 '4.3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 구성표(2)와 같이 추출하였다. 그 결과 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로는 '비폭력능력 향상', '생명의 존엄성', '적법절차의 중요성(실질적 법치주의)', '불의에 대한 저항', '다양성 존중', '이념적 틀 깨트리기', '대안탐색과 협상력 향상', '주변도시 등과의 교류', '소수인권의 존중'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소주제를 기초로 하여 다음 항에서 이론적 검토를 더 거친 후에 이 연구의 외생변수로 확정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교육의 소재를 추출한 이유는 '제주4.3사건'이 발생 및 탄압, 항쟁 및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열려있는 평화 개념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친일 및 극우세력, 일부 좌익, 중도 민족적 감정의 도민 등이 오직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만이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다른 가치의 소유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데서 발생한 불운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여된 기능을 관조하고 반성하는 학습을 통하여 평화관념을 회복하는 작업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6) 개인이 인생을 통하여 얻어내는 행복감, 만족감은 주관적인 정신적 가치로서 재화나 사회적 지위를 얻어 내는 것으로 비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공동체는 고도의 개인주의화로 향하는 것을 예방하며, 자발적 이타심의 발로에 의한 자연스러운 사회로 유인할 수 있어, 완전 자유경쟁으로 과편화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사회적 안녕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7) 물론,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어떠한 지도자의 비인간적인 도발 행위에 대비하여 최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비축도 당연히 필요하다.

【표 2-6】 ‘4.3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 구성표(1)

평화교육 소재	4.3의 이해 ⁶⁸⁾ (제주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러닝 강좌)	4.3과 세계평화 ⁶⁹⁾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대학원생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상(계기교육)	
			제주도교육청 ⁷⁰⁾	전교조 ⁷¹⁾
(A1) 비폭력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후 인민위의 자치권 정착 - 미군정의 제주도 승격 후 자치권 억압 -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 불만 - 4.3의 진상 확인(평화와 인권에의 구축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현의 평화의 섬 선포 의미 - 대학과 학부에 평화 school 개설 필요 - 4.3데모-비폭력적이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청 등 경찰력 확대 - 4.3발발 전 도민 2,500명 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청년단의 횡포 (4.3의 발발원인)
(A2) 생명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유적지, 학살터 방문하기로 생명의 존재성 깨닫게 함 - 4.3사건 논의 금지와 비극적 상황의 기억(순이 삼촌) - 초토화 작전(중산 간 100여 마을 방화와 학살자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필요 - 4.3인식변화과정은 폭동에서 인권과 평화로 변화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도화선으로써 3.1발포 - 총과업가담자 검거, 고문과 구타 - 하산 선무공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청년단의 횡포 (생명의 경시, 모리행위)
(A3) 적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의 불법성 - 재판도 없이 학살과 대살 집행(제주는 죽음의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의 불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협상 방해 - 불법계엄령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법 없는 계엄령 - 계엄령,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제도로 잘못 인식
(A4) 불의에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항쟁의식(저항정신) - 48.4.3 무모한 무장봉기 - 48년 초 핵심간부 대거 검거로 좌익조직 궤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저항 투쟁방법을 해야 하는 데, 4.3 당시 젊은 층에 의해 무모하게 무장투쟁을 하게 됨, 이는 비판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총과업 - 무장봉기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정에 의해 되살아난 친일파와 서청세력은 도민에게 악행을 냄 - 서청 등의 악행으로 도민들은 인민위원회를 지지함
(A5)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과 제노사이드(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 무력화 방법) - 학살의 명분(빨갱이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성, 민주화 필요(송재우역, 마이클왈찌 지음, 관용에 대하여) - 섬사람의 관용성, 평화섬 실천전략 - 섬민주주의 실천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연대의 진압작전(초토화 작전) - 예비검속의 비극 - ‘평화의 섬’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지와 제주 구별의식(섬눈, 육지꼴) - 동족의식 결여는 폭력을 낳게 함)

68) 박찬식, (2009). ‘제주4.3의 이해’, 강의표와 참조교재.

69) ① 고창훈 교수의 강의(4.3과 세계평화) 등 참조.

② 마이클 왈찌, (2004). 송재우 역, ‘관용에 대하여’. 서울 : 도서출판 미토.

③ 이문영, (2006). ‘협력형 통치’, 열린책들.

70) 제주도교육청,(2008).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외 3종의 장학자료 참조.

71)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인터넷 자료. 전교조의 ‘4.3교육주간선포’ 문안 참조.

평화 교육 소재	4.3의 이해 (제주대학교 등 도내 6 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닝 강좌)	4.3과 세계평화 (제주대학교 대학 원 행정학과 대학 원생을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상(계기교육)	
			제주도교육청	전교조72)
(A6) 이념의 초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검속에 의한 희생자 다수 발생(1,000여 명을 수장, 총살, 암매장) - 폭동과 항쟁(이념의 대립) - 정치지도자의 이념 갈등(통일국가 수립 방해됨) - 미소의 분할점령(분단의 시작) - 연좌제 피해(공무원 및 교사임용, 사관학교지원, 일상생활감시, 신원조회 등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바라 봐야함 - 4.3은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근거 없음 - 박갑동의 4.3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조작된 글임을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폐된 제주4.3 역사 - 미소의 분할점령 - 연좌제 피해 - 특별법 제정과 4.3위원회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올로기로 윤색 금지, - 진실 그대로 남겨야 역사의 반복 억제됨 - 4.3은 공산주의 개입 주장 사실무근 - 공산반란론은 조작된 것으로 주장(김익렬) - 박갑동의 4.3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조작된 글임을 밝힘
(A7) 대안 탐색과 협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을 전도민적 반란으로 인식 - 협상과 대안 강구 없이, 배제와 숙청의 논리 전개(초토화 작전) - 위령과 기념 - 실존적 생명의 중요성 - 진상규명(평화섬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이끄는 국제기구 제주유치 - 합의에 의한 국가통합이 필요 - 4.3을 반성하며 이문열의 협력형 통치 방안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봉쇄 및 강경진압 - 오라리 방화사건 - 4.3연구소 발족 - 제주4.3진상보고 - 정부의 공식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익렬 연대장 해임 - 오라리 방화사건 조작 - 4.3연구소 발족 - 제주4.3진상보고 - 정부의 공식사과
(A8) 세계와 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교류는 '평화의 섬' 보장법 - 섬은 모든 문화의 출발지역임 - 4.3의 교훈에서 섬 문명 재건이 필요 - 4.3은 인권개념과 세계평화의섬 정책을 연결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
(A9) 소수 인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어린이, 노인, 여성 구분이 없이 학살 (4.3인식 변화 양태) - 이승만 정권(폭동), - 4.19(양민학살) - 5.16(폭동), - 80년대 민주화(민중항쟁) - 4.3특별법 : 주민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인권보장 필요 - 소수집단을 탄압한 제노사이드임 - 4.3을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규명활동 - 4.3평화공원 - 백조일손지묘 - 첫알오름 총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보호와 타인멸절의 행동논리가 학살을 낳게 함

72)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인터넷 자료. 전교조의 '4.3교육주간선포' 문안 참조.

【표 2-7】 ‘4.3평화교육’의 9가지 소재 구성표(2)

평화 교육 소재	4.3연구소 ⁷³⁾			4.3진상조사 보고서 ⁷⁴⁾ (각 급의 교육에 공통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2009년 역사 문화교사교육 프로그램	2008년 4.3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2009년 4.3역사 문화교육연수, (교사 직무연수)	
(A1) 비폭력 능력 향상	-4.3의 진실 찾기 운동	-4.3과 제노사이드-최호근(고려대) -일본군 군사시설과 제주, 그리고 4.3-이윤형(한라일보)	-4.3의 전개과정과 결과 (이승만의 강경진압 진두지휘, 5.1오라리 방화사건과 5.3기습사건, 그리고 메이데이 등)-양조훈	-서청단원의 과도한 행동은 4.3의 발발원인
(A2) 생명 존중	-4.3유적지, 학살터 방문하기로 생명의 재성 깨닫게 함	4.3학살 및 피해실태-김종민(4.3중앙위원회) -4.3과 제노사이드-최호근(고려대)	-제노사이드와 역사교육-김기봉 -대량학살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살아남기 위함)-권귀숙 -4.3유적지 현장답사-오승국	- 북촌리 주민집단총살사건 처럼 남녀노소 불문 학살함. - 100명이상 학살부락 45개소 - 중산간 초토화 작전, 가옥39천여동 소실, 2만여 명의 중산간주민을 산으로 내몰게 됨
(A3) 적법 절차	-계엄불법성	-4.3학살 및 피해실태-김종민(4.3중앙위원회) -4.3과 제노사이드-최호근(고려대)	-4.3의 전개과정과 결과 (학살과 초토화 작전)-양조훈	-계엄의 불법성 -형식적인 4.3군법회의 -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범죄행위임
(A4) 불의에 저항	-4.3의 진실	-망각에 저항하는 정신-현기영(소설가) -제주근대사의 민란과 항일운동-조성윤(제주대)	-4.3의 전개과정과 결과 (4.3봉기)-양조훈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실책)
(A5) 다양성 존중	-	-	-	-
(A6) 이념의 초월	-분단과 냉전체제의 인식 -4.3의 진실	-4.3의 진실-김창후(제주4.3연구소) -분단체제의 이해-박명립(연세대)	-4.3과 미국(반공국가 건설, 5.10재선거, 대량학살)-허호준	- 토벌대(80%이상)와 무장대(12%이상)에 의한 사망(이념 초월 필요) - 연좌제와 레드콤포렉스(이념에 구속) - 제주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
(A7) 대안 탐색과 협상력 향상	- 4.3의 진실 찾기 운동	-	-	-오라리방화, 평화협상 결렬 -미소위원회 결렬 -불행한 사건을 기억, 교훈 - 역사에서 폭력 재현성 억제
(A8) 세계와 교류	-	-	-	-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 한반도 평화,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로 작용(교육필요)
(A9) 소수 인권 존중	- 과거사 청산과 인권과 평화 (4.3은 제노사이드)	- 4.3과 평화, 인권-서중석(성균관대)	-과거사 청산과 평화, 인권(4.3은 제노사이드)-최호근 -대량학살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굴욕적 기억 억누르기)-권귀숙	- 도피자 가족 대살 - 연좌제(소수인권 배제) - 어린이와 노인 등 살해, 중대한 인권유린

73) 4.3연구소 자료 참조(jeju43.jeju.go.kr).

74) 제주4.3위원회, (2003). 4.3진상보고서 참조.

3. '4.3평화교육'의 내용

1) 비폭력 능력향상

곽준식(2001: 7-15)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며,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고차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비폭력주의의 근본주장이다. 고차적 행위의 일례로 신앙적 수준의 비폭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앙적 수준의 비폭력은 폭력이 계속 폭력을 부르는 폭력의 연쇄작용을 파기시켜 버릴 수 있다(Jurgen Ebach, 김형기 역, 1988 : 75).

여기서 비폭력(non-violence)은 갈등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애정, 동정, 자비, 관용, 봉사, 인권존중, 평화, 자연적인 조화로움 등을 조장할 수 있어 폭력의 상대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들어 있는 공격적 심리를 순화시키면서 오히려 비폭력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평화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간디나 킹의 비폭력을 들 수 있다. 간디의 비폭력은 원수에 대한 사랑(아힘사)이고, 이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 일체의 것을 변질 시키며 그 한계는 없다는 것으로, 우주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M. K. Gandhi, 1927 : 38-39 ; 김선근, 57-70에서 재인용),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저항은 기독교적 사랑(agape), 영성, 사랑의 원칙과 같은 개념이다(Hanigan, Martin Luther King Jr., 214 ; 강인한, 2002 : 61-93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디나 킹처럼 우주적 사랑 또는 기독교적 사랑 보다는 보다 완화된 비폭력 심정으로 내면의 공격적 심리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비폭력을 의미하며, 비폭력은 동정, 관용 등을 배경으로 하면서 대량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확실하게 소속 국민에 대하여 폭력적이었으며, 제주도민들도 '탄압이면 투쟁'이라는 신념하에 비폭력적 저항을 취하지 않았다. 만일 이 당시에 비폭력적 저항으로 일관했다면 적어도 대량학살만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미군정기 때는 국가의 기능을 폭력으로 확립하고, 냉전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폭력을 확대해나간 시대였다. 즉 미군정은 일제하 사법부에 근무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친일파로 간주됨을 알고서도 그들을 대부분 유임을 시킨다(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1986 : 269). 그 이유는 일제하에서 한국인 경찰이 일본인을 위해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 미군을 위해서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일제경찰 소속의 한국인 경찰은 80%나 90%가 도망치거나 숨어버려 경찰기능은 마비상태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준 산하의 치안대가 있어, 중앙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보다는 지역인민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1986 : 274).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그리고 그를 통해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과 이에 대한 민중들의 높은 지지, 미군 주둔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던 정국 상황은 한반도가 자생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건국할 충분한 역량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국사편찬위원회, 1973 : 21-22),⁷⁵⁾ 처음 두 달 동안 이들 단체는 독보적이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공은 군정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통제권을 행사했고, 공식정부는 비어 있거나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지역 인공그룹은 임시정부 역할을 하여 행정기능을 담당했다(Carl Friedrich et. al., 1948 : 369).

하지만 1945년 9월 미군정이 들어온 이후에 사태는 급변하게 된다. 즉 미군정은 8.15해방 뒤 친일파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우리 민족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역사학연구소, 1999 : 242). 미군정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인민위원회를 해체할 목적으로 중앙집권적 경찰을 조직하는데, 그 조직의 구조에 응집력 있는 친일경찰을 재기용하였다.

이로서 친일 경찰들은 자신의 안전보호를 위하기 친일파를 추방하거나 처벌하려는 어떠한 정치집단도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1986 : 274-275)⁷⁶⁾ 민족정기를 결집하면서 국가를 건설하려는 길을 막아버린다. 이

75)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8,453명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의 선호도에서 자본주의 14%(1,189), 사회주의 70%(6,037), 공산주의 7%(574), 모른다 8%(653)로 당시 시민들은 공산주의를 선호하지 않았으나 사회주의를 선호하였으며(동아일보, 1946.8.13). 또 조선신문기자회가 1947년 7월 3일 실시한 서울시민 2,495명에 대한 가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재확인 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73 : 21-22 ; 동아일보, 1946. 8. 13 ; 조선신문기자회, 1947. 7. 3 ; 이영권, 2007 : 91-95 재인용)

76) 그러나 일본에 있었던 중앙집중식 경찰은 한국에서와 달리 재일본 미군정에 의하여 해체되는 데, 이는 우익국가형성과 중앙집중식 경찰의 존속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1986 : 274-275)

는 오랫동안 친일청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였고, 일제시대 보다 더 가혹한 폭력을 해방 후 공간에서 실행하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제주4.3사건’ 당시의 서청(서북청년단을 의미)과 경찰의 폭력성을 보면 항쟁의 발생은 미리 예견될 수 있었다.⁷⁷⁾ 당시 국무총리인 이범석의 발언에서도 제주에서 4·3항쟁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과 서청의 가혹한 폭력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역사연구회, 1999 : 161).⁷⁸⁾

북한의 지배질서 역시 기본적으로 ‘적’인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 것을 최상의 국가이념으로 하는 폭력체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생명의 존엄성

허상수(2006: 75-97)는 ‘제주4.3사건’의 인권정신은 생명권의 신장에 두어져야 한다고 했다. 생명권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 바탕을 구성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 2004 ; 2006: 75-97)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고,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생의 윤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지 않다면 그 밖의 어떤 것도 신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생

77) 주한미군보고서에도 “당시 대부분의 폭력 행위가 우익청년단에 의해 저질러졌고, 새로 결성된 대동청년단 또한 다른 우익 단체처럼 테러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할 정도로 우익단체에 의한 백색테러가 기승을 부렸다. 경찰의 폭력 또한 제주도민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1947년 12월에는 제주도 방첩대조차 “제주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립 경찰 당국이 제주도 경찰에 대해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유희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할 정도였다(NARA, RG 407. Box. No. 18342).

78) 우익 청년 단체는 월남인으로 구성되어 테러와 정치하수인으로 악명 높은 서북청년회, 미군정의 전적인 지원 아래 침병역할을 한 이범석 주도하의 조선민족청년단, 이승만의 산하에 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 군소청년단을 통합한 이청천의 대동청년단, 광복군에 복무했다 해방과 동시에 온갖 암살을 주도한 염동진 주도의 백의사와 이의 후신인 유진산이 관여한 대한민주청년동맹 등으로 이들은 46년 10월 항쟁 이후부터 전국각지에 걸쳐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 미군정의 경찰과 함께 또 비호 하에 해방공간을 암살과 살해 및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테러집단들이었다. 당시 우익 청년 단체들은 미군정과 야합하여 미군정 경찰이 외부의 비판을 우려해 수행하지 못한 ‘더러운 일들’ 곧, 암살과 살해 등을 자행했다. 당시 조선공산당의 박갑동의 증언처럼 경찰에 잡혀가면 안심이 되었지만 테러단체에 잡히면 끝장이란 증언이 당시 상황을 대변한다(김수자, 1999 : 161).

명의 존엄한 근거로는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쉽게 간주할 수 있는 것 그 자체에서 나오며,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그 존엄성의 근거를 ‘생명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중요하다라는 휴머니즘은 우선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실존의 존엄성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서 신과 유사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다(김영필, 이강화, 1996 : 180).

다니엘 칼라한(D. Callaghan)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개념 중에서 인간에게는 자기 동료인 다른 인간을 보호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나, 인간에게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으며, 또한 생명을 파괴하거나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 또는 정치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만들어 낼 권리조차도 주어지지 않다고 한다(이근원외, 2006 : 183 재인용).

노자 또한 국가를 빙자해 인간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도덕 사상을 갖고 있었으며, 그 도덕사상에서 생명은 도덕의 것이지 의지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 사상은 인간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 곧 노자의 도덕 사상이다. 즉 그는 목숨을 성명(性命)이라고 한다. 성은 하늘이 내리고 명은 땅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천지가 준 목숨을 어떤 인간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윤재근, 2006 : 158-159).

권용운·민병기(1998 : 57)도 인간다운 삶의 다양한 조건 형성에 이바지 하는 여러 영역의 교육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사상 위에서 다양한 강조점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를 존중하는 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삶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 대 인간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인간 대 생태환경 구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Hicks(Hicks)도 자아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생태학적 관심, 열린 마음, 성문제, 인종문제, 평화문제 등은 평화교육의 학습목표라고 보고 있을 정도이다(David Hicks, 1988 : 13 ; 고병현, 1994 : 13 재인용).

독일에서도 생명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사회의 생존권과 고유성을 중등학교의 평화교육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정영수, 2001: 163-183). ‘생명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화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 당시 대량학살을 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미군의 철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제주의 저항을 초토화함으로써 대신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를 얻어내고자 했다. 대통령으로서 자국 국민의 생명보다 미국의 원조를 더 중요시 여겼던 셈이다. 생명의 존엄을 버린 이승만은 민중저항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 1949년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 장관과 내무장관에게 제주도와 전남 등지를 철저히 소탕하라고 지시했다(제주4·3위원회, 제26회 국무회의록 : 23).

1949년 겨울을 나면서 제주지역에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으로 많은 인명을 살해한 후에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지역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예비검속을 불법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예비검속 희생자들 대부분은 ‘제주4.3사건’이나 좌익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무고나 밀고, 경찰과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예비 검속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와 다른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제주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 8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700여 명을 검거했다고 주장했다(이도형, 2000 : 43).⁷⁹⁾ 또한, 전쟁 발발 당시 제주에서 이송된 4·3사건 관련 재소자는 일반 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양정심, 2005 : 134).

3) 적법절차의 중요성

왜 ‘4.3평화교육’에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당연한 요청이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여 시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근대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최양수, 1993: 1-20). 4.3대량학살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은 국가권력 행사에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토화 작전을 위해 오로지 내세운 법적근거는 계엄이었고,⁸⁰⁾ 계엄이면 재판

79) 이 외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경찰문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4일 당시 제주도 각 경찰서에 예비 검속된 인원은 84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제주신보, 1950년 8월 26일).

80) 계엄법은 없었음,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쉽게 처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관념 속에만 있는)계엄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음.

도 없이 즉결처형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던 것을 보더라도(김순태, 1988: 147-179) 적법절차가 평화보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증명을 시켜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김명규(1990 : 129-142)도 적법절차는 “우리들의 시민생활제도, 또는 정치제도 기초에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의 한계”라고 하듯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 할 수 있어 당연히 평화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체계에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적법절차의 위반사례를 보면, 이승만은 1948년 11월 17일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재판 없는 대량학살을 유발해냈고, 특히 전쟁 중에 북의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판단을 구실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는 법치원리상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이다.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 적지 않게 무작위로 잡아들인 주민이었다.

즉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전국의 지역마다 처형 대상자의 숫자를 할당하여 그 할당된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잡이로 잡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4.19 이후 형성된 민주국면에서 유족회가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죄 없이 희생된 사람 수가 114만 명이라고 하고,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략 30만 명 이상이 이때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때 제주도에서도 1,000명 이상이 다시 희생되었다고 한다(이영권, 2008 : 379-380; 서해문집, 2007: 40).⁸¹⁾

이러한 불법의 예비검속과 양민학살은 헌법정신을 짓밟으며 국민을 무단으로 살해했음을 보여주며, 반정부 게릴라가 될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명백히 불법 처형이었음을 부인할 길은 없다(동아시아평화인권한국위원회, 2008 : 97 ; 김기진, 2002 : 167 ; 이영권, 2008 : 379).⁸²⁾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에 의하여 반법치주의가 성행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폄하하

81) 당시에 죽어간 보도연맹의 숫자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 범위의 학살이었다는 점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직적인 지휘명령계통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동아시아평화인권한국위원회, 2008 : 97).

82) ①헌법정신을 짓밟으며 국민을 무단 살해, 총살 및 생매장, 명백히 불법처형이었음을 부인할 길은 없다(동아시아평화인권한국위원회, 2008 : 97). ②예비검속은 양민을 불법 감금하여 ‘빨갱이’로 조작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하거나 석방을 구실로 가족에게 금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김기진, 2002 : 167). ③불법학살 및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 명백한 범죄행위임(이영권, 2008 : 379).

는 등 헌법과 법치를 경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법규범 일반을 존중하고 특히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자유시장경제도 달성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다.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은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고 선진국 국민이 될 자격이 생긴다(박세일, 2008 : 202-203).

사실 법치주의는 법률을 인권의 보호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즉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따르면서도 그 법률내용이나 목적이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김영수, 2006 : 418).

그러나 미군정기 내내 자행되었던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입법과 정치적 고려를 중시한 법집행, 주한미국사령관과 군정장관의 전권행사와 전횡으로 인한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 미발아 등은 한국법률문화는 물론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왜곡을 가져왔다(김영수, 2006 : 830).

즉 시민의 지지가 없는 법규로 강제집행을 함은 법집행 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정당성에도 도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실질적 법 규정은 지역주민의 자치 의지에 의한 동의와 지지가 중요하다.

4) 불의에 대한 저항

역사 이래 수많은 침략세력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끝내는 자기 무덤 속을 향해 뛰어들곤 하였다. 이는 침략이 확대되면 될 수록 그에 대한 저항세력 또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조직사회, 국가사회 등에서 개인(리더, 국가)이 과도한 독재적인 욕심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자유주의 법학자 존 롤스는 ‘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의롭지 못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도덕적 의무로 강조했다. 시민불복종이 성립되기 위해서 ①불복종 행위가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의 행위이고, ②가능한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 ③불복종 행위가 헌법질서의 기능을 위태

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쉬러 슈프링고름은 불복종을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적으로 근거 지워진 상징적 항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의 의식적인 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기 위해서 ①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의식 있는 법 위반으로 나타날 것, ②공공성을 뺀 것, ③정치,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일 것, ④중대한 불법에 항의하는 행동일 것, ⑤수단이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성을 지닐 것을 제안했다(인권오름, 2006년 8월 17일)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4월 23일 ‘홀로코스트’ 기념식에서 독일나치 통치하에 6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된 사실을 지적하고, 사람들은 이를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가 증오와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소리, 2009년 4월 23일). 다시는 이러한 대학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의의 억압, 폭정, 또는 학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은 순수하고, 당연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 제정50주년 해인 1998년 유엔총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단체·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결의안 53/144)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인권침해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내법에 의해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인권오름, 2006년 8월 17일).

우리 근대사에서도 동학농민 전쟁은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과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남겼다. 그것이 보여준 자주 개혁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의 정신적 자산으로 남아 있다(김영명, 2008 : 32). 이러한 자산은 3.1민족항쟁으로, 해방 후 반미반정항쟁으로, 4.19항쟁으로, 80년대 민주화 항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민중과 적지 않은 인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불의에 대한 저항운동을 기꺼이 실행해오고 있다. 오늘의 우리는 다리를 뺀고 자고, 배를 주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이들 선조들이 꾸준히 불의에 저항하거나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이화, 1997). 이러한 정신을 어린 학생들에게 갖들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4.3사건’ 중 1947년 3.1절 행사 및 단선 단정 반대운동 등의 저항정신은

‘4.3평화교육’의 소재로서 필요한 가치이다.

1947년도 유혜진 제주도지사의 부적절한 행정 운영과 좌익으로 몰아가면서 무조건적인 탄압을 함으로서 제주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이와 같은 견해는 제주도 민정장관의 참모인 스티븐슨은 “유 지사가 ‘한민당’이나 ‘독촉’의 의견과 달리하는 인사를 좌익분자로 분류하는 극우의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며 극우단체의 테러와 경찰의 좌익탄압이 제주도민을 좌익으로 기울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슨은 더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현 정치상황이 비교적 조용하지만 중도 및 온건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이들 단체를 극좌로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파괴 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극단적인 상황을 지적했다(A. Nelson, 1947. 11. 21 ; 양정심, 2005 : 57-58).

해방 후 제주도의 우파와 좌파세력, 인민위원회와 미군정은 아주 온화하고 협조적 관계였으나, 1947년부터 미군정의 의도적인 좌익탄압과 우익강화정책에 따라 군정 내 극우인사의 총원 및 우익의 불의와 폭력을 방조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고 가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하여 학살과 탄압을 해 나가게 되었다(정해구, 1988 : 180-204). 이렇듯 ‘좌익으로 몰고 가는 덩’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제주도민들은 군대에 지원을 하거나 4.19후 ‘4.3진상 규명’ 운동 시에는 무고히 학살된 양민의 원령을 풀면서도 좌익세력에 역이용 당하는 것을 무던히도 경계하였다(제주신보, 1960년 5월 25일).

5) 다양성 존중

미국이 한국에 진출한지 한 달 후, 맥아더의 참모들은 한국 내 주요 지휘관들에게 점령의 제일차적 임무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지시를 보냈다(서대숙 외, 1982 : 34-55). 이처럼 당시 미국의 정책집단은 완고한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들의 눈에 비치는 곳곳의 다양한 형태의 변혁운동은 단순히 소련의 세력팽창을 위한 기도로만 여겨졌다.

불행하게도 미군정은 이러한 편견으로 인하여 당시 실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한 민중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사실상 소련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반드시 공산주의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이영권, 2007 : 91-95 ; 동아일보, 1946. 8. 13 ; 조선신문기자회,

1947. 7. 3 ; 국사편찬위원회, 1973 : 21-22)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반공주의 편견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한국 민중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망에 대해 불필요한 적대감만을 유발시키고 말았다(박세길, 1994 : 49-50).

당시 하지장군 자신도 남한에서의 급진적인 운동이 소련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조이스 콜코·가브리엘 콜코 ; 서대숙외, 1982 : 37) 정치적 편견에 의하여 남한의 운동을 소련의 사주라고 믿게 되었다.

이처럼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가치만을 실현하려는 데서 갈등과 폭력이 나타난다. 이는 자기중심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가치는 배척해야 될 것으로 굴절시켜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평화교육을 위한 소재로서 필요한 가치이다.

지금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개인의 명리추구는 타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게 된다. 즉 삶의 가치는 자기를 위하여 많은 것을 얻어내고 쌓아놓음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라고 탐내는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의 충족 정도가 낮아져 불만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강박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김정빈, 1997 : 99-104).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얻고자 하는 욕구보다 남에게 베풀고 보살피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참자아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처럼 자기만을 위하는 것 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가치, 다양한 사상, 다양한 신앙, 다양한 취미 등이 존중되고 어우러질 때 평화적인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원복(2007 : 15)도 지구촌의 '평화'는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에 대해 살펴보면서 삶의 모습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체계는 자본과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해소시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

6) 이념적 틀을 깨트리기

대규모 집단 학살에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 이데

올로기는 그것을 확산하는 사람에게 학살의 동기를 제공하고, 학살을 주저하는 사람에게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위안을 줌으로써 학살에 가담하도록 돕는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양정심, 2005 : 151-152). 따라서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평화교육의 소재로서 필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김동춘(2002)은 1946년 이전에는 정치테러, 폭력, 학살의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시대 문인 지배의 역사적 전통을 가진 한국인들은 이웃 일본에 비해 훨씬 비폭력적인 민족이었으며 친절하고 점잖고 유순한 국민이었다고 하며, 올리버가 한국인을 바라보는 입장을 보면 ‘외국인 누구나의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들이 온후하다는 점인데, 이것 또한 한국인의 기질을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으며, 낙천주의가 한국인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왜 1946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테러와 학살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었는가? 김동춘은 그것은 정치폭력이었다고 한다. 한국정치에서 국가내의 ‘실제적인 적’, ‘잠재적인 적’에 향해진 폭력과 적의(敵意)는 한국전쟁 종료 이후에도 계속 조장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구성원 역시 그러한 적대감을 내면화하여 왔다고 한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생각은 바로 빨갱이와 국민의 적대적 대립의식에 기초하는 것이고, 혈육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빨갱이라면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 그리고 국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빨갱이와 한 가족인 한 빨갱이로 취급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고는 이미 ‘제주4.3사건’ 당시의 초토화 작전이나 전쟁 중 부역자 처벌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한다. 따라서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 ‘반역자는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바로 좌익계에게는 물론 그들과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가족과 친척에까지 적용되었다. 이는 절대 군주국가에나 있을 법한 ‘삼족을 멸한다.’ 라는 반체제사상에 대한 처벌은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국민국가에도 적용한 정치적 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김일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주로 보고 그 반대자를 처벌하였던 것도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김동춘은 ‘반란 혹은 부역’이라는 담론은 군주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의 관계가 유지되는 군주국가에서의 지배-피지배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따라서 법치국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한다(김동춘, 2002 : 242-282).

‘제주4.3사건’ 당시 대량학살은 순수한 이념적 사고의 대립을 수단으로 하여 친일세력(미군정과 이승만지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하여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의도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이영권(2007: 79-81)은 당시 경제공황과 제국주의 침략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모순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각한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당시 양심적 지식인들과 식민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성향은 소련이나 북한 형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부의 균등분배 및 약자보호 등 평등을 앞세워 자본주의 병폐를 시정하고자 하는 체제로, 이러한 시도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좌파적 가치가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한다.

반면 당시 극우는 친일인맥의 극우로서 마치 보수(우파)인양 가면을 쓰고 행세하였는데(이영권, 2007 : 82-84), 이는 친일세력들이 자신의 면죄부를 확보하고 그들의 살길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좌우이념을 조장하면서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해 나갔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은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 무려 16,000여 명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이 들의 대부분이 자칭 타칭 사회주의자였다. 이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 아래에서도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이라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서해문집편집부편, 2007 : 79-80). 이는 어느 시대나 표출될 수 있는 자연스런 생명 존중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이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의 즉각적인 수립을 정치과제로 설정하는 분파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만인 평등의 사회, 계급에 따른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자들이 꿈꾼 것은 계급차별이 없는 사회만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운동으로 이끈 것은 민족해방에의 지향이었다.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해방이 전제되지 않으면, 계급해방이란 추상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을 사회주의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서해문집편집부편, 2007 : 77-78).

당시 사회주의적 사상은 지금의 공산주의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비롯된, 민족해방을 전제하고, 반민족 친일파를 제거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인간주의적 사상으로 당시 해방 전 후 사회의 전반적인 주류사상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빨갱이라 하여 무고한 주민을 대량 학살한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보수(우파)라면 ‘자유’ 추구라는 우파의 특성상 개성의 존중, 사상의 자유, 독재정권에의 저항을 먼저 자신들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남한의 우파는 이승만의 권력 독점과 서북청년단과 민중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친일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파를 빌어 포장한 셈이다.

6.25를 거치면서 남한에는 ‘반공절대신앙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는데, 무늬만 보수인 친일파 인맥인 극우들은 색깔론을 만들어 유포하며 사상검열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심어진 냉전적 정서를 활용하여 부당한 특권을 계속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편견에서 해방되어 과거의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해방당시 좌와 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은 좌파가 주도했다는 것도 그리 거부감이 들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이영권, 2007 : 82-84). 사실 그 가치가 크다고 하는 여론은 지금의 북한의 독재 공산주의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7) 대안탐색과 협상력 쌓아가기

‘제주4.3사건’ 당시 대량학살은 어쩌면 대안탐색과 협상력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 대신에 군정과 군경은 갈등 당사자인 민중에 대하여 힘에 의한 굴종을 강요한 데서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일본 패망 후 적대민족인 일본군과 일본인 등에 대하여 우리 민족에 의한 보복성 테러 등의 피해가 있었을 법 하나,⁸³⁾ 적대 감정에 의한 그럴듯한 보복성 테러는 없었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내부에서 대량학살⁸⁴⁾ 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학살의 과정은 왜 나왔으며, 학살을 우회하거나 피하는 것을 누구라도 당연시하는 필연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제주4.3사건’을 반추하면서 대안탐색과 협상력을 쌓아가는 노력

83) 조선 총독부 아베 총독은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사태를 우려하고, 80만 일본인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10만 군대의 해체와 철수 등 항복 후의 사태를 염려하여, 저명한 한국 지도자로 하여금 과도 정부의 구성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철수하기 이전에 일본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하였다(박세길, 1994 : 34).

84) 4.3대량학살도 잘 진행되어 가던 4.28 평화회담을 힘에 의한 제압을 도모한 경찰력에 의하여 평화의 추구 보다는 상호 불신과 폭력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대량학살은 사실상 토벌대의 권력과 힘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결과였음을 드러내고 말았다.(학살의 80% 이상이 토벌대에 의하여 저질러짐)

은 평화교육소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제주지역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패전 직후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제주도민에게 위압적이고 ‘대권은 여전히 천황에게 존엄하다’고 날뛰며 집단적인 테러행위를 했다. 그 기세는 제주도민들에게 크나큰 위협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도민들은 많은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해방과 새 나라로 향한 일념에 건국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노민영, 1988 : 92-93), 이에 대응하여 도민들은 1945년 8월 17일 제주읍 및 서귀포에서 보안대, 학도대, 치안대 결성을 시작으로 각 단위에서 ‘…관리위원회’, ‘…복구위원회’ 등을 조직하였다(김봉현·김민주, 1963 ; 아라리연구원, 1988 : 13).⁸⁵⁾

해방 직후 제주도민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 즉 제주도민들의 “절실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의 발현”이었고, 더불어 도민들의 열망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적 조직체의 필요성이 도민들 사이에 제기되었다(김봉현·김민주, 1963 : 13-14).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제주도건국준비위원회는 행정권의 이양문제, 치안문제, 당면한 경제문제 등을 협의 하였는데, 위원회에 참석자 일부는 “행정을 접수한 후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악질적인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비록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일지라도 건준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김봉현·김민주, 1963 : 16). 이처럼 제주지역의 사회문제도 도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수렴해가면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당면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군정의 진주와 이승만의 야심은 평화로운 제주사회에 소용돌이 같은 파도를 만들어가며 사회불안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방경비대 9연대는 ‘제주 4.3사건’ 초기부터 “모든 원인은 경찰과 서청에 있다”고 보면서 일체 진압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고 항쟁지도부 또한 “경비대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을 할 정도로 경비대에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공유점은 무장대와 경비대 사이에 대안과 협상력을 쌓아가기 위한 평화협상을 모색하기에 이른다.⁸⁶⁾ 그러나 평화협상은 미군정이 대량탄

85) 이 때 청년들이 자위대나 보안대를 편성하면서 내걸었던 구호는 “조선 독립 만세!”, “일군정은 즉시 철거하라!”였다. (김봉현·김민주, 1963 ; 아라리연구원, 1988 : 13)

86) 당시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은 그의 유고 ‘4·3의 진실’에서 경찰의 토벌작전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4월 말 경, 도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의 권유로 유격대 측과 회담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위 ‘4·28평화회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인민유격대장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의 회담이다. 4·28회담은 김익렬이 무력진압에 앞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 군정장관 맨스필드와 협의하고 유격대에게 협상을 제시, 유격대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졌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 : 309-312).

압 직전에 벌인 위장된 행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군정에게 있어 제주도는 자국의 이해에 필요한 군사기지였을 뿐이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제주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이 어떠한지는 당시 군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의 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48년 5월초 나는 ‘경무부장’ 조병옥,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성 등과 함께 미군정 장관인 딘을 따라 비행기 편으로 제주도에 갔던 일이 있다. 그것은 1948년 4·3 봉기 이래 날로 높아 가는 제주도 인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 우리 일행이 서울에 돌아왔을 때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국방경비대사령관’ 송호성을 따로 불러놓고 “미국은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 모슬포에다가 비행기지를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안재홍, 1965).

이와 같은 미군 지휘부의 인식을 반영하듯, 1948년 4월 28일 다음 날에는 딘 소장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고, 이 날 제주도에 체류하던 부양가족들이 철수되었다. 1948년 5월 5일 미군정 최고 수뇌부를 이끌고 다시 제주도에 내려온 딘 소장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임명함으로써 강력한 토벌 작전을 채택했다.⁸⁷⁾

8) 주변도시 등과의 교류

제주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주변도시(타시도, 외국 등)와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의 확산은 정보유통의 혁명을 낳게 되고, 이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교환과 공유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개인과 국가, 집단과 국가, 국가와 국가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고, 정보교환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는 국제교류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은 거리의 의미는 사라지게 하고, 과거처럼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유리하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불리하다는 등식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

87) 미군정은 4·28회담이 있는 직후 5월 1일 소위 ‘오라리 사건’을 조작한다. 오라리 사건은 경찰이 유격대로 위장하여 오라리 지역을 기습·방화한 사건이었다. (오라리 사건에 대해서는 제민일보4·3취재반, 1994 : 147-176쪽 참조.) 오라리 사건이 있는 직후인 1948년 5월 6일 미군정은 단군정장관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다음 날 김익렬이 전격 해임되고 초토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박진경을 부임시켰다.

자치단체도 과거처럼 중앙정부 종속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국제교류정책을 속히 시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강애란, 2001 : 11-12).

여기서 국제교류는 인종, 종교, 언어, 체제, 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주체 상호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cooperative relation)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people), 정보(information), 우수사례(best practice), 아이디어(idea) 등의 교환을 통한 각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국제교류는 매우 유용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지역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 18-20).

지역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생활안전보장을 위한 국제교류, '평화'에 대한 공헌을 위한 국제교류, 지역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국제교류이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한 안전보장은 한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제사회 속에 서로 공존하고 있고,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지역자치단체국제화재단, 1999 : 245).

국제교류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가 세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타시도, 국제간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것도 사회적 보람이 있다. 외부의 억압사회에 대하여 원조하는 마음은 장래 제주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외부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우리 고장의 환경보전은 또한 세계적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정보가 마치 물 흐르듯 막힘없이 흐를 수 있어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최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화를 포함한 지식산업의 시대이다. 민주체제하에서 충분한 지적 정보가 각 계층에 평등하게 보급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정보이용을 할 수 있을 때, 대학과 산업현장 등에서 지적 창조력을 낳게 할 수 있다.

아리러니칼 하게도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발전 자체를 위해서도 민주주의 바탕위에서 잘 성취할 수 있다. 이제 국민 국가적 체제로부터 인류가 세계적 공동체로 변해가는 오늘의 추세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지구적 민주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김대중, 1995 : 170-180).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서로 보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구적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해서 주변도시, 주변국가와의 자유로운 교류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의 정서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수만 명이 죽어갔는데도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육지가 아니라 변방의 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소외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억압사회에서 오랫동안 학습화된 체념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진상규명의 성과물은 비록 그 논의가 소장 학자와 재야세력에게 한정된 것이긴 했지만, 제주도라는 변방을 벗어나 4·3을 본격적으로 중앙의 무대로 진출시키게 되었다(양정심, 2005 : 180). 그 인사들로는 재야 사회운동가, 소설가·시인·화가 등 예술인, 그리고 교수·교사·대학원생 등 학술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의 초기 인적 역량과 물질 토대는 취약한 편이었지만, 서울과 제주에 거점 조직을 만들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분담해나갔다. 그들은 서울의 제주사회문제협의회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일명 아라리연구원), 그리고 제주4·3연구소였다. 전자는 비공개 조직이었고, 후자 두 단체는 연구기관을 표방하면서 운동단위로도 기능하였다.

특히 1989년 5월 10일에 발족된 제주4·3연구소는(제주신문, 1989. 5. 11)⁸⁸⁾ 제주도민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적인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4·3피해 증언조사, 자료수집, 연구 및 출판활동, 유적지 발굴 및 순례, 추모행사 참여 등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더불어 4·3항쟁은 제주도민만의 4·3이 아니라, 통일운동이자 민중항쟁으로 한국현대사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양정심, 2005 : 180-181). 이는 21세기에서 더 이상 지난 세기처럼 소수 지배자의 권력 강화를 위한 폭력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인권과 평화를 보장하여, 대중의 다양성 존중을 통한 화합의 세계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소재로 ‘주변도시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김영범은 제주4.3 제57주기 4.3평화인권포럼(2005년 4월 2일)에서 한·중·일의 평화 애호세력들이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연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민중-시민연대

88) 4·3연구소 개소식에서 운영위원 문무병은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간 4·3이후 우리는 패배감과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해왔다.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죽음들의 누명을 벗기고 우리 시대의 명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제주신문, 1989. 5. 11 ; 양정심, 2005 : 181).

에 의한 평화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히 시도돼야 한다고 했다. 즉 향후 평화보장을 위해 평화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살·생체실험·핵피폭 등의 참상을 겪었던 도시들인 남경·하얼빈·광주·여수·제주·타이완·오키나와·히로시마 등을 잇는 평화벨트의 형성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명림은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상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인권 허브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냉전시대 한반도의 모든 비극과 희생들은 이제 탈냉전과 평화, 세계화, 네트워크의 21세기 한국의 세계 내 위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 희생을 미래의 평화와 화해로 바꿀 우리의 집합적 지혜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연구소’ 등은 주변도시 등과의 평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학술적인 교류 확대에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평화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역연구단체에 국제교류를 통한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9) 소수인권의 존중

소수 인권이 보호될 때, 인권존중의 평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고창훈, 2008. 4. 24). 여성과 어린이 등 노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은 평화가 없는 상태임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이라는 언어의 존재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인권유린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인권이 소수인권을 침해하기 쉽기 때문에 평화교육에 소수인권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인권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기본적 인권은 인종·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보편성이 있으며, 기본적 인권은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처럼(권영성, 2002 : 273), 인권은 천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과 노약자 등 소수인권도 당연히 천부성을 갖고 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 기본권 향유의 주체가 되며, 국가라는 기능은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 즉 수단이다. 이 수단이 인간의 목적인 인권향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4.3사건’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

산 등의 손실을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손실을 당한 개인 또는 유족에게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보상을 받도록 국가와 지역정부가 적극적으로 청구 소송을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송에 갈음하는 사법적 구제방안으로 보상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봉철(1998, 131)은 “현시대의 인권논의가 기존의 근대적 중심 가치들(예를 들어 경제적 부, 안보, 복지)을 위한 권리담론 외에 차이의 가치 및 타자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담론을 포섭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만인이 평등한 삶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체의 설정은 불가피하게 타자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 타자는 중심-주변의 불평등관계에 서야 한다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대신에 “주체-타자 사이의 관계는 '차이의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고 ‘차이의 가치화’가 평등한 삶을 위하여 긴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레오포드는 인권가치의 철저한 확보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전체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을 자체 안에 품고 있다고 하듯이(C. Leford, 1988 ; 이봉철, 1998 : 13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인권가치는 지배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왔으며, 그에 상응하여 우리나라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합당한 획일적 사고를 강요받고, 이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국가 폭력은 상존하여 왔었다.

이에 대해 정애경(2005, 44-45)은 “인권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역사의 혼란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거나 인권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⁸⁹⁾ 국회에서 폭력에 의한 의사 진행,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의례히 상대방을 향하여 싸울 듯이 폭언을 하는 것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인권의식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 직장, 사회에서 폭력과 폭언을 우선시 하거나 또는 합리적 이유보다는 권력과 지위에 의해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제주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실시한 초토화 작전의 결과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는데, 대부분 토벌

89) 울산지역 초중고 인권교육 워크숍을 열기 위한 기초 자료에 ‘인권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응답자의 75%라고 한다. (정애경, 2005 : 44-45)

대에 의해 80% 이상 사망하였다. 희생자 중 노약자는 10%이상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은 4·3사건을 진압한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제주4·3위원회, 2003 : 373).

당시의 학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군사고문단의 자문과 군·경찰 그리고 우익청년단의 실행이라는 공조 체제였다. 토벌작전이 제주도 내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섬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작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중앙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으며(제민일보4·3취재반, 1997 : 377-378), 사실 당시의 희생은 항쟁이나 저항의 강도에 따른 희생도 아니고, 이승만 정권이 국가폭력의 강화 때문에 나타난 의도된 희생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박명림, 2006 : 447-448).

또한 학살에도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 학살의 집행자인 사병들과 경찰, 우익청년단은 규율이 결여된 채 공사의 구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했다. 여성에 대한 강간, 유희적인 살인, 무자비한 참수 같은 인도적인 행위에 반하는 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났다(양정심, 2005 : 135). 여성들의 피해는 입산자였거나 입산자의 아내인 경우, 혹은 임시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살해의 형태도 비인륜적 이었다(강성현, 2002 : 83-91).

‘제주4·3사건’ 당시의 가부장적 전통은 가족이나 남자 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가족구성원인 여성을 토벌대에 강제 결혼시키는 사례는 여성들이 이중의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성례, 2001 : 284-285).

인권교육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경쟁력임에 틀림없다는 말처럼(정애경 : 44) 제주지역을 세계적 지위에 올려놓는 작업으로서 인권교육을 국가나 지역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인권교육을 위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4절 제주지역개발

제주지역은 섬문화 특질을 갖고 있다. 이는 자기의 고유한 삶의 터전인 섬지역을 지키고 이용하면서 정당한 자기 생존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래적인 권리이면서 연고지를 쉽게 옮길 수 없는 섬문화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방 전 후를 기하여 7만여 명의 일본군대가 주둔하면서 또는 서청 등 1,700여명의 외부 군경이 주둔하면서 제주도민을 대량 학살하는 등 순수한 자기 생존권을 위협 당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4.3평화교육’을 발생시켜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적 경험을 반성하는 방향으로 지역평화와 지역개발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 확인할 이유가 발생한다. 이는 지역개발 이론에 따라,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국가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생변수로 설정한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이라는 내생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다.

1. ‘지역’과 ‘개발’의 개념

1) ‘지역’의 개념

그래슨(Jhon Glassen, 1974 : 20-23)에 의하면 ‘지역’의 개념은 단순한 농촌사회로부터 복합적인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고 본다(박응격, 1982: 247-264). 그 첫 단계는 형식지역(formal region)으로 획일성(uniformity)과 동질성(homogeneity)으로 특징 지워지며, 제2단계는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으로, 이것은 지역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상관성(interrelationship), 그리고 기능적 결합(functional coherence)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의 개념 정의에서 자료의 획득이 용이하고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행정적 경계 기준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이용되기도 한다.

박종화 등(2000 3-4)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자의적 분류는 ‘지역’에 대한 주관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설명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서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은 지역 그 자체를 자연적 현상 내지 객관적 실체가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지형, 기후, 작물의 육종, 그리고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구분가능한 여러 개의 자연 지역들(natural regions)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도 Hartshorne(1959 : 31)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시도로 보고 있다.(Glasson, 1974 : 18-20; Gore, 1984: 8-11) 자만스키(Czamanski, 1973)는 지역의 분류기준으로 영역(area)을 2차원 공간상의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여 지리적인 공간영역을 구분하고 있다(Czamanski, S. 1973 ; 박종화 등, 2000 : 4).

가령 ‘지역(region)’은 보다 엄밀한 용어로서 구조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경제 내의 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지역은 공통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다(박종화 등, 2000 : 4).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는 타 지역 또는 타시 도에 비하면 인구와 경제, 또는 공간적으로 비록 작거나 좁을 수 있을지라도, 지리적으로 분리되었고, 독자적인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등 제주도 지역 자체를 하나의 지역으로서 분류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대상에서 지역의 개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의미한다.

2) ‘개발’의 개념

‘발전’이란 양적성장(growth)과 질적 변화(change)를 포괄하는 가치 지향적(intentional)인 과정이다(최창호·정세욱, 1977 : 81 ; 최창호, 1983 : 35). 발전을 흔히 경제발전 중심으로 생각한 나머지 성장의 문제로 파악되기도 하나, 발전이란 이러한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구조 및 가치관, 행태의 변화 등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인 것이다(최창호, 1983 : 35).

이외에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발전이란 신(神)이나 어떤 운(運)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도되는 의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학이 발달되고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향상된 오늘날에 있어서, 발전은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development'를 우리말로 옮길 때에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박문옥, 1967 : 29-31). 그것은 '발전' 보다는 '개발'에 더 능동성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감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은 모두 '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같다(최창호, 1983 : 35).

일반적인 견해로 말하면 '발전'이란 양적증가와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양적증가는 인구나 경제규모의 양적팽창을 말하며, 질적 변화란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인간의 의식구조변화, 나아가서 행동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전인수, 1998 : 4).

또한 '개발 또는 발전'은 기능적 역할의 통합과 증식의 결과로써 발전의 한 특수한 경우인 근대화나 근대화의 한 특수한 측면인 공업화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Szyman Chodak, 1973 : 257 ; 김수신, 1983 : 170). 그리고 이때의 변화란 개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황명찬, 1981 : 48).

'개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Dudley Seers는 "개발의 새 의미(the new meaning of development)라는 그의 논문에서 개발은 성장(growth)과 배분(distribution), 자립(selfreliance)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새로운 의미의 개발에 대한 개념은 선·후진국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Dudley seers, 1977 : 2-7 ; 김수신, 1983 : 170-171),

Walter B. Stöhr는 '개발'은 사회 각 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및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개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Walter B. Stöhr, 1981 : 39-40 ; 전인수, 1998 : 5).

George F. Gant 는 '개발'의 목표를 첫째로 빈곤의 퇴치, 둘째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셋째로 인간생활의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George F. Gant, 1979 : 6-9).

이상의 견해를 볼 때 '개발'은 단순한 경제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의 총체로 파악되고 생활환경, 가치관, 생활태도,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의 대상인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역개발'에 있어 개발의 실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최창호, 1983 : 37).

2. '제주지역개발'의 개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지역개발'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유영옥, 1996 : 212).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이란 용어는 1920년대 이후 사용된 것이다(Mackaye, B. 1928 : 43).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이 그 나름대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1930년대 이후부터 이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지역개발'이 널리 주목받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부터이다(박종화 등, 2000 : 3).

유영옥(1996 : 212-213)은 지역정책론에서 “지역개발이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계획적인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이라는 개념 속에 경제적 개발과 사회문화적 개발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지역개발'은 그 지역의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고, 이에 비교하여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경제적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전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병집(1986: 42-43)은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이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을 촉진코자 하는 체노력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즉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역계획, 이집트의 나일강유역개발사업, 그리스, 로마, 고대인도 등지에서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개발'에의 노력은 고대로 부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대적 의미에서의 '지역개발'의 개념이 정립되기에는 역사발전 과정에서 두 번의 큰 계기를 거쳤다고 한다.

그 하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제 마찰이 야기되고, 특히 공업의 급속한 발달과 수반된 도시인구의 과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였다. 즉, 도시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야기된 생활환경상의 문제, 주택난, 급수난, 교통

난, 공원녹지의 부족, 각 종 공해 등의 제 문제는 도시 자체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광역개발의 개념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은 1588년 이탈리아의 보테로(Botero)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그 후 20세기 초 영국의 도시사회학자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며, 그 후 1924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도시계획회의에서는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원칙으로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이 필요함을 결의하게 이른다.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미국의 TVA의 성과에 있다고 한다. Mississippi 강의 지류인 Tennessee 강은 해마다 대홍수로 막대한 농토의 손실을 가져왔다. 1933년 루주벨트 대통령에 의하여 종합개발을 착수하여 댐을 건설하고, 관개를 하고, 운하를 파고, 발전을 하여 막대한 량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농촌이 전화(電化) 했을 뿐 아니라 이 유역을 공업지역으로 전환케 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거대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TVA 방식, 즉 운하 또는 계곡의 다목적 개발은 그 후 인도의 DVC(다모달강유역개발계획), 전후 일본부흥의 하나의 계기가 된 하천 다목적 개발계획 등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 본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지역개발'은 위의 두 가지 계기 즉, 지역계획과 수자원다목적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만 특징을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각 국가마다 그 나라가 지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신경훈(1981 : 39-53)에 의하면 개발은 국토건설사업의 개개를 집합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관한 국가정책의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의 목적은 일 지역 또는 일 지구만의 진흥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함으로서 국가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그는 '지역개발'이란 정부가 어떤 일정규모의 지역 내에서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 이용하고, 생활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노력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황갑손(1992: 22)은 '지역개발'이란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독자성을 지니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응집력을 지닌 공간단위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적, 양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 변화는 해당 공간단위의 내생적 지역특성과 인간중심성, 문제원인과 그 해결의 통합적 접근성 및 여타 세계와의 연계성에 기초한 누적적 쇄신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진보와 개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는 주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환경의 개선, 새 기술의 원용, 새 제도의 확립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국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생활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국가공간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목적 및 방향을 갖는다(황갑손, 1992 : 22-23).

첫째, 개인당 평균 소득이 지역 간 분배에 있어서 불균형을 제거함으로써 지역개발 정책 목적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둘째, 고정적인 일자리(고용기회)의 창출 및 보장을 통하여 지역개발정책 목적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셋째,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개발정책 목적의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다.

권태준·김광웅(1981 : 61)은 ‘지역개발’의 개념으로 일정지역 내에서 토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개발하여, 사회적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함으로써 생활기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개발의 추진 주체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역자치단체라는 점이라고 한다.

전인수(1998)는 ‘지역개발’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최대한 개발하여 그 지역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라 하였으며, ‘지역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지역개발’의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의 주체인 각 지역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개발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둘째,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분석, 평가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정부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정부의 예산확

보는 물론 대외차관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조금이 배당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원의 의존은 지역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형성, 집행에 있어 지나친 간섭을 받게 되므로 지역정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행정자체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반드시 한 지역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광역개발의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개발정책에 있어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표를 토대로 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개발의 측면이다.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복지(well-being)에 있고, 개발의 과실이 분배되지 않을 때 개발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개발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인간은 이를 위한 개발의 수단(instrument)도 될 수 있다(George F. Gant, 1979 : 6-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물적 자원과는 구별되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서 개발되고 관리될 필요성이 있고, ‘지역개발’은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적자원을 위한 인력계획(manpower planning)의 과정을 내포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전인수, 1998 : 8).

여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들을 종합하면 ‘지역개발’은 “정부 또는 지역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인적·물적인 모든 자원을 평가하고, 최대한 개발 및 이용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총체적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이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련의 계획하고 집행하는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제주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면 ‘제주지역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국제적, 평화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적 : ‘제주지역개발’의 주체는 정부 그리고 지역정부인 제주도가 되며, 실질적인 지역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정부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요구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정부의 예산확보는 물론

대의차관을 하거나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행정체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가 나름대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며(이경원, 양덕순, 2002 : 347-365),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시범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경제적 : '제주지역개발'은 방법상 제주지역 내 인적, 물적인 모든 자원을 파악 평가관리하며, 이들을 최대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내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장하고, 경제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원용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정착시키며, 소득불균형의 제거를 통하여 개발과실의 적정 분배를 실현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③ 정치적 : '지역개발'은 그 추진과정에서 그 개발정책으로 인한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대립적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경제정책을 정치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최재선, 1987 : 409).⁹⁰⁾

여기서 지역주민의 가치관, 생활태도가 개인의 사익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익에 치우치면 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못지않게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중시하는 가치지향도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관련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합한 범위에서 공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제주지역개발'은 무엇이 제주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올바른 것인가와 개인적 사익들이 무엇들이 있는가를 판단하여 공개함으로써 '지역개발'의 균형성을 인정받고,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정책집행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개발 정책 수립 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⁹¹⁾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90)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은 커다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한 '지역개발' 및 국토개발정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산업시설·지역거점개발 등 제반개발요인을 자기 출신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정치가는 이런 것에 무능력한 자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간의 소득불균등, 임금률의 불균등, 투자 및 고용기회의 불균등, 지역 간 공공재공급의 불균등, 그리고 자연자원의 불균등 배분 등으로 나타난다(최재선, 1987 : 409).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정치적 고려를 감안한 지역개발정책을 통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

91) 사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지역개발 정책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합일되기가 지극히 어렵다(유영욱, 1996 : 250).

(유영옥, 1996 : 250),⁹²⁾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합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 : 경제적 관점에서 능률성에 근거하여 지역 간에 소득, 임금률, 투자 및 고용기회, 공공재 공급의 불균형과 자연자원의 불균등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다(Friedmann, 1973 : 244-247 ; Friedmann, 1973: 6-8; 유영옥, 1996 : 247 재인용). 사회적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근거하여 지역 간 소득격차의 시정 및 주민복지의 균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고 인구와 산업이 소수의 지역(선진지역 ; 도시지역)에 집중함으로써 공간적 분권화 현상이 나타난다(William Alonso, 1975 : 629-630 ; 유영옥, 1996 : 246).

‘지역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하여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서 삶을 사는데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이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중앙과 지역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은 그 영향이 대상 지역주민에게 미쳐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가 변화하거나 심지어 와해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그 지역민의 인적개발 및 육성, 사회적 유형과악과 변화유도, 가치변화, 인구이동, 빈곤과 불평등 제거 등은 모두 ‘지역개발’의 사회적 영역이 될 수 있다.

⑤ 지리적 : ‘지역개발’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 지리적 공간으로 범위를 지워진다. 이러한 공간 활동의 분석에는 쇄신의 확산, 정주체계, 산업입지, 도시화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종래 ‘지역개발’의 주된 관심이 농촌과 자연자원의 개발에서 도시개발로 바뀌면서 도시계획학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필수적이며 도심지 재개발계획, 교통개발계획, 환경개발계획 등이 요구된다.

⑥ 국제적 : 앞으로의 ‘지역개발’은 세계주의의 기초아래 이루어져 그 내용, 절차, 형태, 그리고 생산물의 품질 등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고 충분히 경쟁 가능

92) 지역정책의 기본은 자치체의 지역계획이어야 한다. 지역개발문제 해결의 주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며 주민과 밀접한 자치체일 것이어야 한다(유영옥, 1996 : 250).

한 것이라야 한다. 즉 ‘지역개발’을 통한 생산물은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독특성과 세계성을 가져야 한다(부만근, 2005 : 286). 그러면서 세계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에까지 국제적인 정보가 전파되고, 외국상품의 이용과 함께 지역산물의 외국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부만근, 2005 : 287).

세계주의는 국제교류의 증대를 가져와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이 개혁되어야 하고, 도시국제화에 기여하며,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 활동이 증대되어 안전 등 국제간의 공동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지역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 21).

이에 따라 지역자치단체도 국제통상, 외교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자치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하여 세계화를 위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시민단체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이러한 단체 활동을 주관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에게 재정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실시하여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사람, 단체 등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교육, 평화회의, 평화관광산업과 섬 문화산업 등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주 고유의 특화 상품으로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⑦ 평화적 :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은 평화와 관련이 높다. 고창훈(2004: 63-110)은 제주도민의 평화개념은 제주도민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생활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을 승화시킨 평화사상과 문화에 기초하여 제주섬 공동체, 세계섬 지역사회,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평화추구의 전통과 역할을 수행하려는 주객관적 요소를 포괄하면서 평화추구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제주형 평화산업을 이루어 가려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및 전략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정신체계라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형 평화추구의 실천원리로 반드시 지녀야 할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원리1 : 제주평화학은 탐라국과 제주 역사 속에서 형성된 평화사상과 문화에 근거한 학문체계로서 평화증진의 문화를 승화시키고, 평화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학문체계로서 인권고양과 평화증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과 인재를 키우는데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원리2 : 제주평화학의 정립과 평화산업의 육성 사업은 제주도적으로는 지적인 평화네트워크를 쌓아 나가면서 평화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일, 국제적으로는 국제섬 사회의 연합을 구성하여 해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섬사회 전반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을 지향하여야 한다.

원리3 : 제주도민이 제주의 평화사상과 평화문화에 근거한 평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은 섬의 관용성에 바탕을 둔 협력형 리더십의 형성을 통해 실천하되 항상 비폭력의 방식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면서 목표를 성취해나가야 한다.

‘지역개발’의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국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동일한 가치의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국가공간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개발’은 지역정책에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소득분배에 균형이 고려되고,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있어야 하며, 경제성장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초적 목적 및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은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총체적으로 보다 나은 균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3. ‘지역개발’의 이념과 연구범위의 변화 추세

1) ‘지역개발’의 이념

박종화 등(2000: 27-29)은 ‘지역개발’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또는 지도 원리로서 이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현시점의 한국에서 중요한 ‘지역개발’의 이념으로 효율성,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자치성, 환경성 등을 들고 있다.

첫째, 효율성이란 ‘지역개발’은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으로 능률성은 비용과 편익의 비이며,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둘째, 합법성은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 이라고 할지라도 그 운영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공공행정이 법을 무시하거나 초법

적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개발’은 그 내용의 성격상 시민의 경제적 이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욱 법적 보장이 중요시된다.

그러면서도 현대의 지역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이 전적으로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의 적절하게 지역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합법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성으로 ‘지역개발’은 그 내용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에게 절차적 민주성이 중요하다. ‘지역개발’이 아무리 능률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민주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며, 수립 후 집행단계에서도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형평성으로 ‘지역개발’의 이념으로서 형평성은 크게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들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층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 계층 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역개발’에서 형평성 문제는 주로 수평적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제공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다섯째, 대응성으로 지역정부가 서비스를 아무리 능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객인 주민이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만큼 의미가 경감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대상 집단의 만족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대상 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민의 정치제도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여섯째, 자치성은 지역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다양한 개발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운영과 편성이 자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지역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선거에 의한 고위직 인사의 선출이 자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일곱째, 환경성을 들 수 있다. ‘지역개발’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향상하는데 주력되어져 왔으며,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환경오염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의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지역개발’은 환경보전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계획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범위의 변화 추세

박종화 등(2000: 23-25)은 ‘지역개발’의 연구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개발’의 강조점이 변화를 해 왔으며,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 전통적인 연구범위와 최근의 연구범위로 나누고, 전통적인 범위로는 주로 농촌개발, 경제개발, 지역성장, 지역불균형성장, 정주체계 등에 치우친 반면, 최근에는 도시개발, 지역균형발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갈등 측면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개발’은 이 양자가 결합된 통합적인 연구가 바람직하다.

‘지역개발’의 최근 연구범위는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시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많은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로는 도시교통, 도시주택, 도시환경, 도시토지이용, 도시범죄, 도시재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개발을 어떻게 환경보전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해 감에 따라 종래의 지역에 대한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고 기능적인 상호관련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 및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지역정부는 많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계획수립의 과정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정부는 지역문제해결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재정적 지출이 요구되고 있기에 재원을 확충하고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도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흡수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로 조직을 재편한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국제교류 능력에 따라 각 종 국제산업개발, 외국어 교육사업 추진, 환경문제 해결 등 환경 친화적이면서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 등이 주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 관련성

1. 제주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자로서 역할 인식' 제고

강정구(2000 : 499-500)는 역사의 진보와 한국사회에서 학문은 '민족과 민중을' 지향해야 하고, '비판적 학문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외세의 개입 속에 민족자주성을 침해 및 훼손을 당해왔고, 이 와중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판적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란 숨겨지고 은폐된 사실들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이어서 이 '숨겨진 것을 들추어내어 진실을 가리고, 모순을 가려내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학문의 이론적, 실천적 지향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진전시키는 역사의 주체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남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제주사람들이 제주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자라 한다면, 구태여 과거의 '제주4.3사건'을 갖고 이념 구속적, 좌우 갈등적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 평화, 연대, 참여, 인권, 민주주의,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신장, 성역압과 성차별의 철폐, 억압과 착취 일반의 감소, 공동체성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의 자아실현 증진, 민족 자주성 증대, 세계동포주의 확산 등 주어진 조건에 따라 우리 사회를 다면성과 다양성을 향하여 '4.3평화교육'을 실시한다면, 제주지역의 역사적 진보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이 넓어져, 과거의 특정 사실들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툼거리가 아닌 오히려 서로 사과하고 보상하는 체계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이념의 탈피로 새로운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기여 가능

제주를 떠나 외국학자의 시각에서 ‘제주4.3사건’을 바라 본 사례가 있다. 존 메릴(John Merrill, 1980)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본래 대규모 반란을 계획하거나 군정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을 원한 것이 아니고, 유엔위원단에 영향을 가하려고 한 것이 일단 사태가 벌어지자 그동안 쌓인 주민들의 불만과 가열된 정치적 분위기 등에 의해 사태가 확대되었던 자발적인 민중봉기라는 것과, 제주도반란의 진압 사례를 공산주의 봉기를 분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⁹³⁾, 한국에서 훌륭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미 점령군의 실패한 사례, 우익 테러활동의 허용과 진압 시 과도한 잔악행위를 완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어(John Merrill, 1980 ; 아라리연구원, 1988 : 199-291 재인용) 공산당과 연계된 반란이거나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⁹⁴⁾.

또한 당시에는 좌익주도의 항쟁주체성, 단선단정반대, 자주통일국가 수립, 반미구국 투쟁 등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남로당이라는 조직도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있어 제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해방공간 당시에 우리 민족 전체의 내재적 역사지향에서 비롯되었고, 조선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강정구, 1999 : 87-88), 바다로 둘러싸여 오고갈 데도 없고, 사회적 분위기(정보)를 차단하기 쉬었던 제주섬지역만 특별하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학살하고 난 후 다른 지역에서 가서 제주는 빨갱이 소굴로 이들을 소탕하였다고⁹⁵⁾ 조작된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은 1987년 6월 항쟁까지 40 여 년간 ‘제주4.3사건’을 제대로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하여 ‘제주4.3’에 대한 가치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하였다. 이러한

93) 사실,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상 반란 성공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94) 군정과 경찰에서 말하는 반도들은 비무장의 노인, 부녀자, 어린이 등이 대다수였으며, 다만 청년 반도들이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할 시에 찬사를 보낸 사실은 경찰과 관공서에서는 친일세력과 서청 등 극우들이 있어서 무자비한 횡포와 모리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반사적 작용임을 생각할 수 있다.

95) 1947년 경무부 수뇌부는 제주주민의 90%가 좌익이라 단정하여 제주도민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하였으며, 1948년 5월초 제주를 시찰했던 광주지검 김희주 검찰관도 5. 10선거 반대가 4.3사건발단의 직접원인이라면, 서북출신 경관들의 과도한 태도에 분개한 인민의 반항이 간접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한성일보, 1947. 3. 13 및 1948. 5. 22 ; 제주4.3위원회, 2003 : 189). 한편 1947. 3. 20 주한미군일일정보보고는 제주도를 70%가 좌익정당에 동조하거나 좌익정당에 가입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 하면서 빨갱이 섬으로 조장하였다(박찬식, 2008 : 199).

오류는 ‘레드콤플렉스’, ‘청년이 힘이 쉰 마을일수록 희생이 컸다’는 허무주의, ‘육지에 대한 멸시와 배타성’, ‘밀고자라는 불신평조’로 건전한 신고정신 결여 등의 피해의식을 낳게 하였다. 또한 ‘똑똑한 사람은 다 죽고 몰명한 우리만 살아남았다.’, ‘살았지만 살아진다.’ 라는 푸념적인 생존 등 마지못해 살아가는 의식도 낳았다. ‘몹쓸 짓을 한 사람은 제명에 못 죽는다.’ 라는 악을 처벌하는 응징의식이 나타나는가하면 반면에 민주화를 갈망하고 피해의식을 극복하려는 진보적 의식도 나타나고 있다(김종민, 1988 : 368-402).

사실 해방 전후의 제주지역사회는 일제치하에서도 당당한 항일투쟁이 있었고, 해방 직후에 자율적인 사회운동결사체가 조직되었다. 또한 제주에는 높은 교육열이 있었고, 일본과 한반도 내륙과의 잦은 교류를 통한 정보의 유입도 있었으며, 공동체적 연대감이 높았으며, 자연조건을 개척해나가는 강인함 등 이상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던 자랑스러운 지역이었다(박찬식, 2008 : 419-421).

여기서 사람들은 인식작용을 통하여 본체를 바라보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본체를 보고 변별하여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된 상념은 본체와 다르게 빛나갈 수 있다. 이는 본체를 채색된 렌즈(이념이나 피해의식 등)로 촬영하게 되면 그 현상물은 채색된 빛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제주4.3사건’도 레드콤플렉스 라는 색채를 갖고 본체를 바라보아 수많은 주민을 무고하게 희생시킨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적 입장에서 ‘채색된 렌즈를 버리는 작용’을 부단히 애써야 본체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본체를 바로 보는 사회적 작용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원리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한운섭 · 고창훈, 2008 : 153-183). 즉, 본체를 직시할 수 있어야 문제를 바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제주지역개발’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제주4.3사건’이 ‘평화를 추구하는 지역’으로 근거 제공

허상수(2006 : 75-79)는 ‘제주4.3’에서 평화정신을 구현하려면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 주체를 가려내고 이들의 고백과 사죄를 통하여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서 관용과 용서는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가해자의 고백과 사죄는 평화정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족분단에 반대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민족통합과 공동체 지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면서, '제주4.3'에 의한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은 일회성이 아닌 동아시아 역내에서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는 '제주4.3'의 정신을 학습하고 전수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평화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기법을 연출(허상수, 2006: 75-97) 할 수 있다고 본다.

양길현(2007)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 추진사업의 역사적 차원은 4.3의 아픔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4.3의 아픔을 씻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찾아나서는 제주도민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이 있었고, 이제는 역사적 기념의 역동성 확보와 4.3인권과 평화교육 전개 등 미래 비전의 추구로 과제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고 한다(양길현, 2007: 69-72).

양덕순(2007 : 69-72)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열린 한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이의 전략 중의 하나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있어 공무원과 도민들은 '평화의 섬'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서 의식의 개방화와 향상성을 지향하는 점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식의 향상성과 관련한 실천적 내용으로는 다원주의와 관용정신, 평화, 환경과 자원, 인권과 복지 등 공동의 문제 이해, 국제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세계화 교육을 들 수 있다(양덕순, 2000 : 64-66). 이러한 의식 전환은 도민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개방화된 마음을 갖고서 교육기관, TV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수단과 내용에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함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세계를 향한 평화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기여

문정인(2007: 5-20)은 동북아 역내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사람의 네

트위크, 정책네트워크, 그리고 평화운동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동북아에 안정되고도 지속적인 평화는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연결망인 그물코(network nod)가 필요한데, '평화의 섬'으로 제주는 그물코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그는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파위의 경쟁적 추구라는 측면을 부인하지 않으나, 파위의 집단적 관리, 국제제도를 통한 상호작용의 규제,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한 안전보장의 추구 등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현실주의 안보전략에의 안주로는 안보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구조화할 때에 동북아의 밝은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평화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보울딩(Kenneth Boulding)의 시각을 빌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안의 하나는 불안정한 평화의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된 평화의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평화에는 평화유지(peace-keeping)로 군사적 역지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동맹의 체결을 들고 있으며, 군사적 역지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평화 만들기'(peace-making)가 있으나(문정인, 2007 : 5-20) 이는 평화의 개념에서 보듯이 불안정한 평화유지 방법이다.

이에 발전적으로 안정된 평화 모색방법으로는 첫째로 동북아내 시장경제의 확산,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경제통합을 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 peace), 둘째로 칸트(Immanuel Kant)가 민주주의 공화정이 들어서면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이 전쟁이라는 양태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지도자의 자의적인 전쟁 선포를 국내적인 견제와 균형이 막아 줄 수 있도록 동북아 내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tic peace)을 확산하는 방법이 있고, (Michael W. Doyle, 1997 : ch8 ; 문정인, 2007 : 5-20 재인용)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공동안보, 협력안보, 포괄안보의 공동체를 만드는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라는 경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E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 1998; 문정인, 2007 : 5-20 재인용), 하영선과 김상배(2006; 문정인, 2007 : 5-20 재인용)는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동시에 영구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전략이 절실하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닌 관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평화전문가, 학자, 정부관리,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인 인식공동체,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문정인, 2007 : 5-20).

따라서 대량학살의 경험을 겪었던 제주지역은 세계를 향한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폭력과 평화, 평화보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 등을 기본으로 하는 ‘평화만들기’를 해야 한다. 히로시마·오키나와·대만 등과 외국의 폭력과 평화교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의견교환과 세계 섬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 또는 지역 차원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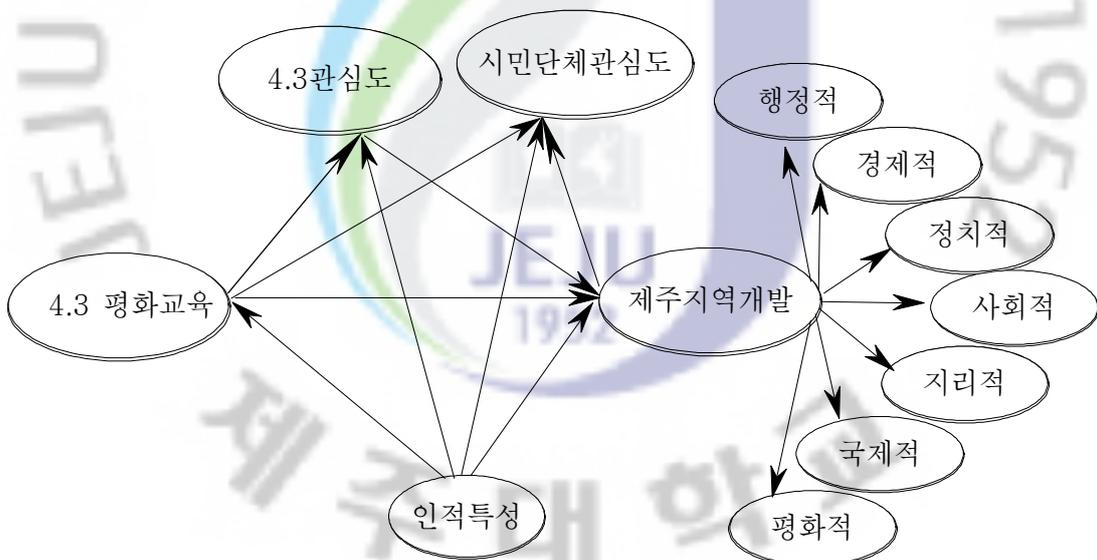
이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 내 평화 확산과 영구평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추진을 위한 지식 정보를 확충해 나갈 수 있고, 평화의 네트워크 중심지로서 능력을 쌓아가는 효과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모형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소의 ‘4.3평화교육’은 비폭력능력 등을 향상시켜, 인권을 존중하게 되며, 사회적 갈등에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을 한층 낮추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4.3평화교육’은 ‘평화산업’을 유발하고, 과거의 폭력장소 등을 체험관광지화 하면서 역사·문화적 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가설적 연구모형(수정)



* 수정참조96)

96) 최초의 가설적 모형은 【그림 4-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형 부적합이 나타나서 【그림 3-1】 가설적 연구모형과 같이 수정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이 맺어진다면 ‘제주4.3사건’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것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통합할 방안으로 ‘4.3평화교육’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교육의 활성화는 현재와 미래의 제주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4.3평화교육’을 한다면 ‘4.3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민단체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의식이 향상되는 만큼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4.3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을 원치 않는 취지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에 낮은 관심도를 기울이는 현상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틀로서 【그림 3-1】과 같은 최초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연구 목적의 둘째 단계로서⁹⁷⁾ ‘가설적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가설적 진술은 다음의 연구가설과 같다.

제2절 연구가설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국가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장 심한 대량학살 사건이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기시하여 왔으며, 이 사건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 후에 들어오면서 ‘제주4.3사건’은 조금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2003년 12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제주4.3사건’은 국가에 의하여 저질러진 폭력임을 공식인정하기에 이르렀고, 2005. 1. 27일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97) 연구목적의 둘째 단계 :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등 기본 변수를 정의하고, 변수 사이에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의 틀’로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제1장 서론의 2. 연구목적 참조, p. 6.)

극복하고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은 학살 발생지역인 제주지역에서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제주4.3사건’은 공산당을 소탕하기 위한 사건으로 일축하여, 이 당시 초토화 무력진압은 정당한 사건으로 더 이상 교육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학생이나 젊은 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제주4.3사건’은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며, 또한 4.3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도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반응을 달리하는 경향 등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교육에 의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나 4.3교육의 필요성을 조사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지금과 미래 삶을 위하여 ‘제주4.3사건’을 반성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3평화교육’ 변수와 ‘제주지역개발’ 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밝히고,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를 매개적 변수로, 인적특성을 조절변수로 하여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경로모형을 그리고 있는지 구조모형 적합도 등으로 검증하였다.

【가설 설정】

【가설 1】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에 인적특성은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1】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는 ‘4.3교육
받은 여부’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4.3평화교육’ 은 ‘제주지역개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4.3평화교육’ 은 ‘4.3관심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3평화교육’ 은 ‘시민단체관심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4.3관심도’ 는 ‘제주지역개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4.3관심도’ 는 ‘시민단체관심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제주지역개발’ 은 ‘시민단체관심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 에 따라 ‘제주도민 의식형성’ 에 차이를 줄 것이다.

【가설 9】 ‘4.3교육범위’ 에 따라 ‘제주도민 의식형성’ 에 차이를 줄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의 가설에 사용된 용어들은 연구자마다 각 각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의 측정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1. ‘4.3평화교육’

‘4.3평화교육’ 변수에 대하여는 브루스 커밍스(1986)의 ‘한국전쟁의 기원’, 권용은외(1998)의 ‘평화교육이론과 실천에 대한고찰’, 김동춘(2000)의 ‘근대의 그늘(한국의 근대성과 도덕의 위기)’, 김정빈(1997)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박찬식(2008)의 ‘제주의 역사’, 박명림(1999)의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서중석(2000)의 ‘조봉암과 1950년대-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이원복(2007)의 ‘평화능력 신장을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영권(2007)의 ‘제주4.3을 묻습니다.’ 양정심(2005)의 ‘제주4.3항쟁연구’, 김호진(1989)의 ‘한국의 권위주의 문화

와 민주화’, 강애란(2001)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정책실태 연구’, 고창훈(2008)의 ‘제주4.3을 통한 평화산업육성 전략 모색’, 권영성(2002)의 ‘헌법학원론’, 이봉철(1998)의 ‘21세기 새 정치 가치탐색’, 그리고 정애경(2005)의 ‘타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연구’ 등의 관련연구서와 단행본을 참조하여 ‘제주4.3사건’에 기초한 평화교육 소재를 추출하여 9가지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서 ①비폭력능력을 향상하는 것, ②생명을 존중하는 것, ③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 ④불의에 대한 국민의 저항, ⑤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⑥이념적 틀에서 벗어나는 것, ⑦대안을 탐색하거나 협상력을 증진하는 것, ⑧평화보장을 위하여 세계도시 등과 교류의 확장, ⑨소수인권의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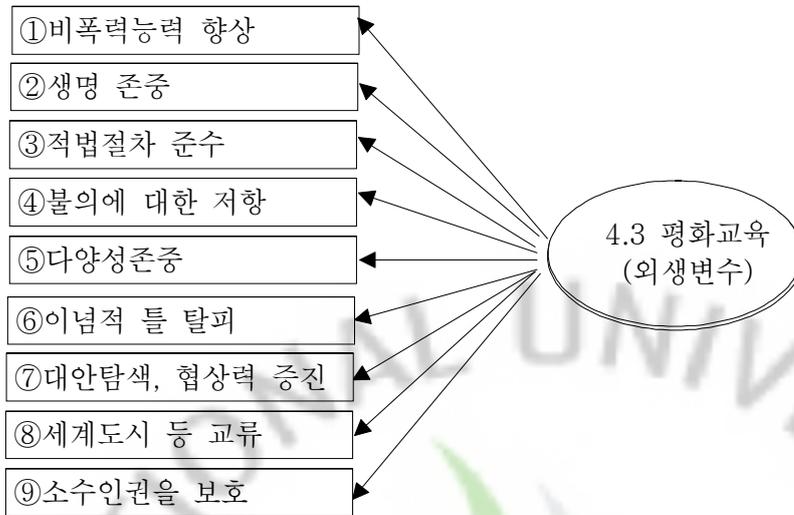
따라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4.3평화교육’의 소재로서 이 정의에 따른 요소들이 적절한지를 설문하였다. ‘4.3평화교육’ 변수의 설명도를 측정하는 모형은 【그림 3-2】와 같다.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한운섭·고창훈, 2008 : 167 ; 한운섭, 2009 : 347-355),⁹⁸⁾ ‘4.3평화교육’의 소재로 위 9가지는 제주도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소재로의 적절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전 연구에서의 문항내용을 적절하게 다시 수정하여 ‘4.3평화교육’의 소재로서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문항을 측정하였다. 즉 외생 측정용 문항은 9개이며, 이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외생변수가 ‘4.3평화교육’ 변수가 된다.

98) ①일례로서, 제주도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상대로 실시 한 조사에서 87%가 4.3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한운섭·고창훈, 2008 : 167)

②‘4.3평화교육’의 소재로는 위 9가지가 다 유효하였음이 확인되어 다시 이 연구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Han Youn-Sub, 2009 : 347-355)

【그림 3-2】 ‘4.3평화교육’ 변수의 측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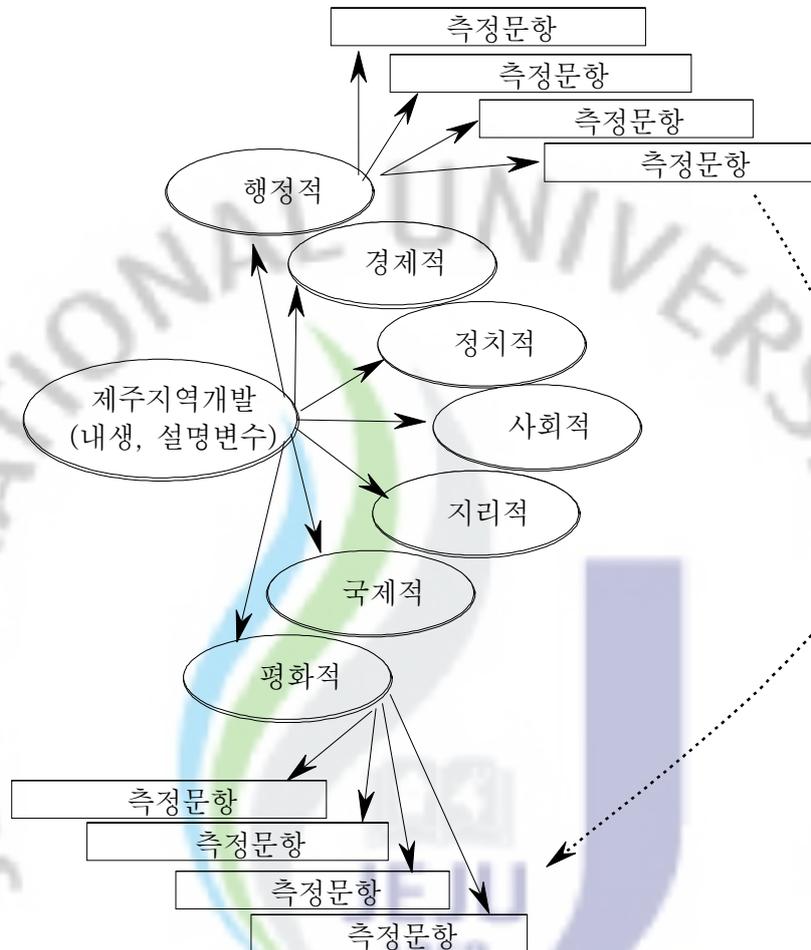
2. ‘제주지역개발’

‘제주지역개발’이란 “제주지역 내의 모든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창훈(2004)의 ‘세계평화섬 발전전략으로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연구’, 문정인(2007)의 ‘동북아 지역질서와 평화의 네트워크’, 박종화(2000)의 ‘지역개발론’, 부만근(2005)의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양덕순(2000)의 ‘제주형 평화의섬 모형 정립과 실천 전략’, 유영옥(1996)의 ‘지역정책론’, 허상수, (2006)의 ‘제주4.3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황명찬(1981)의 ‘지역개발과 지역중심 도시의 역할 및 개발방향’ 등을 참조하여 ‘제주지역개발’에 7가지 하위변인을 제시하였다.

7가지 하위변인은 【표 3-1】의 ‘내생변수의 측정문항’과 같이 ①행정적, ②경제적, ③정치적, ④사회적, ⑤지리적, ⑥국제적, ⑦평화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각 각의 하위변인 마다 측정용 문항을 3-4개씩을 두어서 ‘제주지역개발’ 변수의 통계치를 실측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3】 측정문항에 따른 변인과 내생변수와의 관계도와 같다. 측정수준은 등간, 서열척도로 5점 Likerd 형식의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그림 3-3】 측정문항에 따른 변인과 내생변수의 관계도



① 행정적 : ‘4.3평화교육’은 지역개발의 주체인 국가와 지방정부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하고자 하며, 주민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자원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제도의 개선에 열려있고자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표 3-1】 내생변수의 측정문항

내생 변수	하위 변인	측정문항
제주 지역 개발		(4.3평화교육은)
	①행정적	01. 국가와 제주도지역행정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02. 주민의 행정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03.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에 도움 줄 수 있다. 04. 지역발전 예산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경제적	05. 평화산업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6. 관광산업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7. 지역산업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8. 경제적 형평성 도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정치적	09. 지역개발에,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0.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다. 11. 제주공동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12. 문제해결에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태도를 육성할 수 있다.
	④사회적	13.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 줄 수 있다. 14. 제주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15.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6.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⑤지리적	17. 4.3피해 마을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8. 일본군 주둔지 등의 관광지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9. 생태지역 보전에 도움 줄 수 있다.
	⑥국제적	20. 국제교류의 증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21. 제주지역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다. 22. 국제간에 공동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3. 국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단체) 등을 지원할 것이다.
⑦평화적	24. 제주지역개발에 평화관련성을 높여줄 수 있다. 25. 평화증진에 헌신할 인재 육성에 도움 될 것이다. 26. 제주섬 사람에게 관용심을 조장하여 줄 것이다. 27. 평화의 섬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② 경제적 :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의 평화산업육성과 관광산업육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인적, 물적인 모든 자원을 파악 평가관리하며, 이들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계획된 노력을 하며, 지역 내 고정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도입 정착시키며, 개발과실에 대한 적정 분배로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③ 정치적 : ‘4.3평화교육’은 지역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개발과정에 개인의 사익은 감소하나, 집단적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한 제주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도 중시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개발 정책 수립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회적 : '4.3평화교육'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민들이 제주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만족감을 줄 것이다. 지역민의 인적개발 및 육성, 시민사회육성, 제주공동체로의 가치변화, 빈곤과 불평등 제거 등은 제주지역개발의 사회적 영역이 될 수 있다.

⑤ 지리적 : '4.3평화교육'은 중산간 등 4.3피해지역의 마을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본군 주둔지 등 군사지역의 관광지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⑥ 국제적 : 4.3평화교육은 국제교류의 증대를 가져오며,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이 개혁되며, 제주지역의 국제화에 기여하여, 지역안전 등 국제간의 공동협력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통상, 외교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방자치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하여 세계화를 위한 인식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적인 시민단체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국제적 연대활동이 증대되고, 이러한 단체 활동을 주관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에게 재정을 보조하는 등 장려정책을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 등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⑦ 평화적 :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있어서 '평화'와 관련성을 높일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섬 공동체 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섬 지역들과 연결하거나,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추구 전통을 세워나가고, 제주형 평화산업을 개발해 갈 수 있다. 즉, 제주의 정체성은 '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3.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도민들의 관심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제주도민들이 '제주4.3사건'에 대한 관심도와 4.3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 등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3관심

도'와 '시민단체관심도'로 설정하여 '4.3평화교육'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제주지역개발에 얼마나 매개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변수의 구성문항은 '4.3관심도'로는 ①4.3을 잘 아는 정도, ②4.3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③4.3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 ④4.3유적지를 방문하고 싶은 정도로 구성하였다.

'시민단체관심도'에는 ①시민단체를 알고 있는 정도, ②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 ③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④주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는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에 어떻게 매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각 각의 경로별로 검토할 것이다. 측정수준은 Likert 5점 방식의 등간 및 서열형식으로 하였다.

4. '인적특성' 과 '의식특성'

이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절변수로서 주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인으로서 인적특성과 의식특성을 파악하였다. 인적특성의 하위변인에는 ①성별, ②연령, ③학력, ④지역, ⑤직업군으로 하고, 의식특성으로 ⑥4.3교육받은 사실을 파악하였다.

구체적 측정문항은 ①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고, ②연령은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까지 및 51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③학력은 중졸이하, 고졸까지, 대졸까지,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고, ④지역은 주민등록지를 기준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였고, ⑤직업대조군은 '공무원', '교사(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분하였고, 그리고 ⑥4.3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조절변수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명목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측정하였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이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4.3평화교육'의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제주지역개발'에 어떠한 조절적 영향을 주는지? 또는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에 어떠한 조절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설 8】 , 【가설 9】 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한 예측적 의식을 추가설문 하였다. 즉 4.3교육확대와 도민 의식 형성에 관한 문항을 설정하여 ‘4.3평화교육’을 하여야 할 대상 범위를 어느 선까지 생각하는지? ‘4.3평화교육’으로 ‘도민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주도민들의 일반적 의식을 추적해 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를 반영하여 각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과 문항의 측정수준은 【표 3-2】 의 설문지 구성표와 같다.

【표 3-2】 설문지 구성표

변수	설문문항	측정수준 (문항수)	참고자료
4.3 평화 교육소재	【A01】 비폭력능력향상하기	등간, 서열 (11문항)	스미노우전개심권지불심권제민 이영호중원정정영이창창민영 커관진서이영이관민박이
	【A02】 생명의 존엄성		
	【A03】 적법절차의 중요성		
	【A04】 불의에 대한 저항		
	【A05-06】 탈자기 중심, 다양성 존중하기		
	【A07】 이념적 틀을 깨트리기		
	【A08-09】 대안탐색과 협상력 쌓기		
	【A10】 세계도시 등과의 교류		
	【A11】 소수인권 존중의 태도 기르기		
	제주 지역개발		
【B05-B08】 경제적인 측면			
【B09-B12】 정치적인 측면			
【B13-B16】 사회적인 측면			
【B17-B19】 지리적인 측면			
【B20-B23】 국제적인 측면			
【B24-B27】 평화적인 측면			
【B28-B34】 기타 인식 등			
4.3 관심도	【C01】 4.3을 알고 있는 정도	등간, 서열 (8문항)	연구자
	【C02】 4.3행사에 참여 하고 싶은 정도		
	【C03】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		
	【C04】 4.3유적지를 방문하고 싶은 정도		
시민단체 관심도	【C05】 시민단체를 알고 있는 정도	등간, 서열 (8문항)	연구자
	【C06】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정도		
	【C07】 공무원들의 시민단체 가입 활동		
	【C08】 주민들의 시민단체 가입 활동		
의식특성	【D01】 4.3교육을 받은 경험	명목 서열 (8문항)	연구자
	【D02】 4.3교육 대상 확대,		
	【D03】 도민 의식형성		
인적특성	【E】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		

제4절 조사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우선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중 제주도 소속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일반인 4개의 직업군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설문지는 4.3전문가와 학계의 관련 교수님들에게 검토를 거치어 내용타당성을 높이고, 2009년 6월중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2009년 1-4월 중에 제주도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⁹⁹⁾,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조사는 2009년 6월 15일-20일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사전조사에서 미비한 점을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및 7월중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방식에 의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표집은 신분별, 지역별 등을 감안 표본의 크기를 95%±3.7%의 신뢰수준에 들어올 수 있도록 700명(일반인250명, 교사150명, 공무원150명, 대학생150명)으로 하고(정대연, 1997 : 840-841)¹⁰⁰⁾, 비확률표본추출법인 임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송부와 연구자에 의하여 직접 주민들을 방문 조사하였다. 이 실증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에 대하여는 빈도분석을

99) 제주도청 및 사업소,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공무원과 소속 동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9.2.16-3.13사이 520부의 설문지를 우편 배부하였고, 그 결과 회수된 응답지는 72.3%인 376부였으며, 회수된 응답지 중 불성실한 응답 20부를 제외한 356부(94.7%)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3평화교육’의 9개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계속되는 본 연구의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0) ①표본크기(sample size) 결정하는 식은 $k\sqrt{\frac{N-n}{N-1} - \frac{P \times Q}{N}} \rightarrow n = \frac{k^2 \times N \times P \times Q}{d^2(N-1) + (k^2 \times P \times Q)}$

로서 $n = \frac{1.96^2 \times 559000 \times 0.5 \times 0.5}{0.037^2(559000 - 1) + (1.96^2 \times 0.5 \times 0.5)}$ 을 계산하면 표본의 크기로 700명 정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정대연, 1997 : 840-841).

②여기서 N=모집단의 크기(제주도민 559,000명), n=표본의 크기(미지수=>대략 700명으로 추정하였음), d=표집오차(3.7%), k=신뢰도 계수(95%의 신뢰도계수는 1.96), P와Q는 모집단에서 어떠한 표식을 가진 것의 비율과 갖지 않은 것의 비율로 P+Q=100%가 될 수 있도록, 각 각 0.5로 하여 P×Q를 0.5×0.5로 설정하였음.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류는 명목변수로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를 향하여 인구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조절되는지 조절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등간(서열) 수준으로 채집한 자료에 대하여 Cronbach's α 계수에 의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요인분석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 및 하위변인 단위로 사례 수 및 평균, 편차, 그리고 표준편차를 기록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가설검정이 주로 변수(하위변인) 간의 편차의 차이분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가설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3-3】 변수별 연구방법 및 내용표

변수별	연구방법	내용
인적특성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응답분포, 백분율)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통계 (사례 수, 평균, 편차, 표준편차)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성분석 (Reliability Analysis)	수집 자료의 신뢰성 (Cronbach's Alpha)
	상관분석 (Correlational Analysis)	변수(변인)간 상관성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경로분석 (Path Analysis)	변수사이 경로검증
위 변수와 인적/의식특성	변량분석 (ANOVA)	범주(명목)형-등간 형 변수의 평균차이 검증
의식특성 (4.3교육필요 /교육대상범위 →도민의식형성)	χ^2 검증 (Chi-Square Test)	범주(명목)형 자료의 교차분석 검증

이 연구의 가설검증은 명목변수(인구 통계적 분류)와 등간(서열) 변수 사이의 평균 차이 분석은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등간(서열) 변수 사이의 차이분석은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범주(명목)형 변수 사이의 차이분석은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변수 사이의 전체적인 경로모형은 AMOS에 의하여 최적의 모형을 추적하고, 경로 선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제4장 자료수집 및 분석

제1절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분석

1. 자료수집

이 연구를 위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공무원(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동사무소, 학교 교육행정공무원), 교사(제주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생(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 일반인(제주도내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25일 부터 2009년 7월 10일 사이 총 75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자와 결측 응답자 41부를 제외한 70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709부는 표본크기에 따른 모수추정에 있어서 95% ±3.7%의 신뢰구간사이에 있게 된다.

제주지역의 모수(전체인구)와 수집한 자료의 비교는 다음 【표 4-1】 과 같고, 실제 분석 자료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2】 와 같다.

【표 4-1】 제주도 지역의 모수(전체인구)와 분석자료 비교

		모수(단위: 천명)		표본 유효치(단위: 명)	
		빈도	%	빈도	%
성별	남	279	49.9	338	47.7
	여	280	50.1	371	52.3
	Total	559	100.0	709	100.0
지역별	제주시	405	72.5	509	71.8
	서귀포시	154	27.5	200	28.2
	Total	559	100.0	709	100.0

* 모수 : 2007.12.31 기준, 단위 : 천명.

** 2008년 통계정보(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 열린 행정 → 통계정보 참조)

2. 기초통계분석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표본 709명의 사례는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특성별로 분류되어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변수에 어떠한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을 보면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다.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모수(단위:천명)		표본유효치(단위: 명)		결측치
		빈도	%	빈도	%	
성별	남	167	51.5	338	47.7	0
	여	157	48.5	371	52.3	
	합계	324	100.0	709	100.0	
학력	중졸이하	51	17.0	16	2.3	3
	고졸까지	112	37.1	115	16.3	
	대졸까지	132	43.8	493	69.7	
	대학원이상	7	2.2	82	11.7	
	합계	302	100.0	706	100.0	
연령	30세까지	75	23.2	232	33.5	17
	31-35세까지	43	13.2	70	10.1	
	36-40세까지	53	16.2	107	15.5	
	41-45세까지	48	14.7	115	16.6	
	46-50세까지	45	13.9	105	15.2	
	51세 이상	61	18.8	63	9.1	
직업 (군집)	공무원	5	1.5	141	19.9	0
	교사	6	1.9	159	22.4	
	대학생	22	6.8	116	16.4	
	일반인	293	89.8	293	41.3	
	합계	324	100.0	709	100.0	
지역	제주시	240	73.3	509	71.8	0
	서귀포시	88	26.7	200	28.2	
	합계	328	100.0	709	100.0	
교육 경험	있음	-	-	351	49.6	1
	없음	-	-	357	50.4	
	합계	-	-	708	100.0	

- 1) 실제 설문조사가능 연령인 20세-60까지를 실제 비교할 모수로 설정하였음
- 2) 모수의 숫자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는 모수의 크기가 동일하게 공개되었음, 그러나 학력과 지역별 모수의 크기는 다르게 공개되어 있어서, 공개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3) 따라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은 모수의 분포에 알맞게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학력과 직업은 모수의 분포에 알맞게 표본을 추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표본추출에서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음
- 4) 모수 : 기준일은 2007.12.31 이고,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통계정보를 참조하였음

제2절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검증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하려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로, 검사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였느냐 하는 문제이다(성태제, 2005 : 83-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조사대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설문 응답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에 응하였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우수명, 2002 : 361).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여 신뢰도 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신뢰도 계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재검사신뢰도 계수가 가장 높고, 동형검사신뢰도, 그리고 반분검사신뢰도,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순으로 신뢰도 계수가 낮아진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과학적이고 가장 낮은 계수를 제공하므로 검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 도구를 개발하거나 선택할 때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태제, 2005 : 129).

이 연구에서도 신뢰도 정보제공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갖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Nunally(1978)는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 Cronbach's α 값이 .60 이상,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80,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경희, 2001 : 218).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인정하는 알파의 값이 .6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병서·김계수, 2001 : 299).

이 연구에서 측정된 709명을 갖고 최종분석에 활용하고자 신뢰도를 분석하고 요인 분석을 하며, 연구가설검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4-3】 및 【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와 같이 분석에 활용될 측정 자료는 .96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활용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각 변수별로 같은 개념을 정확히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의 측정결과 일관성 있는 응답으로 간주하고 모든 문항의 응답 자료를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3】 신뢰도 분석 결과(1)

변수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4.3 평 화 교 류	(A1)비폭력능력	176.55	528.401	.370	.961	
	(A2)생명존중	176.33	530.502	.370	.961	
	(A3)적법질차	176.62	528.886	.369	.961	
	(A4)불의에 저항	176.72	526.160	.416	.961	
	(A5)탈 자기중심	176.62	528.438	.350	.961	
	(A6)다양성 존중	176.51	530.459	.336	.961	
	(A7)이념의 초월	176.73	526.463	.395	.961	
	(A8)대안탐색	176.60	527.767	.409	.961	
	(A9)협상력향상	176.54	528.153	.390	.961	
	(A10)세계와 교류	176.70	525.717	.426	.961	
	(A11)소수인권존중	176.67	525.366	.437	.961	
4.3 관 심 도	(C1)4.3을 알	177.79	527.659	.341	.961	
	(C2)참여하고싶음	177.86	521.405	.536	.961	
	(C3)교육받고싶음	177.68	519.131	.542	.961	
	(C4)유적방문심정	177.55	519.065	.527	.961	
	시민 단체 관 심 도	(C5)시민단체알	178.06	524.967	.408	.961
		(C6)단체가입심정	178.24	521.135	.477	.961
		(C7)단체가입(공무원)	177.99	523.513	.396	.961
		(C8)단체가입(시민)	177.63	521.743	.470	.961

Cronbach의 알파 = .961

【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2)

변수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제주 지역 개발	행정적	(B1)행정의개방	177.28	521.312	.575	.960
		(B2)행정참여	177.34	519.682	.632	.960
		(B3)지역적합정책	177.21	519.523	.622	.960
		(B4)예산지원	177.39	517.769	.609	.960
	경제적	(B5)평화산업육성	176.98	518.315	.642	.960
		(B6)관광산업육성	177.37	518.642	.611	.960
		(B7)지역산업개발	177.45	517.118	.653	.960
		(B8)경제적형평도모	177.60	519.621	.602	.960
	정치적	(B9)갈등해소능력	177.08	518.843	.620	.960
		(B10)공익추구태도	177.23	518.170	.609	.960
		(B11)제주공동체입장	177.03	517.332	.670	.960
		(B12)민주적절차	177.05	517.689	.655	.960
	사회적	(B13)생활환경개선	177.61	518.178	.621	.960
		(B14)삶의만족감	177.45	514.530	.684	.960
		(B15)시민사회육성	177.26	514.255	.723	.960
		(B16)불평등해소	177.35	515.802	.692	.960
	지리	(B17)4.3피해복원	176.96	520.875	.590	.960
		(B18)4.3특별보존	176.93	521.106	.615	.960
		(B19)생태환경보전	177.40	519.923	.590	.960
	국제적	(B20)국제교류증대	177.55	517.200	.661	.960
		(B21)제주의 국제화	177.52	516.400	.644	.960
		(B22)국제적협력	177.46	516.915	.675	.960
		(B23)국제활동지지	177.51	516.589	.668	.960
	평화적	(B24)평화관련성	177.05	515.807	.695	.960
		(B25)인재육성	177.14	516.036	.697	.960
		(B26)관용심배양	177.27	516.703	.685	.960
		(B27)평화성정착	177.00	517.088	.660	.960
	총체적	(B28)제주지역개발	177.36	514.662	.715	.960
		(B29)제주인정체성	177.12	515.128	.697	.960
		(B30)사회통합	177.25	513.875	.712	.960
		(B31)국가발전	177.42	512.404	.721	.960

사례수 = 709, 항목수 = 50, Cronbach의 알파 = .961

2. 타당성 검증

키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를, 그리고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듯이 인간의 잠재적 특성인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성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타당도(validity)는 검사 도구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는가, 검사점수가 검사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타당도 검증이다. 즉 이는 검사도구 목적의 적합성에 해당된다(성태제, 2005 : 36).

AERA, APA, NCME(1999)에서는 타당도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교육 및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크게 다섯 종류의 타당도를 소개하고 있다. 즉 타당도에는 ① 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 ②반응과정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sponse process), ③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④다른 변수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⑤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consequences of testing)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AERA, APA, & NCME, 1999 ; 성태제, 2005 : 41-42).

1) 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내용타당도, 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

이는 논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분석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도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는 검사내용을 전문가에 의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는 검사 개발에서 중심관건이며,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 측정 내용의 선택, 문항유형의 선택, 점수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성태제, 2005 : 42-43). Anastasi(1988)는 준거참조검사 제작시 내용타당도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내용타당도가 계량화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학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Anastasi, A., 1988 ; 성태제, 2005 : 43).

이 연구에서는 ‘4.3평화교육’ 문항에 대하여는 4.3관련전문가와 관련교수님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고 4.3과 관련하여 ‘평화교육’에 관련성 있는 내용들로 문항을 구성하

였으며¹⁰¹⁾, ‘제주지역개발’ 문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론¹⁰²⁾ 등의 관련 책자를 근거로 개발함으로서 내용타당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2) '반응과정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sponse process)

이는 피험자의 응답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반응과정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構因)과 피험자의 수행 또는 반응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근거하여 타당도를 검증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에서 일반적 공식에 따르기 보다는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추론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반응과정에 기초한 근거를 밝히는 작업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며 반응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성태제, 2005 : 45-46).

3)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구인타당도, 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이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창의력을 측정할 때 창의력은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자발성, 그리고 자신감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검사를 제작, 실시하여 그 검사도구가 이와 같은 구인들을 측정하고 있다면 그 검사는 구인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성태제, 2005 : 46-47).¹⁰³⁾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는 ①상관계수법, ②실험설계법, ③요인분석법을 들 수 있다.

101) 커밍스, 권용은, 김동춘, 서중석, 이원복, 양정심, 이영권, 김호진, 고창훈, 박찬식, 박명림, 이봉철 등의 책자를 참조로 평화교육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4.3관련전문가와 관련 교수님에게 내용타당성을 검토 받음.

102) 고창훈, 문정인, 박종화, 부만근, 양덕순, 유영욱, 허상수, 황명찬 등의 지방행정론 중 지역개발 부분과 제주지역과 관련된 논문 등을 참조하여 제주지역개발과 관련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관련 교수님에게 내용타당성을 검토 받음.

103)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라는 변수를 측정하면서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자발성, 자신감, 그리고 암기력을 구인으로 보고 측정한 결과, 측정점수를 갖고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관계수가 각 요인별로 요인상호관계에서 .7이상인데, 암기력만 각 요인별 관계에서 .3미만으로 상관계수가 낮다면, 암기력이라는 요인은 창의성이라는 변수에 구성요인(構因, construct)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상관계수법은 각 구인들에 의하여 얻어진 점수와 심리특성을 측정하는 총점과의 상관관계수에 의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신뢰계수가 낮으면 그 낮은 구인은 심리적 특성을 잘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설계법은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는 심리적 구인을 실험집단에는 처치하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면 그 구인은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구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적 방법은 요인 분석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란 복잡하고 정의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변수들을 모아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의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성태제, 2005 : 46-51). 첫째, 문항을 제작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문항점수를 얻는다. 둘째,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한다. 셋째, 요인고유값(eigen value)에 의하여 요인수를 결정한다.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구인들을 확인한다. 넷째, 요인을 회전시킨다. 다섯째, 회전된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이 큰 문항들의 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이름을 부여한다.

4) 다른 변수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lations to other variables)

이는 검사점수와 외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외적변수에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구인을 측정하는 검사점수, 고용상황에서의 수행 준거, 집단분류와 같은 범주변수 등이 포함된다.

이에는 ‘수렴 및 판별근거(convergent and discriminant evidence)’(임인재, 1980 ; 성태제, 2005 : 61)¹⁰⁴⁾와 ‘검사-준거 관련성(test-criterion relationships)’(임인재, 1980; 성태제, 2005 : 61-74),¹⁰⁵⁾ ‘타당도 일반화(validity generalization)’로 (성태제, 2005 : 74-75)¹⁰⁶⁾ 분류하고 있다.

104) 여러방법으로 동일한 특성을 측정할 때, 그들 간의 상관이 높으면 수렴근거가 있으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다른 특성을 측정할 때 다른 특성들 간의 상관이 높지 않으면 판별근거를 가진다(임인재, 1980 ; 성태제, 2005 : 60-61).

105) 검사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준거 수행을 예측하는가에 관심을 두며, 이에는 예측타당도가 있어 미래행위를 예측하거나 새로 제작한 검사지를 기존의 준거에 의하여 타당도를 공인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인타당도가 있다(임인재, 1980 ; 성태제, 2005 : 61-74).

5)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consequences of testing)

이는 결과 타당도로서 타당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으로 실시한 평가가 무엇을 위한 평가이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Cureton(1951)은 동일한 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의 의미도 검사를 치른 집단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Cronbach(1971)도 타당도는 검사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각 검사의 활용에 비추어 새로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타당도란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고 난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평가결과의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평가결과를 이용할 때의 목적 도달, 평가결과가 사회에 주는 영향, 그리고 평가결과를 이용할 때 사회의 변화들과 관계 있다. Messick(1989)은 타당도의 개념이 사회적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검사사용의 사회적 결과는 타당도의 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결과타당도(consequential validity)를 제안하였다(성태제, 2005 : 75-79).

이 연구에서는 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내용타당도)로 전문가 검토 외에 관련 전공서를 참고하였으며, 내적구조에 기초한 근거(구인타당도)로서 요인타당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며,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consequences of testing)인 결과 타당도로서 '4.3평화교육'시 후속되어 나타날 수 있는 도민 의식을 동시에 점검하여, 지역사회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 분석결과 이 연구에 활용된 수집자료는 일관성 있는 응답이므로(Cronbach의 알파 = .961) 수집자료를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변수의 수가 많고 공통인자분산의 값이 그다지 심하게 변하지 않을 때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주성분분석(주대각성분요인추출법)방법으로 분석하고, 최초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변인들의 분산구조를 그대로 유지 분석하는 공분산행렬법을 이용하였다(이영준, 2002 : 28-34).¹⁰⁷⁾ 또한 요인의 수를 어

106) 검사-준거관련성에 기초한 타당도의 근거를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의 타당화 연구의 통계값들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면 이는 타당도 일반화로 간주된다(성태제, 2005 : 74-75).

107) 공분산행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구한 고유값은 각 변수를 표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측정 척도를 재조정된 값(rescaled component)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분석값은 재조정(rescaled)값으로 제시하였다(이영준, 2002 : 28-34).

는 정도로 축소하고 늘릴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에 해당하는 요인의 수를 선택하였다(성태제, 2005 : 54).

요인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출된 요인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의 문제인데 연구자는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요인의 이름을 붙이고, 이 요인을 논문의 구성에 중요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즉 ‘4.3평화교육’ 변수는 11개 문항을 【표 4-5】와 같이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변수이름은 ‘4.3평화교육’ 속에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타당하게 묶여 있다. 따라서 이 변수는 표와 같이 회전하지 않고도 최초추출된 요인 적재 값만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할 수 있다.

매개변수는 총 8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묶였다. 그 중 제1요인은 ‘4.3관심도’이고, 제2요인은 ‘시민단체관심도’이며, 강하게 묶이지 않는 1개 문항 (C5 시민단체 앞)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종속변수는 ‘제주지역개발’이라는 변수 밑으로 묶으면서, 그 하위변인을 8개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표 4-6】의 요인축약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고유값 1 이상으로 묶이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축소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분석된 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이 연구의 진정한 목적인 가설검증을 하는데 사전적으로 타당한 자료를 탐색하고 구성하기 위한 보조적 분석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5】 ‘4.3평화교육’, ‘4.3관심도’와‘시민단체관심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평화교육	공통성	문항	4.3 관심도	시민 단체 관심도	공통 성
(A1)비폭력능력	.664	.440	(C1)4.3을 앞	.791	.024	.626
(A2)생명존중	.692	.479	(C2)참여하고싶음	.812	.325	.765
(A3)적법절차	.707	.500	(C3)교육받고싶음	.800	.292	.725
(A4)불의에 저항	.725	.525	(C4)유적방문심정	.753	.354	.692
(A5)탈 자기중심	.673	.453	(C5)시민단체앞	.569	.438	.515
(A6)다양성 존중	.713	.509	(C6)단체가입심정	.456	.697	.694
(A7)이념의 초월	.672	.452	(C7)단체가입(공무원)	.102	.879	.784
(A8)대안탐색	.750	.563	(C8)단체가입(시민)	.259	.802	.710
(A9)협상력향상	.724	.525	-	-	-	-
(A10)세계와 교류	.656	.430	-	-	-	-
(A11)소수인권존중	.691	.477	-	-	-	-
고유치		5,353	고유치	4,438	1,073	
설명변량		48.660	설명변량	55,471	13,410	
누적변량		48.660	누적변량	55,471	68,881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3 iterations
 제외 : 1개문항(C5)

【표 4-6】 ‘제주지역개발’의 탐색적 요인분석

	제주정체성 (4.3/평화/통합)	생태환경, 국제협력적	행정및 경제적	정치적	공통성
(B1)행정의개발	.168	.141	.692	.195	.565
(B2)행정참여	.201	.137	.703	.312	.652
(B3)지역적합정책	.261	.077	.685	.299	.632
(B4)예산지원	.249	.252	.706	.126	.640
(B6)관광산업육성	.336	.387	.579	.054	.601
(B7)지역산업개발	.300	.421	.644	.090	.691
(B8)경제적형평도모	.087	.463	.605	.238	.645
(B13)생활환경개선	.042	.457	.531	.377	.635
(B14)삶의만족감	.228	.405	.522	.367	.623
(B9)갈등해소능력	.254	.211	.118	.738	.667
(B10)공익추구태도	.145	.247	.245	.710	.646
(B11)제주공동체입장	.408	.105	.222	.668	.673
(B12)민주적절차	.351	.052	.274	.656	.631
(B15)시민사회육성	.348	.297	.302	.582	.639
(B16)불평등해소	.262	.338	.362	.548	.614
(B19)생태환경보전	.249	.656	.203	.180	.566
(B20)국제교류증대	.235	.787	.218	.196	.760
(B21)제주의 국제화	.240	.813	.245	.135	.797
(B22)국제적협력	.306	.766	.186	.214	.762
(B23)국제활동지지	.202	.753	.254	.233	.727
(B24)평화관련성	.607	.295	.156	.411	.649
(B25)인재육성	.575	.321	.183	.401	.627
(B26)관용심배양	.427	.360	.224	.448	.563
(B27)평화성정착	.686	.239	.146	.318	.651
(B28)제주지역개발	.519	.494	.386	.147	.684
(B29)제주인정체성	.687	.280	.246	.230	.665
(B30)사회통합	.561	.360	.252	.317	.608
(B31)국가발전	.458	.459	.401	.221	.630
(B5)평화산업육성	.630	.117	.322	.264	.584
(B17)4.3피해복원	.735	.178	.172	.125	.617
(B18)4.3특별보존	.701	.155	.173	.192	.582
고유치	15,322	1,958	1,559	1,185	
설명변량	49,427	6,317	5,029	3,822	
누적변량	49,427	55,744	60,773	64,594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7 iterations.

따라서 가설검증에서는 4개 하위변인으로 묶인다고 해서 이에 구속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문항이 내포하는 의미에서 유사성을 고려하면서 주제에 맞는 변인으로 5개 내지 6개로 묶어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표 4-43】의 잠재변수별 관측문항 정리, 【표 4-45】의 수정모형 비교 분석표와 같이 더 적합한 구조모형이 형성되었다. 이

를 그림으로 보면 탐색적 요인분석(4개요인)에 따른 구조모형은 【그림 4-4】의 중간 수정모형이고, 6개 요인으로 수정한 결과는 【그림 4-5】의 최종적 적합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개발’ 변수는 6개 요인으로 구성함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요인별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결과 같은 분야로 측정된 것으로 분류되는 요인은 ‘4.3평화교육’은 단일요인(11문항), ‘4.3관심도’는 4문항, 시민단체관심도는 3문항으로 변수가 구성되었다.

‘제주지역개발’ 변수는 총 31개 문항인데, ‘제주정체성’(4.3관련 3문항/평화관련 4문항/통합적 4문항)과 관련하여 11개 문항, ‘행정 및 경제관련’ 요인으로 9문항, ‘정치적’ 관련 요인으로 6문항, ‘생태환경 및 국제 협력적’ 요인으로 5문항으로 묶이어 4가지 하위변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표본 사례 수는 709명이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내용은 【표 4-7】과 같이 요인별 기술통계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하였다. 각 문항별로 보면 최소값은 (A2)생명존중과 (A6)다양성 존중이 2이고,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가 1이고, 최대값은 모두가 5이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4.3평화교육’은 평균 4.10-4.50(표준편차 .621-794)으로 긍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4.3관심도’는 평균 2.97-3.29(표준편차 .795-.900)로 부정에서 보통을 나타내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분산의 폭도 넓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응답패턴에 평화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폭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견주어 ‘시민단체관심도’는 평균 2.60-3.21(표준편차 .882-.943)로 ‘4.3관심도’ 보다 더욱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점수도 더욱 낮아 보통 이하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7】 요인별 기술통계(1)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4.3 평화 교육	(A1)비폭력능력	1	5	4.29	.736
	(A2)생명존중	2	5	4.50	.621
	(A3)적법절차	1	5	4.22	.712
	(A4)불의에 저항	1	5	4.12	.771
	(A5)탈 자기중심	1	5	4.21	.774
	(A6)다양성 존중	2	5	4.33	.681
	(A7)이념의 초월	1	5	4.10	.794
	(A8)대안탐색	1	5	4.24	.703
	(A9)협상력향상	1	5	4.30	.715
	(A10)세계와 교류	1	5	4.13	.775
	(A11)소수인권존중	1	5	4.17	.775
4.3 관심 도	(C1)4.3을 알	1	5	3.05	.838
	(C2)참여하고싶음	1	5	2.97	.795
	(C3)교육받고싶음	1	5	3.16	.874
	(C4)유적방문심정	1	5	3.29	.900
시민 단체 관심 도	(C6)단체가입심정	1	5	2.60	.897
	(C7)단체가입(공무원)	1	5	2.85	.943
	(C8)단체가입(시민)	1	5	3.21	.882

사례수 : 709, 강한부정(1) ↔ (3)보통↔(5)강한긍정

‘제주지역개발’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면 (B17)4.3피해복원은 최소값이 2로서 강한 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최소값 1과 최대값 5사이에서 평균값이 3.22-3.91(표준편차 .708-.8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3평화교육’보다는 낮은 평균점과 넓은 편차를 갖고 있어서 ‘4.3평화교육’ 보다는 낮은 긍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의 변수보다는 높은 긍정성과 낮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개발’의 문항 점수들을 보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수라고 볼 수 있어 ‘제주지역개발’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가설검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4-8】 요인별 기술통계(2)

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제주 지역 개발	(B1) 행정의 개방	1	5	3.56	.747
	(B2) 행정참여	1	5	3.50	.738
	(B3) 지역적합정책	1	5	3.63	.755
	(B4) 예산지원	1	5	3.45	.831
	(B5) 평화산업육성	1	5	3.86	.773
	(B6) 관광산업육성	1	5	3.47	.798
	(B7) 지역산업개발	1	5	3.39	.799
	(B8) 경제적형평도모	1	5	3.23	.775
	(B9) 갈등해소능력	1	5	3.75	.780
	(B10) 공익추구태도	1	5	3.60	.816
	(B11) 제주공동체입장	1	5	3.81	.773
	(B12) 민주적절차	1	5	3.78	.778
	(B13) 생활환경개선	1	5	3.22	.801
	(B14) 삶의만족감	1	5	3.39	.845
	(B15) 시민사회육성	1	5	3.58	.810
	(B16) 불평등해소	1	5	3.48	.796
	(B17) 4.3피해복원	2	5	3.88	.745
	(B18) 4.3특별보존	1	5	3.91	.708
	(B19) 생태환경보전	1	5	3.44	.778
	(B20) 국제 교류증대	1	5	3.29	.787
	(B21) 제주의 국제화	1	5	3.32	.833
	(B22) 국제적협력	1	5	3.38	.780
	(B23) 국제활동지지	1	5	3.33	.799
	(B24) 평화관련성	1	5	3.78	.794
	(B25) 인재육성	1	5	3.70	.785
	(B26) 관용심배양	1	5	3.57	.776
	(B27) 평화성정착	1	5	3.84	.792
	(B28) 제주지역개발	1	5	3.48	.807
	(B29) 제주인정체성	1	5	3.72	.812
	(B30) 사회통합	1	5	3.58	.834
	(B31) 국가발전	1	5	3.42	.867

사례수 : 709, 강한부정(1) ↔ (3)보통 ↔ (5)강한긍정

제3절 변량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

이 연구에서 인적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과 ‘4.3교육받음’의 인자(factor)에 따라 종속변수인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그리고 ‘시민단체관심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 변량분석은 모수의 정규분포성을 우선 검토하고, 동질성이 있는 통계량에 한하여 평균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였다.

1. 가설 1에 대한 변량분석(ANOVA)을 하는 이유

이 절에서 검증할 【가설 1】에 대한 언명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에 인적특성은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1】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4.3교육 받음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성별’, ‘연령’, ‘학력’, ‘지역’, 그리고 ‘직업’과 ‘4.3교육 받음 여부’는 명

목형으로 측정된 자료이고,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는 등간수준으로 측정된 자료로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T-검증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수차례의 T-검증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과 제1종 오류의 발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다변량분석(MANOVA)로 2개 이상의 인자(factor)와 2개 이상의 종속변수를 한꺼번에 분석을 통하여 주효과와 인자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에는 여러 변수들을 포괄하면서 모수의 동질성(정규분포성)을 띄어야 하는데, 이 자료의 경우 단일 인자와 단일종속변수의 경우에는 정규분포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변수(인자)들이 섞여지는 자료에서 정규분포성을 띄고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자료는 정규분포성이 확인된 단일인자와 종속변수들 간의 차이분석인 변량분석(ANOVA)이 보다 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설 1의 검증(변량분석)

【가설 1-1】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은 ‘성별’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4-9】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지역개발’ 변수 내 ‘경제및행정적’(p=.017<.05), ‘정치적’(p=.030<.05), ‘국제적’(p=.012<.05)변인은 동질성(Levene) 검증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 후의 분석을 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인 중 ‘4.3평화교육’은 F값 4.027이고, p=.045<.05로 성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4.3관심도’는 p=.912>.05, ‘시민단체관심도’는 p=.338>.05, ‘제주정책성’은 p=.667>.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채택이 되었다.

【표 4-9】 ‘성별’에 따른 차이(ANOVA)

		Descriptives				Levene Test (Sig.)	ANOVA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	Sig.	
4.3 평화교육	남	338	4.1969	.52918	.02878	.307	4.027	.045	
	여	371	4.2737	.49015	.02545				
	Total	709	4.2371	.51021	.01916				
사삼 관심도	남	338	3.1430	.79746	.04338	.482	.012	.912	
	여	371	3.1366	.75092	.03899				
	Total	709	3.1396	.77291	.02903				
시민단체 관심도	남	338	2.9142	.78952	.04294	.458	.918	.338	
	여	371	2.8589	.74627	.03874				
	Total	709	2.8853	.76715	.02881				
제주 지역 개발	경제, 행정적	남	338	3.4119	.65065	.03539	.017	.317	.574
		여	371	3.4376	.56223	.02919			
		Total	709	3.4253	.60569	.02275			
	제주 정체성	남	338	3.6620	.69047	.03756	.072	.185	.667
		여	371	3.6830	.60712	.03152			
		Total	709	3.6730	.64781	.02433			
	정치적	남	338	3.6124	.65881	.03583	.030	2.884	.090
		여	371	3.6912	.57567	.02989			
		Total	709	3.6536	.61752	.02319			
국제적	남	338	3.3521	.77009	.04189	.012	.772	.380	
	여	371	3.3046	.66897	.03473				
	Total	709	3.3272	.71883	.02700				

【가설 1-2】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는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기각

다음은 ‘연령’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4-10】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4.3관심도’(p=.026<.05) 변인은 동질성(Levene) 검증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 후의 분석을 할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인들은 모수에 정규분포성은 있으나 가설과 같이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의 차이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4.3평화교육’(p=.691>.05), ‘시민단체관심도’(p=.918>.05), ‘경제·행정적’(p=.552>.05), ‘제주정체성’(p=.828>.05), ‘정치적’(p=.729>.05), ‘국제적’(p=.260>.05) 모두가 임계치 이상 이기에 연구가설은 기각이 되었다. 따라서 【가설 1-2】 는 기각이 되었다.

【표 4-10】 ‘연령’에 따른 차이(ANOVA)

		Descriptives				Levene Test (Sig.)	ANOVA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	Sig.
4.3 평화교육	30세까지	232	4.2273	.50286	.03301	.447	.612	.691
	31-35세까지	70	4.2844	.50413	.06025			
	36-40세까지	107	4.2583	.47586	.04600			
	41-45세까지	115	4.1913	.49638	.04629			
	46-50세까지	105	4.2736	.54246	.05294			
	51세 이상	63	4.1818	.56820	.07159			
	Total	692	4.2348	.50961	.01937			
4.3 관심도	30세까지	232	3.1279	.80846	.05308	.026	.120	.988
	31-35세까지	70	3.1143	.59760	.07143			
	36-40세까지	107	3.1371	.77966	.07537			
	41-45세까지	115	3.1449	.75333	.07025			
	46-50세까지	105	3.1619	.75690	.07387			
	51세 이상	63	3.2011	.93429	.11771			
	Total	692	3.1426	.77853	.02960			
시민단체 관심도	30세까지	232	2.8951	.76731	.05038	.876	.291	.918
	31-35세까지	70	2.9333	.72809	.08702			
	36-40세까지	107	2.9377	.79454	.07681			
	41-45세까지	115	2.8609	.71189	.06638			
	46-50세까지	105	2.8317	.80877	.07893			
	51세 이상	63	2.8677	.81108	.10219			
	Total	692	2.8878	.76742	.02917			
경제, 행정적	30세까지	232	3.3736	.63183	.04148	.347	.797	.552
	31-35세까지	70	3.4571	.66842	.07989			
	36-40세까지	107	3.5088	.56512	.05463			
	41-45세까지	115	3.4396	.56337	.05253			
	46-50세까지	105	3.4169	.64214	.06267			
	51세 이상	63	3.4145	.54294	.06840			
	Total	692	3.4242	.60833	.02313			
제주 정책성	30세까지	232	3.7144	.65554	.04304	.242	.430	.828
	31-35세까지	70	3.6446	.68122	.08142			
	36-40세까지	107	3.6846	.57522	.05561			
	41-45세까지	115	3.6761	.63174	.05891			
	46-50세까지	105	3.6095	.66860	.06525			
	51세 이상	63	3.6528	.74170	.09345			
	Total	692	3.6749	.65159	.02477			
제주 지역개발	30세까지	232	3.6841	.61983	.04069	.171	.563	.729
	31-35세까지	70	3.6980	.55597	.06645			
	36-40세까지	107	3.6555	.57310	.05540			
	41-45세까지	115	3.6186	.61130	.05700			
	46-50세까지	105	3.6408	.69284	.06761			
	51세 이상	63	3.5578	.67041	.08446			
	Total	692	3.6521	.62087	.02360			
국제적	30세까지	232	3.2823	.72898	.04786	.230	1.304	.260
	31-35세까지	70	3.2321	.62745	.07500			
	36-40세까지	107	3.4603	.65710	.06352			
	41-45세까지	115	3.3304	.77555	.07232			
	46-50세까지	105	3.2810	.72199	.07046			
	51세 이상	63	3.3810	.77493	.09763			
	Total	692	3.3215	.72087	.02740			

※ df : Between Group 5, Within Group 686, Total 691.

【가설 1-3】 ‘4.3평화교육’ , ‘제주지역개발’ , ‘4.3관심도’ , ‘시민단체관심도’ 는 ‘학력’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은 ‘학력’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4-11】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4.3관심도’(p=.001<.05) 변인은 동질성(Levene) 검증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 후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

【표 4-11】 ‘학력’에 따른 차이(ANOVA)

		Descriptives				Levene Test (Sig.)	ANOVA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	Sig.
4.3 평화교육	중졸이하	16	3.8352	.50585	.12646	.278	11.669	.000
	고졸까지	115	4.0711	.46663	.04351			
	대졸까지	493	4.2587	.50153	.02259			
	대학원이상	82	4.4202	.52867	.05838			
	Total	706	4.2373	.51057	.01922			
4.3 관심도	중졸이하	16	3.5417	1.12134	.28034	.001	7.208	.000
	고졸까지	115	2.8667	.86383	.08055			
	대졸까지	493	3.1684	.73548	.03312			
	대학원이상	82	3.2520	.69203	.07642			
	Total	706	3.1374	.77318	.02910			
시민단체 관심도	중졸이하	16	3.2083	.94183	.23546	.205	3.350	.019
	고졸까지	115	2.7043	.83976	.07831			
	대졸까지	493	2.9101	.74613	.03360			
	대학원이상	82	2.9268	.72959	.08057			
	Total	706	2.8853	.76871	.02893			
경제, 행정적	중졸이하	16	3.5000	.74480	.18620	.624	.289	.833
	고졸까지	115	3.3836	.60398	.05632			
	대졸까지	493	3.4330	.61026	.02748			
	대학원이상	82	3.4214	.56054	.06190			
	Total	706	3.4251	.60601	.02281			
제주 지역 개발	중졸이하	16	3.6172	.74648	.18662	.481	7.628	.000
	고졸까지	115	3.4533	.67871	.06329			
	대졸까지	493	3.6922	.62430	.02812			
	대학원이상	82	3.8811	.64517	.07125			
	Total	706	3.6735	.64762	.02437			
정치적	중졸이하	16	3.3661	.65976	.16494	.990	10.635	.000
	고졸까지	115	3.4037	.62793	.05855			
	대졸까지	493	3.6946	.59318	.02672			
	대학원이상	82	3.8240	.63939	.07061			
	Total	706	3.6548	.61819	.02327			
국제적	중졸이하	16	3.3594	.73012	.18253	.879	1.816	.143
	고졸까지	115	3.2391	.73478	.06852			
	대졸까지	493	3.3210	.71463	.03219			
	대학원이상	82	3.4787	.71276	.07871			
	Total	706	3.3268	.71931	.02707			

※ df : Between Group 4, Within Group 702, Total 706.

따라서 모수에 정규분포성이 있는 나머지 변인들은 보면, ‘4.3평화교육’은 F값 11.669, $p=.000<.05$ 이고, ‘시민단체관심도’는 F값 3.350, $p=.019<.05$ 이고, ‘제주정체성’은 F값 7.628, $p=.000<.05$ 이고, ‘정치적’은 F값 10.635, $p=.000<.05$ 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행정적’은 F값 .289, $p=.883>.05$, ‘국제적’은 F값 1.816, $p=.143>.05$ 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을 만큼 평균차이가 없다. 따라서 【가설 1-3】은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4】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은 ‘지역’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4-12】 ‘지역’에 따른 차이(ANOVA)

		Descriptives				Levene Test (Sig.)	ANOVA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	Sig.	
4.3 평화교육	제주시	509	4.2613	.51470	.02281	.387	4.082	.044	
	서귀포시	200	4.1755	.49454	.03497				
	Total	709	4.2371	.51021	.01916				
4.3 관심도	제주시	509	3.1618	.77543	.03437	.326	1.479	.224	
	서귀포시	200	3.0833	.76550	.05413				
	Total	709	3.1396	.77291	.02903				
시민단체 관심도	제주시	509	2.8821	.78374	.03474	.091	.031	.861	
	서귀포시	200	2.8933	.72505	.05127				
	Total	709	2.8853	.76715	.02881				
제주 지역 개발	경제, 행정적	제주시	509	3.4241	.60276	.02672	.704	.007	.934
		서귀포시	200	3.4283	.61461	.04346			
		Total	709	3.4253	.60569	.02275			
	제주 정체성	제주시	509	3.6889	.62360	.02764	.160	1.087	.298
		서귀포시	200	3.6325	.70573	.04990			
		Total	709	3.6730	.64781	.02433			
	정치적	제주시	509	3.6789	.59414	.02633	.108	3.034	.082
		서귀포시	200	3.5893	.67066	.04742			
		Total	709	3.6536	.61752	.02319			
국제적	제주시	509	3.3571	.70734	.03135	.354	3.121	.078	
	서귀포시	200	3.2513	.74369	.05259				
	Total	709	3.3272	.71883	.02700				

※ df : Between Group 1, Within Group 707, Total 708.

【표 4-12】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든 변인이 Levene 검증결과 $p>.05$ 으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서 계속 모수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모수분석결과 ‘4.3평화교육’ 만이 평균차이에 유의하였다.(F값 4.082, p=.044<.05) 나머지 변인들은 ‘4.3관심도’(p=.224), ‘시민단체관심도’(p=.861), ‘경제·행정적’(p=.934), ‘제주정체성’(p=.298), ‘정치적’(p=.082), ‘국제적’(p=.078)으로 나타나 유의한 평균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설 1-4】는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5】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은 ‘직업’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4-13】 ‘직업’에 따른 차이(ANOVA)

		Descriptives				Levene Test (Sig.)	ANOVA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	Sig.
4.3 평화교육	공무원	141	4.2418	.55743	.04694	.034	13.578	.000
	교사	159	4.4494	.45354	.03597			
	대학생	116	4.1520	.42603	.03956			
	일반인	293	4.1533	.51473	.03007			
	Total	709	4.2371	.51021	.01916			
4.3 관심도	공무원	141	3.2861	.62052	.05226	.007	9.015	.000
	교사	159	3.3333	.61965	.04914			
	대학생	116	3.0460	.88126	.08182			
	일반인	293	3.0011	.83470	.04876			
	Total	709	3.1396	.77291	.02903			
시민단체 관심도	공무원	141	2.8440	.69983	.05894	.025	.821	.483
	교사	159	2.9371	.66155	.05246			
	대학생	116	2.9483	.86767	.08056			
	일반인	293	2.8521	.80861	.04724			
	Total	709	2.8853	.76715	.02881			
경제, 행정적	공무원	141	3.4216	.61800	.05205	.492	.718	.542
	교사	159	3.4724	.56184	.04456			
	대학생	116	3.3640	.61883	.05746			
	일반인	293	3.4259	.61812	.03611			
	Total	709	3.4253	.60569	.02275			
제주 정체성	공무원	141	3.6773	.56855	.04788	.169	11.066	.000
	교사	159	3.9057	.59129	.04689			
	대학생	116	3.6703	.65263	.06059			
	일반인	293	3.5456	.67813	.03962			
	Total	709	3.6730	.64781	.02433			
정치적	공무원	141	3.7001	.56303	.04742	.329	10.167	.000
	교사	159	3.8589	.57750	.04580			
	대학생	116	3.6096	.61722	.05731			
	일반인	293	3.5373	.63544	.03712			
	Total	709	3.6536	.61752	.02319			
국제적	공무원	141	3.4291	.66837	.05629	.601	3.678	.012
	교사	159	3.4324	.72462	.05747			
	대학생	116	3.2694	.71941	.06680			
	일반인	293	3.2440	.72899	.04259			
	Total	709	3.3272	.71883	.02700			

※ df : Between Group 3, Within Group 705, Total 708.

【표 4-13】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Levene 검증결과 ‘4.3평화교육’ $p=.034<.05$ 이고, ‘4.3관심도’ $p=.007<.05$, ‘시민단체관심도’ $p=.025<.05$ 로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계속하여 모수분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의 변인들 중 ‘경제·행정적’($p=.542$) 변인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평균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제주정체성’(F값 11.066, $p=.000<.05$), ‘정치적’(F값 10.167, $p=.000<.05$), ‘국제적’(F값 3.678, $p=.012<.05$)으로 나타나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5】는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6】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4.3교육 받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은 ‘4.3교육 받음’ 여부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표 4-14】 ‘4.3교육 받음’에 따른 차이(ANOVA)

		Descriptives				Levene Test (Sig.)	ANOVA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F	Sig.	
4.3 평화교육	있음	351	4.3046	.49100	.02621	.601	11.821	.001	
	없음	357	4.1742	.51762	.02740				
	Total	708	4.2388	.50845	.01911				
4.3 관심도	있음	351	3.3143	.72918	.03892	.908	37.468	.000	
	없음	357	2.9673	.77805	.04118				
	Total	708	3.1394	.77342	.02907				
시민단체 관심도	있음	351	2.9915	.77106	.04116	.791	14.005	.000	
	없음	357	2.7778	.74814	.03960				
	Total	708	2.8837	.76654	.02881				
제주 지역 개발	경제, 행정 적	있음	351	3.4979	.61405	.03278	.478	10.173	.001
		없음	357	3.3536	.59033	.03124			
		Total	708	3.4251	.60610	.02278			
	제주 정체 성	있음	351	3.7860	.62077	.03313	.124	21.617	.000
		없음	357	3.5627	.65628	.03473			
		Total	708	3.6734	.64817	.02436			
	정치 적	있음	351	3.7538	.62765	.03350	.268	18.476	.000
		없음	357	3.5566	.59247	.03136			
		Total	708	3.6544	.61766	.02321			
국제 적	있음	351	3.3583	.71691	.03827	.903	1.259	.262	
	없음	357	3.2976	.72125	.03817				
	Total	708	3.3277	.71923	.02703				

※ df : Between Group 1, Within Group 706, Total 707.

【표 4-14】 ‘4.3교육 받음’에 따른 차이를 보면 Levene 검증결과 모든 변인이 .05 이상으로 정규분포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 분석할 의미가 지지되었다.

대다수 변인들이 평균차이에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제적’ 변인만 평균차이에 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F값 1.259, p=.262>.05) 그 외의 변인인 ‘4.3평화교육’(F값 11.821, p=.001<.05), ‘4.3관심도’(F값 37.468, p=.000<.05), ‘시민단체관심도’(F값 14.005, p=.000<.05), ‘경제·행정적’(F값 10.173, p=.001<.05), ‘제주정체성’(F값 21.617, p=.000<.05), ‘정치적’(F값 18.476, p=.000<.05) 변인은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6】은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1 종합】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인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 【표 4-15】는 가설 1의 종합으로서 각 인자별 종속변인과의 평균차이를 개괄하고 있다.

【표 4-15】 가설 1의 종합

가설	factor	종속변인	결과
가설1-1	성별		부분채택
가설1-2	연령	①4.3평화교육 ②4.3관심도	기각
가설1-3	학력	③시민단체관심도	부분채택
가설1-4	지역	④제주지역개발	부분채택
가설1-5	직업	①경제, 행정적, ㉠제주정체성 ②정치적, ㉡국제적	부분채택
가설1-6	4.3교육받음		부분채택
가설	factor에 따라 영향 받는 종속변인		
가설1-1	성별⇒4.3평화교육(.045)		
가설1-2	연령⇒차이를 주는 변인 없음		
가설1-3	학력⇒4.3평화교육(.000), 시민단체관심도(.040), 제주정체성(.000), 정치적(.000)		
가설1-4	지역⇒4.3평화교육(.044)		
가설1-5	직업⇒제주정체성(.000), 정치적(.000), 국제적(.012)		
가설1-6	4.3교육 받음⇒4.3평화교육(.001), 4.3관심도(.000), 시민단체관심도(.000), 경제·행정적(.001), 제주정체성(.000), 정치적(.000).		

이를 정리하면 ①‘성별’인자는 ‘4.3평화교육’에 F값 4.027이고, p=.045<.05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②‘학력’인자는 ‘4.3평화교육’에 F값 8.992, p=.000<.05, ‘시민단체관심도’에 F값 2.518, p=.040<.05, ‘제주정체성’에 F값 6.139, p=.000<.05, ‘정치적’에 F값 8.004, p=.000<.05으로 유의하며, ③‘지역’인자는 ‘4.3평화교육’에 (F값

4.082, $p=.044<.05$ 으로 유의하며, ④‘직업’인자는 ‘제주정체성’에 F값 11.066, $p=.000<.05$, ‘정치적’에 F값 10.167, $p=.000<.05$, ‘국제적’에 F값 3.678, $p=.012<.05$ 으로 유의하며, ⑤‘4.3교육 받음’은 ‘4.3평화교육’에 F값 11.821, $p=.001<.05$, ‘4.3관심도’에 F값 37.468, $p=.000<.05$, ‘시민단체관심도’에 F값 14.005, $p=.000<.05$, ‘경제·행정적’에 F값 10.173, $p=.001<.05$, ‘제주정체성’에 F값 21.617, $p=.000<.05$, ‘정치적’에 F값 18.476, $p=.000<.05$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위와 같은 ‘인자’와 ‘변인’사이에만 부분적으로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제4절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1.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이유

이 절에서는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의 개념을 구성하는 각 각의 하위변인들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검증할 변수의 요인들 간에 그 관련성 여부와 밀접한 강도를 미리 알아내 봄으로서 다음 절에서 변수 간 검증과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집단 간 비교 연구에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비록 상관관계 분석은 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방법은 아니나 T-검정이나 경로모형 등 다른 검증결과를 해석하고, 이러한 주된 검증결과를 다른 분석적 시각에서 해석을 보조하고, 변인과 변인사이에 상호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이상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16】 변수의 특성과 측정척도에 따른 상관계수

변수의 특성		측정 척도		상관계수
x	y	x	y	
연속	연속	등간, 비율	등간, 비율	적률상관계수
비연속	비연속	서열	서열	Spearman의 등위산관계수
이분(자연적)	연속	명명	등간, 비율	양류상관계수
이분(자연적)	연속	명명	등간, 비율	양류상관계수
이분(자연적)	이분(자연적)	명명	명명	ϕ
다분(자연적)	다분(자연적)	명명	명명	Grammer v

【표 4-17】 상관계수의 해석기준

상관계수의 범위	상관관계의 해석
±.00 - .20	상관이 거의 없다.
±.20 - .40	상관이 낮다.
±.40 - .60	상관이 있다.
±.60 - .80	상관이 높다.
±.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상관연구는 양적으로 측정된 원자료를 상관연구를 위해 범주화하거나 변형하여 상관분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경우 자료가 왜곡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의 특성과 측정척도에 따른 상관계수는 【표 4-16】과 같으며, 상관계수의 해석은 실제적인 의미에 기초하여 앞에 있는 【표 4-17】 기준에 따라 해석을 한다(성태제·시기자, 2006 : 323-326).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4.3평화교육’ 변수, ‘제주지역개발’ 변수를 구성하는 ‘제주정체성’, ‘행정·경제적’, ‘생태환경·국제적’, ‘정치적’ 하위변인, ‘4.3관심도’, 그리고 ‘시민단체관심도’ 간에 상호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 4-18】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8】 상관분석표

	제주지역개발				4.3평화교육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제주정체성	행정·경제적	생태환경·국제적	정치적			
(1)제주정체성	1.000	.703**	.667**	.748**	.416**	.495**	.417**
(2)행정경제적	.703**	1.000	.661**	.653**	.264**	.371**	.411**
(3)생태환경국제적	.667**	.661**	1.000	.559**	.262**	.361**	.345**
(4)정치적	.748**	.653**	.559**	1.000	.432**	.448**	.396**
(5)4.3평화교육	.416**	.264**	.262**	.432**	1.000	.252**	.174**
(6)4.3관심도	.495**	.371**	.361**	.448**	.252**	1.000	.559**
(7)시민단체관심도	.417**	.411**	.345**	.396**	.174**	.559**	1.00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제주정체성’ 변인은 ‘정치적’ 변인 간($r=.748, p<.01$), ‘행정·경제적’ 변인 간($r=.703, p<.01$), ‘생태환경·국제적’ 변인 간($r=.667, p<.01$)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4.3평화교육’과는 보통의 상관관계($r=.416, p<.01$)가 있으며, 또한 매개변수인 ‘4.3관심도’($r=.495, p<.01$)와 ‘시민단체관심도’($r=.417, p<.01$)와도 보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경제적’ 변인은 ‘생태환경·국제적’ 변인 간($r=.661, p<.01$), ‘정치적’ 변인 간($r=.653, p<.01$)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4.3평화교육’ 변인 간 ($r=.264, p<.01$)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매개변수인 ‘4.3관심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r=.371, p<.01$) 갖고 있으나, ‘시민단체관심도’와는 보통의 상관관계를($r=.411, p<.01$) 갖고 있다.

‘생태환경·국제적’ 변인은 ‘정치적’ 변인 간($r=.559, p<.01$)에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4.3평화교육’($r=.262, p<.01$)과 ‘4.3관심도’($r=.361, p<.01$)와 ‘시민단체관심도’($r=.345, p<.01$)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변인은 ‘4.3평화교육’($r=.432, p<.01$)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4.3관심도’($r=.448, p<.01$)와 보통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시민단체관심도’($r=.396, p<.01$)하고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r=.252, p<.01$)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에 ‘시민단체관심도’($r=.174, p<.01$)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⁸⁾ 또한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와는 보통의 상관관계를($r=.559, p<.01$)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4.3관심도’의 변동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보통의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08) 이는 T-검증이나 경로모형 분석과 같은 다른 방법의 분석으로도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와는 유력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상관관계는 가설검정 결과 해석에 고려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4.3평화교육’으로 인하여 시민이나 공무원 등이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크게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4.3평화교육’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평균차이에 의한 변수 간 가설검증

1. 연구가설에 대한 T-검정을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서 통계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성태제·시기자, 2006 : 286). 이 연구는 AMOS에 의하여 모수가 그리는 적합모형을 구현하기 전에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AMOS 분석을 할 때, 적합모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항이 제거되기 때문에 문항제거 이전상태에서 모수의 자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미리 제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T-검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자체도 표본 속에 내포된 모수의 의미를 다양한 방법(평균차이 검정법 등)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2】에서 【가설 9】까지를 검증할 차례이다.

【가설 2】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제주지역개발’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에 따라 ‘제주도민의식형성’에 차이를 줄 것이다.

【가설 9】 ‘4.3교육범위’에 따라 ‘제주도민의식형성’에 차이를 줄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분석은 다음 제6절의 AMOS 구조모형 분석에 의하여 【가설 2】와 【가설 7】까지의 검증이 될 것이다. 이는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어느 정도의 경로영향을 줄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수인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모형을 표본조사로 최적의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AMOS에 의한 최적의 그림모형을 그리려면 가급적 설명하고, 설명되어지는 변수의 수와 범위가 좁혀져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한 문항을 모두 살려가면서 최적의 구조모형을 그려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4.3평화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응답이 많아서 평균 4.0을 상회하고 있으나, ‘제주지역개발’은 ‘4.3평화교육’을 한다하여 직접적으로 제주지역의 경제가 밝아지거나 사회가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제주지역개발’에 대한 ‘강한 긍정’의 응답자들도 적지 않으나 보통의 응답자들도 많아서 평균점이 3점대에 있기에, 아주 뚜렷한 회귀선형 모형이 성립이 되지 않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회귀모형에 부적합한 통계자료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의 차이를 분석할 가치가 있다. AMOS 적합모형 선정 시 설명도에서 낮은 문항이 다수 제외되는 점과, 이 연구의 자료 자체가 응답이 집중되어 있는 형으로 회귀분석이 어려운 점을 등을 감안하여서 평균이 차이에 의한 변수간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실시한 후에 AMOS 분석을 하면 보다 모수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간의 모수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균의 차이 검증인 T-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T-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강도를 **【표 4-19】**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기술통계)에서 처럼 2등분 하였다. 2등분한 기준은 ‘4.3평화교육’의 긍정적인 열망이 강하여 평균이 4.0대인 점을 감안하여 4.0 이상의 응답 표본인 교육긍정의 그룹을 A그룹으로 하고, 3.99이하는 보통 이하인 그룹인 점을 감안하여 또 하나의 그룹인 B그룹으로 정의하였다.

즉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그룹과 보통이하의 그룹 사이에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의 평균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2. 가설 검증(가설2~가설9)

1) 가설 2의 검증

【표 4-20】 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4.3평화교육’으로 인하여 ‘제주지역개발’ 변수의 하위변인인 ‘제주정체성’에 t값은 9.660,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A그룹의 평균 값 3.8187과 긍정하지 않는 B그룹 평균 3.3978사이의 평균차이는 .42087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0<.05$). 따라서 평균차이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하면 하한계선 .33524에서 상한계선 .50649로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가설은 채택이 된다.

마찬가지로 ‘행정·경제적’ 변인도 평균차이가 .29223으로 A그룹(평균 3.5053) 과 B그룹(평균 3.2131)이 유의하게 나타나며($p=.000<.05$), ‘생태환경·국제적’ 변인도 평균 차이가 .30234로 A그룹(평균 3.4322)과 B그룹(평균 3.1299)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며($p=.000<.05$), ‘정치적’ 변인도 평균차이가 .47858로 A그룹(평균 3.7990)과 B그룹(평균 3.3204)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p=.000<.05$). 이상을 모두 종합하면 연구 가설은 채택 된다.

【표 4-19】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기술통계)

	4.3평화교육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제주정체성	A그룹(긍정이상)	515	3.8187	.61418	.02706
	B그룹(보통이하)	194	3.3978	.47556	.03414
행정경제적	A그룹(긍정이상)	515	3.5053	.61282	.02700
	B그룹(보통이하)	194	3.2131	.53225	.03821
생태환경국제적	A그룹(긍정이상)	515	3.4322	.71665	.03158
	B그룹(보통이하)	194	3.1299	.55387	.03977
정치적	A그룹(긍정이상)	515	3.7990	.62751	.02765
	B그룹(보통이하)	194	3.3204	.49868	.03580

a 그룹정의 : 4.3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반응한 표본 중
A그룹(강한 교육 필요) ≥ 4.0
B그룹(보통이하 교육 필요) < 4.0

【표 4-20】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 (독립표본 T 검증)

		Levene의 등분산 가정		T-검증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안	상안
제주 정체성	등분산 가정			8.619	707	.000	.42087	.04883	.32500	.51673
	등분산 비가정	10.692	.001	9.660	445.659	.000	.42087	.04357	.33524	.50649
행정, 경제적	등분산 가정			5.861	707	.000	.29223	.04986	.19433	.39012
	등분산 비가정	7.399	.007	6.245	396.740	.000	.29223	.04679	.20024	.38422
생태환경, 국제적	등분산 가정			5.308	707	.000	.30234	.05696	.19051	.41416
	등분산 비가정	26.876	.000	5.954	446.515	.000	.30234	.05078	.20254	.40213
정치적	등분산 가정			9.546	707	.000	.47858	.05013	.38016	.57701
	등분산 비가정	9.344	.002	10.579	433.932	.000	.47858	.04524	.38967	.56749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현상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의문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 【그림 4-5】와 【그림 4-6】의 AMOS에 의해서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 경로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정에서 보듯이 【표 4-18】의 상관분석표를 보면 ‘4.3평화교육’을 긍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제주지역개발’의 구성요인인 ‘제주정체성’(.416**)과 ‘정치적’(.432**) 변인에 보통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주고, ‘행정·경제적’(.264**), ‘생태환경·국제적’(.262**) 변인에도 낮으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아래 【가설 2】는 검증이 되었다. 즉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상관관계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가설 2】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2) 가설 3의 검증

【표 4-22】 독립표본 T-검증으로 ‘4.3평화교육’과 ‘4.3관심도’ 변인사이 분석을 보면, Levene의 등분산을 하였으며, 그 결과 F 값이 1.037로서 유의확률이 p=.301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등분산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기각이 되어 모수 집단은 분산

에 동일하다는 입장 하에서 T-검증을 보게 된다.

등분산 가정 하에 계산된 통계치인 T-값은 4.135 이고,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A그룹의 평균값은 3.1845 이며, 이에 비하여 B그룹 평균값은 2.9381로 이 양자 사이의 평균차이는 .24632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0<.05$).

이는 평균차이를 95%의 신뢰구간에서 계산하면 하한계선이 .12938이고, 상한계선은 .36327 로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 가설은 채택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현상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 【그림 4-5】와 【그림 4-6】의 AMOS에 의해서 ‘4.3평화교육’이 ‘4.3관심도’에 아주 낮은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표 4-18】 상관분석표에서도 ‘4.3평화교육’을 긍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4.3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한 ‘4.3관심도’가 높으면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낮으나마 .252**만큼의 상관관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아래 【가설 3】은 검증이 되었다. 즉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낮으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설 3】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표 4-21】 ‘4.3평화교육’과 ‘4.3관심도’(기술통계)

	4.3평화교육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4.3관심도	A그룹(긍정이상)	515	3.1845	.72591	.03199
	B그룹(보통이하)	194	2.9381	.65433	.04698

a 그룹정의 : 4.3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반응한 표본 중
 A그룹(강한 교육 필요) ≥ 4.0
 B그룹(보통이하 교육 필요) <4.0

【표 4-22】 ‘4.3평화교육’과 ‘4.3관심도’ (독립표본 T-검증)

		Levene의 등분산 가정		T-검증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안	상안
4.3 관심도	등분산 가정	1.073	.301	4.135	707	.000	.24632	.05957	.12938	.36327
	등분산비가정			4.334	382.567	.000	.24632	.05683	.13457	.35807

3) 가설 4의 검증

【표 4-24】 독립표본 T-검증에서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 변인사이에 분석을 보면, Levene의 등분산 결과 F 값이 3.286 ($p=.070>.05$)으로 모수 그룹에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하의 T-검증 통계치를 보면 T-값은 3.476이고,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A그룹의 평균값은 2.9463 이며, 이에 비하여 B그룹 평균값은 2.7234 이므로 이 양자 사이의 평균차이는 .22291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001<.05$).

이는 평균차이를 95%의 신뢰구간에서 계산하면 하한계선이 .09701 이고, 상한계선은 .34881 로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 가설은 채택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하여 【표 4-18】 상관분석표를 보고 변수 간에 상호 영향력을 추정하여 보면 ‘4.3평화교육’을 긍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시민단체관심도’를 높이거나 또는 반대로 ‘시민단체관심도’가 높으면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관계수가 너무 낮은 .174(**)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관이 있기는 있지만 그 정도가 극히 낮아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상관계수가 낮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시민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등의 인식은 아직까지 썩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분석에 따라 【가설 4】는 검증을 기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4.3평화교육’을 강하게(4.0이상)긍정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긍정하는 그룹과 긍정하지 않는 그룹과 평균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T-검증은 아무리 유의할 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변수 상호간에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

이에 대한 다음절의 AMOS 적합도 모형분석 결과 【표 4-50】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아주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검증결과는 기각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p=.143) 따라서 T-검증과 상관분석, 적합모형의 종합적인 판단결과에 따라서 【가설 4】는 기각처리가 타당하다.

【가설 4】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4-23】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기술통계)

	4.3평화교육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시민단체관심도	A그룹(긍정이상)	515	2.9463	.79171	.03489
	B그룹(보통이하)	194	2.7234	.67328	.04834

a 그룹정의 : 4.3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반응한 표본 중
 A그룹(강한 교육 필요) >= 4.0
 B그룹(보통이하 교육 필요) < 4.0

【표 4-24】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 (독립표본 T-검증)

		Levene의 등분산 가정		T-검증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안	상안
시민단체관심도	등분산 가정	3.286	.070	3.476	707	.001	.22291	.06412	.09701	.34881
	등분산 비가정			3.739	405.151	.000	.22291	.05961	.10572	.34010

4) 가설 5의 검증

【표 4-26】 독립표본 T 검증을 보면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 변수의 하위변인인 ‘제주정체성’과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8.610, ‘4.3관심도’를 긍정하는 A그룹의 평균 값 4.1716과 이에 대응하는 B그룹 평균 3.6285 사이의 평균차이는 .54314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05). 이는 평균차이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하면 하한계선 .41929에서 상한계선 .66698로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 가설은 채택된다.

마찬가지로 ‘행정·경제적’ 변인도 평균차이가 .46161로 A그룹(평균 3.8231) 과 B그룹(평균 3.3615)사이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p=.000<.05), ‘생태환경·국제적’ 변인도 평균차이가 .54880으로 A그룹(평균 3.8224)과 B그룹(평균 3.2736)이 유의하게 차이

가 나고($p=.000<.05$), ‘정치적’ 변인도 평균차이가 .46805로 A그룹(평균 4.0714)과 B 그룹(평균 3.6034)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000<.05$).
 이상을 종합하면, 이 연구 가설도 채택된다.

【표 4-25】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기술통계)

	4.3관심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제주경제성	A그룹(긍정이상)	98	4.1716	.50064	.05057
	B그룹(보통이하)	611	3.6285	.59130	.02392
행정경제적	A그룹(긍정이상)	98	3.8231	.56607	.05718
	B그룹(보통이하)	611	3.3615	.58766	.02377
생태환경국제적	A그룹(긍정이상)	98	3.8224	.68256	.06895
	B그룹(보통이하)	611	3.2736	.65966	.02669
정치적	A그룹(긍정이상)	98	4.0714	.60827	.06144
	B그룹(보통이하)	611	3.6034	.61174	.02475

a 그룹정의 : 4.3관심도에 반응한 표본 중
 A그룹(긍정이상) ≥ 4.00
 B그룹(보통이하) < 4.00

【표 4-26】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독립표본 T-검증)

		Levene의 등분산가정		T-검증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제주 경제성	등분산 가정	2.891	.090	8.610	707	.000	.54314	.06308	.41929	.66698
	등분산 비가정			9.708	144.114	.000	.54314	.05594	.43256	.65371
행정 경제적	등분산 가정	.146	.703	7.255	707	.000	.46161	.06363	.33668	.58653
	등분산 비가정			7.454	132.803	.000	.46161	.06193	.33912	.58410
생태환경, 국제적	등분산 가정	.941	.332	7.609	707	.000	.54880	.07213	.40719	.69041
	등분산 비가정			7.423	127.785	.000	.54880	.07393	.40251	.69509
정치적	등분산 가정	.419	.518	7.037	707	.000	.46805	.06651	.33746	.59864
	등분산 비가정			7.066	130.479	.000	.46805	.06624	.33700	.59909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현상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표 4-18】 상관분석표를 보고 변수 간에 상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즉 ‘4.3관심도’와 ‘제주경제성’은 상호 관련성이 .495(**)로 보통 이상의 상관관

계가 있으며, 또한 ‘정치적’ 변인과의 .448(**)로 보통이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4.3관심도’와 ‘행정·경제적’ 변인과의 .371(**), ‘생태환경·국제적’ 변인과의 .361(**)의 낮으나마 긍정적(+)인 상관관계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5】와 【그림 4-6】의 AMOS 적합도 모형분석을 보면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적합한 경로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가설 5】는 채택이 되었다. 즉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설 5】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5) 가설 6의 검증

【표 4-28】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 변인과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10.619, ‘4.3관심도’를 긍정하는 A그룹의 평균 값 3.5952와 이에 대응한 B그룹의 평균 2.7714 사이의 평균차이는 .82383 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0<.05$). 이는 평균차이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하면 하한계선 .67151에서 상한계선 .97614 로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 가설을 채택한다.

이러한 차이를 갖고 우리 사회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표 4-18】상관분석표를 보고 변수 간에 영향력을 추정하여 보면,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는 상호관련성이 .559(**)로 보통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3평화교육’을 통하여 ‘4.3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만(【가설 4】에서 보듯이), ‘시민단체관심도’를 높일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4.3평화교육’으로 ‘시민단체관심도’를 덩달아서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원하지 않으나, ‘4.3관심도’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4.3관심도’를 높이다 보면, ‘시민단체관심도’ 자체도 .559(**)의 상관정도로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급하게 바뀌는 사회변화는 원치 않지만 점진적으로 시민단체 활동 등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27】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기술통계)

	4.3관심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시민단체관심도	A그룹(긍정이상)	98	3.5952	.78393	.07919
	B그룹(보통이하)	611	2.7714	.70098	.02836

a 그룹정의 : 4.3관심도에 반응한 표본 중
A그룹(긍정이상) >= 4.00
B그룹(보통이하) <4.00

【표 4-28】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 (독립표본 T-검증)

	Levene의 등분산 가정	T-검증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 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시민단 체관심 도	등분산 가정	1.591	.208	10.619	707	.000	.82383	.07758	.67151	.97614
	등분산 비가정			9.794	123.153	.000	.82383	.08411	.65733	.99032

이는 사회적 평화의식이 향상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시민단체의 관심’ 자체도 ‘4.3 평화교육’ 또는 ‘평화 의식’의 향상 방향으로 역할 활동은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림 4-5】와 【그림 4-6】의 최종적 적합모형과 【표 4-53】의 가설검증을 보면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는 서로 양방향의 경로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아래 【가설 6】은 채택이 되었다. 즉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의 상관관계 영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설 6】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¹⁰⁹⁾ → 채택

6) 가설 7의 검증

【표 4-31】 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 변인과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8.070, ‘제주지역개발’을 긍정하는 A그룹의 평균 값 3.3382

109)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관심도’에서 ‘4.3관심도’로 역방향의 경로 영향도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와 이에 비하여 B그룹의 평균 2.7758 사이의 평균차이는 .56233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0<.05$).

이는 평균차이의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계선 .42552에서 상한계선 .69914로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연구가설을 채택된다.

또한 【표 4-29】 상관계 분석을 보고 변수 간에 상호 영향력을 추정하여 보면,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에서 상호 관련성은 ‘제주정체성’(417**)변인과 ‘행정·경제적’(411**) 변인과는 보통의 상관계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생태환경·국제적’(345**) 변인과 ‘정치적’(396**) 변인과는 낮은 상관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4-29】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의 상관계

제주지역개발				시민단체관심도
제주정체성	행정, 경제적	생태환경, 국제적	정치적	
.417**	.411**	.345**	.396**	

** $p<.01$

이는 【가설 4】에서 보면 ‘4.3평화교육’이 ‘시민단체관심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제주지역개발’이 향상되면서 ‘시민단체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5】와 【그림 4-6】의 최종적 적합모형을 살펴보면 ‘제주지역개발’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 경로영향을 주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즉 ‘4.3평화교육’으로 인하여 ‘시민단체관심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을 지라도,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특히, ‘제주정체성’이나 ‘행정·경제적’인 발전을 통하여 ‘시민단체관심도’의 긍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상관계 분석과 T-검증, AMOS구조모형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이는 사회적 평화의식이 향상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시민단체의 관심’ 자체도 ‘4.3 평화교육’ 또는 ‘평화 의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역할 활동은 높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가설 7】은 채택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7】 ‘제주지역개발’ 은 ‘시민단체관심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표 4-30】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 (기술통계)

	제주지역개발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시민단체관심도	A그룹(긍정이상)	138	3.3382	.79942	.06805
	B그룹(보통이하)	571	2.7758	.71815	.03005

a 그룹정의 : 제주지역개발에 반응한 표본 중
A그룹(긍정이상) >= 4.00
B그룹(보통이하) <4.00

【표 4-31】 ‘제주지역개발’과 ‘시민단체관심도’ (독립표본 T-검증)

	Levene의 등분산 가정	T-검증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 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시민단체	등분산 가정	.575	.448	8.070	707	.000	.56233	.06968	.42552	.69914
관심도	등분산비가정			7.559	193.881	.000	.56233	.07439	.41561	.70905

7) 가설 8의 검증

‘4.3평화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주도민의식’의 순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가장 큰 순위는 (1)순위, 가장 낮은 순위는 (6)순위 등으로 순위를 기록하도록 하여 ‘4.3평화교육’이 도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문항으로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흐름의 추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2】 ‘4.3교육희망’과 ‘제주도민의식형성’ (χ^2 검증)

구분	도민의식형성						합계		
	평화적	화합적	민주적	피해적	억압적	투쟁적			
4.3 교 육 희 망	부	62	15	18	20	5	8	128	$\chi^2=24.338$ $df=10$ $p=.007$
	정	16.2	16.0	22.5	19.8	23.8	66.7	18.6	
	보	48.4	11.7	14.1	15.6	3.9	6.3	100.0	
	통	189	51	36	43	11	2	332	
	희	49.5	54.3	45.0	42.6	52.4	16.7	48.1	
	망	56.9	15.4	10.8	13.0	3.3	.6	100.0	
합계	금	131	28	26	38	5	2	230	유효(N)=690
	정	34.3	29.8	32.5	37.6	23.8	16.7	33.3	결측(N)=19
	합계	57.0	12.2	11.3	16.5	2.2	.9	100.0	합 계=709
합계		382	94	80	101	21	12	6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5.4	13.6	11.6	14.6	3.0	1.7	100.0	

설문에서 도민들이 1순위로 선정한 ‘제주도민의식’을 집계한 빈도분석을 보면 다음 【표 4-32】 ‘4.3평화교육’에 의해 기대되는 ‘도민의식’과 같다. 총 709명중 19명이 결측 되어, 690명을 집계로 한 빈도를 보면 제1순위가 ‘평화적 도민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사람은 690명중 55.4%인 382명이다. 다음 제2순위는 ‘피해적 도민의식’ 형성이 14.6%인 101명이고, 제3순위는 ‘화합적 도민의식’ 형성이 13.6%인 94명이고, 제4순위인 ‘민주적 도민의식’ 형성은 11.6%인 80명이고, 제5순위는 ‘억압적 도민의식’으로 3.0%인 21명이고, 제6순위는 ‘투쟁적 도민의식’으로 1.7%인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민의식형성’ 유효응답자 690명 중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33.3%인 230명이고, 보통의 응답자는 48.1%인 332명이고, 부정적인 응답자는 18.6%인 128명이다.

4.3교육희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4.3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 도민의식형성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변할까? 이에 대하여 교육희망을 ‘부정’, ‘보통’, ‘긍정’으로 구분하고, 교육희망의 차이에 따라 기대되는 ‘도민의식형성’의 양상을 ‘평화적’, ‘화합적’, ‘민주적’, ‘피해적’, ‘억압적’, 그리고 ‘투쟁적’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에 의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 24.338$, $p = .007$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즉 대다수 인원(81.4%)인 562명이 4.3교육을 보통이상 희망하고 있으며, 18.6%인

128명만이 부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4.3평화교육’을 받는다면 그 결과로 ‘도민 의식 형성’에 74.2% 정도가 긍정적인 변화(평화적48.4%, 화합적11.7%, 민주적14.1%)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측에서 ‘4.3교육희망’에 부정적인 사람은 도민 의식 형성 기대에 ‘투쟁적’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2명중 8명으로 다른 그룹보다 훨씬 많은 66.7%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4.3교육’을 부정하는 사람도 교육방식을 전환하여 ‘4.3평화교육’으로 한다면, 부정적인 사람들까지도 의식형성에는 평화적 의식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확인 점은 ‘4.3평화교육’을 한다면 과거에 사람들이 4.3을 이념 편향적 교육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의식이 투영되어, ‘4.3평화교육’은 오히려 제주사회를 투쟁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로 변화시켜버리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심은 하나의 기우정도로 볼 수 있겠다는 점이다. 오히려 ‘4.3평화교육’은 ‘4.3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룹도 74.2%나 되는 대다수 인원을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통계적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4.3교육’과 ‘도민 의식형성’과 관련하여 도민 의식이 ‘피해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도 교육희망에는 부정(19.8%)보다는 긍정(37.6%)이나 보통(42.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3교육’은 도민들에게 투쟁심을 확실히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교육을 긍정한 그룹 중 투쟁심 발생은 0.9%,), 오히려 ‘평화적’(57.0%), ‘화합적’(12.2%), ‘민주적’(11.3%) 의식으로 바람직하게 전향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33】 ‘4.3교육’의 필요와 도민 의식 형성 영향(χ^2 검증)

구분		도민 의식 형성 영향					
		평화적	화합적	피해적	투쟁적	합계(%)	
교육 필요	있음(%)	183 (92.4)	53 (86.9)	36 (80.0)	39 (78.0)	311 (87.9)	$\chi^2=11.080$ df=3 p= .011
	없음(%)	15 (7.6)	8 (13.1)	9 (20.0)	11 (22.0)	43 (12.1)	
	합계	198 (55.9)	61 (17.2)	45 (12.7)	50 (14.1)	354 (100.0)	

*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4.3교육이 필요하다 보며, 학생의 78.1%가 평화적이거나 화합적인 도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4.3교육에 대한 제주도내 고등학생의 인식연구”에서 도출한 【표 4-33】 ‘4.3교육’의 필요와 도민 의식 형성 영향을 보면, 4.3에 대한 교육은 제주도민들에게 평화적인 의식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P=.001$) 더욱이 4.3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평화적이고 화합적인 도민 의식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한운섭·고창훈, 2008 : 153-183). 이러한 추세는 제주도민(성인)이나 제주도내에 있는 고등학생(미성인)이나 인식하는 방향과 크기가 비슷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8】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에 따라 ‘제주도민 의식 형성’에 차이를 줄 것이다.
→ 채택

8) 가설 9의 검증

【가설 9】는 ‘4.3평화교육’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제주사람들 자체에게도 ‘제주4.3’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에 제주사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육을 잘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주4.3’을 평화교육의 측면으로 한다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야 당연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사실 ‘제주4.3’에 대하여 과거부터 공식적인 교육을 금지하여 왔고, 근래에 들어서 개별학교 또는 교사 단위로 교육을 행하여지거나 인터넷 등으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제주사람들은 4.3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타시

도 사람들은 더욱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표 4-34】에서 보면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에 대하여 제주사람에게 하여야 한다는 인원은 결측 인원 5명을 제외한 응답자 704명 가운데 17.0%인 120명이며, 타시도 사람에까지 해야 한다는 인원은 응답자 가운데 61.1%인 430명이고, 외국 사람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인원은 21.9%인 154명이다.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제주사람만이라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4.3평화교육’을 타시도사람 또는 외국 사람까지 해야 한다는 선까지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우리 행정이나 교육을 주관하는 곳에서의 이러한 도민의 열망을 어느 정도 수렴하여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표 4-34】 ‘4.3평화교육’의 범위에 따른 빈도

교육범위(대상)	빈도	%	누적(%)
제주도사람	120	17.0	17.0
타시도사람까지	430	61.1	78.1
외국사람까지	154	21.9	100.0
합 계	704	100.0	

* 결측 5명 제외.

‘4.3평화교육’의 범위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교육으로 인한 ‘도민의식변화’의 방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설 9】에서 보듯이 ‘4.3교육범위’를 확대할수록 ‘도민의식형성’에 차이를 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다음 【표 4-35】와 같이 교차표에 의한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민의식형성’이 ‘평화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제주도(47.9%)→타시도(56.5%)→외국인까지(59.2%)로 점유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피해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제주도(23.9%)→타시도(12.8%)→외국인까지(12.9%)로 점유 비중이 낮아지는 대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 검정치는 【표 4-35】 ‘4.3교육범위’와 ‘도민의식형성’의 교차표에서 보듯이 $\chi^2 = 20.806$, 유의수준 $p = .022$ 로 의미 있는 교차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은 채택된다. 그러나 ‘4.3평화교육’은 ‘도민의식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서도 ‘도민의식’ 중 ‘화합적’, ‘민주적’, ‘억압적’, 그리고 ‘투쟁적’ 의식 그룹에는 4.3교육범위와 연계하면서 어떤 강한 차이성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가설 9】 ‘4.3교육범위’ 에 따라 ‘제주도민의식형성’ 에 차이를 줄 것이다. →채택

【표 4-35】 ‘4.3교육범위’와 ‘도민의식형성’ (χ^2 검증)

		도민의식형성						합계	
		평화적	화합적	민주적	피해적	억압적	투쟁적		
4.3 교육범위	제주도	56	14	10	28	4	5	117	$\chi^2=20.806$ $df=10$ $p=.022$ 유효(N)=687 결측(N)=22 합 계=709
		47.9	12.0	8.5	23.9	3.4	4.3	100.0	
	타시 도	14.7	15.2	12.5	27.7	19.0	45.5	17.0	
		239	58	54	54	15	3	423	
	외국 까지	56.5	13.7	12.8	12.8	3.5	.7	100.0	
		62.6	63.0	67.5	53.5	71.4	27.3	61.6	
합계	87	20	16	19	2	3	147		
	59.2	13.6	10.9	12.9	1.4	2.0	100.0		
합계	22.8	21.7	20.0	18.8	9.5	27.3	21.4		
	382	92	80	101	21	11	687		
합계	55.6	13.4	11.6	14.7	3.1	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가설 2 ~ 가설 9의 검증 결과(종합)

이 절에서는 【가설 2】에서 【가설 9】를 검증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을 강하게 긍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두 그룹이 ‘제주지역개발’의 하위 변인인 ‘제주정체성’, ‘행정 및 경제적’, ‘생태환경, 국제협력적’, ‘정치적’ 변인과,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변인에 대하여 서로 간에 평균차이(T-검증)를 검증하였고, ‘4.3교육’ 희망여부와 ‘4.3교육대상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가? 교육에 따른 ‘제주도민의 의식형성’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교차분석(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36】 가설 2~가설 9의 검증결과(종합)과 같다.

【표 4-36】 가설 2~ 가설 9의 검증결과(종합)

구분	검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하위변인	t-값/X2값	Sig.	검증결과
가설 2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제주정체성	9.660	.000	채택
			행정경제적	6.245	.000	
			생태환경국제적	5.954	.000	
			정치적	10.579	.000	
가설 3	4.3평화교육	4,3관심도	-	4.135	.000	채택
가설 4	4.3평화교육	시민단체관심도	-	3.476	.001	기각
가설 5	4.3관심도	제주지역개발	제주정체성	8.610	.000	채택
			행정경제적	7.255	.000	
			생태환경국제적	7.609	.000	
			정치적	7.037	.000	
가설 6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	10.619	.000	채택
가설 7	제주지역개발	시민단체관심도	-	8.070	.000	채택
가설 8	4.3교육희망	제주도민의식형성	-	X2=24.338 df=10	.007	채택
가설 9	4.3교육범위	제주도민의식형성	-	X2=20.806 df=10	.022	채택

제6절 구조모형 적합도 추정을 통한 가설검증

1.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을 하는 이유

AMOS 구조모형 분석에 제시되는 분석지수들과 기준값을 보면,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과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즉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지수들의 경험적 기준치(rule of thumb)는 0.9 이상과 0.5(또는 0.6) 이상이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지수들의 경험적 기준치는 0.08 이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첫째로 0.9이상이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들은 절대적합지수(GFI, AGFI)와 증분적합지수(NFI, IFI, RFI, TLI, CFI, RNI)가 있으며, 둘째로 0.5 또는 0.6 이상이 권장되는 지수들은 절대적합지수이면서 간명성을 띤 PGFI와 간명적합지수인 PNFI, PCFI가 있다. 셋째로 0.08 이하일 때 적당한 모형이라고 평가되는 RMSEA와 RMR가 있다.

특히 RMSEA는 카이자승 검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로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다. RMSEA는 근사적합을 가정하며, 영가설은 「 H_0 : $RMSEA \leq 0.05$ 」가 된다고 한다. 즉 근사적합의 기준을 0.05로 잡고 있어서 RMSEA가 0.05이하이면 매우 근사한 적합, 0.05-0.08일 때면 적당히 근사한 적합이며, 0.1 이상일 경우에는 좋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본다(김대업, 2008 : 41-42). 따라서 RMSEA가 0.1보다 클 때는 그 모델을 채택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본다(노형진, 2008 : 52).

【표 4-37】 주요적합도 지수

전반적 적합도			모형비교
Baumgartner & Homburg(1996)	Kline (2005, p.134)	배병렬 (2006, p.281)	Arbuckle (2006, pp.555-7)
χ^2 , df, RMSEA, GFI, AGFI, RMR, MC, NFI, TLI, CFI, RFI, IFI	χ^2 , RMSEA, 신뢰구간, CFI, SRMR	χ^2 , GFI**, TLI, IFI, CFI, RNI	χ^2 , F, NFI 중 χ^2 RMSEA, RFI, TLI 중 RMSEA CFI, NCP, RNI 중 CFI

* 제시된 Arbuckle의 기준은 모형비교를 하는 Amos의 설정탐색기능에 국한된 것으로 전반적 적합도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예를들어, ' χ^2 , F, NFI 중 χ^2 ' 이란 세 가지 수식적 의미가 비슷하여 그 중 χ^2 을 결과로 제시한다는 뜻.

**GFI가 제시될 때는 간명적합지수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적합도 지수들은 지수별로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논문에서 어떠한 지수를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적합도 지수를 보면 앞 장의 【표 4-37】 과 같다.

【표 4-37】에서 열거된 공통적인 지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χ^2 , RMSEA, CFI가 있으며 이들은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확인요인 분석 결과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지수는 χ^2 값과 P값이다(김대업, 2008 : 43-44).¹¹⁰⁾ P값이 유의하게 나왔다면 다음으로 근사적합을 보는 RMSEA를 살펴봐야 하며 0.05 이하라면 표본과 모형의 두 공분산행렬은 매우 근사한 적합이라고 판단된다.

둘째로 경험적으로 볼 때 0.9 이상의 기준치를 가지는 지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이 산출되는 것은 RFI와 AGFI 라고 한다(김대업, 2008 : 43-44).¹¹¹⁾ 따라서 이 두 지수를 우선 검토하고 0.9 이상으로 나오면 다른 지수들도 대부분 0.9 이상으로 나와서 기준치에 만족하게 될 수 있다.

셋째로 초기 연구모형의 결과가 만족하지 않아 경로를 더 첨가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할 때는 그 만큼 간명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명적합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는 주로 PNFI가 많이 활용된다.

넷째로 아무리 설계가 잘되고 진행이 잘된 연구라 할지라도 100% 완벽한 연구는 없다(김대업, 2008 : 43-44). 이는 χ^2 값과 P값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가 기준치에 만족하는 연구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준치에 너무 미달되면 문제지만 기준치에 근접하면 기준치 도달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김대업, 2008 : 43-44).¹¹²⁾ 만일에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찾아내서 밝히면 좋을 것이다(김대업, 2008 : 43-44).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적합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할 지수들과 기준 값을 보면 다음 【표 4-38】 과 같다.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지수 중 모형설명력을 나타내는

110) 적절한 표본크기와 적절한 관측변수 및 잠재변수의 수를 가진 모형의 P값이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정확한 적합의 평가설이 채택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분석 결과이다(김대업, 2008 : 43-44).

111) 분석결과 연구모형이 좋지 않으면 연구모형을 수정하면서 적합도 검증을 하는데, 이처럼 모형을 수정할 때는 모든 지수들을 체크하기 보다는 이 두 지수를 중심으로 체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김대업, 2008 : 43-44).

112) 예를들어서 AGFI가 0.900은 인정되고, 0.850은 인정되지 않고 이런 법칙은 없다.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결측치가 있으면 출력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변수의 측정 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는 당초 자료수집 결과 정리 시에 제외하고 709명의 자료를 갖고 분석하였다.¹¹³⁾

【표 4-38】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지수 및 기준값

검토순서	지수구분			적합판정 기준치
① 필수적 검토 값	모 형 적 합 도	χ^2/df		χ^2 값
		P		χ^2 검증의 유의확률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rowne & Cudeck, 1993)	근사오차 제공평균 제공근	0.08이하
② (0.90이상지수 중) 가장 낮은 지수	증 분 적 합 지 수	CFI (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비 교 부 합 지 수	0.90이상
		RFI (Relative Fit Index, Bollen, 1986)	상 대 부 합 지 수	0.90이상
③ 모형 수정 시에 추가검토할 지수	간 명 적 합 지 수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조 정 부 합 지 수	0.90이상
		PNFI (Parsimony Normed Fix Index, James et al., 1982)	간명표준 부합지수	0.50이상, 또는 0.60이상

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나눈다(김계수, 2008 : 196).¹¹⁴⁾ 탐색적 요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이며, 반면에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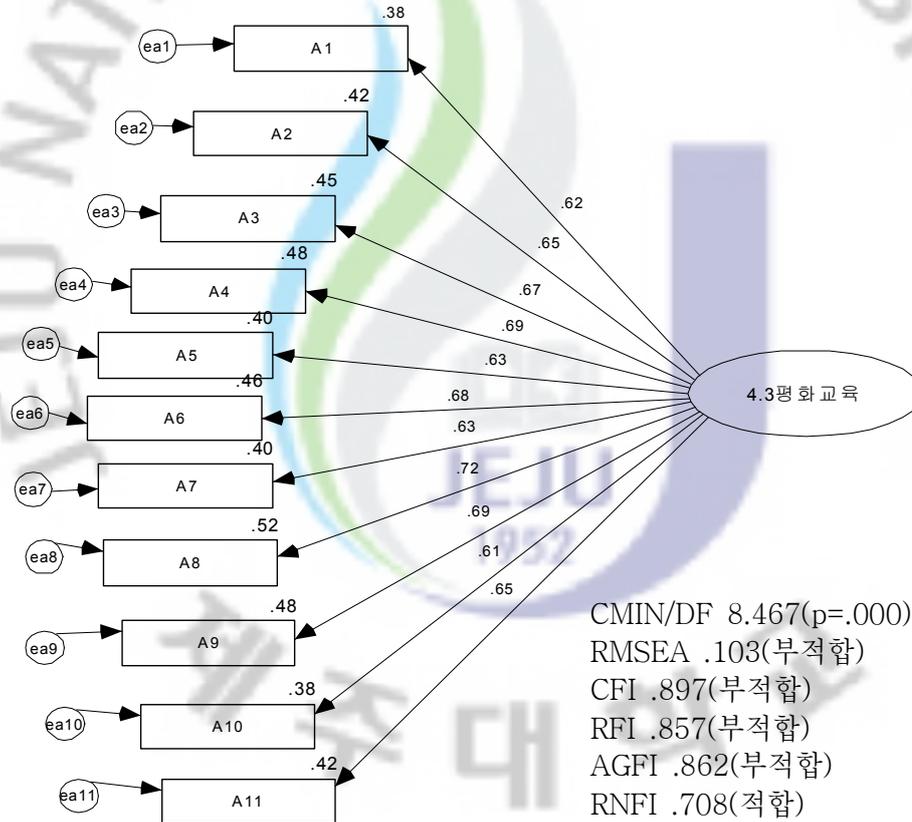
113) 이외에도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출력되지 않는 지수로는 RMR, GFI, PGFI가 있다.

114) 탐색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기존의 가설이나 이론이 없는 경우 자료의 배후에 어떠한 잠재요인이 적절한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인 요인분석이라고도 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모든 공통요인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관찰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요인을 평가하거나 주어진 자료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여 자료에 대한 가치 있는 특성과 정보를 얻어서 결과를 요약, 기술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확인적 요인분석은 기존연구의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결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에 관한 사전 지식이나 이론적 결과를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을 가설형식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08 : 196).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4.3평화교육’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표 4-5】에서 보듯이 1개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으나, AMOS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그림 4-1】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1)과 같이 부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4.3평화교육’의 소재를 기준으로 위 요소를 3개의 하위요소로 다시 분류하여 AMOS에 의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그림 4-2】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2)와 같이 적합한 분류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3평화교육’ 변수를 ‘생명중심’, ‘적법성’, ‘다양성’으로 묶이는 현상에 따라서 3개의 요인으로 세부 분류하여 모형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4-1】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1)



【그림 4-1】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1)은 PNFI(간명표준부합지수)는 .708로 0.5 또는 0.6 이상으로 적합하고 있다.

그러나 CFI(비교부합지수)와 RFI(상대부합지수), 그리고 AGFI(조정부합지수)는 1의 근사치인 .9이상 이 나타나야 하나 각각 .897, .857, .862로 전반적으로 부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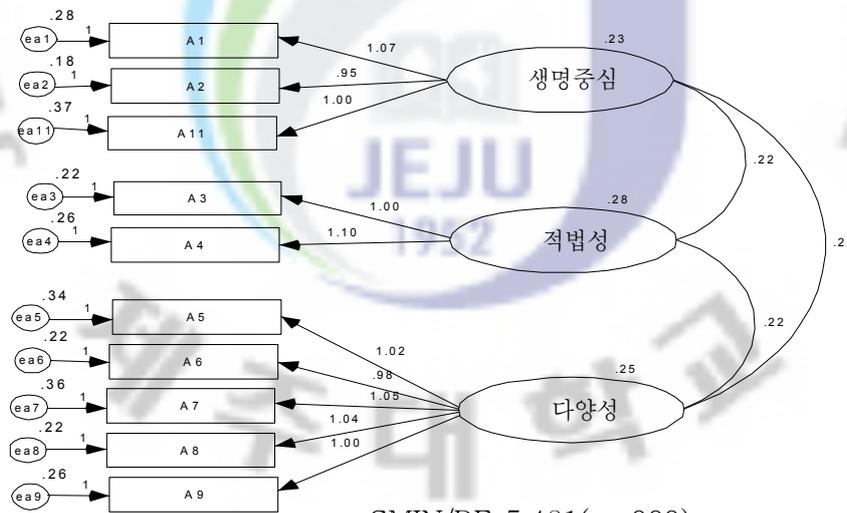
그리고 RMSEA(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에서는 .08이하로 판명되어야 하나 .103으로 확실한 모형부적합을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모형은 부적합하다. 이는 탐색요인 분석 시에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있던 것을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부적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모형을 확인하였다.

【표 4-3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latent variables)		하위요소	요소별 항목
외생변수	4.3평화교육	생명중심	A1, A2, A11
		적법성	A3, A4
		다양성	A5, A6, A7, A8, A9

* 제거문항 =A10(세계와 교류)

【그림 4-2】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2)



CMIN/DF 5.481(p=.000)

RMSEA .080(적합)

CFI .949(적합)

RFI .913(적합)

AGFI .917(적합)

RNFI .667(적합)

【그림 4-2】 ‘4.3평화교육’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2)은 PNFI(간명표준부합지수)는 .667로 0.5 또는 0.6 이상으로 적합하고 있다. 그리고 CFI(.949)와 RFI(.913), 그리고 AGFI(.917)로서 1의 근사치인 .9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RMSEA(.080)으로 나타나 기준인 .08이하로 판명되어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4.3평화교육’에 대한 수정모형 비교를 보면 【표 4-40】과 같다. AMOS 모형분석에서는 ‘4.3평화교육’을 이와 같이 3개 하위변인으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다른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표 4-40】 수정모형 비교분석표

구분	변수 / 문항수	χ^2/df	P값	RMSEA	CFI	RFI	AGFI	PNFI
기준값		2이하	.05이상	.08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50이상
최초모형	1/11	8.467	.000	.103	.897	.857	.862	.708
최종모형	3/10	5.481	.000	.080	.949	.913	.917	.667
판단		부적합	부적합(115)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사례수 = 709

**제거문항 =A10(세계와 교류)

3. 적합한 구조모형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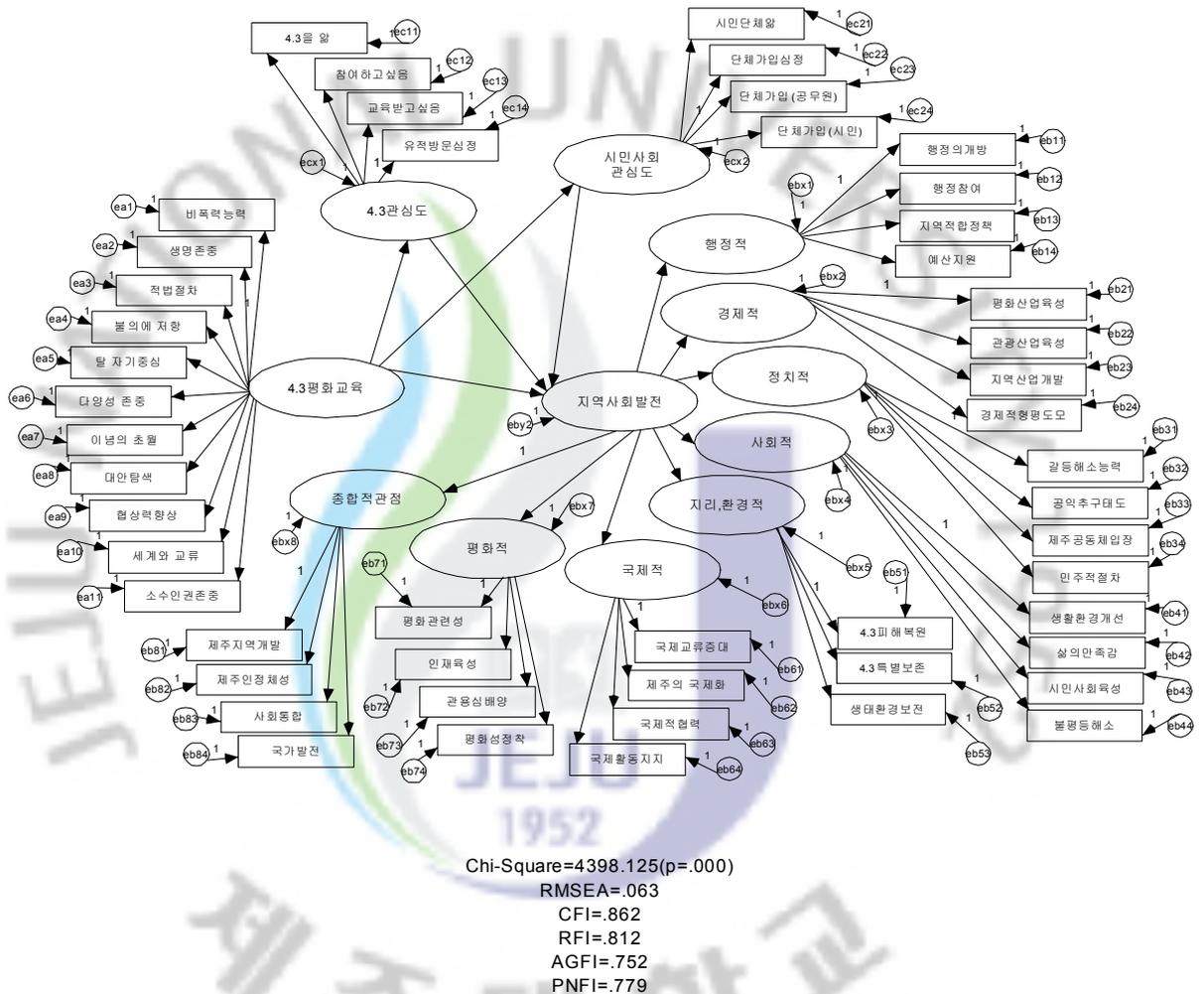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가설검증은 AMOS에 의하여 변수 간에 A=> B=> C 형식의 선형적 경로를 밝히기 위하여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4.3평화교육’,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 그리고 ‘제주지역개발’과 그 하위변인을 놓고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의 가설적 모형은 다음 【그림 4-3】과 같이 모형이 구성되었다.

【그림 4-3】 최초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모형 분석결과는 다음 【표 4-41】과 같다.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기준을 보면 C.R.(기각비)이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5%

115) 유의수준이 .05이하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수준으로서, 모집단 모델에 귀무성이 없어서 부적합하며, 따라서 모델이 모집단에 귀무성을 얻으려면 .0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귀무가설(H₀) : 모델은 모집단 데이터에 적합하다. 연구가설(H₁) : 모델은 모집단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송지준, 2008 : 253).

에서 유의하며, 2.58보다 크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비표준경로계수(표에서 보는 추정치)가 양수이면 가설은 채택된다(김대업, 2008 : 137-139. 188).

【그림 4-3】 최초의 가설적 모형



‘4.3평화교육’이 ‘4.3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설을 보면 C.R.값이 5.904로 유의하며(**), ‘4.3관심도’가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설은 C.R.값이 8.129이고(**),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설을 보면 C.R.값이 8.299이고(**), ‘4.3평화교육’이 ‘시민단체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설을 보면 C.R.값이 4.338이고(**), ‘시민단체관심도’가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설을 보면

C.R.값이 7.244(***)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각 각의 변수 간에는 유의하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연구가설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1】 최초 가설적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구분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유의 확률
4.3평화교육→4.3관심도	.405	.255	.069	5.904	***
4.3관심도→제주지역개발	.240	.305	.030	8.129	***
4.3평화교육→제주지역개발	.431	.344	.052	8.299	***
4.3평화교육→시민단체관심도	.274	.194	.063	4.338	***
시민단체관심도→제주지역개발	.250	.283	.035	7.244	***
제주지역개발→행정적	.736	.811	.046	15.838	***
제주지역개발→경제적	.694	.823	.047	14.735	***
제주지역개발→정치적	.807	.818	.049	16.537	***
제주지역개발→사회적	.921	.911	.051	18.060	***
제주지역개발→지리환경적	.765	.770	.046	16.732	***
제주지역개발→국제적	.912	.780	.049	18.500	***
제주지역개발→평화적	.974	.874	.050	19.377	***
제주지역개발→총체적	1.000	.875	-	-	***

***p<0.001

또한 잠재변수인 ‘제주지역개발’에 설명력을 주는 8개의 관측변인들을 보면, ‘총체적’ 변인을 기준점인 1.000(표준화추정치=.875)로 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상대적 적재치를 보면 ‘행정적’ 변인은 추정치가 .736(표준화 추정치=.811)이고, ‘경제적’ 변인을 .694(표준화 추정치=.823), ‘정치적’ 변인은 .807(표준화 추정치=.818), ‘사회적’ 변인은 .921(표준화 추정치=.911), ‘지리환경적’ 변인은 .765(표준화 추정치=.770), ‘국제적’ 변인은 .912(표준화 추정치=.780), ‘평화적’ 변인은 .974(표준화 추정치=.874)로서 모든 경로 관계는 $p < .001$ 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렇게 각 각의 변수간의 경로관계는 연구가설에서 찾고자 하는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 그림은 최적의 적합모형이 아니다. 즉 모수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변수간의 적합한 구조모형은 【표 4-42】 최초 가설모형의 지수표에서 보듯이 부적합하게 나오고 있다. 그 부적합 정도를 살펴보면 CFI값은 .862(기준값 .9이상), RFI값은 .812(기준값 .9이상), AGFI는 .752(기준값 .9이상)이고, χ^2/df 은 3.785(기준

값은 2-3사이), p값이 .000(기준값 .05이상)으로 확실하게 모수에 부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제주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의도, 즉 현재의 모수가 느끼는 그림에 적합한 모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수에 적합한 모형을 그려나가기 위하여 모형 수정이 필요하고, 모형수정을 할 때, ‘4.3평화교육’에서 보다 세밀한 3개의 하위요인으로 세분하고, ‘제주지역개발’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묶인 4개의 요인으로 하여 최적모형을 설정한 결과 【그림 4-4】 중간 수정모형과 【표 4-42】 최초 가설모형의 지수표의 중간모형과 같이 적합한 모형이 이루어 졌으나, 13개 변수 50문항에서 9 개 변수 24개 문항으로 다수의 설명문항이 제외되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변수도 적절하게 늘리고 문항도 늘리면서 적합모형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을 하였다.

【표 4-42】 최초 가설모형의 지수표

구분	변수 / 문항수	χ^2/df	P값	RMSEA	CFI	RFI	AGFI	PNFI
기준값		2-3사이	.05이상	.08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50이상
최초모형	13/50	3.785	.000	.062	.862	.812	.752	.779
중간모형	9/24	2.769	.000	.050	.950	.912	.904	.800
판단	최초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중간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사례수 = 709

그 결과 【그림 4-5】 최종적 적합모형(비표준화된 적재치)과 【그림 4-6】 최종적 적합모형(표준화된 적재치) 처럼 그려지고 있다. 최종 적합모형을 그려내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에서 ‘4.3평화교육’ 변수를 설명하는 주제단위로 3개의 하위변인을 설정하고,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는 각각 2개의 변수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개발’에는 가설 설정 시에 주제단위로 7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개의 요인묶음으로 통합하여 적합도를 그렸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설명항목들이 제외하여야 하는 점이 있기에, 가급적 설명항목을 덜 제외하기 위하여, ‘제주지역개발’ 변수는 구성개념단위로 하위변인을 6개의 설명변인으로 더욱 세밀히 세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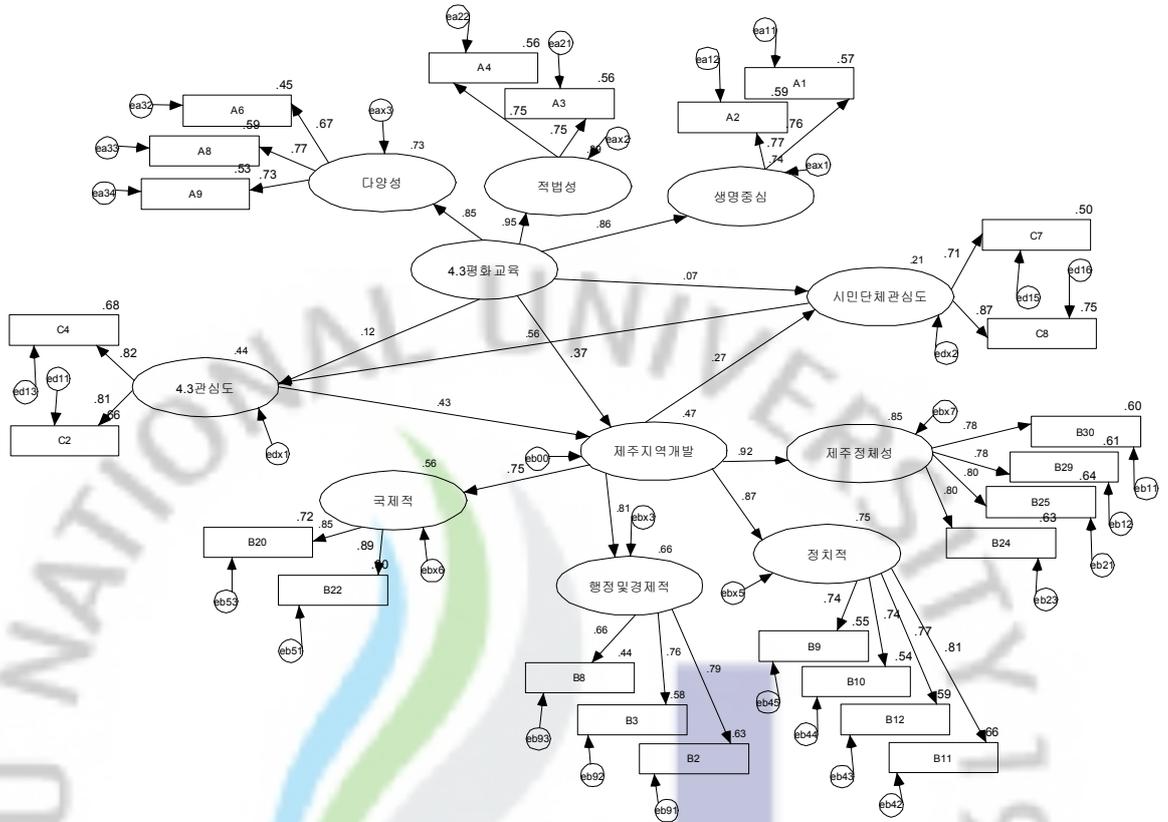
이는 모수 적합도에 더 근접하므로 ‘제주지역개발’을 설명하는데 더욱 근사한 설명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별 항목을 6개로 설정하였다. 즉 적합된 모형을 구축하면서 설문지의 측정자였던 설명항목을 가급적 제외되지 않도록 모형을 재구성함은 모수를 구성하는 표본사례들의 생각을 빠트리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모수가 생각하는 실상에 더욱 적합한 구조모형을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최초의 가설적 모형, 중간모형, 그리고 최종모형과 비교하여 관측문항을 정리하면 【표 4-43】과 같다. 또한 최초의 가설적 모형, 중간모형, 그리고 최종모형의 지수표를 비교하면 【표 4-45】 수정모형 비교분석표와 같다.

【표 4-43】 잠재변수별 관측 문항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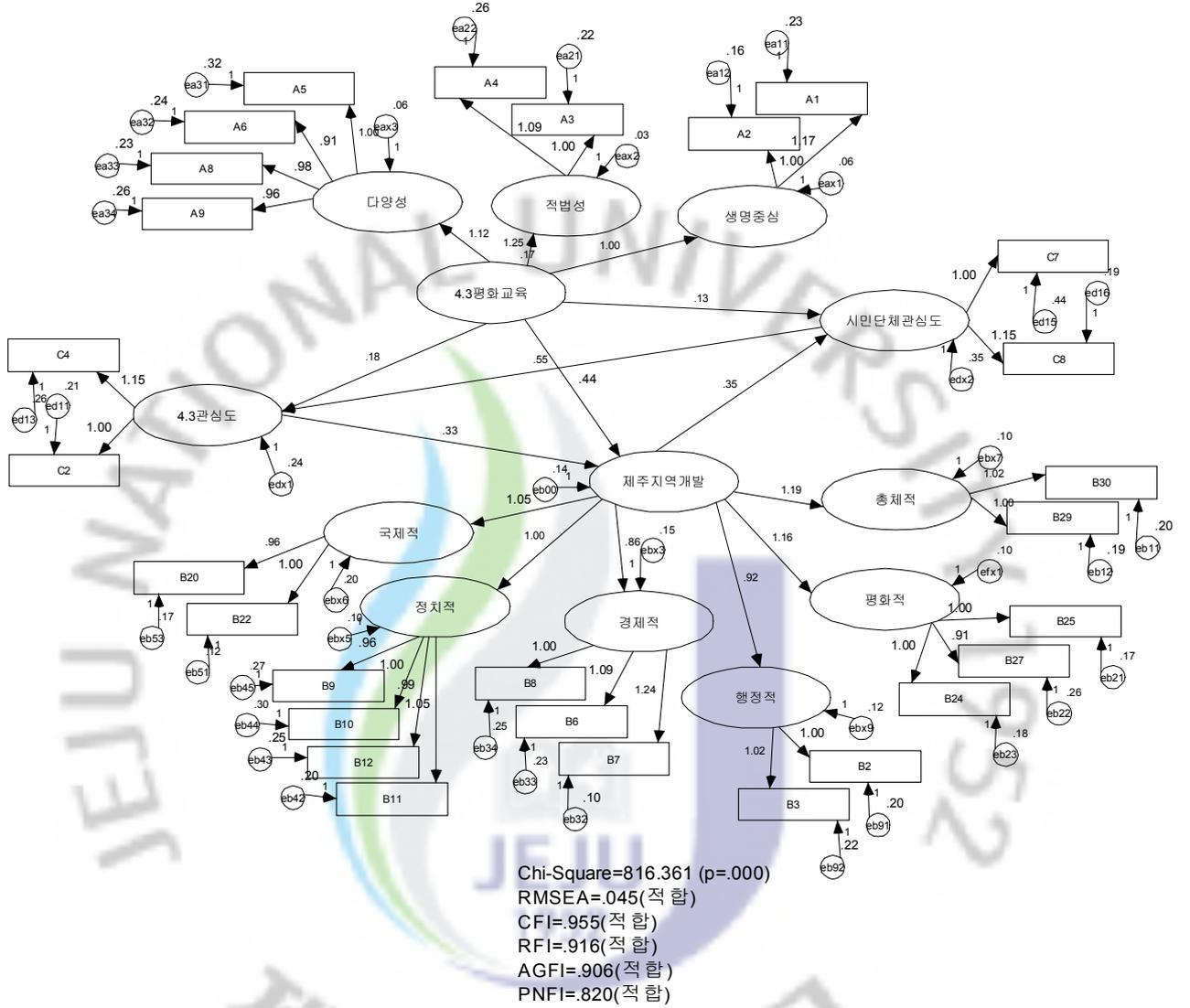
잠재변수	관측변수		
	최초 모형	중간모형	최종모형
	7개변수 50개 문항 (모형 부적합)	9개변수 24개 문항 (모형적합)	11개 변수 28문항 (모형적합)
4.3평화교육	단일변수, 11개의 문항 (A1-A11)	생명중심(A1,A2)	생명중심(A1,A2)
		적법성(A3, A4)	적법성(A3, A4)
		다양성(A6,A8,A9)	다양성(A5,A6,A8,A9)
관심도	단일변수(C1-C4)	4.3관심도(C2, C4)	4.3관심도(C2, C4)
	단일변수(C5-C8)	시민단체관심도(C7, C8)	시민단체관심도(C7, C8)
제주지역개발	총체적(B28-B31)	제주정체성 (B24,B25,B29,B30)	총체적(B29, B30)
	평화적(B24-B27)		평화적(B24,B25,B27)
	행정적(B1-B4)	행정,경제적 (B2,B3,B8)	행정적(B2,B3)
	경제적(B5-B8)		경제적(B6,B7,B8)
	정치적(B9-B12) 사회적(B13-B16) 지리적(B17-B19)	정치적 (B9,B10,B11,B12)	정치적 (B9,B10,B11,B12)
	국제적(B20-B23)	국제적(B20, B22)	국제적(B20, B22)

【그림 4-4】 중간 수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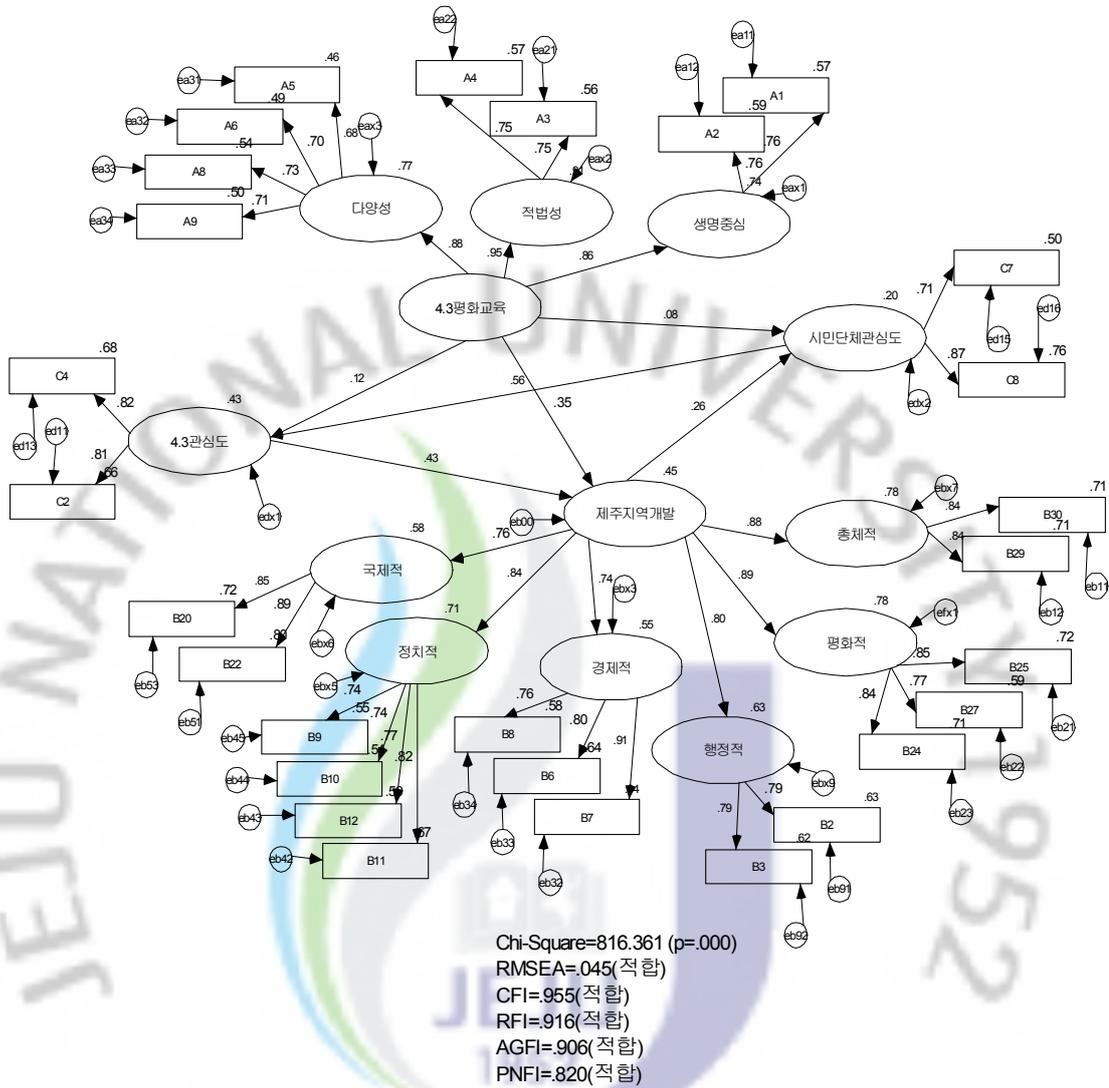


Chi-Square=661.884 (p=.000)
 RMSEA=.050(적합)
 CFI=.950(적합)
 RFI=.912(적합)
 AGFI=.904(적합)
 PNFI=.800(적합)

【그림 4-5】 최종적 적합모형(비표준화된 적재치)



【그림 4-6】 최종적 적합모형(표준화된 적재치)



【표 4-44】 최종적인 가설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 차	C.R (검증 통계량)	검증결과 (p)
4.3평화교육→제주지역개발	.441	.354	.055	8.029	채택(***)
4.3평화교육→4.3관심도	.183	.115	.065	2.800	채택(.005)
4.3평화교육→시민단체관심도	.132	.081	.090	1.466	기각(.143)
4.3관심도→제주지역개발	.335	.426	.043	7.804	채택(***)
4.3관심도→시민단체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4.3관심도)	.567 (.546)	.549 (.564)	.065 (.053)	8.701 (10.333)	채택(***) 채택(***)
제주지역개발→시민단체관심도	.347	.264	.096	3.609	채택(***)

p<0.01, *p<0.001

【그림 4-6】은 최종적인 적합모형으로서, 이에 대한 【표 4-44】 최종적인 가설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4.3평화교육’ ⇒ ‘4.3관심도’ ⇒ ‘제주지역개발’로 작용하는 설명력(Estimate)은 추정치로 각각 .183(p=.005)와 .335(***)로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4.3평화교육’ ⇒ ‘제주지역개발’로 작용하는 설명력(Estimate)도 추정치로 .441(***)로 의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4.3평화교육’이 ‘시민단체관심도’를 매개로 하여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최초의 연구가설의 모형보다(그림 4-3참조), 새로운 구조모형은 ‘4.3평화교육’으로 인하여 ‘제주지역개발’을 선행적으로 이루진다면(.441***), 그 영향으로 ‘시민단체관심도’를 제고하는데 .347(***)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추정치.132, p=.143).

이는 ‘시민단체관심도’는 문항구조가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활동성’과 ‘일반인이 시민단체 가입활동성’에 대한 문항임을 감안하면 ‘제주4.3사건’과 시민단체의 ‘4.3관련 활동’에 대하여 적어도 제주도민들은 어떠한 경계성을 띄고 있으며, 떨어져 있으려 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 판정을 위하여 최초모형, 중간모형,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보면 다음 【표 4-45】의 수정모형 비교분석표와 같다.

【표 4-45】 수정모형 비교분석표

구분	변수 / 문항수	χ^2/df	P값	RMSEA	CFI	RFI	AGFI	PNFI
기준값		2또는 3이하	.05이상	.08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50이상
최초모형	11/50	3.785	.000	.062	.862	.812	.752	.779
중간모형	9/24	2.769	.000	.050	.950	.912	.904	.800
최종모형	11/28	2.437	.000	.045	.955	.916	.906	.820
판단	최초	부적합	부적절 ¹¹⁶⁾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중간	적합	부적절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최종	적합	부적절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사례수 = 709

분석결과, 변수 내에서 다른 문항과는 다르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설명력을 지닌 독특한 문항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모수에 가장 적합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모형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최초의 가설모형에서 11개 변수 50문항으로 모형구성결과 부적합 모형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중간모형을 구성한 결과 9개 변수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형분석 결과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더 높은 적합도를 추구하면서 문항수를 더욱 보전하기 위하여 모형수정을 다시 거듭한 결과 11개 변수 28개 문항으로 최종의 모형 적합도를 구성해 냈다. 결과적으로 ‘4.3평화교육’을 하나의 잠재변수에서 ‘교육주제’에 따라 3개의 잠재변수로 나누었고, ‘제주지역개발’을 탐색적 요인분석과는 달리 6개의 변인으로 조정함으로써, 덩어리진 변인으로 모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덩어리진 것을 좀 더 쪼개어 세분화된 변인으로 분석함으로써 모수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형구조에 근접한 설명력을 갖도록 하였다.

【표 4-45】의 수정모형 비교분석표에서 지수값을 보면 χ^2/df 는 최초 가설모형에서 3.785로 수용 가능범위 밖이었으나 최종모형에서는 2.437로 기준치 2.0또는 3.0이하로서 수용가능성이 있으며, p값은 .05 이내로 부적절한 값이어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보고 판별하게 되었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보면 RMSEA는 최종모형이 .045로 최초모형(.062)보다 더 적

116) 유의수준이 .05이하의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수준으로서, 모델에 귀무성이 없어서 부적합하다. 즉 모델이 모집단에 귀무성을 얻으려면 .05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델은 모집단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아 (송지준, 2008 : 253), 다른 적합도 지수표를 검토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합하고, 중간모형(0.5) 보다도 더 적합한 기준인 .05이하로 나타나 아주 적합한 모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분적합지수인 CFI와 RFI도 중간모형에서 각각 .950과 .912로 기준값(.9이상)에 해당되나 최종모형에서 각각 .955와 .916으로 기준값(.9이상)에 중간모형보다 더욱 적합하다. 그리고 최초 가설모형은 각각 .862와 .812로 기준값에 부적합하고 있다.

또한 조정된 모형적합지수 AGFI는 좀처럼 .90이상 값이 나타나기 어려우나 여기서는 .906으로 적합모형 기준값(.9이상)에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초의 가설모형은 기준값에 미달하는 .752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모형은 .904로 최종모형 보다 덜 적합하다.

이외에도 모형 수정결과 간명지수를 나타내는 최적 간명지수인 PNFI는 최종모형은 .820으로 기준값(.5이상)에 따르면 상당한 간명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최초 가설모형의 PNFI=.779, 중간모형의 PNFI=.800) 따라서 최종모형은 전반적으로 모수를 선행의 경로구조로 아주 적절하게 그려낸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4. 가설검증

이 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2】에서 【가설 7】까지 검증을 할 차례이다.

【가설 2】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제주지역개발’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은 연구모형에 대한 AMOS 경로계수(Estimate)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다만 부분적으로 세부분석이 필요한 가설은 SPSS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C.R.(기각비)의 값으로 1.96 이상이면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2.58 이상이면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

1) 가설 2의 검증

【가설 2】 ‘4.3평화교육’ 은 ‘제주지역개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을 통하여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4.3평화교육’은 3개의 하위변인으로, ‘제주지역개발’은 6개의 하위변인으로 세분하여 모수추정을 하고 있다.

【표 4-46】 가설2의 검증 결과(AMOS)에서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추정치는 .441 이고, 표준화된 추정치는 .354로 나타나 긍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검증 통계량은 8.029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4-47】 가설 2의 검증 결과(AMOS)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검정통계량)	검증결과 (p)
4.3평화교육 ⇒ 제주지역개발	.441	.354	.055	8.029	채택(***)

***p<0.001

다음의 【표 4-47】은 【가설 2】의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 ‘4.3평화교육’을 독립변수로 하고, ‘제주지역개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7】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성
	B	Std. Error	Beta		
(Constant)	1.843	.167		11.040	.000
생명중심	.097	.043	.104	2.274	.023
적법성	.124	.042	.144	2.954	.003
다양성	.184	.047	.184	3.872	.000

a. Dependent Variable: 제주지역개발

b. R-square = .139, F값 =37.847, Prob> F=.000

독립변수에는 생명중심, 적법성, 다양성인 3개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F값이 37.847이고, 유의수준은 p=.000으로 나타나 ‘4.3평화교육’

의 하위 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회귀모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square)은 .13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순서로 비표준화계수를 보면 다양성(.184), 적법성(.124), 생명중심(.097) 순으로 서로 차이가 있으며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4.3평화교육’을 실시하는데 ‘다양성 존중’¹¹⁷⁾에 관한 교육과, 실질적 법률을 준수하는 교육, 생명을 중시하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지역개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가설 3의 검증

【가설 3】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긍정적(+)인 경로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4.3평화교육’과 ‘4.3관심도’사이의 경로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표 4-48】 가설 3의 검증 결과(AMOS)에서 ‘4.3평화교육’이 ‘4.3관심도’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추정치는 .183이고, 표준화된 추정치는 .1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경로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검정통계량은 2.800으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p=.005) 그러나 추정치가 너무 적어서 그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표 4-48】 가설 3의 검증 결과(AMOS)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검정통계량)	검증결과
4.3평화교육→4.3관심도	.183	.115	.065	2.800	채택(.005)

다음의 【표 4-49】는 【가설 3】의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 ‘4.3평화교육’을 독립변수로 하고, ‘4.3관심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17) 이 문항은 ‘탈자기중심’, ‘다양성 존중’, ‘대안탐색’, ‘협상력 향상’으로 구성되었다(표4-7과 그림4-5참조).

【표 4-49】 가설 3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성
	B	Std. Error	Beta		
(Constant)	1.898	.242		7.835	.000
생명중심	.183	.062	.143	2.948	.003
적법성	.047	.061	.039	.767	.443
다양성	.055	.069	.040	.793	.428

a. Dependent Variable: 4.3관심도
R-square = .039, F값 =9.458, Prob> F=.000

독립변수에는 생명중심, 적법성, 다양성 3개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F값이 9.458이고, 유의수준은 $p=.000$ 으로 나타나 ‘4.3평화교육’의 하위 변인들이 종속변수인 ‘4.3관심도’에 미치는 회귀모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R-square)은 .039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비표준화계수를 보면 생명중심(.183)은 유의미 하나 다양성(.055, $p=.428$)과 적법성(.047, $p=.443$)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4.3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4.3평화교육’의 주체로서는 생명의 존중 등 ‘생명중심’과¹¹⁸⁾ 관련된 사항을 ‘4.3의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내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가설 4의 검증

【가설 4】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경로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 사이의 경로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표 4-50】 가설 4의 검증 결과(AMOS)에서 ‘4.3평화교육’이 ‘시민단체관심도’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추정치는 .132이고, 표준화된 추정치는 .081로 나타나 극히 낮은 적재치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통계량도 1.466으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낮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의미가¹¹⁸⁾ ‘비폭력능력향상’과 ‘생명존중’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4-7과 그림4-5참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p=.143$).

이에 따라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 사이에는 의미있는 영향관계는 없으며, 이로서 ‘시민단체가입심정’, ‘공무원이 시민단체 가입활동’, ‘시민이 시민단체 가입 활동’ 하는 것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강력한 사회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의식은 ‘4.3평화교육’을 하더라도 비판적이거나 투쟁성 등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사회통합적인 도민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50】 가설 4의 검증 결과(AMOS)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검정통계량)	검증 결과
4.3평화교육→시민단체관심도	.132	.081	.090	1.466	기각(.143)

4) 가설 5의 검증

【가설 5】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는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경로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 사이에 경로모형을 추정을 하고 있다.

【표 4-51】 가설 5의 검증 결과(AMOS)에서 ‘4.3관심도’에 따른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추정치는 .335이고, 표준화된 추정치는 .426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통계량은 7.804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표 4-51】 가설 5의 검증 결과(AMOS)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검정통계량)	검증 결과
4.3관심도→제주지역개발	.335	.426	.043	7.804	채택(***)

*** $p<0.001$

다음 【표 4-52】의 회귀분석 결과는 【가설 5】의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

로 ‘4.3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제주지역개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52】 가설 5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성
	B	Std. Error	Beta		
(Constant)	2.435	.077		31.806	.000
4.3관심도	.363	.024	.498	15.279	.000

a. Dependent Variable: 제주지역개발
R-square = .248, F값 =233.440, Prob> F=.000

독립변수에는 ‘4.3관심도’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F값이 233.440이고, 유의수준은 $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square)은 .24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3관심도’가 제주지역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서서히 약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3관심도를 바람직한 방향(평화교육으로 의식을 개방하고 확장하는 일 등)으로 조장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하여 혼란 없이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가설 6의 검증

【가설 6】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은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경로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4.3관심도’를 외생변수로 하고 ‘시민단체관심도’를 내생변수로 하여 모수추정을 하고 있다.

【표 4-53】 가설 6의 검증 결과(AMOS)에서 ‘4.3관심도’에 따른 ‘시민단체관심도’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추정치는 .567이고, 표준화된 추정치는 .549로 나타나 상당한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통계량은 8.701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

【표 4-53】 가설 6의 검증 결과(AMOS)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검정통계량)	검증 결과
4.3관심도→시민단체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4.3관심도)	.567 (.546)	.549 (.564)	.065 (.053)	8.701 (10.333)	채택(***) 채택(***)

***p<0.001

또한 역방향의 경로모형으로 ‘시민단체관심도’가 높으면 ‘4.3관심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C.R.=10.333, 추정치=.546^{***})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의 양 변수 간에는 서로 비슷한 비중을 갖고, 상호 상승적인 방향으로 교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가설 7의 검증

【가설 7】 제주지역개발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은 제주도민들은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인 경로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주지역개발’의 6개 하위변인과 ‘시민단체관심도’ 사이의 경로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표 4-54】 가설7의 검증 결과(AMOS)에서 ‘제주지역개발’이 ‘시민단체관심도’에 미치는 전체적인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추정치는 .347이고, 표준화된 추정치는 .264로 나타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통계량은 3.609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이는 ‘시민단체관심도’가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단체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은 시민단체활동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54】 가설 7의 검증 결과(AMOS)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검정통계량)	검증결과
제주지역개발→시민단체관심도	.347	.264	.096	3.609	채택(***)

***p<0.001

다음의 【표 4-55】는 【가설 7】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 ‘제주지역개발’을 독

립변수로 하고, ‘시민사회관심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총체적’, ‘평화적’, ‘행정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6개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F값이 24.307이고, 유의수준은 $p=.000$ 으로 나타나 ‘제주지역개발’의 하위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시민단체관심도’에 미치는 회귀모델에는 ‘총체적’($p=.310$), ‘정치적’($p=.153$), ‘경제적’($p=.350$), ‘국제적’($p=.439$)을 제외한 ‘평화적’($p=.001$), ‘행정적’($p=.022$)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square)은 .17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중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의 순서는 비표준화계수를 기준하면 평화적(.217), 행정적(.134)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가설 7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성
	B	Std. Error	Beta		
(Constant)	.854	.185		4.606	.000
총체적	.057	.056	.053	1.016	.310
평화적	.217	.064	.185	3.380	.001
행정적	.134	.058	.110	2.299	.022
정치적	.091	.063	.072	1.432	.153
경제적	.056	.060	.047	.936	.350
국제적	.042	.054	.037	.775	.439

a. Dependent Variable: 시민단체관심도

b. R-square = .172, F값 =24.307, Prob> F=.000

이는 ‘4.3평화교육’을 통하여 바로 ‘시민단체관심도’로 연계하여 작용되지 않지만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식 확장부터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주지역에 ‘시민단체관심도’가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7) 가설 2~ 가설 7의 검증 결과(종합)

이 절에서는 【가설 2】에서 【가설 7】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변수 간 적합한 구조모형을 밝히는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변수로는 ‘4.3평화교육’에는 ‘생명 중심’, ‘적법성’, ‘다양성’이라는 3개의 변인으로 나누었으며, ‘제주지역

개발'에는 '총체적', '평화적',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이라는 6개의 변인으로 나누었으며, 관심도인 매개적 변수로는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로 나누었다.

변수 간 최종 적합모형을 구성한 결과 변수를 설명하는 다수 항목들이 제외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T-검증, 카이자승검증, 변량분산분석(F-검증)에 의하여 변수 간 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모형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구조모형 분석은 모수에 아주 근접한 모형을 표본자료로 그려낼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4-56】 가설 2~가설 7의 검증 결과(종합)은 구조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이다. 여기서 T-검증과 마찬가지로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와의 관계는 구조모형분석에서도 기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56】 가설 2~가설 7의 검증 결과(종합)

가설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검증 통계량)	검증결과 (p)
【가설2】	4.3평화교육→제주지역개발	.441	.354	.055	8.029	채택(***)
【가설3】	4.3평화교육→4.3관심도	.183	.115	.065	2.800	채택(.005)
【가설4】	4.3평화교육→시민단체관심도	.132	.081	.090	1.466	기각(.143)
【가설5】	4.3관심도→제주지역개발	.335	.426	.043	7.804	채택(***)
【가설6】	4.3관심도→시민단체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4.3관심도)	.567 (.546)	.549 (.564)	.065 (.053)	8.701 (10.333)	채택(***) 채택(***)
【가설7】	제주지역개발→시민단체관심도	.347	.264	.096	3.609	채택(***)

p<0.01, *p<0.001

제 7 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 분석결과의 요약

1) 요인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라는 개념을 주요한 변수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4.3평화교육’ 변수의 소재는 커밍스(1986), 권용은외(1998), 김동춘(2000), 김정빈(1997), 이원복(2007), 양정심(2005), 김호진(1989), 강애란(2001), 고창훈(2008), 권영성(2002), 이봉철(1998), 정애경(2005)이 제시하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자료, 또는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 자료에서 평화교육과 관련성 있는 구성개념들을 추출하였다.

결국 ‘제주4.3사건’을 소재로 하되 그 속에서 평화교육과 관련성 있는 개념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으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4.3평화교육’ 변수를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1개의 요인으로 잘 묶여지었다.

그러나 이 요인을 AMOS에 의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1개의 요인으로 묶는 것은 적합도 지수가 낮게 나타남을 알아냈다. 그래서 문항들이 의미하는 성격별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재분류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가 높았다. 3개의 하위요인은 ‘생명중심’, ‘적법성’, ‘다양성’을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제주평화교육’의 주제별 분류라고 할 수 있다.¹¹⁹⁾

두 번째로 ‘제주지역개발’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지역개발’ 정책을 펴는데 어떠한 기여점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왜냐하면 연구에서 실용성이 없다면 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의 동기나 추동력에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9) 이는 SPSS에 의한 요인분석은 탐색적 성격이 있고, AMOS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보다 정밀한 검증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에 따라 AMOS 모형구조는 모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최적의 모형으로 재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지역개발’의 소재는 고창훈(2004), 박종화(2000), 부만근(2005), 양덕순(2000), 유영옥(1996), 황명찬(1981)이 지방정부론 등에서 제시하는 지역개발 부분과 세계평화심 발전전략 부분을 기초로 하였다. ‘제주지역개발’ 변수 또한 구성개념 설정에서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국제적’, ‘평화적’ 측면으로 개념 분류하여 표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2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우선 SPSS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주정체성(4.3관련성/평화관련성/지역통합성을 내포)’, ‘행정및경제적’, ‘생태환경및국제협력적’, ‘정치적’인 4개 요인으로 묶어서 변수 간 검증을 하였다.

그러나 이 4개의 요인을 AMOS에 의하여 모형분석결과 역시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항의 의미하는 성격별로 변인을 조정하여 ‘총체적’, ‘평화적’,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인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한 결과 적합도가 높았다. 이는 당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시 ‘제주지역개발’의 하위요인 분류와 매우 비슷하게 분류되어 있어 현실 타당도가 높은 확인적 요인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매개적 변수는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로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AMOS 모형적합도 설정에서도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AMOS에서는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설명되어지는 변수이고, 이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써 문항들이 있는데, 이는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게 되어, 문항수가 최종적으로 다음【표 4-57】과 같이 줄어들게 되었다.

【표 4-57】 변수분류 근거, 변수정리 및 분석

변수분류의 근거	4.3평화교육의 변인수 (문항수)	4.3관심도의 변인수 (문항수)	시민단체 관심도의 변인수 (문항수)	제주지역 개발의 변인수 (문항수)	정리결과 분석	
					변인수 (문항)	분석방법
최초모형 (최초 이론정의)	1개 변인 (11문항)	1 변인 (4문항)	1 변인 (4문항)	8개 변인 (31문항)	11개 변인 (50문항)	신뢰도(Cronbach's α) 타당도(Factor Analysis) 구조모형분석
초기모형 (요인분석결과)	1개 변인 (11문항)	1개 변인 (4문항)	1개 변인 (3문항)	4개 변인 (31문항)	7개 변인 (49문항)	변량분석(F-검증)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T-검증) 교차분석(X2검증)
중간모형 (모형분석결과)	3개 변인 (7문항)	1개 변인 (2문항)	1개 변인 (2문항)	4개 변인 (13문항)	9개 변인 (24문항)	구조모형분석
최종모형 (모형분석결과)	3개 변인 (8문항)	1개 변인 (2문항)	1개 변인 (2문항)	6개 변인 (16문항)	11개 변인 (28문항)	구조모형분석

2) 변량분석(ANOVA)에 의한 F 검증

【가설 1】은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 ‘4.3교육받음’의 인적특성을 조절 변수(인자)로 하고,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자가 종속변수 간에 조절적 효과가 있는지 변량분석방법에 의하여 F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인자는 ‘4.3평화교육’에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다 긍정적이고 응집된 ‘4.3평화교육’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 변인은 종속변인 어디에도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는 각 연령층에서 고루게 ‘4.3평화교육’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은 제주지역의 광범위하고 상식화된(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통계치) 일반적인 견해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본다.

‘학력’에 따라서는 ‘4.3평화교육’, ‘시민단체관심도’, ‘제주정체성’, ‘정치적’에 평균차이가 있었다. ‘4.3평화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 층이 중졸 및 고졸보다 긍정적이고, ‘시민단체관심도’는 다른 학력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없으나 역으로 중졸이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정체성’과 ‘정치적’ 변인에 대하여는 ‘대학원’이 다른 학력보다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 대하여는 ‘4.3평화교육’에서 제주시가 서귀포시 지역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제주정체성’, ‘정치적’, ‘국제적’ 변인에 대하여 ‘교사’와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사’는 각각의 변인에서 다른 그룹보다 더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4.3교육 받음’ 여부에 따라서 ‘국제적’ 변인만 제외하고(.262로 귀무가설 채택)는 ‘4.3평화교육’,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경제행정적’, ‘제주정체성’, ‘정치적’인 모든 변인에 반응하여 ‘4.3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골고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과 ‘4.3관심도’ 등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4.3평화교육’을 원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4.3평화교육’으로 인

한 사회적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4.3평화교육’은 ‘지역사회개발’을 도모하고 사회통합, 국가발전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차이분석에 의한 T-검증

AMOS에 의한 적합도 모형을 찾아 여러 모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항들이 제거된다. 따라서 문항제거 이전의 모수자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파하는 것은 생략될 여지가 있다.

【표 4-58】 가설검증 결과 종합정리

구분	검증결과					검증결과
	변인	변인	하위변인	t-값/ χ^2 값	Sig.	
가설 2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제주정체성	9.660	.000	채택
			행정경제적	6.245	.000	
			생태환경국제적	5.954	.000	
			정치적	10.579	.000	
가설 3	4.3평화교육	4.3관심도	-	4.135	.000	채택
가설 4	4.3평화교육	시민단체관심도	-	3.476	.001	기각
가설 5	4.3관심도	제주지역개발	제주정체성	8.610	.000	채택
			행정경제적	7.255	.000	
			생태환경국제적	7.609	.000	
			정치적	7.037	.000	
가설 6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	10.619	.000	채택
가설 7	제주지역개발	시민단체관심도	-	8.070	.000	채택
가설 8	4.3교육희망	제주도민의식형성	-	24.338	.007	채택
가설 9	4.3교육범위	제주도민의식형성	-	20.806	.022	채택

※ 가설 2에서 가설 7까지는 t값이며, 가설8과 가설9는 χ^2 값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 2】에서 【가설 7】까지 검증에, 모든 문항들의 측정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가설검증을 하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8】과 【가설 9】에 대하여는 범주형 자료임을 감안하여 교차분석을 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가설 4】와 같이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이 되었으며, 나머지의 【가설 2】에서 【가설 9】까지는 채택되었다. 결과를 보면 【표 4-58】 가설검증 결과 종합정리와 같다.

‘제주지역개발’의 요소에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¹²⁰, ‘4.3평화교육’은

이러한 ‘제주지역개발’ 변수와 ‘4.3관심도’ 변수에¹²¹⁾ 낮으나마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단체관심도’에는¹²²⁾ 별다른 반응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3관심도’와 ‘제주지역개발’ 변수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 고취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4.3평화교육’을 하였다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개발’은 산업발전과 평화 섬 정착, 국제교류증대, 제주인 이라는 정체성 함양 등 의식수준을 한층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간접적으로 ‘시민단체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4.3평화교육’은 마음(의식)이 개방되고 포괄적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과거 부정적이었던 사실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4.3평화교육’은 사회통합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3교육’에 따른 변화를 보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일수록 ‘4.3평화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제주도민의식’을 평화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교육에 부정적일수록 의식형성에 투쟁적일 수 있음도 알아냈다.

이는 ‘4.3평화교육’이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생각은 과거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잘못 인식된 우려에 불과할 수 있다. 즉 사회가 불안정 시대에 접어들고, 다양화할수록 마인드가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이치를 응용하는 것처럼, ‘4.3평화교육’은 제주도 문화를 개방적이고 한 차원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으로 평화적 도민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람들은 타시도는 물론이고 외국인

120) ① ‘제주정체성’ 변인에 평화관련성, 평화인재육성, 관용심 배양, 평화섬 정착, 제주지역개발, 제주인정체성, 사회통합, 국가발전, 평화산업육성, 4.3피해복원, 4.3지역특별보존 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행정,경제적’ 변인에 행정의 개방, 행정참여, 지역적합정책개발, 제주지역에 예산지원, 관광산업육성, 지역산업개발, 경제적 형평도모, 생활환경 개선, 삶의 만족감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생태환경,국제협력적’ 변인에 생태환경보전, 국제교류증대, 제주의 국제화, 국제적 협력이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정치적’ 변인에 갈등해소능력 육성, 공익추구태도 함양, 제주공동체입장, 민주적 절차, 시민사회육성, 불평등 해소의 문항구조로 되어 있다.

121) ‘4.3관심도’는 ‘4.3을 읽’, ‘4.3행사에 참여하고 싶음’, ‘4.3교육을 받고 싶음’, ‘유적지 방문하고 싶은 심정’의 문항으로 구성됨.

122) ‘시민단체관심도’는 ‘단체가입 심정’, ‘공무원 단체가입활동’, ‘시민들의 단체가입활동’의 문항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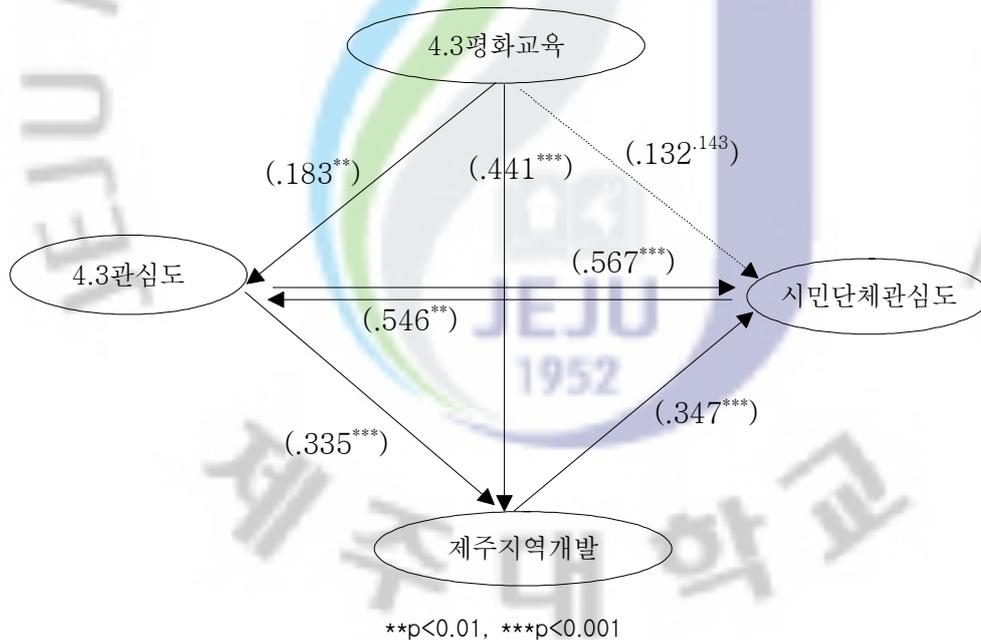
까지 ‘4.3평화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4.3평화교육’은 바로 나의 마음, 제주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하지만, 평화교육은 이 범위를 넘어서 타지도 사람, 외국인까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4.3평화교육’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모형 검증

‘4.3평화교육’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제주도민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궁금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반응사항을 알기 위하여 AMOS에 의하여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4.3평화교육’의 실시와 이로 인한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에 어떠한 경로모형이 그려질 것인지 분석해냈다.

그 결과 많은 측정문항이 제외되는 현상을 감수해야 했으며, 최종 경로관계는 다음 【그림 4-7】 과 같다.

【그림 4-7】 최적의 가설모형



【가설 2】에서 【가설 7】에 대하여, 변수 간 적합한 경로모형을 밝히는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변수로는 외생변수인 ‘4.3평화교육’에는 ‘생명중심’, ‘적법성’, ‘다양성’이라는 3개의 변인으로 나누었다. 내생변수인 ‘제주지역개발’에는

‘총체적’, ‘평화적’,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이라는 6개의 변인으로 나누었으며, 매개적 변수로는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로 나누었다.

여기서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와의 관계는 T-검증과 마찬가지로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3평화교육’과 ‘시민단체관심도’와의 관계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제주도민들은 이에 대하여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3평화교육’은 필요하나 ‘시민단체활동’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즉,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은 필요하지만 별도로 어떠한 사회단체의 행위는 바라지 않고 있다. 이는 어쩌면 시민단체의 순기능적 역할로 인한 장점보다는 투쟁에 따른 사회적 부조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4.3평화교육’을 ‘시민단체’에서 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공적교육에서 중심이 되어 실시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심성은 ‘4.3 평화교육’으로 인한 수용성 확대와 평화를 지향하는 심성의 확대를 가능케 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제주도민은 과거의 4.3과 같은 피해를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제주도지역을 ‘평화의 섬’이라는 근래의 사회적 담론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이어가면, 제주지역은 과거 폭력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승화시켜 세계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제주섬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개발’은 ‘시민단체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시민단체관심도’가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관심도’와 ‘4.3관심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2. 분석결과의 시사점

우선적으로 ‘4.3평화교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의 영향관계에서, ‘4.3평화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응답이 많아서 5.0만점에 평균4.2를 상회하고 있으나, ‘제주지역개발’은 5.0만점에 평균 3.5점대인 것처럼 ‘4.3평화교육’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보통 또는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교하여 제주도민들은 대체로 ‘4.3평화교육’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4.3평화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4.3평화교육’을 하나의 주요한 정책의 수요로 간주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4.3평화교육’을 한다면 ‘제주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제주도민들은 강력한 ‘4.3평화교육’과는 달리 좀 낮지만 그래도 ‘4.3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4.3평화교육’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혼란은 초래되지 않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4.3평화교육’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주지역개발’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현상이 있음을 감안하면, ‘4.3평화교육’은 제주도민의 의식 전환에 도움주어 ‘평화의 섬’ 정착 등 유용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제주도민은 제주 사회현상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4.3평화교육’을 실시하면 이에 대응하여 ‘제주지역개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제주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정체성’은 평화관련성, 평화인재 육성, 관용심 배양, 평화섬 정착, 제주지역개발, 제주인정체성, 사회통합, 국가발전, 평화산업 육성, 4.3피해 복원, 4.3지역특별 보존 등의 긍정적 변화와 관련이 된다.

둘째로는 ‘정치적’ 측면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능

력 육성, 공익추구태도 함양, 제주공동체입장, 민주적 절차, 시민사회 육성, 불평등 해소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바라볼 수 있다.

셋째는 ‘4.3평화교육’은 ‘행정, 경제적’ 측면에 낮으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 경제적’ 측면은 구체적으로 행정의 개방, 행정참여, 지역적합정책 개발, 제주지역개발 예산지원, 관광산업육성, 지역산업개발, 경제적 형평도모, 생활환경 개선, 삶의 만족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로 ‘4.3평화교육’은 ‘생태환경, 국제협력적’ 측면에도 낮으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생태환경보전, 국제교류증대, 제주의 국제화, 국제적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즉 ‘4.3평화교육’을 긍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시민단체관심도’를 높이거나 또는 반대로 ‘시민단체관심도’가 높으면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관성이 너무 낮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을 강하게 긍정하지만, 그렇다고 ‘시민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등의 단체활동은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4.3평화교육’을 하여도 제주시민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흔들리는 경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에 변동을 가하는 영향력은 개인의 활동 보다는 단체나 군중에 의한 영향력이 과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관심도’가 낮은 제주사람의 성향을 보면 안정적으로 ‘4.3평화교육’을 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을 실시하면 ‘제주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며, ‘제주지역개발’을 통하여 ‘시민단체관심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제주의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적, 투쟁적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시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투쟁적 활동보다는 오히려, 제주도민들에게 ‘시민단체’의 순기능적 기능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시민이나 학생을 상대로 도민생활에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는 상호 관련성이 보통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3평화교육’을 통하여 ‘4.3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시민

단체관심도'를 높일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4.3평화교육'으로 '시민단체관심도'를 덩달아서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원하지 않으나, 제주4.3관심도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4.3관심도'를 높이다 보면, '시민단체관심도'도 높여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비유컨대 기대 밖에 있는 효과로서 당초에 원하지 않았던 념쿨이 굴러들어 오는 것과 같다. 즉 사회적 평화의식이 향상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시민단체의 관심'에도 점진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도민들로서 설문조사를 한 인원 690명 중 55.4%인 382명이 '4.3평화교육'은 도민의식이 평화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내 고등학교 2-3학년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오고 있다(한윤섭 · 고창훈, 2008 : 153-183). 이러한 점은 제주도민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외로 '4.3평화교육'을 더 솔직하고 상세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3평화교육'을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의식이 투쟁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4.3교육'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교육방식을 전환하여 '4.3평화교육'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평화적 의식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또 다른 확인 점은 '4.3평화교육'을 한다면 과거에 사람들이 4.3을 이념 편향적 교육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의식이 투영되어, '4.3평화교육'은 오히려 제주사회를 투쟁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로 변화시켜버리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심은 하나의 기우정도로 볼 수 있겠다는 점이다. 오히려 '4.3평화교육'은 '4.3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사람까지도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에 긍정적인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특성으로 1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평화교육을 한다면 다른 주제의 평화교육개념에도 높은 긍정적 반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경향은 '제주지역개발' 분야에서도 1개 분야의 개발은 다른 분야의 개발에도 보통이상의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슷한 항목의 개발은 다른 항목의 개발에 높은 상호작용 효과가 작용하여 '4.3평화교육'은 '지역개발'을 향한 긍정적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주4.3사건'을 평화교육의 측면으로 한다면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야 당

연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사실 ‘제주4.3’에 대하여 과거부터 공식적인 교육을 금지하여 왔고, 근래에 들어서 제주도 교육청의 지원과 개별학교 또는 교사 단위로 교육을 행하여지거나 ‘제주대학교’의 학과교육과 ‘4.3연구소’ 또는 ‘4.3평화기념관’의 교육·문화 체험 활동이나 인터넷 등으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사람들은 4.3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타시도 사람들은 더욱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4.3’에 대하여 제주사람만이라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4.3평화교육’을 타시도사람 또는 외국사람 까지 해야 한다는 선까지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우리 행정이나 교육을 주관하는 곳에서의 이러한 도민의 열망을 어느 정도 수렴하여 충족을 시켜주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4.3평화교육’의 범위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교육으로 인한 ‘도민의식변화’의 방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4.3교육범위’를 확대할수록 ‘도민의식형성’에 차이를 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연구한 결과 ‘도민의식형성’이 ‘평화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제주도(47.9%)→타시도(56.5%)→외국인까지(59.2%)로 점유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4.3평화교육’은 의식 확장의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3평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제주도민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면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성, 적법성, 생명 중심으로 모두가 낮은 관계의 영향을 주고 있어,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 사회변화를 유도할 좋은 소재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4.3평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수인권 존중 등 다양성 존중에 관한 교육과, 실질적 법률을 준수하는 교육이 보다 중요한 주제로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지역개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4.3관심도’를 통하여서도 ‘제주지역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4.3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4.3평화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서 제주도민들은 생명의 존중을 들고 있으며, 따라서 ‘생명중심’과 관련한 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개 관

이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4.3평화교육’을 실시하면 ‘제주지역개발’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4.3평화교육’ 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여 9개 변인에 11개 문항으로 구조화하여 SPSS에 의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단일변수에 11개 문항으로 분류되어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경로모형 추정 시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개 하위변인으로 조정하고, 모형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8개 문항으로 최적의 구조모형을 그려나갔다.

또한 지방정부론의 지역개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지역개발’ 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여 8개 변인에 31개 문항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해 들어갔다. 이 변수는 SPSS에 의해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4개의 하위변인에 31개의 문항으로 재분류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AMOS 경로모형 추정 시에는 모형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6개의 하위변인에 16개의 문항으로 최적의 구조모형을 만들어 갔다.

매개적 변수로 ‘4.3관심도’와 ‘시민단체관심도’를 설정하여 2개의 하위변인에 8개 문항으로 구조화하였다. 이 변수도 SPSS에 의해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2개의 하위변인에 7개 문항으로 재분류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AMOS 경로모형 추정 시에는 모형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2개의 하위변인에 4개 문항으로 최적의 구조모형을 만들어 갔다.

기타 인적특성과 의식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 ‘교육경험’으로 하여 6개의 문항과 제주도민의 의식수준을 측정하고자 ‘제주도민 의식형성’과 ‘4.3평화교육의 범위’ 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 특성은 모두 범주형 자료로 수집하여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파악하고, ‘4.3평화교육’ 결과에 따른 제주도민의 의식수준을 가늠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1차적으로 SPSS에 의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자료의 큰 손실이 없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2차적으로 AMOS에 의하여 모수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그림(구조모형)을 그려나가고자 자료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차례의 모형 수정을 거친 후에 최적의 구조모형을 추출해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서 SPSS에 의해 가설검증을 하였기에 여기서 분석을 종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는 좀 유실될지라도 검증된 가설 위에 A변수⇒B변수⇒C변수 형식의 경로방향을 더 밝혀내고자 AMOS에 의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더 하였다. 이는 모수(제주도민)가 뜻하는 경로적인 의미를 추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¹²³⁾

설문지의 문항개발은 관련자료, 도서 및 전공서를 기초로 하여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4.3평화교육’과 ‘제주지역개발’ 변수의 설명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문항들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지에 의한 자료 수집은 2009. 6. 25- 2009. 7. 10사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교사’,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75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자와 결측 응답자 41부를(5.5%) 제외한 709부를(94.5%)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709부는 모수추정에 있어서 95% ± 3.7%의 신뢰구간 사이에 있게 되는 표본크기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모수는 제주도민으로 범위를 정하여 남녀의 성별과 제주도 및 서귀포시의 지역 분포의 비율에 비슷하게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자료채취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반인’에 대하여는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임의 조사를 하였으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하여는 학교별, 관공서별 지역적 산포 정도를 감안하면서 표본지역을 임의 추출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에 대하여는 ‘대학교 구내 순회’, ‘우편조사 수집’, 그리고 ‘대학생 군집장소’ 등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결과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 분포의 이상 정도와 평균과 분산을 검토하면서 검증 결과와 비교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검증과 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서로의 통계치를 참조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는 분석결과 Cronbach’s

123) 즉 “제주사회에서 ~~ 한 것을 한다면, ~~ 한 방향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선형적인 경로를 찾아내는 의미가 있음.

$\alpha = .961$ 의 신뢰성 높은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타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압축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구조모형 분석 시는 최적 모형 설정에 알맞게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표 4-39】와 같이 하위요인을 세분화 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모든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과 변인 사이에 상관의 방향과 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일 변수 내 변인들 사이에는 보통 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변수간 사이에는 보통 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설문문항 설정에서 변수 간 구분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구성이 잘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절차를 밟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검 증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종합】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는 ‘인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부분채택

다음 【표 5-1】은 가설 1의 종합이다. 이는 인적특성에 따라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4.3관심도’, 그리고 ‘시민단체관심도’와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성별’인자는 ‘4.3평화교육’(.045)에 차이가 있으며, ‘학력’인자는 ‘4.3평화교육’(.000), ‘시민단체관심도’(.040), ‘제주정체성’(.000), ‘정치적’(.000)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인자는 ‘4.3평화교육’(.044)에, ‘직업’인자는 ‘제주정체성’(.000)과 ‘정치적’(.000), ‘국제적’(.012)에 차이가 있으며, ‘4.3교육 받음’은 ‘4.3평화교육’(.001), ‘4.3관심도’(.000), ‘시민단체관심도’(.000), ‘경제·행정적’(.001), ‘제주정체성’(.000), ‘정치적’(.000)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적특성에 따라 각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 인자만은 종속변인에 어떠한 차이를 주고 있지 않아서 【가설 1-2】는 기각이 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인적특성’ 인자와 ‘종속변인’ 사이에는 일부 종속변인

만이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표 5-1】 가설 1의 종합

가설	factor에 따라 영향 받는 종속변인	결과
가설1-1	성별⇒4.3평화교육	부분채택
가설1-2	연령⇒차이를 주는 변인 없음	기각
가설1-3	학력⇒4.3평화교육, 시민단체관심, 제주정체성, 정치적	부분채택
가설1-4	지역⇒4.3평화교육	부분채택
가설1-5	직업⇒제주정체성, 정치적, 국제적	부분채택
가설1-6	4.3교육 받음⇒4.3평화교육, 4.3관심도, 시민단체관심도, 경제, 행정적, 제주정체성, 정치적	부분채택

【가설 2】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4.3평화교육’ 긍정의 강약에 따른 ‘제주지역개발’ 변수의 하위변인과의 평균차이를 보면, ‘제주정체성’(t=9.660***), ‘행정·경제적’(t=.6245***), ‘생태환경·국제적’(t=5.954***), 정치적(t=10.579***)) 변인에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AMOS 분석결과 표준화된 추정치는 .354로 나타나 긍정적인(+) 경로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량 8.029***).

【가설 3】 ‘4.3평화교육’은 ‘4.3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독립표본 T-검증에서 ‘4.3평화교육’ 긍정의 강약에 따른 ‘4.3관심도’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4.135***로서 ‘4.3평화교육’을 긍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AMOS 분석결과 표준화된 추정치는 .115로 나타나 긍정적인(+) 경로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량 2.800***). 그러나 그 설명력(.115)이 너무 적어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설 4】 ‘4.3평화교육’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독립표본 T 검증에서 ‘4.3평화교육’ 긍정의 강약에 따른 ‘시민단체관심도’와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3.476.001로서 유의한 수준이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상관 계수가 너무 낮은 .17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관이 있기는 있지만 그 정도가

극히 낮아 【표 4-27】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에 대하여 AMOS 분석으로 더 검토하여 보면 표준화된 추정치도 .081로 나타나 극히 낮은 적재치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통계량도 1.466($p=.143$)으로 .95의 신뢰수준인 1.96보다 낮게 나타나 있어 가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가설 5】 ‘4.3관심도’는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4.3관심도’ 긍정의 강약에 따른 ‘제주지역개발’의 하위변인 사이에 평균차이를 보면, ‘제주정체성’($t=8.610^{***}$), ‘행정·경제적’($t=7.255^{***}$), ‘생태환경·국제적’($t=7.609^{***}$), ‘정치적’($t=7.037^{***}$)으로 ‘4.3관심도’를 긍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AMOS 분석결과 표준화된 추정치는 .426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경로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량 7.804^{***}).

【가설 6】 ‘4.3관심도’는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4.3관심도’ 긍정의 강약에 따른 ‘시민단체관심도’ 변인과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10.619(***))로서 ‘4.3관심도’를 긍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AMOS 분석결과 표준화된 추정치는 .549로 나타나 긍정적인(+) 경로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량 8.701^{***}).

【가설 7】 ‘제주지역개발’은 ‘시민단체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독립표본 T-검증을 보면 ‘제주지역개발’ 긍정의 강약에 따른 ‘시민단체관심도’ 변인과의 평균차이를 보면 t값은 8.070(***))으로서 ‘제주지역개발’을 긍정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AMOS 분석결과 표준화된 추정치는 .264로 나타나 긍정적인(+) 경로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량 3.609^{***}).

【가설 8】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에 따라 ‘제주도민 의식형성’에 차이를 줄 것이다. ⇒ 채택

‘4.3평화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주도민 의식’의 순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가장 큰 순위는 (1)순위, 가장 낮은 순위는 (6)순위 등으로 순위를 기록하도록 하여 ‘4.3평화교육’이 도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¹²⁴⁾

그 결과 총 709명중 19명이 결측되어, 690명을 집계로 한 빈도를 보면 제1순위로 ‘평화적 도민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0명중 55.4%인 382명 이었다.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와 ‘제주도민 의식형성’과의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자승 검증 결과 $X^2=24.338$, $p=.007$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9】 ‘4.3교육범위’에 따라 ‘도민의식형성’에 차이를 줄 것이다. ⇒ 채택

‘4.3평화교육’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문항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에 대하여 제주사람에게 하여야 한다는 인원은 결측 인원 5명을 제외한 응답자 704명 가운데 17.0%인 120명이며, 타시도 사람까지 해야 한다는 인원은 응답자 가운데 61.1%인 430명이고, 외국 사람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인원은 21.9%인 154명이다. ‘4.3교육범위’와 ‘도민의식형성’과의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자승 검증 결과 $X^2=20.806$, $p=.022$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124) 제시된 도민의식은 ①평화적, ②피해적, ③화합적, ④투쟁적, ⑤민주적, ⑥억압적 의식으로 6 가지이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 시사점 및 향후 방향

아직까지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연구자가 자료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점은 아직도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이념적 틀 속에 구속되어 제주도 사람들의 과거에 나쁜 행적(빨갱이)을 새삼 다시 캐내어 미화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사실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단지 반공 이념 하에서 반란자를 정당하게 제압한 사건으로만 잘못 알고 있어, 이는 집권자의 언술에 따라 집권자 또는 집권을 밟아가는 세력의 ‘폭력’은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폭력’의 재현을 용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4.3평화교육’은 강하게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의식의 개방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의 한 증거로서 ‘4.3평화교육’을 이유로 ‘시민단체관심도’가 바로 직결되어 상승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민들의 지역사회 혼란을 원치 않으면서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의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개발’에 ‘4.3해결’과 ‘평화의 섬’ 정착, ‘산업발전’ 그리고 ‘지역사회통합’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제주4.3사건’의 대량학살 등 폭력사건에 대하여, 이를 반대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여 가해자는 반대자의 사상을 의심하여서 또 하나의 폭력행사의 근거를 찾는 등 正反합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 正反의 낮은 늪지대에서 투쟁적 경쟁에 휘몰리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현시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주4.3사건’을 행정학적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행정이란 현재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행위라면 앞으로도 ‘제주4.3사건’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등 현시점에서의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수많은 행정적 접근들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자는 ‘콜롬버스의 달걀’을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최소 그 쉬운 방법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다가 누군가 그 해법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해법이라고 볼 수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을 ‘콜롬버스의 달걀’이라고 한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제주4.3사건’에 대한 평화교육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즉 ‘제주4.3사건’은 폭력을 낳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폭력 속에서 비폭력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헤아리고, 그에 기초해 비폭력 평화교육을 한다면 그 영향으로 폭력지대였던 제주에는 갈등과 폭력은 서서히 없어지고 용서와 화합하려는 마음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로모형을 누구나가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 이해, 용서, 화합은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상대)의 마음이 바뀌어야 용서와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상대)의 마음은 바꾸기가 어렵다. 그 결과 너(상대)의 마음이 바꾸지 못하니, 바꾸지 못하는 마음자체가 나쁘다고 비판이 나오고, 이에 더 나아가 폭력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너(상대)는 그대로 있을 지라도 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나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비판과 폭력적인 마음(생각작용)을 버리면 충돌 상황은 없어진다. 이는 평화 조성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례로서 사례를 들자면 이미 깊숙이 신앙심 속에 이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 불가(佛家)에서는 이미 세상은 환하게 깨쳐있으며, 다만 사람이 미혹해서 깨침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깨침을 증득하려면 나의 (비판적 생각 작용 등)마음을 닦고 닦아 없애면 되는데, 나의 마음이 없게 되는 경지를 얻어내면 바로 세상은 화합되어 절묘하게 조화된 세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순간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속에 거하는 절묘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동학사상에도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여, 나의 (비판적 생각 작용) 마음자리

가 없는 순수한 한울님과 같이 일치될 때 사람은 곧 한울님(인내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제주사람들에게 형식, 구호, 그리고 행사를 ‘평화의 섬’으로 하기 이전에 내실이 있는 도민교육 그 자체에 나부터 바꾸어 가는 평화개념을 삼입시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평화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등을 깊게 생각하고, 교육 작용으로 또 생각하게 한다면 어느 순간 제주도민들은 나부터, 나 속에서, 평화의 마음 작용을 볼 수 있어야 하겠구나!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내 인생이 평화롭겠구나!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형식, 구호, 그리고 행사작용 이전에 이미 제주지역은 평화심으로 넘쳐나는 곳이었구나, 이제까지 내 마음이 어두워 평화를 보지 못하였구나 라는 점을 깨우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나의 마음자리를 바꾸는데 좋은 평화추구의 소재감이 될 수 있다. 모두가 나의 마음부터 바꿀 수 있도록 ‘4.3평화교육’을 학생, 시민, 관광객 등에게 할 가치가 충분하고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여 진다.

2. 한계점

1) 이 연구의 한계점은 ‘제주4.3사건’을 행정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몇 개 안되는 연구이기에 많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4.3평화교육’을 어떻게 이론적 정의를 해야 옳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4.3평화교육’, ‘제주지역개발’ 에서 2차 자료들을 기초로 하였다 하지만, 그 자료의 수집과 하위변인별 묶음 등에서 보듯이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한계가 있다.

2) 물론 전문가들이 쓴 2차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의 주관을 중심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제주도민을 상대로 연역적 검증을 실시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는 하였지만,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하여 보다 더욱 일반화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일반화된 이론으로 정립하기에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3) '4.3평화교육'의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 밝힌 요인들은 다양한 요인들 중의 기초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에서 평화교육의 범주를 포괄적 범위까지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평화의 개념을 넓힐 수 있는 요인들을 교육현장의 관찰연구에서, 교육 및 행정가의 정책수립 현장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또한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가령 표본 추출 시 누구나 표본으로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을 지닐 수 있도록 완전 무작위 추출을 하여야 하나, 직업적, 연령적, 학력적 고려사항에서 완전 무작위 추출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비교직업군을 제주지역의 공무원, 교사, 대학생, 및 일반인의 4개 그룹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주도 지역의 일반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는 과학적 절차상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제 비판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폭력의 방과제를 만들어 보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이 먼저 평화를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바로 자기부터,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기가 평화를 깨치면 모든 세상이 이미 평화로워져 있고, 자기 마음속부터 폭력을 배척하는 방과제를 만들어보면 이미 그 세상에는 폭력이 없어져 조화로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4.3평화교육)

- 강경호,(2007). 「성령론」, 요나미디어: 453-457.
- 강성현, (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5: 83-91.
- 강정구, (1999).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조선의 분단: 4·3항쟁을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1(1): 87-88.
- _____ (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서울: 한울 아카데미: 56-57, 324-325, 499-500.
- 강창일(1998). 제주4·3진상규명운동과 한국민주주의.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105-138.
- 고성만, (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13.
- 고병헌, (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8-11. 19-20. 20-21.
- _____ (2006). 「평화교육사상」, 서울 : 학지사: 59-60, 63. 64-65.
- 고창훈, (1991). 제주민중항쟁의 경제사회적 해석,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56-60.
- _____ (2007. 3. 9). 제주평화산업의 전망과 과제(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발제 논문.
- _____ (2007). 제주세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 17(2).
- _____ (2008. 4. 24). 제주4·3을 통한 평화산업육성 전략 모색, 제주4·3 60주년 기념 제13차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 발표안.
- 곽준식, (2001). 간디의 비폭력철학에 관한 연구. 「전주산업대 논문집」: 7-15.
- 교육부, (1998).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176.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 451.
- 국사편찬위원회, (1973). 「자료대한민국사」, 5: 21-22.
- 권태준 · 김광웅, (1981).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서울: 법문사: 61.
-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서울 : 박영사: 273.
- 권용은 · 민병기, (1998).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고찰, 안하대 교육학 연구회, 「인하교육학 연구」, 창간호: 57.
- 김기진, (2002).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서울 : 역사비평사: 167.
- 김대중, (1995).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가능성과 전개, 한반도 통일, 아시아민주화, 세계평화, 「아태평화아카데미」 : 170-180.
- 김동춘, (2000).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심포지움 발표문).
- _____ (2000). 한국의 근대성과 도덕의 위기, 「근대의 그늘-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도서출판 당대: 120-127.
- _____ (2002). 「전쟁과 사회」,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242-282.
- 김두식, (2006). 국가란 이름의 괴물,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 91.
- 김봉현·김민주, (1963).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대판 : 문우사, ; 아라리 연구원, 「제주민중항쟁1」, 서울 : 소나무 : 13-16. 53, 84-85. 1988에서 재인용.
- 김성례, (2001). 국가폭력의성 정치학-제주4·3학살을 중심으로, . 문화과학사, 「다언어문화이론저널 ; 흔적-TRACE-迹」. 2: 271-272. 284-285.
- 김수자, (1999).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1947-1948),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31 : 161.
- 김순태, (1999).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53. 147-179.
- 김영범, (1990).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연구회논문집」, 24: 324.
- _____ (2008). 「좌우파가 논쟁하는 대한민국사62」, 서울 : 위즈덤하우스: 32.

- 김영수, (2006). 「한국헌법사」, 서울 : 학문사: 418, 830.
- 김영필·이강화, (1996). 「철학과 삶」, 서울 : 학문사: 180.
- 김완수, (1995). 그리스철학에 있어서의 평화의 문제,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편, 「평화의 철학」 : 17-19.
- 김용정, (1974). 칸트의 외경의 윤리와 정언명법, 「동국대학교논문집」, 13: 29-47.
- 김용철, (2009).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10-13. 24-32.
- 김육훈, (2003). 세계사 교과서 속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서구중심사관, 「역사교육」, 61: 59-60.
- 김정빈, (1997).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서울 : 도서출판 등지: 99-104.
- 김정한, (1995). 「인간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책: 190.
- 김정환·고병현, (1993). 평화교육의 쟁점과 과제, 고려대학교, 「사대논집」, 17: 114.
- 김종민, (1998). 제주4·3항쟁, 대규모 민중 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봄: 33-40.
- _____ (1988). 4.3이후 50년, 역사비평사. 「제주4.3연구」: 338-424. 368-402.
- 김학성, (2000).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 통일연구원: 8.
- 김한중 외, (2005).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서울 : 선인: 24.
- 김호진, (1989). 「한국의 권위주의 문화와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 과제와 전망」, 한국연구시리즈①,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36.
- 나간채 외, (2004).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7.
- 노민영, (1988). 「잠들지 않는 남도-제주도 4·3항쟁의 기록」, 서울 : 온누리: 92-93.
- 노승만, (2000). 「노장의 자연철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유학대학원: 12, 22-23.
- 동아시아평화인권한국위원회, (2008).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서울 : 삼인: 2, 97.
- 마이클 왈져, (2004). 송재우 역, 관용에 대하여. 서울 : 도서출판 미토.
- 문상선 증언, 대정지역의 4·3항쟁. 「4·3장정」, 6: 63.
- 문정인, (2007). 동북아 지역질서와 평화의 네트워크, 「평화연구」, 18(1): 5-20.

- 문창송, (199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 11. 16-17. 19. 30.
- 박명립, (1999).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4·3연구」: 426-427. 441-452. 455. 452-460.
- 박보영, (2005).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95-96.
- 박세길, (1988).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1」. 문화과학사, 서울 : 도서출판 들베게: 20, 33-40, 61-62, 49-50.
- 박세일, (2008).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서울 : 21세기북스: 202-203.
- 박종대, (1995).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평화의 철학」: 11.
- 박종화, (1992). 기독교 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유형,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편. 「평화: 이론과 실천의 모색 II」, 서울 : 삼민사: 14-15.
- 박찬식, (2007), 4.3의 공약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현대사연구」, 여름호, 41: 186, 187-188, 191-194.
- _____(2008). 「제주의 역사」, 제주: 도서출판 각: 199, 419-421. 469, 501-503. 545.
- 박채욱, (2004, 여름). 칸트의 평화: 하나의 철학적 기획 그리고 이념, 법한철학회. 「법한철학」, 33: 203-226.
- 법정, (1992). 「밖에서 찾지 말라」, 전남 : 불일출판사.
- _____(1999). 「무소유」, 서울 : 범우사: 156, 159.
- 북한연구소, (1989). 「북한」, 4: 127.
- 브루스 커밍스, 김주환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상. 청사: 274-277. 279-280.
- 송경호, (1991). 칸트의 영원한 평화의 이념,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30(1) : 107-128.
- 송환용, (1991). 철학적 사색과 사유의 세계. 「동양인의 철학적 사고와 그 삶의 세계」. 명문당: 82-100.
- 서중석, (2006). 「조봉암과 1950년대-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723. 733. 747.
- 서해문집편집부편, (2007). 「내일을 여는 역사」, 24. 서해문집: 77-80.

- _____, (2007). 「내일을 여는 역사」, 18. 서해문집: 40.
-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713.
- 세계섬학회, (2009). 제3회 Peace Island School 교육자료.
- 이강수. (2005). 「노장 철학의 이해」. 예문서원 : 458-462.
- 안재홍, (1965). 발행소 : 평양시 조국통일사. 「안재홍(安在鴻) 유고집」, 1965년 12월 25일 . 양은심 논문에서 재인용.
- 안청시, (1987). 전후세대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안청시, 최일섭 엮음, 서울 : 집문당.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 69-99.
- 양봉철, (2002).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 ‘제주4·3’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육대학원 : 5-6.
- 양정심, (1988). 주도세력을 통해서본 제주4.3항쟁의 배경, 4.3문제연구소외, 「제주4.3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82-87.
- _____(2005). 「제주4.3항쟁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육원: 52, 57-58, 111-117, 120-124, 128-130, 132-135, 147-148, 150-152, 156, 174-181, 199.
- 역사학 연구소, (1996). 「강좌 한국근현대사」, 서울 : 도서출판 풀빛: 242-243.
- 염남윤, (2003). 「기독교 신비주의 신학과 웨이커교의 교회론 비평」, 석사학위논문, 계명신학대학원대학교: 42-43.
- 오금숙, (1999).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제주4·3연구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서울 : 역사비평사: 245-248.
- 오인택, (1987). 평화교육과 기독교인의 책임. 「기독교 사상」, 3월호: 94-95.
- 유진오, (1981). 「헌법기초회고록」, 서울 : 일조각: 7-81.
- 윤상호, (2005). 「J. Galtung의 적극적 평화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5-7.
- 윤재근, (2004). 「노자, 오묘한 삶의 길③- 크고 싶다면 먼저 작게 하라」, 도서출판 나들목: 158-159.
- 윤충로, (2004). 「반공독재국가형성과 국가능력비교연구」 : 146, 148.
- 이강수, (1991). 노장의 평화사상,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편, 「현대사회와 평화」, 서광사: 131-157.

- 이계영, (1992). 「현기영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1. 37-38.
- 이근원외, (2006). 「삶과 윤리」, 서울 : 학문사: 183.
- 이도영, (2000). 「죽음의 예비검속」, 서울 : 말: 43, 76-78.
- 이문영, (2006). 협력형 통치, 열린책들.
- 이봉철, (1998). 「21세기 새정치가치 탐색」, 대전 : 한남대학교 출판부: 131, 136.
- 이삼열, (1983). 평화운동의 이념과 평화연구의 과제-서독의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3(1): 35-51.
- 이영권, (2007). 「제주4.3을 묻습니다」, 서울 : 신서원: 79-84, 91-95.
- _____ (2008). 「새로쓰는 제주사」, 서울 : 휴머니스트: 379-380.
- 이이화, (1997). 동학농민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제3차 역사문화 강좌에서.
- 이원복, (2007). 「평화능력 신장을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 15.
- 이정복, (1982). 한국의 사회계층과 정치문화, 「현대사회」, 봄호: 40.
- 이정환, (2003). 「과학사를 도입한 과학학습 교재개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39-40.
- 이훈상, (2003). 한국 전쟁의 기억과 역사교육. 「초등교육연구」: 18. 200.
- 이희주, (1982). 「동학사상의 이론적 검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33-38.
- 임중재, (2002). 「동학사상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인간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69-70.
- 장영호, (1999). 「케이커운동의 기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2,8,10,73,74.
- 정민혜, (1985). 「남로당의 적화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대학원: 49.
- 정선영외, (2002).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89.
- 정애경, (2005). 「타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NGO대학원: 44-45.
- 정영수, (2001). 독일 학교교육에서의 평화교육. 「한독교육학연구」, 제6권 제1호: 163-183.

- 정하은, (1989). 돌이켜본 4.3사건의 과거의 현재, 제주사회연구소, 「제주사회연구」, 창간호: 121.
- 정해구, (1988). 제주4.3항쟁과 미 군정정책, 서울 : 역사비평사. 「제주4.3연구」: 180-204.
- 제민일보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1, 서울 : 전예원: 434-437.
- _____ (1994). 「4·3은 말한다」 2, 서울 : 전예원: 147-176, 309-312, 326-329. 402-404. 409-413. 347-353.
- _____ (1997). 「4·3은 말한다」 4, 서울 : 전예원: 151-154, 156-157, 222-223 (김호겸, 4·3당시 서귀포경찰서장 증언), 377-378.
- _____ (1998). 「4·3은 말한다」 5, 서울 : 전예원: 88(표선면 성읍리 김원형 증언), 130-134. 136(남원면 수망리 현기만 증언), 291(안덕면 덕수리 송영화 증언), 146-152. 273-274, 290, 370-372.
- 제주도교육청, (2008).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제주4.3교육 장학자료집. (초등학생용).
- _____ (2008).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제주4.3사건 이해자료. (교사용).
- _____ (2008). 「만화로보는,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4.3교육자료.(중·고등학생용).
- _____ (2008).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보고서」. 4.3교육자료.(교육가정용).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2). 「제주4.3사건자료집4」 (정부문서, 국회속기록, 잡지편),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3(1949. 3. 8 제25회 국무회의록). 135(1949. 3. 17 이범석국무총리의 제주도 시찰결과 보고).
- _____ (2002). 「제주4.3사건자료집5」 (군경자료편①): 156-161.
- _____ (2002). 「제주4.3사건자료집11」 (미국자료편⑤): 178-181.
- _____ (2003).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02, 144, 189, 195, 241, 293, 320, 369, 396, 416(애월읍 용흥리 김계순 증언), 373. 450, 456-457, 496-498, 534, 536-540, 543-544.
-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함수다」 (증언자료집 2), 한울: 223.

- _____ (1990). 채록 기행- 대정읍 구역리, 「4·3장정1」 : 63-64.
- _____ (2001). 「1960년 국회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국회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I-II. ; 양정심(2005), 「제주4.3항쟁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176-177에서 재인용.
- _____ (2001). 「1960년 국회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국회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II: 92-248, 555-606. 747-780.
- _____ (2001). 「1960년 국회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국회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I: 173-216.
- _____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7.
- _____ (2009).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15-18, 23.
-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2001. 1). 「4.3반세기」 10: 10.
- 제주도경찰국, (1990). 「제주도경찰사」 : 318.
- 조명화, 「평화운동과 평화거버넌스」, 석사학위논문, 연세대대학원: 7-12.
- 조선통신사, (1947). 「조선년감-1948년판」, 318. ; 양정심, (1988).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80.
- 조이스 콜코·가브리엘 콜코, 「미국과 한국의 해방」;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도서출판 : 돌베개. 1982에서 재인용: 34-37.
- 진덕규, (1992). 미군정시대 정치사회의 시민사회적 함의성에 대해, 한국사회학회.한국 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 한울: 143-44.
- 진성범, (1997). 「사건 50년 제주반세기」, 제주 : 제민일보사: 75.
- 최관경, (1995).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부산교대. 「부산교대초등교육연구」 : 197.
- 최상용, (1992). 칸트의 영구평화론,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 학지사: 295-313.
- 하영선, 김상배, (2006).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 을유문화사.
- 한나 아렌트, (1999). 「폭력의 세기」, 이후 출판사 ; 허상수, 제주4.3 민중항쟁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7(1): 75-97. 2006에서 재인용.
- 한단석, (1990).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관한 일고」, 원광대 종교연구소: 3.

- 한윤섭·고창훈, (2008. 12). 4.3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제주도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2(2): 153-183.
- 한혜숙, (1995). 「아동의 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6.
- 황병무, (2006). 「전쟁과 평화의 이해」, 오름: 17-21.
- 황산익, (1988).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4.3문제연구소외, 「제주4.3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304-337.
- 허상수, (1988). 제주4.3민중항쟁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한양대학보」.
- _____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7. (2004). 국가 폭력과 제주4.3항쟁, 폭력과 평화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자료집」.
- _____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7. (2006). 제주 4.3항쟁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7(1): 75-97.
- _____ (2006). 제주4.3 민중항쟁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7(1): 75-97.
- 허상수외,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허상수, 제주4.3항쟁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7(1): 75-97. 2006에서 재인용.
- 허호준, (2003).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108.
- 현진호, (2007).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교육인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10. 11. 13. 14.

(지역개발)

- 강순원, (2003).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과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의 상관성 : 상호 이해교육(EMU)에서 민주시민교육(CE)으로, 「비교교육연구」, 13(2): 221-244.

- 강순원, (2007). 「평화교육을 여는 또래 중재 :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 : 커뮤니티: 145-146.
- 강애란,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정책 실태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행정대학원: 11-12.
- _____ (2004). 세계평화심 발전전략으로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연구, 제주대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63-110.
- _____ (2007. 3. 9). 제주평화산업의 전망과 과제(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의 발제 논문.
- 권태준·김광웅, (1981).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서울 : 법문사: 61.
- 김차희, (2003). 평화교육을 위한 한 연구 : 고등학교 도덕과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철학교육연구」, 32(19): 197-222.
- 김수신, (1983).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변화와 전략, 「사회과학논총」, 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0-171.
- 문병집, (1986).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 법문사: 42-43.
- 박문옥, (1967). 「개발행정론」, 서울 : 법문사: 29-31.
- 박응격, (1982). 지역개발의 이론과 개발전략, 한양대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논총」: 247-264.
- 박종화 등, (2000).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서울 : 박영사: 3-4, 23-25, 27-29.
- 부만근, (2005).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제주대학교출판부: 286-287.
- 시누끼 히로시, (2005). 「일본 평화교육 발자취 : 현재의 도달점과 향후 과제」; 강순원 엮음, 「아래로부터의 한일 평화교육」, 평화교육시리즈 01, 서울 : 커뮤니티: 92-117.
- 신경훈(1981),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원광대학교 행정학연구회, 「행정논총」, 1: 39-53.
- 양길현, (2007). 「평화변영의 제주정치」, 서울 : 도서출판 오름: 69-72.
- 양덕순, (2000). 「제주형 평화의섬 모형 정립과 실천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64-66.
- 양덕순·강제상, (2007).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

- 정」, 17(2): 59-81.
- 양진건, (2005). 학교외 평화교육에 대한 각국의 사례비교 : 미국, 이스라엘, 독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16(1): 297-319.
- 유영옥, (1996). 「지역정책론」. 서울: 학문사: 212-213, 245-247, 250.
- 이경원, 양덕순,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계경쟁력 제고. 「한국정책학회춘계세미나」 : 347-365.
- 이창익, (2005). 일본의 평화교육,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16(1): 321-361.
- 이승미, (2005). 아시아,태평양 문화, 종교적 갈등지역의 평화교육 연구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아시아 교육연구」, 6(1): 25-58.
- 전인수, (1998). 「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광주 광역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4-8.
- 정영수, (2001). 독일 학교교육에서의 평화교육. 「한독교육학회」 : 163-183.
- 진행남, (2008). 「국내외 평화교육프로그램 실태분석」. 제주평화연구소 연구사업보고서 08-02호: 20-31.
- 최양수, (1993).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논집」 : 1-20.
- 최재선, (1987). 「지역경제론」, 서울: 법문사: 409.
- 최창호, (1983).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서울 : 삼영사: 35. 37.
- 최창호·정세욱, (1977). 「행정학」, 서울 : 법문사: 81.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999).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의 국제교류 추진, 「지방의 국제화」 : 245.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매뉴얼」 : 18-21.
- 한운섭, (2009).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주도공무원을 중심으로」, 미발표 논문.
- 황갑손, (1992). 「지역개발행정론」, 서울 : 법문사: 22-23.
- 황명찬, (1981). 지역개발과 지역중심 도시의 역할 및 개발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16(6): 48.

(방법론)

- 강병서·김계수, (2001). 「사회과학 통계분석」: 299. 서울 : SPSS아카데미.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 학현사: 41-42.43-44, 137-139. 188.
- 김계수, (2008).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 한나래출판사: 196.
- 노형진, (2001). 「한글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290-298, 437-476, 553-576.
- _____ (2008). 「Amos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 한울출판사: 52.
- 성태제, (200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 학지사: 36-54, 60-79, 83-84. 129.
- 성태제·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86, 323-326.
- 송지준, (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시 : 21세기 사: 253.
- 우수명, (2002). 「마우스로잡는 SPSS 10.0」, 서울 : 인간과복지: 361.
- 이경희, (2001).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 민영사: 218.
- 이영준, (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석정: 28-34.
- 임인재, (1980). 「심리측정의 원리」, 서울 : 교육출판사.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사전(하)」, 서울 : 백의: 840-841.
- 차석빈외, (2007). 「사례를 통해 본 다변량분석의 이해」: 135-140.

(서양서)

- AERA, APA, & NCME, (1999). Standard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성태제,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 학지사: 41-42. 2005에서 재인용.
- Anastasi, A., (1988). Psychological testing (6th ed). New York : Macmillan. ; 성태제(200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 학지사: 43. 2005에서 재인용.

- Anette Kuhn, (1971). *Theorie und Praxis historischer Friendinsforschung* (Sdien zu Friendidsforschung. Hg. von Georg Picht & Heins Eduard Tödt. 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 Heidelberg): 24-26. ; 정현백,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80: 107. 2001에서 재인용.
- Berghe, Pierre. L. van den, (1990). "Introduction," in pierre L. van den Berghe(ed.). *State Violence and Ethnicity*.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허상수, 제주4.3 민중항쟁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제17권 제1호: 75-97. 2006에서 재인용.
- Charles Covell, (1998). *Kant and the Law of Peace*, New York: 125. ; 박채옥, (2004, 여름). 칸트의 평화: 하나의 철학적 기획 그리고 이념,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33집: 203-226. 2004에서 재인용.
- Czamanski, S., (1973), *Regional and Interregional Local Accounting*,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
- Dudley Seers, (1977), "The New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 Th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vol. XI. No. 4. March: 2-7.
-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 1951): 185. ; 안종철 옮김, (1993). 「주한미군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공동체: 241-242. 1993에서 재인용.
- E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 (1998). *Security Communiti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문정인, 동북아 지역질서와 평화의 네트워크. 「평화연구」, 18(1): 5-20. 2007에서 재인용.
- Friedmann, J., (1973).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 244-247.
- Gallie, W. B., (1979).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 Kant, Clausewitz, Marx Engels and Tolsto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

- George F. Gant. (1979).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ncept, Goal, Method,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6-9. 10-13.
- Gore Charles G., (1984). Regions in Question. London: Methuen: 8-11.
- Gordon, H., & Grob, L., (Eds.) (1987). Education for Peace : Testimonies from World Religions, New York : Orbis Books: 124. ; 고병현, 「평화 교육사상」. 학지사: 63. 2006에서 재인용.
- Han Youn-Sub, (2009). "A study on the Model Building Between by 'the 4.3 Peace Education'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 The 3rd Peace Island School and 9th Peace Island Forum, Organizing Institutes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and Peace Institut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347-355.
- Hanigan, Martin Luther King Jr., Stanley Grenz: 214. ; 신원하 역, (2001).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 IVP: 218. ; 강인한, 마루틴 루터 킹의 평화주의, 「기독교사회윤리집」, 4 : 61-93. 2002에서 재인용.
-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al of Geography. Chicago: 31.
- Hicks D., (1987). Education for Peace Issues :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Classroo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한혜숙, 「아동의 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6. 1995에서 재인용.
- Host-Wilhelm Jung/ Gerda von Staehr, (1986). historischer Friendinsforschung und historisches Lernen, Marburg: 114. ; 정현백,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80: 101. 2001에서 재인용.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97, 1947. 4. 27.
- Hq. USAFIK, G-2. P. R. No. 698, 1947. 12. 2.
- Hq. USAFIK, G-2. P. R, No. 1948. 12. 16.
-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85, 1948. 10. 8.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1949. 3. 3.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949. 4. 1.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90, June 3, 1947.
- Hq. USAMGIK, Major General Willian Dean to Major Edgar Noel, 1948. 7. 17.
- “Weekly Activities of PMAG,” November 8, 1948, *ibid.*, Box 4.
- “Weekly Activities of PMAG,” November 15, 1948, *ibid.*
- J. C. Nunnally,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New York : McGraw-Hill).
- John. Macquarrie, (1973). *The Concept of Peace*, SCM Press Ltd., London, ; 조만(역), 기독교서회, 「평화의 개념」 : 27-33. 1980에서 재인용.
- John Merrill, (1980).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51-152, 166-167.
- Jhon Glassen, (1974). *An Introduction to Regional Planning*, London: 18-20. 20-23.
- Jurgen Ebach, 김형기 역(1988), 「성서와 폭력- 성서의 현실과 그 영향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75.
- Kent S. Bernard, (1971. 12). "Structures of American Military Justice". 125 UPALR 307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view ; John S. Cooke, (2000. 3) "Military Justice and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RMLAW*: 1. ; 고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56. 2006에서 재인용.
-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 Letter from Roberts to Lee Bum Suk, September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 M. K. Gandhi, (1927). *An Autobiography*, New Dellhi : The Navajivan trust: 38-39. ; 김선근, 간디의 비폭력사상 소고. 「동국사상」, 제10-11

- 합집: 57-70(재인용).
- Mackaye, B., (1928), *The New Exploration: A Philosophy of Regional Planning*.
New York: Harcourt: 43.
- Magnus Haavelsrud, (1996). *EDUCATION IN DEVELOPMENTS*, Norway :
Trpmsprodukt A/S: 39-40.
- Michael W. Doyle, (1997). *Ways of Peace and Ways of War*, New York :
Norton, ch8. ; 문정인, 「동북아 지역질서와 평화의 네트워크. 평화
연구」, 18(1): 5-20. 2007에서 재인용.
- NARA,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No. 1.
- NARA,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No. 4.
- NARA, RG 338, PMAG·KMAG. Box. No. 7.
- NARA, RG 338,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Entry.11070, Box.
No. 68.
- NARA, RG 338, Entry.11070, Box. No. 84.
- NARA, RG 407. Box. No. 18342. 「Counter Intelligence Semi-Monthly
Report<1947년 10월 16일-1947년 10월 31일 (제21호)>.
-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do as of 15 November 1947, Samuel j.
Stevenson, Captain, Adjutant, 59th M. G Hq Company, to
Lawerence A. Nelson, OSI, USAMGIK, 21 Nov. 1947, Nelson
Report.
- Paulo Freire, (1972). *Pedagogy of the Oppressed*.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58. ; Magnus Haavelsrud, (1996). *EDUCATION
IN DEVELOPMENTS*, Norway : Trpmsprodukt A/S. 40(재인용).
- Raw Report(미군정청 여론국), 1946. 12. 9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432. 1986에서 재인용.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Letter from Roberts to Lee Bum Suk, September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Sherman M. Strange, (1974). *Violatives ; Modes and Themes of Violence*, Sherman M. Strange. eds., *Reason and Violence: Pilosophical Investigation*, Basil Blackwell. ; 허상수, 제주4.3 민중항쟁의 인권, 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7(1): 90. 2006에서 재인용.

Szyman Chodak, (1973). *Societal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city Press: 256.

United Nation, *Social Progres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1955) ; 최창호,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서울 : 삼영사: 35. 1983에서 재인용.

Walter B. Stöhr, (1981). "Development from Below : The Bottom-up and Peripheryinward Development Papadigm", in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Walter B. Stöhr and D. R. Fraser Taylor (ed.), New York : Jhon Wiley and Sons LTD.: 39-40.

William Alonso, (1975) "*Urban and Regional Imbalances in Economic Development*", J. Friedman and W. Alonso(ed.), *Regional Policy* Camvridge ; The Cambridge : The MIT press : 629-630.

William J. Kreidler, (1990). *Elementary Persperties 1: Teaching Concepts of Peace and Conflict*, 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 Cambridge, M. H. ; 한혜숙, 「아동의 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6. 1995에서 재인용.

(법률, 신문, 회의록, 속기록 및 인터넷)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1.
『경향신문』, 1949년 5월 17일.
『대동신문』, 49년 3월 11일, 1948년 6월 16일, 1948년 6월 17일.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동광신문』, 1949년 3월 12일.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 1949년 3월 12일.
『미디어제주』, 2005년 03월 25일, 2009년 5월 8일.
『방첩대 정보요약』, 1947년 11월 21일~24일.
『서울신문』, 1948년 6월 12일, 1948년 6월 15일.
『연합뉴스』, 2009-02-03 16:17.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3월 2일(육군본부 군사감실).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 1949년 5월 19일.
『제대신문』, 1987년 4월 13일.
『제민일보』, 1993년 4월 9일.
『제민일보』, 2009년 04월 05일 (일) 16:34:10.
『제주신문』, 1989년 5월 11일.
『제주신보』, 1947년 3월 16일, 1947년 4월 28일, 1947년 6월 22일, 1950년 8월 26일, 1952년 4월 26일, 1960년 5월 25일, 26일, 28일 1960년 6월 7일-24일, 1960년 7월 3일, 1961년 1월 29일, 1961년 6월 6일.
『제주의소리』, 2009년 5월 23일.
『제주투데이』, 2003년 10월 31일.
『조선일보』, 1949년 3월 11일, 1960년 7월 16일, 1961년 1월 26일, 1980년 8월 2일.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30일.
『중앙일보』, 1949년 3월 11일.
『한성일보』, 1947년 3월 13일, 1948년 5월 22일.
『경향신문』, 1987년 1월 28일. 이경남, 「청년운동반세기」.
『CNB뉴스』, 2009-04-06 09:50:06, 전교조 제주지부-2009년도 4·3유적지 순례.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국회속기록』, 제1회 제94호, 1948년 11월 2일.

『박찬식, 강의계획서』, 2009학년도 제1학기 ‘제주4.3의 이해’ 참조.

『전교조제주지부』, (2002. 4. 1). 2002년도 교육주간 자료, 59주년 4.3교육주간 계획서 참조.

『인권오름』, 제17호, 2006년 8월 17일. hr-oreum.net.

『미국의 소리』, 2009년 4월 23일. www.vo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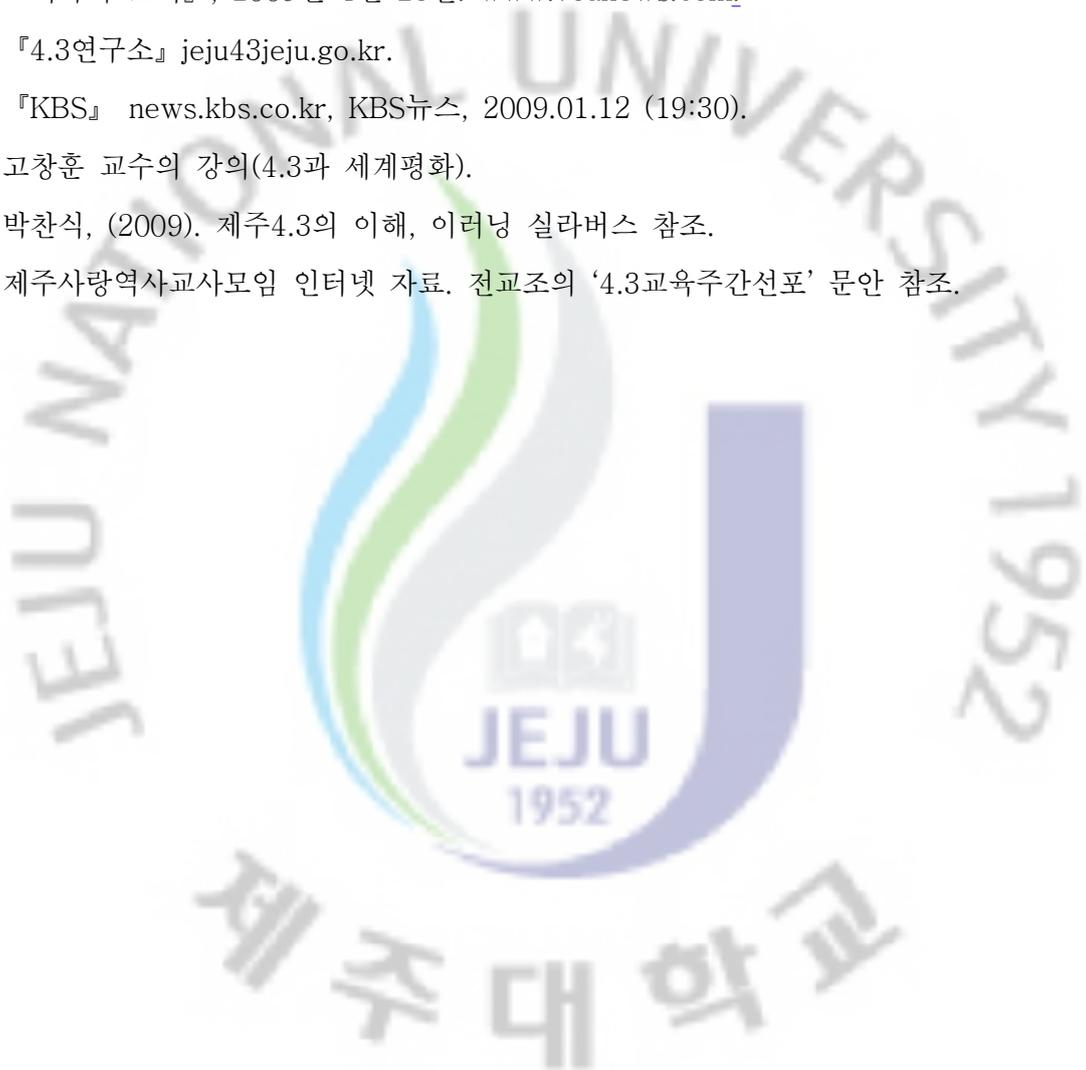
『4.3연구소』 jeju43jeju.go.kr.

『KBS』 news.kbs.co.kr, KBS뉴스, 2009.01.12 (19:30).

고창훈 교수의 강의(4.3과 세계평화).

박찬식, (2009). 제주4.3의 이해, 이러닝 실라버스 참조.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인터넷 자료. 전교조의 ‘4.3교육주간선포’ 문안 참조.



설문조사서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 설문은 '4.3평화교육'을 한다면 '제주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며, 느끼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오로지 총괄적인 통계로서만 학술적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 .

지도교수 : 고창훈(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자 : 한윤섭(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자료문의 : 019-386-6883, hys3203@hanmail.net

문. 【A 독립변수】 다음은 현재시점에서, 제주4.3에 대한 반성으로써 평화교육 소재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알맞은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01. (4.3 평화교육 소재로서) ‘비폭력 능력을 향상하기’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2. ‘생명의 존엄’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3. ‘적법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4. ‘불의에 대한 저항’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5. ‘탈자기(自己) 중심’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6. ‘다양성 존중’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7. ‘이념적 틀을 깨트리기’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8. ‘대안탐색을 위한 능력 쌓기’의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09. ‘갈등에 대한 협상력 쌓기’의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10. 평화보장을 위해 ‘세계도시와 교류’의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11. ‘소수인권 존중의 태도 기르기’에 대한 적절성?	⑤	④	③	②	①

문. **【B 종속변수】** (앞장과 같이) ‘4.3평화교육’을 한다면, 주민들의 태도 변화 또는 제주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01. (4.3평화교육은) 제주지역행정에 개방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2. 주민의 행정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3.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4. 제주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5. 평화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6. 관광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7. 지역산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8. 경제적 형평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09.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0.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태도를 낳게 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1. 제주공동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2.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태도를 육성시킬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3.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4. 제주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만족감을 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5.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6. 불평등해소 정책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17. (4.3평화교육은) 4.3피해지역 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8. 4.3관련지역의 특별보존예(예; 사적지 지정 등) 동감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9. 생태환경지역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0. 국제교류의 증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1. 제주지역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2. 국제간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지지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3. 국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4. 제주지역개발에 평화관련성을 높여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5. 평화증진을 위한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6. 관용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7. ‘평화의 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8. 총체적으로 제주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9. 총체적으로 제주사람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0. 총체적으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1. 총체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문. 【C 기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관심도 및 시민단체관심도】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01. (귀하께서) 4.3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	⑤	④	③	②	①
02. 4.3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	⑤	④	③	②	①
03. 4.3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	⑤	④	③	②	①
04. 4.3유적지를 방문하고 싶은 정도?	⑤	④	③	②	①
05. 시민단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	⑤	④	③	②	①
06.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정도?	⑤	④	③	②	①
07.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⑤	④	③	②	①
08. (일반주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⑤	④	③	②	①

【D 의식특성】

문항	있 음	없 음	‘있음’에 대한 추가질문? 해당란에 ○표 바랍니다.
01. 4.3교육을 받은 경험?	①	②	교육받은 시기? (초, 중, 고, 대학), 기타()

02. 제주도민으로서 ‘4.3평화교육’을 누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 사람, ②타시도 사람까지, ③외국인까지

03. '4.3평화교육'이 '도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순서'를 부여하면?

※예시⇒ 가장 큰 순위 (1)순위, 가장 낮은 순위는 (6)순위 등

‘도민의식’ 순서를 부여 바람	
평화적 의식 ▶▶▶▶▶() 순위	
피해적 의식 ▶▶▶▶▶() 순위	
화합적 의식 ▶▶▶▶▶() 순위	
투쟁적 의식 ▶▶▶▶▶() 순위	
민주적 의식 ▶▶▶▶▶() 순위	
억압적 의식 ▶▶▶▶▶() 순위	

【E 인적구성】 다음을 보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녀
02. 귀하의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등학교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이상 ⑤기타()
03. 귀하의 출생연도? 19()년도 출생
04. 귀하의 직업은? ()
05. 귀하의 현재 직업에 종사기간? ()년
06. 귀하의 주소지는? 제주도 : (제주·서귀포)시, ()읍면동,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사 의 글

탐욕스러움과 분심으로 인해, 어리석게 살아왔던 저에게 자신을 바로 보고, 세상을 알고 세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어리석은 저에게 다양한 관찰 수단을 자극해 주신 행정학과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폭력과 평화는 하나의 풍선과 같아, 평화를 늘리면 폭력이 줄어들고, 이 씨앗을 터트리면 온 세상으로 평화가 전파되는 이치를 알게 해 주신 고창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주제인 ‘제주4.3사건’을 갖고 행정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문을 끝까지 애쓰시면서 지도를 해주신 양덕순 교수님, 박찬식 소장님, 황경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오고 빙판이 되어버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기꺼이 내왕하시면서 세밀한 심사평을 해주신 김동환 교수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어 이를 바라보고 발현시키면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교육학과 박태수 교수님과 교육현장에서의 어떠한 아이디어도 논문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김성봉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법론을 전해주신 김종덕 선생님, ‘제주4.3사건’을 화두로 달아매고 지극 정성으로 깨칠 것을 격려해 주신 강경숙 교감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제주행정연구회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평가를 하면서 논문작성에 열의를 갖게 해주신 김시자 박사님, 양진규 박사님, 진창남, 박영규, 정태근, 현성욱, 임정현, 김창규, 강만일, 이은정, 오윤정, 윤원수, 김호전님 등 대학원 선후배님들과 행정학과에서 저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김덕은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4.3사건’에 관한 논문은 한 사람의 마음작용에 의하여 결코 작성할 수 없는 분야임을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6-7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읍면동 마을을 순회하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한결같은 격려’가 없었더라면,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협조’가 없었더라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응답’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결코 ‘제주4.3’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문지 개발에 많은 아이디어를 남겨주신 제주의 동료 직원들과 논문심사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신 창원의 동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수집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제주도교육청 진규섭 장학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의 논문 작성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어머님과, 휴일 날이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수행자처럼 설문조사의 길을 같이 해주신 성찬 엄마, 그리고 한지선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탐심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음을 새롭게 깨닫고, 이에 대해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철없는 나(ego)를 철저히 깨트리고, 그냥 나 없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 천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2009년 12월 26일
창원시내, 정병산을 바라보면서